



1

독일통일 총서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1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아미고디자인 (전화 02-517-5043)

CONTENTS



독일통일에 따른 군사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제1장 서문	10
제1절 국방총서 발간의 배경	10
제2절 국방총서 발간의 목적	12
제3절 국방총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14
제2장 군사통합의 기획과 준비 및 애로사항	16
제1절 동독급변사태의 발생	16
제2절 군사통합 논의 시작과 전개과정	17
제3절 군사통합을 위한 조직 및 기구 설치	23
제4절 애로사항	27
제3장 병력통합	31
제1절 구 동독군을 통일독일 연방군으로 인수하는 법적 근거	31
제2절 통일 직전 구 동독군의 병력 현황과 부대개편 계획	37
제3절 구 동독군의 편입과정	39
제4장 무기 및 장비 통합	43
제1절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의 규모	43
제2절 무기와 장비의 분류 및 평가기준과 보관	44
제3절 무기 및 장비의 처리 현황	47
제5장 기구와 조직 및 시설통합	49
제1절 기구와 조직 통합	49
제2절 시설통합	50
제6장 교육통합	52
제1절 교육통합의 목표	52
제2절 구 동독군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식	54

제7장 맺음말 : 교훈과 시사점	58
부록 1: 독일통일 및 군사통합 연대표	65
부록 2: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68



동서독 군사통합 단계별 과정

들어가며	76
제1장 개혁기(1989년 10월-1990년 3월, 1990년 4월-7월)	80
제1절 인민군 조직의 특성	80
제2절 제반조건	88
제3절 동독 인민군과 서독 연방군 간의 상이한 기대와 평가	92
제2장 준비기(1990년 7월-10월)	96
제1절 변혁의 물결과 자체 개혁을 위한 노력	96
제2절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105
제3절 인민군과 연방군의 통합	110
제4절 외국과 체결된 계약의 파기	123
제5절 탄약과 무기의 안전한 보관	127
제3장 인수기(1990년 10월-1992년 말)	130
제1절 인민군의 해고	131
제2절 연방군으로의 인수	135
제3절 연방군에서의 계속고용	137
제4절 연방군 잔류문제와 연금문제	140
제4장 구조조정기(1991년-1995년)	144
제1절 군사장비와 시설	145
제2절 통일의 완성을 위한 연방군의 노력	147
제3절 신연방주의 고용주로서의 연방군	150
제4절 인프라	150
제5장 휴유증 등 제반문제 처리기(1993년-현재)	152

CONTENTS



통일독일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동서독 관계자들의 강연 및 인터뷰	158
동독 군축국방부와 인민군 해체	159
연방군과 동부부흥	173
인터뷰 - 로프 옥켄(Rolf Th. Ocken) 장군	214
인터뷰 - 페터 톰슨 (Peter Thomsen) 전 인민군 육군 중령	225
문서목록	227
문서 요약	256
1. 개혁기(자료번호 1~38)	256
2. 준비기(자료번호 39~95)	282
3. 인수기(자료번호 96~102)	318
4. 구조조정기(자료번호 103~112)	324
5. 후유증 등 제반문제 처리기(자료번호 113~300)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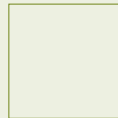


표 목차

표 1-1) 분단국 군사통합 사례 비교와 한반도에의 교훈 적용 가능성	12
표 1-2)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2조	33
표 1-3)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5조	34
표 1-4)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7조	35
표 1-5)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8조	36
표 1-6) 통일 직전과 통일 당시 구 동독군의 병력 현황	37
표 1-7) 구 동독군 부대의 통일 연방군 편입 가능성 분류	38
표 1-8) 구 동독군의 연방군 편입절차	39
표 1-9)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탄약의 규모	43
표 1-10)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의 분류	44
표 1-11)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따라 통일 독일군이 감축해야 했던 무기와 장비 및 처리된 구 동독군 무기와 장비	46
표 1-12) 구 동독군의 무기 및 장비 처리 현황	48
표 1-13) 동독출신 장교 대상 1차교육	54
표 1-14) 동독출신 장교 대상 보수교육	55
표 2-1) 인민군 군인 현황/해고	139
표 2-2) 통일이 가져온 독일의 병력 규모 변화	143

그림 목차

그림 1-1) 독일통일에 대한 국내문헌 분포 현황	13
그림 1-2) 통일 전·후 군대 규모의 변화	22
그림 1-3) 통일조약 중 구 동독군을 독일연방군으로 인수하는 규정	32
그림 1-4) 구 동독군의 연방군 편입과정	42

독일통일에 따른 군사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서문

제1절 국방총서 발간의 배경

통일이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군사통합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이 실패하는 한, 전체 통합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군사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며 대내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서 군대가 결정적인 권력요소인 만큼 군사통합의 성패는 한반도 통일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며, 규모의 측면을 고려할 때도 북한군의 해체는 큰 도전요인으로 다가올 것이다.¹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군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통합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분단국 통일과정의 군사통합 사례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려 할 경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베트남과 예멘 그리고 독일의 군사통합이다.

¹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양대 병력의 통합-통합 개관”. 통일부 발행, 『-독일 통일 20년 계기-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2권 부처·지방정부 연구』에 수록, (서울: 나누리, 2011), p. 417.

베트남의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되었는데, 통일이 되기까지 북베트남의 정권에 저항하는 남베트남 사람 15만 명을 3~5년 격리·수용하고, 약 6만 명을 처형했다. 특히 군사통합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초래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군의 정당성과 안정성 획득에 큰 장애요소가 되었”으며, 그 결과 실질적인 군사통합이 오히려 지연되었다.²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군사통합은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되지 못한다.

예멘의 경우는 1990년에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에 합의하면서 효율적인 통합방안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군지휘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통합에 실패했다. 이에 통일 후 4년 만에 남예멘과 북예멘이 전쟁을 치르고 북예멘이 승리하면서 재통일을 달성했다. 때문에 예멘의 군사통합에서도 긍정적인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예멘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치밀한 군사통합 방안을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혼란과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및 예멘의 군사통합과 달리 독일의 군사통합은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군대를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그 구성원 중 일부를 흡수하여 통합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한다.³ 동독의 급속한 붕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서독은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군사통합 초기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범했다. 그럼에도 단기간의 군사통합과정에서 동독군(Nationale Volk-sarmee : NVA)의 “조직적인 반란이나 대규모의 명령불복종 사태 없이 이념이 전혀 다른 군병력을 단기간에 통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⁴ 이것이 분단국 사례 중에서 독일의 군사통합에 주

² 제정관,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서울: 한누리미디어, 2008), p. 125.

³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서울: 팔복원, 1996), p. 251.

⁴ 위의 책, p. 269.

목하게 된 배경이다.

분단국 군사통합 사례 비교와 한반도에서의 교훈 적용 가능성은 아래의 <표 1-1>에 보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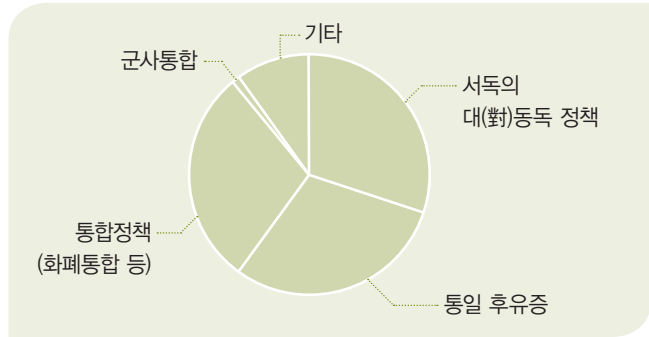
표 1-1 > 분단국 군사통합 사례 비교와 한반도에서의 교훈 적용 가능성

사례	특징	교훈 적용 가능성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을 통해서 통일 군사통합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초래하여 실질적 통합이 오히려 지연됨 	적음
예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 통일과 함께 실시된 1차 군사통합 실패(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군사통합) 통일 후 4년 만에 전쟁을 치르고 재통합 실시 	적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대관계에 있던 군대를 평화적으로 흡수통합한 성공 사례 조직적인 반란이나 대규모 명령불복종 사태 없이 단기간에 통합 	많음

제2절 국방총서 발간의 목적

그 동안 독일통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구의 대부분은 서독의 대(對)동독정책이나 통일 후유증 및 화폐·경제·사회통합과정 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통합과정의 분야별 세부내용은 대부분 피상적인 수준에서 소개되었다. 독일통일에 대한 국내문헌 분포 현황은 아래의 <그림 1-1>에 보이는 바와 같다.

그림 1-1 ▶ 독일통일에 대한 국내문헌 분포 현황



때문에 독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어려운 한국의 국방분야 정책실무자들이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독일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독일통일 국방총서를 발간하는 목적이다.

현대적으로 조직된 군대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전격적으로 해체시키고, 그 구성원들을 다른 국가의 군인으로 흡수·통합시킨 독일의 군사통합은 역사 속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일무이하게 진행된 사건이었다. 때문에 군사통합을 주도한 서독의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문제에 봉착했다.

첫째, 군사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기구와 조직을 만들 것인가? 둘째, 구 동독군 중에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인수하고, 또한 어떤 군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통일이 되던 1990년 10월 3일 당시 서독군은 495,000명이였다.⁵ 그리고 1990년 7월에 동독군의 수는 10만 명에 육박했다.⁶ 그런데 서독과 동독 그리고 미국, 소련, 프랑스 및 영국이 참여하여 독

⁵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eine Bilanz, Bonn, p. 5.

⁶ 1989년 말에 동독군의 수는 168,000명이었는데, 1990년 7월에 10만 명으로 감소했다.(Rüdiger Wenzke, Die Nationale Volksarmee(1956-1990), p.494, in: Thorsten Diedrich&Hans Ehlert&Rüdiger Wenzke, Im Dienste der Partei, Handbuch der bewaffneten Organe der

그런 다음 제3장에서 병력통합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제1절에서 구 동독군을 통일독일 연방군으로 인수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제2절에서 통일 직전 구 동독군의 병력 현황과 통일 직후 부대개편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제3절에서 구 동독군의 편입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무기 및 장비의 통합을 고찰하려고 하는데, 제1절에서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의 규모에 대하여, 제2절에서 무기와 장비의 분류 및 평가기준과 보관에 대하여 그리고 제3절에서 무기 및 장비의 처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제5장에서 기구와 조직 및 시설통합을 다루려고 하는데, 제1절에서 기구와 조직통합에 대하여 그리고 제2절에서 시설통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교육통합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제1절에서 교육통합의 목표에 대하여 그리고 제2절에서 구 동독군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인 맺음말에서는 독일의 군사통합이 남북한 군사통합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통일 및 군사통합 연대표와 통일조약 중 군인법에 대한 부분은 부록으로 첨부할 것이다.

군사통합의 기획과 준비 및 애로사항

제1절 동독급변사태의 발생

1989년 9월 10일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자 약 3만 명의 동독주민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장벽이 개방될 때까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을 거쳐 약 22만 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동독주민들이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동독 내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게 분출되기 시작했다. 1989년 10월 2일에 라이프치히에서 발생한 시위에 참여한 군중들의 규모는 1만 명이었는데, 1주일 뒤인 10월 9일에는 7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30만 명으로 증가하더니 11월 6일에는 5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11월 4일 동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약 100만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동독에서 대량탈출난민과 민주화시위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급변사태가 촉발되었는데,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장벽이 개방된 이후 12월부터 통일을 요구하는 동독주민들의 요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 1월에는 매일 2천 명 이상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가운데 대량탈

출러시가 동독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이에 동독의 모든 사람이 당시 상황을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조기총선을 통해서 국가위기를 수습하고자 1990년 3월 18일에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1990년 3월 18일에 조기총선에서 서독과의 조기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보수정당연합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이 압승하고 신정부를 구성하면서 동독국가 수립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급변사태는 종료되었다. 이후 동서독의 통합 및 통일의 실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2절 군사통합 논의 시작과 전개과정

베를린장벽이 개방되고 독일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1989년 11월~12월부터 서독군의 지휘관들은 비밀리에 통일에 대비한 군사통합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비밀회의에는 국방장관과 연방군 합참의장 및 차관과 연방군 내 소수그룹이 참여했는데, 이후 ‘외교 및 안보정책 협력’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실무팀을 구성했다. 이 비공식 실무팀은 군사통합에 대한 기본구상을 1990년 2월 7일 국무회의에 제출했고,⁸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군사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켰다.

- “1. 군대는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1국가 1군 원칙)
2. 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한다.
3. 통일 독일은 NATO 회원국이 된다.

⁸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양대 병력의 통합 - 통합 개관”. 통일부 발행,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2권 부처·지방정부 연구』에 수록, (서울: 나누리, 2011), pp. 404~405.

4. 동독 영토에는 NATO군이 주둔하지 않는다.”⁹

이와 같이 서독군 지휘부는 동독군 지휘부와 군사통합을 논하기 전에 이미 통일이 되면 동독군을 해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공산독재정권 전위조직으로서의 동독군을 재교육이 불가능한 대상으로 보았고, 동독군을 인수할 경우 연방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독군 지휘부의 결정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권국가이지 못했던 동독과 서독은 통일독일의 군대 형태와 군대 규모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독은 미국, 소련, 프랑스 및 영국 등 전승4개국과의 국제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정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1990년 6월 12일 이전만 해도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통일독일은 “바르샤바조약기구와 NATO 모두에서 준회원이 되”어야 한다고¹⁰ 말하는 상황에서 서독군 내부 결정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통일 관련 국제협상이 위협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통일독일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고 NATO에만 회원국으로 존재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때문에 1990년 3월에 동독의 조기총선을 통해 조기에 독일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서독의 슈톨텐베르크(Stoltenberg) 국방장관은 군사통합에 대한 서독군 내부의 결정을 비밀로 유지한 채 동독의 에펠만(Eppelmann) 국방장관¹¹과 1991년 4월 27일에 첫 회담을 개최했다. 에펠만은 1990년 3월에 수립된 동독의 민주정권 하에서 4월 12일에 국방장관이 된

⁹ 위의 글, p. 405.

¹⁰ 위의 글.

¹¹ 원래의 명칭은 군축국방부(Ministerium für Abrüstung und Verteidigung: MfAV)인데, 본 총서에서는 편의상 국방부라고 기술한다.

전직 목사인데, 슈톨텐베르크 장관과 에펠만 장관의 회담은 독일이 분단된 이후 동서독 군수뇌부가 만났던 첫 번째 회담이었다.

에펠만 장관은 동독군 주요지휘관들을 만나기 전에 동 회담에서 서독의 국방장관과 먼저 만났는데, 여기서 동서독 국방부의 상호 정보교환과 관련 법규 제정 및 군인사의 상호접촉 등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동서독 간의 군사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 국가의 군인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동서독 국방장관 회담 직후 군사통합에 대한 서독군 지휘부와 동독군 지휘부의 견해 차이는 곧 드러났다. 동독의 에펠만 국방장관이 슈톨텐베르크 서독 국방장관을 만난 후 1990년 5월 2일 동독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여 통일 후에도 구 동독지역에 ‘제2의 독일군’인 인민군(구 동독군)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며 ‘1국가 2군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에펠만 동독 국방부장관은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럽에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 인민군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독립적 국가로 존재하는 한, 국가 안보를 위해 인민군을 적절한 규모에서 엄격한 방어군의 구조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통일 후 동독 영토에는 제2의 독일군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¹²

이렇듯 에펠만 장관은 또한 “유럽에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 두 개의 군사동맹이 존재하는 한 인민군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다”¹³라고 말

.....

¹² Werner Ablaß, *Zapfenstreich. Von der NVA zur Bundeswehr*, (Düsseldorf: Kommunal-Verlag, 1992), pp. 36-37. 베르너 페니히, “양대 병력의 통합 - 통합 개관”, p. 397에서 재인용.

¹³ “‘Was die NVA betrifft’, ließ Eppelmann wissen, ‘so wird sie nach meiner Überzeugung so lange weiterbestehen, wie in Europa zwei Militärbündnisse, die NATO und der Warschauer Vertrag, existieren’”.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25.



했으며, 동독군 총사령관 호프만(Hoffmann) 제독도 1990년 5월 23일에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탈퇴하지 않겠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본인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다른 국가들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정치·군사적 동맹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일원인 이상, 우리 공화국과 우리 군인들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유럽에서 형성된 안보구조에 속합니다. 그것은 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말은 동독군이 이 구조 속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화 유지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이 아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으며, 그곳은 우리의 정치적, 군사적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¹⁴

서독군 수뇌부와 동독군 수뇌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슈톨텐베르크 서독 국방장관과 에펠만 동독 국방장관은 5월 28일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하고 동서독 군인 간의 공식·비공식 접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런 후 통일을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서독의 국방장관 슈톨텐베르크는 6월 13일에 통일독일의 ‘군 일원화 원칙’, 즉 ‘1국가 1군대 원칙’을 분명하게 밝혔다. 통일독일

.....
¹⁴ “Ich bin überzeugt, daß auch die anderen Länder des Warschauer Vertrages alles tun werden, um den Warschauer Vertrag zu festigen und die Umwandlung zu einem politisch-militärischen Bündnis zu erreichen. Ich persönlich bin der Meinung, solange wir Mitglied des Warschauer Vertrages sind, sollten auch unsere Republik und wir als Militärs alles tun, um den Warschauer Vertrag zu festigen. Der Warschauer Vertrag gehört zu den Sicherheitsstrukturen, die sich in Europa herausgebildet haben. Er steht für Sicherheit und Frieden in Europa. Das heißt, die NVA hat in diesen Strukturen ihren festen Platz und kann stolz darauf sein, daß wir einen großen Beitrag für die Erhaltung des Friedens geleistet haben. Keiner von uns möchte diese Mitgliedschaft missen. Wir haben dort viele Freunde und unsere politische und militärische Heimat. Deshalb wollen wir alles in unseren Kräften Stehende tun, um die gestellten Aufgaben zuverlässig zu erfüllen.”,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p. 25-26.

에 동독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과 동독지역의 부대들은 새로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독군과 동독군의 상호교류가 실시되자 동독군들은 통일이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통일 연방군에서 근무할 기회가 보장되는지 아니면 군복을 조기에 벗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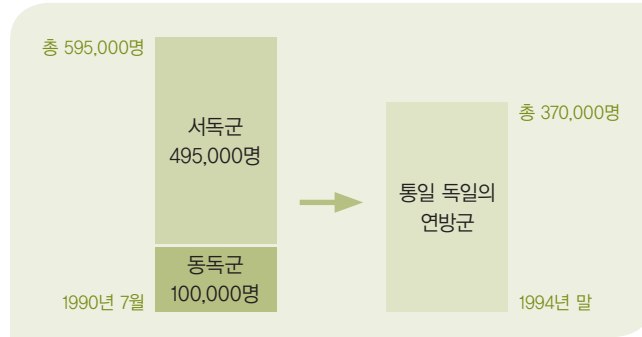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서독의 콜 총리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1990년 7월 15일과 16일에 코카서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동 정상회담에서 서독의 콜 총리는 통일독일 연방군의 규모를 1994년까지 37만 명으로 줄여나가는 대신에 통일독일이 나토회원국으로 존속하는 방향으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통일 직전 서독군은 495,000명 이었고 연방군에서 일하는 민간인 종사자는 183,000명이었다. 그리고 1990년 7월 당시 구 동독군의 규모는 약 100,000명이었다. 그런데 콜-고르바초프 정상회담에서 동서독 군 전체를 합해서 약 60만 명이 되는 병력규모를 1994년 말까지 37만 명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통일독일의 연방군 규모를 대폭 감소시키기로 한데는 주변국의 위협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한다는 군사전략 상의 목표보다 오히려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목표가 더 크게 작용했다. 군대 규모의 변화에 대한 합의는 아래의 <그림 1-2>¹⁵에 보이는 바와 같다.

.....

¹⁵ <그림 1-2>는 필자가 만든 것이다.

그림 1-2 ▶
통일 전·후
군대 규모의 변화



이렇게 하여 콜-고르바초프 정상회담에서 통일독일이 나토회원국으로 존속하기로 결정되자 동독군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남아있을 것으로 가정한 에펠만 동독 국방장관의 ‘1국가 2군대’론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에펠만 동독 국방장관은 1990년 8월 2일에 ‘1국가 2군대’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 이후 동독군 지도부는 서독 국방부와의 협상에서 최소 6만 명 이상의 동독군을 서독이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가능한 많은 동독군을 통일 연방군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최초의 ‘1국가 2군대’ 주장에서 가능한 많은 인원의 동독군을 연방군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의 목표가 변화한 것이다.

에펠만 동독 국방부장관이 8월 2일에 ‘1국가 2군대’를 포기하는 선언을 한 이후 서독 국방부는 하루 뒤인 1990년 8월 3일에 1994년에 유지될 통일 연방군의 규모 37만 명 중에서 서독군 출신이 32만 명이 될 것이고, 동독군 출신은 5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사통합 관련 협상과정에서 통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서독 국방부가 계획한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면서 동독 국방부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3절 군사통합을 위한 조직 및 기구 설치

1. 연락반(Verbindungsgruppe)

서독 국방부는 1990년 8월 17일에 군사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독의 국방부와 합의하여 연락반(Verbindungsgruppe des Bundesministeriums der Verteidigung)을 설치했다.¹⁶ 이 연락반의 임무는 동독의 국방부와 접촉하여 구 동독군을 인수하고, 동독지역에 새롭게 조직할 통일독일 연방군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연락반은 군인과 민간인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장교 9명은 동독에 “친척이 있거나 동독에 대한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¹⁷ 연락반은 8월 20일부터 슈트라우스베르크(Strausberg)에 소재한 동독의 국방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연락반은 10월 3일에 통일되기까지 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구 동독군의 병력과 무기 및 장비, 예산과 기반시설, 전화·통신망, 위생시설 그리고 경제적 활동내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구 동독군의 지휘·명령체계를 어떻게 인수하고, 통일 직후 군지휘부의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기획해야 했다.¹⁸

그러나 연락반은 동독 국방부의 입장에서 볼 때 ‘손님’이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했다.

- 연락반은 (동독 국방부에게; 필자 주)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
- 연락반은 (동독 국방부에게; 필자 주)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연락반은 자료를 수집한다.

¹⁶ 이어서 8월 31일에는 동서독 군의 수뇌부가 통일조약의 군사통합 관련 내용에 서명했다.

¹⁷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양대 병력의 통합 - 통합 개관”, p. 407.

¹⁸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5.

- 연락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¹⁹

본격적인 군사통합이 추진되기 전인 1990년 3월 말에 서독 국방부는 크뤼거-슈프렐렐(Krüger-Sprengel) 국장을 동독의 국방부에 파견하여 서독의 연방군을 모델로 동독군의 조직 및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런데 크뤼거-슈프렐렐 국장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긴장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크뤼거-슈프렐렐 국장이 5월 초에 서독으로 소환되는 일이 발생했다.²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독군 연락반이 업무 진행 시 상기한 사항을 준수한 것이다.

2. 동부지역사령부(Bundeswehrkommando Ost)

서독군 수뇌부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밀리에 군사통합에 대한 구상을 진전시켜 나갔을 때, 통일 직후 구 동독지역에서 동독군을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방군 부대를 창설할 기구로 동부지역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은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1990년 7월에 코카서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수립되었다.²¹ 그리고 콜-고르바초프 정상회담 이후 동서독 군사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시화되자 서독은 8월 25일에 국방부 기획실장이던 쇤봄(Schönbohm) 장군을 이미 동부지역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일 직후 구 동독지역에 설치된 동부지역사령부는 국방부 직속 기관으로서 동독군을 인수하고 지휘했는데, 쇤봄 사령관의 임무는 구 동독의 육·해·공군을 지휘하면서 미래의 통일연방군 조직에 부합하지 않는 부서와 부

¹⁹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양대 병력의 통합 - 통합 개관”, p. 406.

²⁰ 위의 글, p. 404.

²¹ 위의 글, p. 406.

대를 해체하고 동독군이 사용하던 무기와 장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안전하게 인수하여 보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²²

원본 장군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통일이 되는 1990년 10월 3일 0시에 동독군을 인수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동독군을 지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9월 중순에 참모장인 야콥스(Jacobs) 준장이 인솔하는 선발대를 슈트라우스베르크로 파견하고, 당시에 업무를 수행하던 동독군 장군들과 함께 인수·인계를 준비시켰다.²³

1990년 10월 3일부터 동부지역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약 2,000명의 서독 출신 연방군장교들이 구 동독군부대를 지휘했는데, 사단급 이상의 모든 지휘관 및 참모를 서독출신 연방군 장교로 임명했으며, 연대·대대급의 지휘관 대부분도 서독출신 장교로 임명하고 동독군 출신 지휘관들을 고문으로 배치했다. 구 동독군부대를 지휘하게 된 서독출신 장교들은 무엇보다 “구 동독군 구성원들 중에 누가 정말로 연방군 장교들과 함께 동독군 해체작업과 연방군의 일부가 될 부대를 창설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내는 일”²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 동독군의 체계 상 군 전체에 대한 내용은 소수의 장군들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동부지역사령부는 통일 직전에 전역한 구 동독의 장군들을 민간 고문관으로 임명하여 이들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에 동독군 출신 예비역 소장 베르거(Berger)는 동독의 공군을 인수한 멘데(Mende) 소장

²²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5.

²³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52-53.

²⁴ “Dabei gilt es herauszufinden, wer von de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tatsächlich gewillt ist, gemeinsam mit den Bundeswehroffizieren an der Auflösung der NVA und dem Aufbau von Bundeswehrtruppenteilen mitzuarbeiten.”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64.

과 함께 일하도록 하고, 동독군 출신 예비역 소장 엔겔하르트(Engelhardt)는 소련과의 연락부서를 자문하는 동시에 쾰른 사령관을 자문하도록 했다. 또한 동독군 출신 예비역 소장 슈로트하우어(Schlothauer)는 야콥스 준장을 자문하도록 했고, 동독군 출신 예비역 중장 바르쓰(Baarß)는 쉘벤(Scheven) 동부지역사령부 부사령관을 자문하도록 했다. 그리고 구 동독의 해군 사령관이었던 보른(Born) 제독은 해군 관련 자문을 하도록 했다.²⁵

3. 국방부 외청(Außenstelle BMVg)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이 되면서 연방정부의 각 부처는 베를린에 외청(Außenstelle)을 설치하여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을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에 통일독일의 국방부가 10월 3일에 구 동독 국방부가 소재해 있던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외청을 설치하자 연락반은 통일 전에 부여받은 임무를 마치고 해체되었다.

국방부 외청의 책임자로는 아라쓰(Ablaß) 전 동독 국방차관을 임명하였으며, 국방부 외청의 임무는 구 동독 국방부가 하던 일을 통일 직후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었다. 또한 베를린에서 타 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국방부를 대변하고 연방정부의 관청과 지방정부의 관청과의 관계에서 국방부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외청이 업무를 시작할 때 30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 250명은 동독출신이었다.²⁶

²⁵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65-66.

²⁶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7.

제4절 애로사항

동독군은 1990년 3월 동독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유총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군개혁을 통해서 약 5만 명을 감축시켰다.²⁷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축되던 구 동독군은 통일되던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연방 국방장관의 명령이 동독지역에서 효력을 갖고, 연방군의 군법과 규정이 구 동독군에도 적용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예뻔만 동독 국방장관은 동독군의 모든 장성과 제독을 1990년 10월 2일부로 전역시킨다는 명령을 9월 24일에 하달했고, 정치장교와 55세 이상의 군인 및 모든 여군들(위생병과 장교 제외)도 통일 직전에 전역시켰다. 9월 30일에는 동독의 국경수비대를 해체한다는 발표를 했고, 국경수비대 소속 직업군인들은 연방군에서 한시적으로 특수한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도록 했다.²⁸

통일 후 연방군에 편입된 동독군 출신 장교들은 1990년 12월 31일부로 전역하면 조기퇴역의 대가로 7,500 마르크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1991년 초에 어차피 해체될 예정인 구 동독군 부대의 장교들 중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역을 함으로써 7,500 마르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곧 전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에야 무엇 때문에 애써 일하겠느냐?”²⁹는 것이 이 장교들의 주장이었다.

만 45세 이하의 동독군출신 장교들은 통일 연방군에서 2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중에서 선택된 장교들은 다시 2년이

²⁷ Hans Ehlert, “Von der ‘Wende’ zur Einheit - Ein sicherheitspolitischer Rückblick auf das letzte Jahr der Nationalen Volksarmee”, in: Hans Ehlert(ed.),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Zeitzeugenberichte und Dokumente.* (Berlin, 2002), p.17

²⁸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5.

²⁹ “‘Warum sollen wir uns noch einsetzen’, heißt es außerdem, ‘wenn wir doch bald entlassen werden?’”,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126.



지난 이후에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군 해체과정에서 떠도는 소문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기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동독군 출신 장교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1990년 11월 말까지 ‘2년제 계약군인(Soldat auf Zeit für zwei Jahre: SaZ 2)’³⁰이 되기 위해서 신청한 동독군 출신 장교는 소수에 불과했다.³¹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구 동독군 장교들 중에서 누가 1991년 1월 1일 이후에도 잔류하여 협조할지 알 수 없었다. 그 결과 동독군을 인수한 서독출신 장교들은 그들이 지휘하는 부대가 199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해했다.³² 또한 동부지역사령부의 지휘관들은 동독출신 장교들 중 많은 수를 계속해서 임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동부지역사령부는 1991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동독군 출신 중에서 약 4만 명의 의무복무자와 약 1만5백 명의 젊은 장교 그리고 약 1만9천 명의 하사관 및 임기제 군인들을 해직시켰다. 대신에 동독군 출신 장교들 중에서 7천 명 정도를 2년제 계약군인으로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 약 4천에서 4천5백 명 정도를 장기간 연방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장교로 확보했다.³³

이 과정에서 구 동독군 부대 소속 인원이 50% 이하로 감소되었지만, 무

.....

³⁰ “연방군 종사자는 공공 부문 임무종사자이므로, 구 인민군에서 인수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했다. 보통 민간 공공 부문 임무에서는 수습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구 인민군에 남은 구성원을 2년 기간제 군인으로 연방군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년은 해당자에 대한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기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베르너 페니히, “양대 병력의 통합 - 통합 개관”, p.410)

³¹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p. 136.

³² 위의 책, p. 126.

³³ 위의 책, pp. 190-191.

기와 탄약은 거의 100% 유지되었다.³⁴ 구 동독군 부대를 해체하거나 부대원을 줄이는 일은 그들이 보유했던 무기와 탄약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았었다. 그렇지 않으면 구 동독군 부대를 해체하고 난 후 이들이 보유했던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규모의 후속부대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이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옛 동독군 부대 400개 중에서 1991년 3월 31일까지 약 130개가 해체되고,³⁶ 1991년 6월 30일까지 나머지 220개가 해체될³⁷ 정도로 해체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³⁸

연방 국방부의 지휘부는 동부지역사령부 지휘관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선봄 동부지역사령관의 긴급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선봄 사령관은 “민간인 부서장과 군의 부서장들 중에서 아무도 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 소속원이 현지의 경험과 생각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³⁹ 구 동독군이 보유했던 비행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연방국방부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선봄 사령관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결정하고 사후에 연방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에 1994년까지 철군하기로 되어 있던 소련군이 보유했던 천 여개의 부동산을 인수받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 거의 매일 한 개의 훈련장이나 병원 혹은 기지를 인수받으려면 이 문제를 담당하는 연방재무관리부서가 구 동

.....
³⁴ 위의 책, p. 191.

³⁵ 위의 책, p. 128.

³⁶ 위의 책, p. 191.

³⁷ 위의 책, p. 250.

³⁸ 병력규모는 9만 명에서 5만 6천 명으로 감축되었다. 위의 책, p. 250.

³⁹ “(...) - von den zivilen und militärischen Abteilungsleitern läßt sich jedoch keiner im Bundeswehr-Kommando Ost vor Ort über unsere Erfahrungen und Vorstellungen unterrichten”, 위의 책, p. 129.



독지역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했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동독지역에서 근무하려는 공무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방재무관리부서가 제대로 조직되지도 못했다.⁴⁰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사령부 산하 서독출신 장교 및 하사관들은 동독지역에서 제대로 집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독지역 사람들이라면 살지 않았을 군대 막사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교통편이 부족하여 주말에도 집을 자주 가지 못했으며, 동독지역 주민들과의 접촉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출신 국회의원들 중에서 동부지역사령부 장교들이 ‘식민지시대의 지배자(Kolonialherren)’가 누렸을 그런 사치스런 생활을 한다며 지원을 하는 대신 오히려 사실과 동떨어진 비난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많이 힘들었다고 쇠뿔 사령관은 회고하고 있다.⁴¹ 동부지역사령부가 1991년 7월 1일에 해체되면서 동부지역사령부가 지휘하던 부대들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인계되었는데, 동부지역사령부가 해체되기까지 연방국방부와 다른 행정부처가 동부지역사령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선 부대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혼선이 초래되기도 했었다.

.....
⁴⁰ 위의 책, p. 135.

⁴¹ 위의 책, p. 140.

제3장

병력통합

제1절 구 동독군을 통일독일 연방군으로 인수하는 법적 근거

구 동독군을 연방군으로 편입시킨 법적 근거는 1990년 8월 31일에 서독과 동독이 체결한 통일조약 중에서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이다. 그 핵심구조와 내용은 아래의 <그림 1-3>에 보이는 바와 같다.⁴²

아래에서는 위의 <그림 1-3>에 제시한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조항의 내용은 표로 설명하며 전체 내용은 총서의 후반부에 「부록 2」로 기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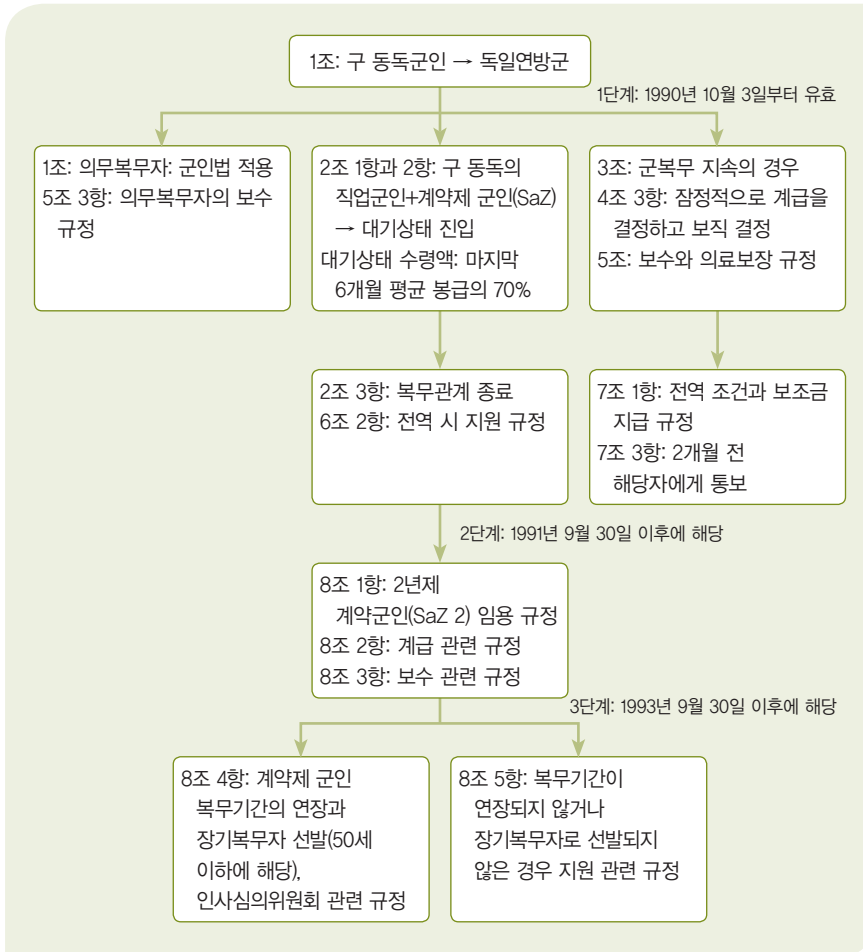
제1조에서는 구 동독 군인들을 통일 후 연방군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무관계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제2조에서는 구 동독의 직업군인과 계약제 군인이 통일과 동시에 대기상태에 들어가고, 대기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지를 기술했다.⁴³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2>에 보이는 바와 같다.

⁴² '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p.6~9.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851 참조.

⁴³ “§2 (1) Das Dienstverhältnis eines Soldaten auf Zeit oder Berufssoldaten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ruht mit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그림 1-3 ▶ 통일조약 중 구 동독군을 독일연방군으로 인수하는 규정



(2) Während des Ruhens des Dienstverhältnisses nach Absatz 1 hat der Soldat Anspruch auf ein monatliches Wartegeld in Höhe von 70 vom Hundert der durchschnittlichen monatlichen Dienstzüge der letzten sechs Monate, einmalige oder Sonderzahlungen werden hierbei nicht berücksichtigt. Während der Ruhezeit anderweitig erzielttes Erwerbseinkommen oder Lohnersatzleistungen sind auf das monatliche Wartegeld anzurechnen, soweit die Summe aus diesen Einnahmen und dem Wartegeld die Bemessungsgrundlage des Wartegeldes übersteigt.

(3) Wird der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nicht innerhalb von sechs Monaten weiterverwendet, endet das Dienstverhältnis mit Ablauf dieser Frist; hat er am Tage des Beitritts das 50. Lebensjahr vollendet, beträgt die Frist neun Monate. Während der Frist gelten die Entlassungsverschriften des §7 Abs. 1 Satz 1 bis 3 und

표 1-2 >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2조

제1항. 동독이 서독에 편입됨과 동시에 계약제 군인들과 직업군인들은 대기상태에 들어간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대기상태에 들어간 군인은 최근 6개월 평균 봉급의 70%를 매월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일시불이나 특별지급은 고려되지 않는다. 대기 기간 동안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생긴 수입 혹은 봉급을 대체하는 다른 수입금의 합계가 대기상태에 받는 보조금보다 많으면 동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이 6개월 동안 연방군에 의해서 인수되지 않을 경우 복무관계는 종료된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될 당시 만 50세가 지난 군인의 대기 기간은 9개월이다. 대기 기간 중에는 이 절의 제7조 2항 제1문장부터 제3문장까지 그리고 이 절의 2항에 있는 전역규정이 적용된다. 대기 기간 보조금을 받는 동안 의료지원은 이 절 제5조의 적용을 받고, 후생복지금은 이 절 제6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에서는 구 동독군을 인수하여 그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인수한 구 동독군의 계급과 보직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명시했다.

제5조에서는 구 동독군 인수 시 지불하는 보수와 의료보장 문제를 명시했다.⁴⁴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3>에 보이는 바와 같다.

Abs. 1 dieses Abschnitts. Die Heilfürsorge in der Zeit des Anspruchs auf Wartegeld richtet sich nach §5, die Versorgungsbezüge richten sich nach §6 dieses Abschnitts.

(4) Für Soldaten auf Zeit oder Berufssoldaten, die nach Absatz 3 Satz 1 nicht weiterverwendet werden oder nach Absatz 3 Satz 2 entlassen werden, gilt §6 Absatz 2 dieses Abschnitts entsprechend.“(‘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7.)

⁴⁴ “§5 (1) Besoldung und Heilfürsorge richten sich für Soldaten auf Zeit und Berufssoldaten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nach dem Recht, das am Tage vor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ilt. Die Bundesregierung wird bis zum 30. September 1992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die Besoldung und Heilfürsorge auf die Angemessenheit im Verhältnis zu den Regelungen in anderen Bereich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zu überprüfen und neu festzusetzen. Sonderleistungen aus Anlaß der Entlassung und Leistungen, deren Gewährung auf einen der in §7 Abs. 2 dieses Abschnitts genannten oder mit diesen vergleichbaren Sachverhalte zurückzuführen ist, sind ausgeschlossen.

(2) Besoldung und Heilfürsorge werden der Entwicklung in dem in Artikel 3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entsprechend den dort geltenden Regelungen im zivilen öffentlichen Dienst angepaßt. Näheres regelt die Bundesregierung durch Rechtsverordnung; die Ermächtigung ist bis zum 30. September 1992 befristet.

표 1-3 >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5조

제1항.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들에 지급하는 보수와 의료지원은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규정을 통해서 1992년 9월 30일까지 다른 공공분야의 규정과 비교하여 군인들에게 주는 보수와 의료지원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고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역시키는 경우 및 이 절의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인해서 지불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지급은 시행되지 않는다.

제2항. 구 동독 군인에 대한 보수와 의료지원은 구 동독 지역의 민간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법규정을 통해서 마련한다. 연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은 1992년 9월 30일에 만료된다.

제3항. 의무복무병의 보수는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A 제3절 제17번에서 비롯되는 과도기규정을 고려하면서 군인봉급규정에 따른다.

제6조에서는 구 동독군이 전역하는 경우의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제7조에서는 구 동독군의 전역 조건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명시했는데⁴⁵,

.....

(3) Die Bezüge der Soldaten, die auf Grund der Wehrpflicht Wehrdienst leisten, richten sich nach dem Wehrgesetz mit der sich aus Anlage I Kapitel XIX Sachgebiet A Abschnitt III Nummer 17 ergebenden Übergangsregelung.“(‘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7)

⁴⁵ “§7 (1) Ein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st zu entlassen, wenn er dies beantragt. Ein Soldat auf Zeit ist zu entlassen, wenn die festgesetzte Dienstzeit endet. Ein Berufssoldat kann entlassen werden, wenn er die nach bisherigem Recht geltende Mindesdienstzeit erreicht oder überschritten hat. Ein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kann ferner entlassen werden,

1. wenn er wegen mangelnder fachlicher Qualifikation oder persönlicher Eignung den Anforderungen nicht entspricht.
2. wenn er wegen mangelnden Bedarfs nicht mehr verwendbar ist oder
3. wenn die bisherige Beschäftigungsstelle ganz oder teilweise aufgelöst wird oder bei Verschmelzung, Eingliederung oder wesentlicher Änderung ihres Aufbaus die bisherige oder eine anderweitige Verwendung nicht mehr möglich ist.

In den Fällen des Satzes 1 und des Satzes 4 Nr. 2 und 3 kann ein Übergangsgeld gewährt werden, das nach Höhe und Dauer dem monatlichen Wartegeld nach §2 Abs. 2 Satz 1 und Abs. 3 Satz 1 dieses Abschnitts entspricht, im Falle des Satzes 1 jedoch nicht,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4 Nr. 1 vorliegen. §2 Abs. 2 Satz 2 dieses Abschnitts gilt entsprechend.

(2) Ein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st zu entlassen, wenn er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4>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4 >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7조

제1항.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이 전역을 신청하면 이를 시행한다. 계약제 군인은 규정된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시킨다. 직업군인은 현행 최소복무기간이 경과했거나 혹은 동 기간이 지난 경우에 전역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역시킬 수 있다.

1. 전문적 자질 및 인성의 부족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 더 이상 해당자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없는 경우
3. 현재까지 수행했던 직책이 아예 없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사라지는 경우 혹은 현재까지 수행했던 직책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직책과 혼합·편입되거나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어 해당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제1문장과 제4문장 제2번 및 제3번의 경우 과도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절의 제2조 제2항 제1문장과 제3항 제1문장에 따른 월정 대기보조금의 액수와 지급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4문장 제1번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제1문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절의 제2조 제2항 제2문장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2항.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전역시킨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저촉되는 자, 특히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1966년 12월 19일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했거나 1948년 12월 10일에 제정된 인권선언의 기본원칙을 침해한 자
2. 국가보위부 및 국가보안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복무연장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제3항. 제1항 제4문장 제1번에서 제3번까지 해당하는 경우 전역명령은 해당자에게 늦어도 전역 2개월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8조에서는 구 동독군을 통일 후 연방군에서 2년제 계약군인(Soldat auf Zeit für zwei Jahre: SaZ 2)으로 임용하는 규정과 복무기간 연장 및 장

.....

1. gegen die Grundsätze der Menschlichkeit oder Rechtsstaatlichkeit vorstoßen hat, insbesondere die im Internationalen 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vom 19. Dezember 1966 gewährleisteten Menschenrechte oder die in der Allgemeinen Erklärung der Menschenrechte vom 10. Dezember 1948 enthaltenen Grundsätze verletzt hat oder
2. für das frühere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Amt für Nationalen Sicherheit tätig war und dadurch die Fortsetzung des Dienstverhältnisses unzumutbar erscheint.
- (3) Die Entlassungsverfügung muß dem Soldate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4 Nr. 1 bis 3 spätestens zwei Monate vor dem Entlassungstag zugestellt werden.“(‘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9)



기복무자 선발 규정, 계급과 보수 관련 규정 그리고 인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⁴⁶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5>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5 >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8조

제1항. 이 절의 제1조 제2번에 해당하는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은 군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해서 연방군 계약제 군인의 복무규정에 따라 2년 동안 임용될 수 있다. 군인법 제40조 제1항 제1번의 연령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항. 연방정부는 군인법 제27조 제4항 제3문장과 달리 병을 소집할 때 최하위 계급보다 높은 계급을 부여할 것을 법률로 정한다.

제3항. 보수는 연방보수법과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A 제2절 제3번과 제3절 제2번에 근거를 둔 과도기규정을 적용한다.

제4항. 연방 국방부장관은 직업군인의 복무기간 연장과 인수를 결정한다. 국방부장관은 구 동독 장교들을 직업군인으로 인수하기 전에 해당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독립위원회(Ein unabhängiger Ausschuß)의 견해를 청취한다. 동 독립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절차는 연방정부가 정한다. 지원자가 50세 이상일 경우 직업군인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5항. 제1항에 따라 인수된 구 동독 군인 중에서 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직업군으로 인수되지 않는 경우에 보조금지금은 이 절의 제6조에 따른다.

⁴⁶ “§8 (1) Ein Soldat auf Zeit oder Berufssoldat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m Sinne des §1 Nr. 2 dieses Abschnitts kann auf Grund freiwilliger Verpflichtung nach den Vorschriften des Soldatengesetzes für zwei Jahre in das Dienstverhältnis eines Soldaten auf Zeit berufen werden. Die Altersgrenze des §40 Abs. 1 Nr. 1 des Soldaten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2) Die Bundesregierung regelt durch Rechtsverordnung in Abweichung von §27 Abs. 4 Satz 3 des Soldatengesetzes die Verleihung eines höheren als des untersten Dienstgrades der Mannschaften bei der Berufung.

(3) Die Besoldung richtet sich nach dem Bundesbesoldungsgesetz in Verbindung mit den sich aus Anlage I Kapitel XIX Sachgebiet A Abschnitt II Nummer 3 und Abschnitt III Nummer II ergebenden Übergangsregelungen.

(4)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entscheidet über eine Verlängerung der Dienstzeit und über die Übernahme zum Berufssoldaten. Er hört vor der Übernahme von Offizieren zu Berufssoldaten einen unabhängigen Ausschuß zur persönlichen Eignung an. Zusammensetzung, Befugnisse und Verfahren dieses Ausschusses regelt die Bundesregierung. Die Ernennung zum Berufssoldaten ist in der Regel nicht zulässig, wenn der Bewerber das 50. Lebensjahr vollendet hat.

(5) Die Versorgungsbezüge des nach Absatz 1 berufenen Soldaten auf Zeit, dessen Dienstzeit nicht verlängert wird oder der nicht als Berufssoldat übernommen wird, richten sich nach § 6 dieses Abschnitts.”(‘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p. 9)

제2절 통일 직전 구 동독군의 병력 현황과 부대개편 계획

서독 국방부는 상기한 통일조약의 내용을 개별 규정, 즉 새로운 계급설정에 대한 규정과 인수방침 등을 통해서 보충했다. 이에 따라 동독군 장교와 하사관들은 통일 연방군으로 인수되면서 계급이 강등되었다. 동독군이 서독군보다 훨씬 빨리 진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군 수뇌부가 병력통합 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독군 교육기관에 근무했던 교수진은 1990년 말까지 해고되었다.

통일과 함께 연방군으로 편입된 구 동독군은 초기에 약 9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는 39,000명의 의무복무병과 전역대기 중에 있던 군인 1,000명 그리고 연방군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던 50,00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⁴⁷ 연방군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던 구 동독군 50,000명 가운데는 장교가 약 24,000명, 하사관이 약 25,000명 그리고 사병이 약 1,000명 정도 있었다. 통일 직전과 통일 당시 구 동독군의 병력 현황은 다음 <표 1-6>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6 > 통일 직전과 통일 당시 구 동독군의 병력 현황

시기	장교	부사관	준사관	병	의무복무자	계
	장교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1990.9	32,210	19,800	9,000	300	36,000	약 102,800
	1,528	4,100	200(*)			
1990.10.3	23,155	22,579		1,049	38,800	88,828
	1,075	2,170				

* 구 동독군 준사관은 통일이후 부사관으로 활용됨 단위: 명

출처 : Hans-Joachim Gießmann, Das unliebsame Erbe: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Baden-Baden: Namos Verlagsgesellschaft, 1992), p.68.⁴⁸

⁴⁷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17. 구 동독군 장교들이 통일 직전 동독군 해체 작업에 협조한 데에는 통일 후 연방군에 편입되고 싶었던 것이 작용하기도 했다.

⁴⁸ 국방부, 『독일 군사통합 자료집』, p. 143에서 재인용.

위의 표를 보면 1990년 9월 이후 약 한 달 동안 장교만 약 9,00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전역했음을 알 수 있다. 통일독일의 연방군에 편입될 확신이 없었던 장교들이 자발적으로 전역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7,500 마르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 전역한 것이다. 연방군은 동독군을 편입시키면서 이들에게 제공할 총 3만 개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는 구 동독지역에서 새로 편성할 부대와 부서를 고려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3만 개의 자리 중 25,000개는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5,000개는 한시적으로 만든 것이다.

구 동독군 부대는 세 부류로 구분하여 개편했는데, 연방군에 포함되지 못할 동독군 부대는 1991년 3월까지 해체하기로 했다. 그리고 연방군 구조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잠정적으로 필요한 경계부대 등은 1991년 3월까지 소요규모로 축소한 후에 해체하기로 했다. 연방군 구조에 포함될 동독군 부대는 1991년 3월까지 개편하여 연방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7>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7 > 구 동독군 부대의 통일 연방군 편입 가능성 분류

연방군에 포함되지 않을 동독군 부대	1991년 3월까지 해체
연방군에 포함되지 않으나, 잠정적으로 필요한 동독군 부대(경계부대)	1991년 3월까지 소요규모로 축소 후 해체
연방군에 포함될 동독군 부대	1991년 3월까지 개편 후 연방군에 편입

제3절 구 동독군의 편입과정

구 동독군을 연방군에 편입시키면서 2년제 계약군인으로 선발할 때 대령 이하 55세 미만자 중에서 동독국민을 탄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는지 여부와 군인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적합성, 능력 및 자질을 보고 평가했다. 구 동독의 국가안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와 민족보안청(Amt für Nationale Sicherheit: AfNS) 등의 정보 및 보안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군인과 정치장교, 심리전 요원 그리고 군검찰과 재판부에 근무했던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편입대상에서 제외시켰다.⁴⁹ 1991년 6월 이전에 정년을 맞이하는 장교들도 제외시켰다.

연방군에 편입된 동독군 출신 의무복무병들은 구 동독군으로 복무한 기간을 계산하여 나머지 복무기간을 연방군에서 마쳤다. 연방군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던 동독군 출신 50,000명은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편입되었는데, 이 편입절차는 아래의 <표 1-8>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8 > 구 동독군의 연방군 편입절차

1단계(1990.12~1991년 여름)	50,000명에게 2년제 계약군인으로 단기복무 지원의 기회 부여
2단계(1991.9.30) ⇒ 1차 선발	18,000명을 2년제 계약군인으로 다시 선발
3단계(1993.9.30) ⇒ 최종 선발	10,800명을 장기복무자로 최종 선발

1단계에서 통일과 동시에 50,000명의 동독군 출신에게 2년제 계약군인으로 단기간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두 명 중 한 명이 지원하여 총 25,000명이 지원했는데, 지원자 중에는 11,700명의 장교와 12,300명의 하사관 그리고 1,000명의 사병이 있었다.⁵⁰ 나머지 절반은 자발적으로 전

⁴⁹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18.

⁵⁰ 위의 글, p. 18.

역했다. 이들은 연방군에 편입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⁵¹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하면 7,500 마르크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차후 심사단계에서 강제로 전역할 경우 퇴직금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전역을 선택했다.⁵² 이와 같이 명예퇴직제를 도입하여 연방 국방부는 1990년 10월과 12월 사이에 동독군 출신 최초 인수병력 50%의 조기전역을 유도했다.

동독군 출신을 연방군에 편입시키는 심사를 할 때, 일차적으로 동독군 출신이 작성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들이 작성한 내용을 전문가, 즉 구 동독의 국가안전부 서류를 조사하도록 위촉된 전문가(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tU)들이 심사하도록 했다.⁵³ 심사결과에 따라 연방군은 신청서 작성 시 허위 기재를 했다는 이유로 500명의 장교와 900명의 하사관을 해고했다.⁵⁴

동독군 출신 중에서 1991년 10월 1일부터 연방군에서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경우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는데, 이들에 대한 1차 선발은 1991년 9월 30일에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약 18,000명의 동독군 출신이 2년제 계약군인(SaZ 2)으로 선발되었다. 장교의 경우는 약 50%가 선발되었고 하사관과 사병의 경우는 약 90%가 선발되었다. 이 18,000명 중에는 6,000명의 장교와 11,200명의

⁵¹ Hans Udo Conrad, *Die Integration von Offizieren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n das Heer der Bundeswehr*. Dissertation, Fachbereich Pädagogik der Universität der Bundeswehr Hamburg. (Hamburg: 1996), p. 102f.

⁵² 또한 이렇게 조기전역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역 당시 급여의 75%를 연금으로 지불했다.

⁵³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66. in: S. B. Gareis, P. Klein(eds.), *Handbuch Militär und Sozialwissen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GWV Fachverlage GmbH, 2006).

⁵⁴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19. Peter Müller는 동독 국가안전부와의 업무 상 연계 때문에 해고된 하사관의 수를 900명이 아니라, 1,012명이라고 주장한다.(Peter Müller, “Einheit mit dem Klassenfeind”, in: Y - Magazin der Bundeswehr, 09/2010, H. 9, p. 14.

하사관 및 800명의 사병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을 심사할 때 무엇보다 이들이 근무했던 부대의 상급자가 작성한 평가를 반영했다.

그리고 이 18,000명의 2년제 계약군인 중에서 약 15,000명이 연방군에서 직업군인으로 지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2차로 지원을 했는데⁵⁵, 이들에 대한 최종선발은 1993년 9월 30일에 실시되었다. 최종선발 단계에서 특히 직업군인으로 선발하는 경우 근무지의 상급자가 작성한 평가서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독립된 위원회(Unabhängiger Ausschuss Eignungsprüfung zur persönlichen Eignung)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했다. 동 위원회는 독일 국방장관이 제안한 15명의 위원과 15명의 대리인을 독일정부가 임명하여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서류를 토대로 심사했는데, 642명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35명은 탈락시켰다.⁵⁶

심사 결과 약 12,220명의 동독군 출신이 연방군에서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 빠짐으로써 1993년 말에 약 10,800명의 동독군 출신이 연방군에서 장기복무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10,800명 중에는 3,000명의 장교와 약 7,600명의 하사관 그리고 200명의 사병이 있었다. 구 동독군의 연방군 편입과정은 아래의 <그림 1-4>에 보이는 바와 같다.

.....
⁵⁵ Deutscher Bundestag, Unterrichtung durch den Wehrbeauftragten. Jahresbericht 2002. (Berlin, 1994), Kap. 7.2.1.

⁵⁶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66.

그림 1-4 ▶ 구 동독군의 연방군 편입과정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20.

제4장

무기 및 장비 통합

제1절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의 규모

구 동독군은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t)에 가입한 국가들 중 가장 무장이 잘 된 군대였으며 통일 직전에 엄청난 양의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 당시 독일연방군이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 중에는 2,300대의 전차와 192척의 함정, 약 700대의 항공기, 5,000문의 화포, 약 85,000대의 화물차량, 약 120만 정의 소총류, 로켓추진연료를 포함한 4,500톤의 액체연료와 약 295,000톤의 탄약 등이 있었다.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탄약의 규모는 다음 <표 1-9>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9 >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탄약의 규모

구분	세부내용
전투장비	전차 2,300여대, 전투장갑차/특수장갑차 9,000대, 화포 및 대공포 5,000여문
소화기	약 120만 여정
항공기	전투기 368대, 훈련기 59대 및 헬기 포함 총 700여대
함정	전투함 82척을 포함 총 192척
차량	화물차 약 85,000여대
탄약	약 29,500톤
액체연료	로켓추진 연료를 포함 약 4,500톤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24.

위의 <표 1-9>에 보이는 것처럼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무기와 탄약의 양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통일과정이 무척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독군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를 처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동독군과 서독군이 모든 분야에서 접촉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8월 중순 서독 연방군이 구 동독 국방부에 연락반(Verbindungsgruppe)을 파견하고 나서부터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2절 무기와 장비의 분류 및 평가기준과 보관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 및 장비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무기와 장비를 세 범주로 분류했다. 장기간 사용할 것(범주 I)과 잠정적으로 사용할 것(범주 II) 그리고 폐기 처리할 것(범주 III)으로 구분하여 처리했는데, 동 작업은 1994년 8월까지 지속되었다.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를 세 범주로 분류한 표는 다음 <표 1-10>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10 >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의 분류

범주 I	장기간 사용
범주 II	잠정적으로 사용
범주 III	폐기 처분

이 세 범주 중에서 장기간 사용할 무기와 장비 및 잠정적으로 사용할 무기와 장비, 즉 범주 I과 II에 속하는 무기와 장비는 각각 3.5%이며, 두 범주에 포함된 것을 합해도 전체의 7%에 불과했다. 구 서독군의 무기와 장비로 통일 독일군의 병력 37만 명이 무장하는데 충분했고, 단일무기체계와 경제

성, 성능 및 운영유지의 측면을 고려할 때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독일이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의 틀에서 무기수를 줄여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의 대부분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93%가 범주 III인 폐기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었다.⁵⁷

연방군은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를 평가하고 분류할 때 국내 규정과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했는데, 통일조약과 연방예산,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구 동독 국방부가 VEMIG(Verwertungs- und Großhandels-gesellschaft für militärische Ausrüstungsgüter mbH)과 체결한 특별계약 그리고 연방군 장비의 선별 제거 및 처리에 관한 규정(AVB) 등을 고려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조약으로 인해서 구 동독의 행정재산이 통일독일의 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통일조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통일조약은 구 동독의 재산을 가능한 신연방주가 된 구 동독지역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고려했다.

둘째, 연방국방부는 세부계획 제 1409조 ‘군비통제와 감축(Rüstungskontrolle und Abrüstung)’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연방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⁵⁸ 따라서 동 조항을 활용하여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를 처리했다.

셋째, 1990년 11월 1일에 체결되고 1992년 11월 9일 부로 발효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의거하여 통일독일이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의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구 동독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를 처리해야 할 의

⁵⁷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den 30. Juli 1997, p. 5.

⁵⁸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den 30. Juli 1997, p. 6.

무가 있었다. CFE에 따라 통일 독일군이 감축해야 했던 전체 무기와 장비 및 이 중에서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가 차지한 비율은 다음 <표 1-11>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11 >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따라 통일 독일군이 감축해야 했던 무기와 장비 및 처리된 구 동독군 무기와 장비

구분	통일 독일군이 감축해야 했던 무기 및 장비	처리된 구 동독군의 무기 및 장비
전차	2,566대	1,914대(75%)
장갑차	4,257대	4,145대(97%)
화포	1,632문	1,344문(82%)
전투기	140대	140대(100%)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den 30. Juli 1997, p. 10.

넷째, 통일 전 1990년 5월 10일에 구 동독 국방부는 군사장비처리 회사인 VEMIG사(社)와 계약을 체결했고, 동 계약이 1995년 5월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연방군은 통일조약에 따라 구 동독 국방부가 VEMIG사와 체결한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그 결과 VEMIG사는 구 동독군의 장비가 신연방주의 공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 한 구 동독군의 의복과 개인 장비를 구매할 우선권을 보유하고, 연방군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

다섯째,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하고 폐기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처리방법을 위한 원칙 및 절차와 관련된 특별규정들을 만들었다. 연방군장비의 선별 제거 및 처리에 관한 규정(AVB)은 이러한 특별규정을 단지 보충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었으며, 연방군은 상기한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 등을 처리했다.

상기한 다섯 규정을 고려하여 연방군은 위의 <표 1-10>에서 범주 Ⅲ에 속한 무기와 장비를 구 동독군의 기지 2,120개에서 수거하여 150개의 저장소

⁵⁹에 집결시켰다. 그리하여 전투기와 헬기는 3개의 비행장에 집결시켰고, 전함과 지원함은 초기에는 3개의 항만시설에 모았다가 다시 2개의 항만시설에 집결시켰다. 전차와 장갑차 및 화포들은 8개의 지역에 집결시켰으며, 탄약들은 가능한 탄약고에만 보관했다.⁶⁰

통일 후 인수된 구 동독군들이 무기와 탄약의 보관에 대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신속하게 연방군 장비로 무장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무기와 탄약에 대한 경계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장비를 보관하고 감시할 별도의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연방군은 물자저장 서비스회사인 MDSG(Matrerialdepot Service Gesellschaft mbH)와 1992년 8월 7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를 보관하고 감시하게 하였다. MDSG사(社)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820명을 고용했는데, 대부분 동독군 출신이었다.⁶¹

제3절 무기 및 장비의 처리 현황

상기한 다섯 규정을 고려하여 위의 <표 1-10>의 범주 Ⅲ에 속하는 무기와 장비는 폐기되거나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되었으며, 아주 적은 양의 무기와 장비만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했다. 무기와 장비 처리 현황은 다음 <표 1-12>에 보이는 바와 같다.

.....
⁵⁹ 연방군은 구 동독군의 기지 중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곳을 저장소로 활용했다.

⁶⁰ 위의 글, p. 7.

⁶¹ 위의 글, p. 8.

표 1-12 > 구 동독군의 무기 및 장비 처리 현황

*괄호() 안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숫자

구분	계	연방군 사용	통일조약에 따른 처리	제3국 제공/판매	박물관 제공/판매	VEBEG를 통한 판매	산업체 파기	
CFE 협약상 보유 제한 장비	전투기	368대 (140대)	25	5	21	29	120	168
	공격형 헬기	51대 (없음)	4		42	5		
	전차	2,761대 (1,914대)	138		263	33		2,327
	장갑차	6,050대 (4,145대)	120		1,730	50		4,160
	화포(문)	2,199문 (1,344문)	38		832	27		1,302
	계	11,429 (7,573)						
기타 CFE 협약 대상 장비	기타 장갑차	3,417대	36		998	46		2,337
	훈련용 비행기	52대			24	10	18	
	기타 헬기	134대	21	10	10	29	48	16
	계	3,603						

※ VEBEG : 연방장비/물자처리 회사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1997년 7월 30일, 부록 2.

당시에 무기와 장비를 판매한 수익금은 3억 4천 5백만 마르크였는데, 폐기 및 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돈은 17억 6천 백 만 마르크로서 실제 사용한 액수는 14억 천 6백만 마르크였다.⁶²

.....

⁶²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64.

제5장

기구와 조직 및 시설통합

제1절 기구와 조직 통합

연방국방부는 1990년 10월 10일에 군사통합의 촉진을 위해서 군교육기관을 구 동독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했다. 아래에서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은 1990년 당시의 명칭을 사용한다.

구 동독지역으로 이전한 군기관은 다음과 같다. 육군장교학교(Offizierschule des Heeres)는 드레스덴(Dresden)으로 이전하고, 육군하사관학교(Heeresunteroffizierschule)는 델리취(Delitzsch)로 이전했다. 해군기술학교(Marinetechnikschule)는 슈트랄스운트(Stralsund)로 이전했으며, 해군본부(Marineamt)와 고속정전단(Schnellbootflottille)은 바르네뮌데-로스톡(Warnemünde-Rostock)으로 이전했다.

방공포대대(Flugabwehr-raketengewchwader)는 사니츠(Sanitz)와 뵐렌도르프(Böhlendorf)로 이전했고 전투비행대대(Jagdgeschwader)는 라아게(Laage)로 이전했다. 항공수송대대(Lufttransportgeschwader)는 홀츠도르프-브란디스(Holzdorf-Brandis)로 이전했다. 항공무기박물관(Luftwaffenmuseum)과 연방군행정학교(Bundeswehr-Verwaltungsschule) 및 연방군안보정책아카데미(Bundesakademie für Sicherheitspolitik)는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연방군정보통신학교(Akademie der Bundeswehr fü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 있는 슈트라우스베르크로 이전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언론 및 여론 분야에서 후진양성을 하고 있다. 연방군사회과학연구소(Das Sozialwissenschaftliche Institut der Bundeswehr)도 슈트라우스베르크로 이전하여 민군관계의 사회·심리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내적지휘 관련 임무연합체(Aufgabenverbund Innere Führung)도 슈트라우스베르크로 이전했다.⁶³ 군사역사연구소(Das Militärgeschichtliche Forschungsamt)는 포츠담(Potsdam)으로 이전하여 현대 독일군역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구 동독군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방국방부는 서독지역에 있는 군기관과 조직을 동독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내적통합에 기여하고, 군사통합을 가속화시켰다.

제2절 시설통합

구 동독군이 사용하던 숙소 및 훈련장 등 총 2,288개의 군기지가 처리 대상이었는데, 이 중에서 3/4은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통일독일의 군병력을 1994년 12월 1일까지 37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동독지역에 주둔시킬 병력은 6만 명 정도로 계획함에 따라 연방군은 총 2,288개의 군기지 중에서 405개만을 계속 사용하고 121개의 기지는 한시적으로 인수했으며 나머지는 처분했다.

그리하여 1994년 말까지 연방군으로 이첩된 구 동독군 기지 중에서 1,421개의 기지는 100% 처분되었으며, 264개의 기지는 부분적으로 연방정부와 신탁청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었고 민간용으로 사용하도록 처분

⁶³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23.

되었다.⁶⁴ 동독군이 사용하던 기지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탄약과 기름 및 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이었다.

동독지역에서 군기와 탄약고 등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경계병의 숫자도 줄일 수 있었는데, 1990년 10월 당시에 9,836명이던 경계병의 숫자가 1991년 5월에는 3,287명으로 감소했다.⁶⁵ 경계병에 대한 교육도 개선되어서 1990년 10월부터 1991년 2월까지 11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했던 반면에 1991년 2월 26일부터 동년 6월 25일까지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⁶⁶

연방군은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하여 사용한 약 400개 군기지의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위생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러한 위생시설 및 숙소 등을 만드는데 1994년까지 총 35억 마르크의 건축비용이 소요되었다.⁶⁷

동서독 국경에 설치된 차단시설과 136km의 장벽 및 818개의 감시탑 및 지휘소도 통일 이후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1991년 9월 30일까지 820km 길이에 해당하는 철조망과 100개의 감시탑이 철거되었고, 동서독 국경의 차단시설에 설치된 지뢰에 대한 수색 및 제거 작업도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 동독 국경수비대 소속원들이 특별한 신분으로 참여했다. 국경장애물 제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991년 10월 1일부터는 국경에 설치된 시설물 제거 작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했는데, 1993년 12월 31일에 동 작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다. 이 민간기업은 동 작업을 위해서 약 460명을 고용했으며 이들 중의 대부분은 구 동독 국경수비대 소속원들이었다. 다만 지뢰 제거작업은 1995년 12월 31일에 완료되었다.⁶⁸

.....

⁶⁴ 위의 글, p. 21.

⁶⁵ Gunnar Digutsch,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und der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änder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GmbH Europäi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2004), p. 271.

⁶⁶ 위의 책, p. 271.

⁶⁷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p. 12.

⁶⁸ 위의 글, p. 6.

교육통합

제1절 교육통합의 목표

서독의 슈톨텐베르크 국방장관과 동독의 에펠만 국방장관은 1990년 4월 27일에 첫 회담을 갖고, 동 회담에서 서독군과 동독군의 상호접촉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동서독 간 군사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서로 적으로만 생각했던 서독군과 동독군이 서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슈톨텐베르크 서독 국방장관과 에펠만 동독 국방장관은 5월 28일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하고 동서독 군인 간의 공식·비공식 접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서독군 수뇌부가 동독군의 의식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동독군에게 민주국가의 군대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인 ‘내적 지휘의 기본원칙(Grundsätze der Inneren Führung)’인 ‘제복입은 시민상(das Leitbild vom Staatsbürger in Uniform)’을 주입시키는 것이었다.⁶⁹

⁶⁹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 und Pressestab(ed.), Material für die Presse Nr. XXVII/9 vom 30. Mai, 1990.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 849에서 재인용.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67. in: S. B. Gareis, P. Klein(eds.), *Handbuch Militär und Sozialwissen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GWV Fachverlage

1990년 여름에 동독군에게 통일 후 연방군에서 계속 복무할 기회를 줄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는데, 동독정부와 서독정부는 통일되는 동시에 동독군 조직을 해체하고, 동독군 소속 부대를 연방군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조직할 것과 동독군의 인력 및 장비를 과도기 동안 연방군에서 인수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990년 6월까지 동부 지역사령부를 운용할 것과 5만 명의 동독군을 인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⁷⁰ 이러한 합의내용은 1990년 8월 31일에 통일조약의 일부로 발표되었다.

통일조약이 발표되기 직전인 8월 30일에 서독연방군 합참의장은 ‘통일독일에 편입될 독일군 교육을 위한 지침(Weisung für die Ausbildung der deutschen Streitkräfte im beigetretenen Teil Deutschlands)’을 발표했다. 여기서 통일독일에 편입될 독일군은 동독군인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서독군 수뇌부의 목표는 동독군에서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군인들, 예를 들면 사령관과 단위부대 지도자, 하사관 및 경비부대 지휘관들에게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독 연방군이 중요시하고 있는 내적지휘의 기본원칙과 ‘정치 우선주의(Primat der Politik)’ 그리고 연방군법 등을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었다.⁷¹ 다시 말해서 동독군 장교와 하사관 등을 민주주의 군대의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GmbH, 2006).

⁷⁰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 850.

⁷¹ 위의 글, p. 853.

제2절 구 동독군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식

서독군 수뇌부는 1990년 9월 말에 1,200명 정도의 서독출신 장교와 하사관들을 소집하여 통일 직후 동독지역에서 약 1,500개의 동독군 부대와 업무 부서를 인수하고, 새로운 연방군을 조직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10월 3일에는 서독연방군 출신 2,000명을 구 동독군 부대에 파견했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구 동독군 부대에 파견된 서독출신 군인들에게는 ‘내적지휘센터(Zentrum Innere Führung)’가 발행한 지침서 ‘인민군. 이해증진과 교류를 위한 도움말(Der Soldat der NVA. Hilfen zum Verständnis und zum Umgang)’을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했다.⁷²

이렇게 서독출신 연방군을 구 동독군 부대에 파견하여 동독출신 군인들을 교육하는 한편, 통일 후 연방군의 일부로 인수하기로 한 동독출신 직업군인들에게 1990년 9월과 10월에 서독 소재 군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며 ‘내적 지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갔다. 동독출신 직업군인들을 위해서 실시된 1차교육은 2주 동안 서독연방군 학교와 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는데, 관련 사항은 아래의 <표 1-13>⁷³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1-13 > 동독출신 장교 대상 1차교육

구분	기간(주)	교육중점/단계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장 • 중대행정정보급관 • 위병근무간부 	약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교범/예규에 입각한 부대관리 • 교육훈련 계획/실시 • 지휘통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군 장교학교 • 서독군 실무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약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교 • 지휘참모대

‘2년제 계약군인(SaZ 2)’으로 인수된 동독출신 군인들에게는 보수교육

⁷² 위의 글, p. 850.

⁷³ 국방부, 『독일 군사통합 자료집』, pp. 59~60.

이 추가로 실시되었는데 동 보수교육은 ‘내적 지휘’ 관련 자습 프로그램 외에 4주 동안 서독소재 부대에서 실습하는 것, 2주 동안 ‘내적 지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취업알선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었다.⁷⁴ 관련 사항은 아래의 <표 1-14>⁷⁵에 보이는 바와 같다.⁷⁶

표 1-14 > 동독출신 장교 대상 보수교육

교육기관	각군 군사학교	정치교육센터	지휘참모대
중점	보수교육	보직교육	보수교육
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습 - 부대지휘실습(4주) - 정신교육과정(2주) * 위관급 - 보충교육과정(12주) - 근무지 소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습 - 기본정신교육 과정 (지휘통솔, 군인복무 규율, 정치교육, 군법, 기본법) - 보충정신교육 과정 (기본정신교육 과정 내용+지휘통솔실습 전시 국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관 정신교육 - 참모전문 과정교육준비 - 참모기본 과정교육준비

통일 이후 장교와 하사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동독출신 군인들은 상기한 1차 교육 및 보수교육 외에 서독출신 동료들과 함께 연방군의 정규교육과정에도 참여했다.

통일 직전 신병으로 모집된 동독군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1990년 8월 30일 서독군 합참의장이 내린 지침이 적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0년 9월 4일 동독군에 입대한 15,420명의 신병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보충교육을 받았다. 동 교육을 위해서 서독 연방군은 159개의 팀을 만들었다. 동독군에서

⁷⁴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p. 845-857. Nina Leonhard(2006). “‘Armee der Einheit’: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67. in: S. B. Gareis, P. Klein(eds.), *Handbuch Militär und Sozialwissen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GWV Fachverlage GmbH, 2006).

⁷⁵ 국방부, 『독일 군사통합 자료집』, pp. 118~121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⁷⁶ 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 844.

지원한 하사관후보자 2,500명은 서독 연방군 학교와 부대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후 정식 하사관으로 되었다.⁷⁷

동독출신 의무복무병들은 1991년 1월부터 서독지역에 배치된 부대에서 기본교육을 받았다. 1992년 7월부터는 ‘상호 징집(Wechselseitige Einberufung)’⁷⁸이라는 지침 하에 동독출신 의무복무병들을 서독지역 부대에서 훈련시키고, 서독출신 의무복무병들을 동독지역 부대에서 훈련시키는 방침을 강화했다. 이렇게 하여 서독출신 젊은이들이 동독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동독출신 젊은이들이 서독의 실상을 잘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독일의 군사통합 과정에서 ‘내적 지휘’는 동독출신 군인들이 배워야 할 핵심 교과목이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독일 연방군이 국가와 법질서 및 사회질서에 편입된 존재라는 점과 군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의 가치관 그리고 제복입은 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인의 위상이 갖는 의미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제복입은 시민’이란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책임감있는 시민인 동시에 전투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있는 군인을 의미한다. ‘내적 지휘’에서는 모든 인간을 유일한 존재이자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서 자유를 구현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 기술하고 있다.⁷⁹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Mitbestimmung)에 기반을 둔 인간관이 독일 연방군에 고유한 ‘임무형

⁷⁷ Gunnar Digutsch,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und der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änder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GmbH Europäi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2004), pp. 272-273.

⁷⁸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Armee der Einheit 1990-2000. (Bonn 2000)

⁷⁹ “Jeder mensch wird als ein einmaliges und unverwechselbares Wesen verstanden, das zur Freiheit und Verantwortung sowie zur Selbstbestimmung und Selbstgestaltung fähig ist.”(Hans-Joachim Reeb,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25), p. 852.)

전술(Auftragstaktik)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목표는 설정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상관과 부하 모두를 포함한 개별 군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율적 공간(Freiräume)을 제공하는 임무형 전술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⁸⁰

실제로 이러한 자율적 공간은 어느날 갑자기 동독군 부대를 개조하기 위해서 동독으로 파견되었던 많은 서독출신 군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서독출신 장교들은 파견된 현장에서 동독출신 군인들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동지로서 조우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서독출신 군인들과 하나로 통합시키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무형 전술’의 원칙이 필요했는데, ‘내적 지휘’와 연계된 이 ‘임무형 전술’을 통해서 동독으로 파견된 서독출신 장교들은 군사적인 임무를 넘어서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동독출신 군인들을 도와주었다.

동독출신 군인들에게 새로운 사회보장법을 알게 해주기도 하고, 민간인으로 전역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아이들의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청의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지 못한 동독출신 군인들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 결과 동독지역의 많은 의무복무병과 시민들이 서독출신 장교와 하사관들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군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⁸¹

.....

⁸⁰ “Dieses Denken in den Kategorien von Selbst- und Mitbestimmung wird in der Bundeswehr durch das Prinzip der Auftragstaktik unterstützt. Auftragstaktik bietet die notwendigen Freiräume für militärische Vorgesetzte und Untergebene, indem sie nur das Ziel vorgibt, über die Wege und Mittel aber den einzelnen Soldaten entscheiden läßt.”(위의 글, p. 853.)

⁸¹ 위의 글, p. 853.

맺음말 : 교훈과 시사점

갑자기 닥쳐온 통일의 분위기 속에서 서독 연방군은 군사통합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 측면에서 주권국가 이지 못했던 동독과 서독은 주변국의 동의없이 군사통합을 추진할 수 없었다. 또한 서독은 1990년 8월 2일에 동독의 에펠만 국방장관이 '1국가 2군대'에 대한 주장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선언할 때까지 군사통합의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도 없었다.

독일통일에 대한 국제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8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군사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독은 연락반과 동부지역사령부 등 과도기에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설치했다.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되기까지 불과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군사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통합이 진행되던 초기 과정에서 서독군 수뇌부는 동독군을 인수하는데 따른 조건과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군사통합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동부지역사령부 원본 사령관은 동독군 해체작업과 병행하여 동독군이 사용하던 무기와 장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안전하게 인수하여 보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그런데 구 동독군 장교들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이러한 주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봄 사령관은 동부지역사령부에 근무하는 서독군 장교들에게 구 동독군을 대하는 과정에서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당부하면서 점령군이 아닌 같은 독일인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지시했다.⁸² 그리고 동독군 체계 상 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던 소수의 동독군 장군들을 민간 고문관으로 임명하여 도움을 받았다. 또한 동독군 출신 장교와 하사관 등 직업군인들을 인수하여 2년제 계약군인으로 편입함으로써 동독군을 해체하는데 귀중한 노우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서독이 주도한 군사통합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군사통합 추진과정 초기에 서독군 시설을 방문했던 동독군이 서독군의 우수한 복지시설을 동경하면서 서독군 주도의 군사통합에 적극 호응한 것도 성공에 기여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도 향후 북한과의 군사통합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면 과도기적으로 연락반과 북부지역사령부 등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군을 대하는 과정에서 점령군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북한군 장군 출신 중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만한 사람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군사통합 추진 초기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무하는 북한군 장교와 장병들이 한국군의 우수한 병영시설을 방문하게 하고, 동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군 주도의 군사통합에 적극 호응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서독은 군사통합 초기 과정에서 동독군이 보유했던 무기와 탄약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은 채 동독군을 인수하는 즉시 대폭 감축하려고 했었다. 인수하는 구 동독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데 따른 예산상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

.....

⁸²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pp. 266~268.



려다 보니 무기와 탄약을 관리했던 구 동독군 부대를 해체하고 난 후 이들이 보유했던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규모의 후속부대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무기와 탄약 등의 관리문제를 선 볼 동부지역사령관이 제기하면서 구 동독군 일부 부대의 해체가 1991년 3월 31일까지 연기되기도 했는데, 이런 점은 우리가 향후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동부지역사령부는 구 동독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 및 물자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집결시킴으로써 경계소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보다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무기와 장비 및 물자의 폐기와 활용에 대한 결정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내리지 못했다.⁸³ 이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북한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 및 물자의 처리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세운다면 독일의 군사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병력통합 과정에서 독일은 구 동독군부대를 ① 연방군에 포함시키지 않을 부대, ② 연방군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잠정적으로 필요한 부대(경계부대) 그리고 ③ 연방군에 포함시킬 부대 등 세 범주로 분류하여 개편했다. 또한 구 동독지역에서 새로 편성할 부대와 부서를 고려하여 3만 개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구 동독군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2년제 계약군인으로 선발할 때, 우선적으로 동독국민을 탄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는지 여부와 군인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합성과 능력 및 자질을 보고 평가했다. 그리하여 3단계에 걸친 선발심사 끝에 50,000명 중에서 10,800명을 장기복무자로 최종 선발했다. 또한 명예퇴직제를 도입하여 1990년 10월과 12월 사이에 동독군출신 최초 인수병력 50%의 조기전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
⁸³ 위의 책, pp. 144~145.

한국이 군사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통일직전에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스스로 대규모 자체감축을 할 수 있도록 군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정에서 북한군 전체를 일방적으로 동시에 전역시키는 경우 군사통합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통일과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군출신 중 일부 장교를 통일한국군으로 편입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예퇴직제를 도입해서 병력통합 초기에 다수의 북한군출신 장교들이 조기전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통일의 병력통합 경험을 고려하여 한국도 병력통합 추진 시에는 북한군 부대를 ① 통일한국군에 포함시키지 않을 부대와 ② 통일한국군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잠정적으로 필요한 부대(북·중 국경경비대) 그리고 ③ 통일한국군에 포함시킬 부대 등 세 분류로 구분하여 개편하면서 북한지역에 새로 편성할 부대와 부서를 고려하여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적합한 북한군출신을 통일한국군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이 북한주민을 탄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과도기간 동안 한국군부대에 배치해서 군인으로서의 적합성 및 능력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2+4 회담」에 따라 통일독일 연방군의 병력규모가 37만 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구 동독군을 연방군의 직업군인으로 편입하는 문제가 서독출신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특정분야의 직업군인에 대한 소요가 편입된 동독군출신으로 충원되어 자리가 이미 다 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서독출신 군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⁸⁴ 한국이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독일처럼 외적

⁸⁴ Hans Udo Conrad, *Die Integration von Offizieren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n das Heer der Bundeswehr*. Dissertation, Fachbereich Pädagogik der Universität der

요인에 의해서 병력규모를 대규모로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편입될 북한출신 군인 때문에 남한출신 군인들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병력이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북한군병력의 감축 또한 그에 상응해서 대규모로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전역하게 될 북한군출신들을 사회에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 동독의 직업군인 중에서 연방군으로 편입되지 못하거나 전역 후 사회에서 재출발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다수가 불만세력이 되고 구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DS) 지지자가 되어 통일 후 내적통합의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통일 후 연방군은 구 동독군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인수했는데, 이를 장기간 사용할 것과 잠정적으로 사용할 것 그리고 폐기처리할 것 등 세 범주로 분류하여 처리했다. 처리 시 연방군은 통일조약, 연방예산 활용 세부계획,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구 동독 국방부가 군사장비처리회사와 체결한 계약 및 구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를 처리할 특별규정 등을 고려했다.

한국 역시 무기 및 장비통합을 추진할 경우 독일처럼 세 범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인데, 북한군 기지 전체에서 수거할 무기와 장비의 처리 기준을 미리 확립해야 할 것이다. 무기와 장비를 처리할 통합된 기구와 조직체계도 사전에 만들어야 할 것이며,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를 어디에 집결시키고 보관 및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한 통합 이전에 세우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기와 탄약을 통일과정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특별규정을 만들고, 주변국과 협력하여 대량살상무기가 무단반출되는 일

.....
Bundeswehr Hamburg. (Hamburg: 1996), pp. 117f.

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신속·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구와 조직 및 시설통합의 측면에서 연방국방부는 육군장교학교와 해군본부 및 군사역사연구소 등 서독지역에 있는 다수의 군기관과 조직을 동독지역으로 이전하여 내적통합에 기여하고 군사통합을 가속화시켰다. 구 동독군이 사용하던 총 2,288개의 기지 중에서 활용가치가 없던 3/4은 처분했으며, 동서독 국경에 설치된 차단시설과 장벽 및 지뢰도 제거했다. 특히 국경에 설치된 지뢰 수색 및 제거작업에 구 동독 국경수비대 소속원들을 활용했는데, 이들이 국경장애물 제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0년 10월부터 국경장애물 제거작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한 이후에도 민간기업은 구 동독 국경수비대 소속원들을 계속 고용해서 작업을 완료했다.

한국도 향후 군사통합을 추진할 경우 남한에 있는 군기관과 조직을 북한지역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내적통합에 기여하고 군사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휴전선 일대의 북한지역에 매설된 지뢰 등 장애물 제거작업에 해당지역을 잘 아는 북한군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교육통합의 측면에서 서독군 수뇌부는 무엇보다 연방군으로 인수할 동독군 장교와 하사관들을 민주주의 군대의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구 동독군에서 연방군으로 인수하기로 한 주요 간부의 소집 및 집체교육이 1, 2차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는데, 타교육에 비하여 가장 성과가 높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서독연방군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고, 동독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군사통합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이해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2년 7월부터는 ‘상호 징집’이라는 지침 하에 동독출신 의무복무병들을 서독지역 부대에서 훈련시키고, 서독출신 의무복무병들은 동독지역 부대에서 훈련시키는 방침을 강화했다. 이렇게 하여 서독출신 젊은이들이 동독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동독출신 젊은이들 역시 서



독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국도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출신의 장병들을 교차 복무시키는 방법을 시도하면 좋을 것이다.

독일연방군 수뇌부는 어느날 갑자기 동독군 부대를 개조하기 위해서 동독으로 파견된 서독출신 군인들에게 ‘임무형 전술’에 입각하여 동독출신 군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동독지역의 많은 의무복무병과 시민들은 서독출신 장교를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군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도 향후 북한군에 대한 교육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북한군을 민주주의 군대의 일원으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인바, 독일연방군이 동독출신 장교 및 하사관들에게 교육했던 내용과 방법들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독일통일 및 군사통합 연대표

- 1989. 5. 2 :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 장애물 철거. 동독인 서독으로 탈출 시작.
- 1989. 10. 18 : 동독 호네커 서기장 사임, 크렌츠 신임 서기장 선출.
- 1989. 10. 23 : 동독 라이프치히 시위에 30만 명 참여.
- 1989. 11. 9 : 동베를린 장벽 개방.
- 1989. 11. 11 : 인민군 전투기동대(179개의 100인 구성 부대) 해체.
- 1989. 11. 20 : 동독군 참모총장 호프만, 동독군 개혁 프로그램 발표.
- 1989. 11. 28 : 서독 콜 총리, '독일과 유럽의 분단국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 발표
- 1989. 12. 7 :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국가안전부 장관 체포. 동독군, 국경수비대(Grenzschutztruppe), 민간방위대(Zivilschutz)에서의 직권남용, 비리, 사유재산 증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 1989. 12. 18 : 동독군 개혁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
- 1989. 12. 19 : 서독 콜 총리, 동독 방문 - 동서독 정상회담 개최
- 1989. 12. 21 : 동독의 모드로우(Hans Modrow)정권, 동독군 개혁을 위한 정부 위원회 구성 결의.
- 1989. 12. 31 : 사통당과 민주사회당(PDS), 인민군 내에서의 활동 중단.
- 1990. 1. 16 : 1990년 2월 15일까지 동독군 내 모든 정치조직을 해체하기로 발표.
- 1990. 1. 17 : 비엔나에서 동독 국방부 차관과 서독 연방군 합참의장(Generalinspekteur der Bundeswehr) 대담.
- 1990. 1. 20 : 동독군 최초 이익단체인 직업군인협회(Verband der Berufssoldaten der DDR) 설립.
- 1990. 2. 14 : 동독군, 복무기간 축소 등을 포함하는 신병역법 초안 발표.
- 1990. 3. 18 : 동독 최초 자유선거 실시.
- 1990. 3. 20 : 동독군 내 부정·부패 및 권력남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 1990. 4. 18 :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로타 드 메지예르(Lothar de Maizière) 내각의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
- 1990. 4. 27 : 동·서독 국방장관 최초 회담 개최.
- 1990. 5. 2 : 동독 국방장관 주재 지휘관 회의에서 '1국가 2군대' 주장.
- 1990. 5. 4 : 동독 국방부와 서독 국방부의 차관들이 본에서 첫 회동.
- 1990. 5. 7 : 동·서독 군인 간 상호 친선방문 및 교류 실시 결정. 6월 1일부터 시행.
- 1990. 5. 23 : 동독군 참모총장 주재 지휘관 회의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 유지 강조.
- 1990. 5. 27~28 : 슈트라우스베르크(Strausberg)에서 에펠만(Eppelmann) 동독 국방장관과 슈톨텐베르크(Stoltenberg) 서독 국방장관 회담.
- 1990. 5. 31 : 동독의 대서독 군사첩보활동 중단.

- 1990. 6. 1 : 서독군인과 동독군인 간 업무·비업무 접촉에 관한 기본지침(Rahmenrichtlinie über dienstliche und außerdienstliche Kontakte zwischen Soldaten der Bundeswehr und Angehörigen der NVA) 발효.
- 1990. 6. 13 : 슈톨텐베르크 서독 국방부 장관, '1국가 - 1군대(Ein Staat - eine Armee)' 원칙 천명.
- 1990. 6. 15 : 동독국방부 대표단, 본 방문. 동·서독 국방부와 군의 업무방문 시작.
- 1990. 6. 26 : 동독, 대서독 국경수비 중단. (명령 제10/90호)
- 1990. 7. 1 : 동서독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Vertrag übe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발효. 동·서독 간 국경 통제 폐지.
- 1990. 7. 15 : 콜-고르바초프 정상회담. 소련, 통일독일이 NATO 회원국이 되는 것에 동의.
- 1990. 7. 17 : 「2+4 회담」에서 오더-나이세(Oder-Neisse) 국경선 재확인.
- 1990. 8. 2 : 동독 국방장관, '1국가 2군대' 주장 포기 선언.
- 1990. 8. 3 : 서독 연방군, 동독군 5만여 명 통일 연방군에 편입예정 발표. 동독 직업군인단, 양독 정부에 동독군의 장래보장 촉구.
- 1990. 8. 10 : 동·서독 국방장관 회담 시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연락반(Verbindungsgruppe) 설치 합의. 8월 17일에 연락반 설치. 8월 20일부터 연락반 업무 시작.
- 1990. 8. 25 : 동부지역사령관에 쇤봄(Schönbohm) 중장 임명.
- 1990. 8. 29 : 양독 '동독군의 법적지위와 급여관계' 발표. 서독, 베를린에 통일 연방군 주둔계획 발표.
- 1990. 8. 30 : 동독 국방장관, 1990년 9월 28일까지 전투기, 전차, 장갑차, 함정 등에서 탄약제거 조치 명령 하달. 서독연방군 합참의장, '통일독일에 편입될 독일군 교육을 위한 지침' 발표.
- 1990. 8. 31 : 동·서독, 군사통합 협상 최종 타결 및 서명.
- 1990. 9. 7 : 리히터(Richter) 장군, 동서독 군통합에 관한 연방국방부 계획안 요약문서 발표.
- 1990. 9. 9 : 서독 장교학교(Offiziersschule)에서 동독군 장교 280명을 대상으로 연방군 장교 업무 수행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시작.
- 1990. 9. 10 : 서독, 통일독일 연방군의 병력에 대한 계획 발표. 동독군 재교육 실시계획 발표.
- 1990. 9. 11 : 동·서독 국방부 장관, 베를린 연락사무소에서 회동.
- 1990. 9. 12 : 「2+4조약」 체결.
- 1990. 9. 14 : 서독 경제부장관, 소련군 철수비용 지원 발표.
- 1990. 9. 19 : 미 국방장관, 주독미군 6만 명 철수계획 발표.
- 1990. 9. 21 : 동독 국방부, 국경수비대 해체에 관한 명령 발표.
- 1990. 9. 24 : 동독,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 서명. 서독 합참의장, 군사통합 관련 지휘서신 하달.
- 1990. 9. 28 : 동독군 내 모든 장군 및 제독을 전역시킴.
- 1990. 10. 2 : 24시를 기하여 인민군 해체. 동부지역사령부 요원 2,000명 동부지역으로 이동 배치.

- 1990. 10. 3 : 독일이 통일됨. 동독 국방부장관, 동독군을 통일독일 연방군에 양도. 베를린에 국방부 외청 설치.
- 1990. 10. 4 : 연방군 동부지역사령부(Bundeswehrkommando Ost) 공식 업무 시작.
- 1990. 10. 10 : 연방국방부, 군사통합의 촉진을 위해서 군교육기관을 구 동독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 발표. 동부지역사령부 지휘관 회의.
- 1990. 10. 30 : 독일 연방하원, 주독 소련군 철수협정 승인.
- 1991. 1. 2 : 구 동독지역 사병 서독지역에서 군복무 개시.
- 1991. 4. 1 : 동부지역사령관, 지휘권을 각군 총장에게 인계
- 1991. 5. 6 : 독·소 부대주둔 및 철수 관련 협정 체결.
- 1991. 7. 1 : 동부지역사령부 해체.
- 1991. 9. 30 : 동독군출신 장교 및 하사관 등 18,000명을 2년제 계약군인으로 다시 선발.
- 1991. 10. 1 : 구 동·서독 국경에 설치된 시설물 제거작업을 민간기업에 위탁. 1993년 12월 31일에 동 작업 완료.
- 1992. 8. 3 :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의거 통일독일 연방군 보유 상한선 초과 무기 및 장비 폐기 시작.
- 1993. 1. 1 : 통일독일 연방군 상호 지역교체 근무 개시.
- 1993. 9. 30 : 동독군출신 장교와 하사관을 직업군인 및 장기복무자로 최종 선발.
- 1994. 8. 31 : 구 소련군 동독지역에서 철수 완료.
- 1994. 9. 20 :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 및 장비 처리 완료.
- 1995. 12. 31 : 지뢰를 포함한 국경장애물 제거 완료.

부록 2: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제1조

구 동독의 군인들은 동독이 서독에 편입됨과 동시에 연방군이 된다. 복무관계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병역의무 때문에 군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군인법에 따라 병역의무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시점에 구 동독군 소속이었던 계약제 군인(Soldaten auf Zeit)과 직업군인(Berufssoldaten)들에게 동독의 편입 전에 그들에게 적용되었던 복무관계가 다음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제2조

- (1) 동독이 서독에 편입됨과 동시에 계약제 군인들과 직업군인들은 대기상태에 들어간다.
- (2) 제1항에 따라 대기상태에 들어간 군인은 최근 6개월 평균 봉급의 70%를 매월 수령할 권리가 있다. 일시불이나 특별지급은 고려되지 않는다. 대기 기간 동안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생긴 수입 혹은 봉급을 대체하는 다른 수입금의 합계가 대기상태에 받는 보조금보다 많으면 동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3)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이 6개월 동안 연방군에 의해서 인수되지 않을 경우 복무관계는 종료된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될 당시 만 50세가 지난 군인의 대기 기간은 9개월이다. 대기 기간 중에는 이 절의 제7조 2항 제1문장부터 제3문장까지 그리고 이 절의 2항에 있는 전역규정이 적용된다. 대기 기간 보조금을 받는 동안 의료지원은 이 절 제5조의 적용을 받고, 후생복지금은 이 절 제6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연방 국방부장관이 구 동독군의 군사조직과 단체, 직위 및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경우 혹은 다른 조직이나 단체, 직위 혹은 시설에 편입시키는 경우 여기에 복무하는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들에게 이 절의 제2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이 절의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군복무관계가 적용된다.

제4조

- (1) 구 동독 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존재했던 인민군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었다.
- (2)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들의 권리와 의무는 군인법 제1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1절 제2소절의 적용을 받는다. 단, 제9조와 제27조 및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 (3) 연방 국방부장관은 구 동독군이 임시로 사용할 계급을 결정한다. 결정 시 국방부장관은 구 동독군 입대 전 교육, 군복무기간 동안의 교육, 복무기간, 경력 및 역할 등을 고려하고, 이

것들을 연방군 내에서 계급에 적절한 보직을 결정하는데 반영한다.

제5조

- (1)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들에 지급하는 보수와 의료지원은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규정을 통해서 1992년 9월 30일까지 다른 공공분야의 규정과 비교하여 군인들에게 주는 보수와 의료지원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고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역시키는 경우 및 이 절의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인해서 지불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지급은 시행되지 않는다.
- (2) 구 동독 군인에 대한 보수와 의료지원은 구 동독 지역의 민간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법규정을 통해서 마련한다. 연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은 1992년 9월 30일에 만료된다.
- (3) 의무복무병의 보수는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A 제3절 제17번에서 비롯되는 과도기규정을 고려하면서 군인봉급규정에 따른다.

제6조

- (1) 복지차원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부록 2 제8장 H항 3절 제9번의 규정을 따른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한 이후에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한 복지혜택은 군인복지법의 규정을 따른다.
- (2) 전역 후 민간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특히 직업규육을 위한 제반조치 및 보습교육과 직업전환교육 관련 사항은 노동지원법의 규정을 따른다. 추가적인 지원은 연방군 직업지원부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3) 이에 따라 이 절의 제5조 제1항 제2문장과 제3문장은 유효하다.

제7조

- (1)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이 전역을 신청하면 이를 시행한다. 계약제 군인은 규정된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시킨다. 직업군인은 현행 최소복무기간이 경과했거나 혹은 동 기간이 지난 경우에 전역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역시킬 수 있다.
 - 1. 전문적 자질 및 인성의 부족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2. 더 이상 해당자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없는 경우
 - 3. 현재까지 수행했던 직책이 아예 없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사라지는 경우 혹은 현재까지 수행했던 직책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직책과 혼합·편입되거나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어 해당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제1문장과 제4문장 제2번 및 제3번의 경우 과도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절의 제2조 제2항

제1문장과 제3항 제1문장에 따른 월정 대기보조금의 액수와 지급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4문장 제1번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제1문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절의 제2조 제2항 제2문장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2)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전역시킨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저촉되는 자, 특히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1966년 12월 19일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했거나 1948년 12월 10일에 제정된 인권선언의 기본원칙을 침해한 자
2. 국가보위부 및 국가보안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복무연장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3. 제1항 제4문장 제1번에서 제3번까지 해당하는 경우 전역명령은 해당자에게 늦어도 전역 2개월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8조

- (1) 이 절의 제1조 제2번에 해당하는 구 동독의 계약제 군인과 직업군인은 군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해서 연방군 계약제 군인의 복무규정에 따라 2년 동안 임용될 수 있다. 군인법 제40조 제1항 제1번의 연령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연방정부는 군인법 제27조 제4항 제3문장과 달리 병을 소집할 때 최하위 계급보다 높은 계급을 부여할 것을 법률로 정한다.
- (3) 보수는 연방보수법과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A 제2절 제3번과 제3절 제2번에 근거를 둔 과도기규정을 적용한다.
- (4) 연방 국방부장관은 직업군인의 복무기간 연장과 인수를 결정한다. 국방부장관은 구 동독 장교들을 직업군인으로 인수하기 전에 해당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독립위원회(Ein unabhängiger Ausschuss)의 견해를 청취한다. 동 독립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절차는 연방정부가 정한다. 지원자가 50세 이상일 경우 직업군인으로 임명할 수 없다.
- (5) 제1항에 따라 인수된 구 동독 군인 중에서 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직업군으로 인수되지 않는 경우에 보조금지급은 이 절의 제6조에 따른다.

참고문헌

-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양대 병력의 통합 - 통합 개관”. 통일부 발행,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2권 부처·지방정부 연구』에 수록, (서울: 나누리, 2011).
- 제정관,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서울: 한누리미디어, 2008).
-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서울: 팔복원, 1996).
- Ablaß, Werner, *Zapfenstreich. Von der NVA zur Bundeswehr*, (Düsseldorf: Kommunal-Verlag, 1992).
-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 und Pressestab (ed.), Material für die Presse Nr. XXVII/9 vom 30. Mai. 1990.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BMV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 eine Bilanz*, (Bonn: 1995).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Armee der Einheit 1990-2000*, (Bonn: 2000)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1997)
- Conrad, Hans Udo, *Die Integration von Offizieren der ehemaligen Nationalen Volksarmee in das Heer der Bundeswehr*. Dissertation, Fachbereich Pädagogik der Universität der Bundeswehr Hamburg. (Hamburg: 1996).
- Deutscher Bundestag, *Unterrichtung durch den Wehrbeauftragten. Jahresbericht 2002*, (Berlin, 1994).
- Digutsch, Gunnar,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und der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änder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GmbH Europäi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2004).
- Ehlert, Hans, “Von der ‘Wende’ zur Einheit - Ein sicherheitspolitischer Rückblick auf das letzte Jahr der Nationalen Volksarmee”, in: Hans Ehlert (ed.),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Zeitzeugenberichte und Dokumente*, (Berlin, 2002).
- Gießmann, Hans-Joachim, *Das unliebsame Erbe: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 (Baden-Baden: Namos Verlagsgesellschaft, 1992).
- Leonhard, Nina, “ ‘Armee der Einheit’ :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p. 67. in: S. B. Gareis, P. Klein (eds.), *Handbuch Militär und Sozialwissen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GWV Fachverlage GmbH, 2006).



Müller, Peter, "Einheit mit dem Klassenfeind", in: *Y – Magazin der Bundeswehr*, 09/2010, H. 9.

Reeb, Hans-Joachim, „Eingliederung ehemaliger NVA-Berufssoldaten in die Bundeswehr. Maßnahmen und Probleme. in: *Deutschland Archiv* (25).

Schönbohm, Jörg,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Der Siedler Verlag 1992).

Wenzke, Rüdiger, Die Nationale Volksarmee (1956–1990), in: Thorsten Diedrich & Hans Ehlert & Rüdiger Wenzke, *Im Dienste der Partei. Handbuch der bewaffneten Organe der DDR*, Berlin 1998.

Wortlaut des Einigungsvertrages, Anlage I, Kapitel XIX. Sachgebiet B: Recht der Soldaten Abschnitt II.

„Eine faire chance, – Regel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NVA in die Bundeswehr, in: *IAP-DIENST Sicherheitspolitik*.

동서독 군사통합 단계별 과정

이은정,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들어가며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독일 국가로 통일되던 날, 구 동독의 인민군은 형식적이고 간단한 기념행사를 마친 뒤 통일독일의 연방군으로 인수되었다. 이러한 인수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당연히 많은 준비과정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가 1990년 7월 15일 16일 양일간 코카서스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통일독일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에 소련이 동의한 것과 동독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 그리고 “2+4 조약”을 통해 승전연합군의 특별권한이 소멸되고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과 같은 국제정치적인 사건들이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독 인민군의 해체작업은 실제로 동독 사회 내에서 변혁의 움직임이 강력해진 1989년 가을 이후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1990년 3월 선거 후 동독 인민군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교체되고, 개혁을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다.

그 당시 인민군 지도부는 서독의 반응과 상관없이 동독 주민의 대다수가 이미 통일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 인민군 병력을 서독 연방군에 무사히 인계하는 것을 군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의무로 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군인으로서 마지막까지 프로답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였다고 통일 당시 인민군 해체작업을 담당하였던 서독 연방군의 베르너 폰 쉘른 장군은 회상하였다. 실제로 1990년 3월 자유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동독 정부의 군축국방부 차관이었

던 베르너 아플라스도 인민군이 1990년 10월 3일 해체되기까지 마지막 임무인 무기와 탄약 관리임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인민군의 해체과정에서 한 방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저항도 없었다는 사실, 독일의 분단이 지속되었던 40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두 병력이 어떠한 충돌이나 사고도 없이 하나의 군대로 통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당시 진행된 군 통합작업은 인민군과 연방군 두 개 군대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서독 연방군으로 동독 인민군이 인수 편입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실이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다.

서독 연방정부의 국방부가 통합 준비를 위해 동독에 파견한 연락참모부가 인민군의 인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은 1990년 8월과 9월 사이 단 5주밖에 없었다. 그리고 1990년 9월 말까지도 동독 인민군 중에 누가 연방군에 잔류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불확실성, 정보 및 소통 부족과 같은 현상이 인민군 내부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야기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독에서 인민군 개혁 작업을 담당하였던 군 지도부가 통일과정에서 최소한 50,000 명 이상의 인민군이 연방군으로 인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약 11,000 명만이 연방군에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평화적인 통합이 가능했는지 신기하게 느낄 수도 있다.

물론 동독의 인민군이 통일독일의 연방군으로 평화적으로 인수되었다는 것만으로 동독의 인민군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합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문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인민군이 평화적으로 해체되고 연방군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국방부가 담당한 핵심적인 업무인 군 통합 과정은 독일통일과 관련된 모든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군대통합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과정에서 국방부가 담당한 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은 통일 이전에 이미 변혁기의 동독에서 진행된 군대개혁 작업과 인민군의 해체와 잔류인력을 연방군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그 후유증까지 포함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취해진 정책을 통일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어떤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 주목해야만 한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국방과 관련된 정책 특히 군통합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개혁기(1989년 10월부터 1990년 3월까지, 1990년 4월부터 7월까지)

이 시기는 동독의 마지막 수상이었던 한스 모드로우와 로타 드 메지에르의 집권기로 이때까지만 해도 동독에서는 통일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인민군과 연방군이 통합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 준비기(1990년 7월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1990년 여름에 “2+4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군대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된 시점인 7월부터 10월 2일까지의 시간은 준비기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시기의 초반, 1990년 7월 1일에 실현된 화폐통합에 의거해서 소련군 서부군단으로 불리는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수비용을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합의

가 이루어졌다.

3. 인수기(1990년 10월 이후 1992년 말)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함께 시작되는 약 2년여의 기간을 인수기로 부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구 동독 인민군 소속 인력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또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4. 구조조정기(1991년부터 1995년)

이 시기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CSCE)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면서 구 동독 인민군 출신 인원을 연방군에 편입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완성하는 정책이 진행되었다. 군대병력의 감축, 개별적인 심사를 통한 정치적 책임문제에 대한 검토, 기간제 군인에 관한 규정의 도입 등이 이 정책에 포함되었다.

5. 후유증 등 제반문제 처리기(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

통일 이후 점차적으로 군대의 통합과 감축 그리고 군사시설의 해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중에는 단순히 군대통합의 후유증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들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거기에는 군사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드러난 오염처리문제, 동일한 연방군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동독 인민군 출신의 연방군인과 서독의 연방군인 간의 급여 격차, 연금문제 그리고 인민군 복무 기간의 인정과 연관된 지위인정문제, 레이더의 방사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역군인들의 피해보상 문제 등이 포함된다.

개혁기(1989년 10월-1990년 3월, 1990년 4월-7월)

제1절 인민군 조직의 특성

동독 인민군의 인적 구성은 소련군과 유사한 구조로 부사관(副士官, Unteroffiziere)급 이하 일반사병의 수와 장교의 수를 비교할 때 장교의 비율이 아주 높은 편에 속했다. 서독 연방군의 경우 이 비율이 12:1이었던 것에 비해 인민군 내에서 병사와 장교의 비율은 3:1이나 되었다.

장교의 전문화 정도에 있어서는 동독 인민군 장교가 서독 연방군 장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전문성을 보였다. 장교들이 전문화 정도가 높고 세분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 인민군 장교의 경우 고도의 전문화로 인해 퇴역하고 난 후 민간 직종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서독의 연방군과는 달리 동독의 인민군에는 군 지도부와 군무행정을 담당하는 민간조직이 분리되지 않았다.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동독 인민군은 고비용의 군대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체 병력의 85%를 상시 전투태세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군인들의 사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동독의 인민군은 통일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동독 경제의 악화로 인해 식료품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 교통 부문 등 경제활동에 투입되었다. 1989년의 경우 상시 1만 명 이상, 피크타임에 5만 명 이상의 군인이 생산 작업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군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었으므로, 그것이 군대 내에 불만을 증가시키고, 인민군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는데 일조하였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인민군들은 일반인들이 꺼리는 위험도가 높은 생산 분야에도 투입되었다.

동독 정부는 1989/90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군대병력과 물자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당시 동독 정부의 수상이었던 한스 모드라우는 “군사 장비와 무기의 수출입과 생산에 관한 동독 정부의 기본 입장에 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 결정의 내용에는 “국제적인 군축 노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었다:

“동독 정부의 기본입장은 인민군의 물적 기술적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동맹국들과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동독이 제공해야 할 물자를 확보하는 선에서 군사물자의 생산 규모와 구조를 지속적으로 제약하여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제한하는 것이다.”(문서번호 5)

1. 인민군으로부터의 탈영과 서독 연방군으로의 지원

1989년 가을 이후 변혁기에 동독 군대 내에 팽배한 불안감과 불만으로 인해 군인들이 탈영하거나, 명령을 거부하고, 또는 시위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사고가 잇달았다. 게다가 동독의 일반주민들이 인민군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민군을 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2월 15일에 헬무트 콜 서독총리가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에게 “동독 인민군 장교들 중에 서독 연방군에 지원하려고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동독의 인민경찰들이 동독 경찰복을 입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민군 내의 불안이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3월 18일에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총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새로이 선출된 동독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3월 18일 이후에 동독 군인들이 인민군으로부터 탈영해야만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동독 군축국방부(MfAV)는 서독 연방정부의 국방부에 이 문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1989년 11월에서 1990년 5월 사이에 탈영하여 서독 정부에 정치적 난민 자격을 신청한 인민군 장교, 부사관 그리고 사병의 수가 총 1,40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드 메지에르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시 동독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2. 이주자와 재정문제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이주하는 주민은 특히 198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88년에는 39,832명, 그리고 1989년에는 무려 343,854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서독 정부는 사실 오랫동안 동독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서독 주민이 받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동등하게 제공하였다. 그것은 동독과 정치적으로 경쟁하던 서독이 자신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동독체제가 그만큼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증가하는 것이 동독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서독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였다. 동독에서 이주해 온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숙소 그리고 사회보장 혜택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급증하는 이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독 연방군의 부대시설에 이주자가 임시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1990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동독 인민군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실질적으로 군인들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인민군 내부의 저하된 사기를 고려하여 병역수당(Wehrsold)을 최소한이라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인상된 군인급여가 서독 마르크로 150 DM였다. 이 금액은 당시 서독 연방군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일반 사병이 받는 액수와 동일한 것이었다. 1990년 10월 3일부터는 구 인민군 소속이었던 군인들도 연방군 소속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연방군의 병역수당과 휴가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3. 동독 인민군 병력의 주요 수치

동독 인민군의 평시병력은 약 17만 명이었으며, 전시동원병력은 33만 명이었다. 그리고 인민군이 보유한 무기는 전시병력에 맞추어서 갖추고 있었다. 1990년 4월 기준 인민군 소속 인력은 전체 인원이 약 17만 명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인민군 군인 102,000명
- 그 중 직업군인 73,000명
- 민간인 32,000명
- 사관생도(Offiziersschüler) 4,100명
- 군사대학 수강장교(Offiziershörer) 1,500명

인민군 중 600명은 1990년 소련에서 근무를 마쳤으며, 이 중 절반은 소련에 부인과 함께 있었다.(소련 근무 동독 군인 가정의 자녀는 총 432명이었다.)

1990년 4월, 5월 당시 동독 인민군 병력의 규모에 대해서는 상이한 정보



들이 존재한다. 과도기 민주정부에서 군축국방부의 장관이었던 라이너 에펠만은 1990년 7월 초에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연초에 인민군의 정규인원으로 168,000명의 군인과 56,000명의 민간군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에는 겨우 115,000명의 군인과 46,500명의 민간군무원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중반기부터는 일반적인 채용 금지와 고위직의 승진이 정지되었습니다.”(문서번호 31)

동독에는 정규군 외에도 다양한 무장 조직이 있었다. 거기에는 직장예비군(Betriebskampfgruppen), 국경수비대(Grenztruppen), 민간방위대(Zivilverteidigung), 기동경찰과 비밀경찰, 군사스포츠협회인 체육기술협회의 회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동독에서는 1978년 이후 8학년/9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련수업을 실시하였다. 198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무장조직의 총인원은 정규군보다 훨씬 많았다:

- 직장예비군 500,000명(다른 출처에 의하면 400,000명)
- 국경수비대 40,000명(다른 출처에 의하면 28,000명)
- 민간방위 500,000명
- 기동경찰, 국가안전부 소속 120,000명
- 펠릭스 제르진스키 연대 12,000명
- 군사스포츠협회인 “체육기술협회” 회원 600,000명

그 외에도 연인원 약 100,000명이 방위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아가 통일 이후 군 통합과정에서 사회보장문제를 생각한다면 인민군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의 가족 약 백만 명 정도의 인원도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만 할 것이다.

4. 정치적 성향

동독 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정치사상교육에도 불구하고 1989년/1990년을 기점으로 동독 인민군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인민군은 사실 사상적으로 완전히 교화된 동독의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 간부들만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었다. 인민군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만일 국경수비대가 작정하고 모든 탈주자들에게 발포했다라면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들이 발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동독의 군대가 사상적으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위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회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때 인민군 소속 인원이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가입한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인민군을 “(적어도 1989년 가을까지는) 당의 군대¹⁾”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0년 당시 군축국방부 차관이었던 베르너 아플라스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인민군 장군과 제독의 경우 100% 사통당 당원이었고, 장교는 96%, 부사관급 직업군인의 60%가 사통당 당원이었다. 그 외 기간제 직업군인 14% 그리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사병 중에 사통당 당원의 비율이 7%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플라스 차관이 한 언급 중 “적어도 1989년 가을까지”라는 표현이다. 인민군의 정치조직과 군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정치교육은 최소한 인민군 전체적인 내부질서유지라는 면에 있어서 중요하였다.

“1990년 1월초만 하더라도 군의 정치조직의 인력규모를 6,850명의 군인과 1,100명의 민간인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500명의 장군과 5,020명의 장교를 포함한다.”²⁾

.....

¹⁾ Ablaß, Werner E. Von der NVA zur Bundeswehr-Herbst 1989 bis 2. Oktober 1990. In: Bücking, Hans-Jörg/Heydemann, Günther. Hrsg. Streitkräfte im Nachkriegsdeutschland. Berlin: Duncker & Humblot, 2011, S. 178.

²⁾ Ehlert, Hans. 2002. Hrsg.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1989년 평화혁명을 통해 군 내부에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많은 수의 젊은 장교들은 동독 정부가 필요한 개혁정책을 실행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회적 변화들 또한 그들에게 사고를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의 가을과 1990년 3월의 자유총선은 정치장교들의 사고와 정체성에도 매우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말까지 인민군이 갖고 있었던 정치조직의 의미를 숫적으로나마 기억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인민군 내에서 이루어지던 정치 사상교육은 1990년 8월 8일자 장관 명령 제26/90호에 따라 중단되었다.(문서번호 45) 그리고 “동무(Genosse)”라는 호칭도 폐지되었다. 1990년 1월 20일에는 인민군 직업군인협회가 결성되었다.

5. 인민군 내의 불안감 확산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90년 전반기 인민군 내부의 분위기는 거대한 불안감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동독 해군의 책임자였던 본(Born)장군이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잘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1990년 3월 14일에 작성된 것, 즉 동독에서 자유총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지기 며칠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군대는 현재 사회 전체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모순적인 현상들이 군대 내에서의 일상에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그로 인해 국가의 근본이 약화되고 있다. 그것은 특히 군대 소속인원들이 주적 개념을 망각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독일민주공화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완전한 무장해제에 관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인민군 내에) 생존문제와 관련된 두려움이 증가하고 군대의 기강과 명령복종체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문서번호 10)

.....
Einheit. Zeitzeugenberichte und Dokumente. Berlin: Ch. Links Verlag, S. 48, Fußnote 92.

본장군은 나아가 동독 해군의 규모를 감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그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재원을 군 소속 인원들이 후일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생존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쓸 것을 제안한다.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군대의 비용을 들어서 군 소속 인원들이 필요한 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에는 법률적인 자문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의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용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문서번호 10, 5쪽)

1990년 3월 18일에 동독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 후에 인민군 지도부는 동독에서 진행되는 “평화로운 혁명”을 더 이상 멈출 수 없으며, 그것이 동독의 군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였다. 인민군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새로이 선출된 동독의 민주적 정부에 대해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과도정부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같은 입장은 3월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 전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1989년 가을 동독의 인민군은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일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상세한 군대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 두었다.(문서번호 29) 인민군의 구조 개편을 통해 백명 단위의 시위진압대가 편성되었다. 실제로 198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만 명의 인민군이 시위진압에 동원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던 이유는 동독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시위대들의 용기와 군 내부의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1989년과 1990년의 동독 군대는 인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군대가 아니라 인민의 군대

이기를 원했던 것이다.³

1993년 연방의회 대정부질의에서 빌츠 군축국방부 차관은 “소수 고령의 인민군 장교들은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젊은 장교들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문서번호 36). 이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에곤 바(Egon Bahr)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동독에서 개혁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 전에 동독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국민을 진압하기 위해 인민군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 또한 인민군의 역사의 일부이다.”⁴

제2절 제반조건

독일 통일과정에서 국방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동서독의 군대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의 국제법적인 지위 때문이었다. 1949년에 건국된 두 개의 독일 국가는 국제법적으로만 본다면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승전연합국이 1945년 이후 지속적으로 점령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동독과 서독의 주권이 승전연합국의 유보권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 모두 승전연합국의 군대가 자기 영토에 주둔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나아가 동독과 서독 모두 냉전 체제 하에서 동구와 서구 진영에 형성

³ 이러한 변화에 관해서는 귄터 글라저(Günther Glaser)의 논문 “동독 변혁기 인민군의 새로운 사고와 행동(Neues Denken und Handeln in der NVA in der Umbruchphase der DDR. *Deutschland Archiv*, 39 (2006) 5, S. 814-823) 참조.

⁴ Giese, Hans-Joachim. 1992. *Das unliebsame Erbe.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 Baden-Baden: Nomos Verlag, 10쪽, 에곤 바의 서문.

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국제공동체의 일원이었다.

복잡하게 연결된 동맹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독일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특히 소련과의 관계였다.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동독 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기구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가장 훌륭한 군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소련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다. 왜냐하면 독일의 통일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며 독일을 나치 파시즘으로부터 해방시켰던 소련을 패자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련과 나토 간의 관계는 여전히 적대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다.

독일은 그 외에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접경국가들과의 민감한 정치적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독 인민군을 동구권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분리하여 나토의 회원인 독일 연방군에 편입하는 것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 병참업무 문제
- 기밀유지 문제(무기 반출, 무기체계 재수출)
- 법적 문제(소유권 문제, 부동산, 가치 감정)
- 재정 문제(비용 분배, 피해 산정)
- 역사적 이유로 인한 우려
- 심리적 배려

1990년 초 이후 동독의 정치와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반면에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동독 군축국방부의 차관이었던 베르너 아플라스에 따르면 1990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국가정상들의 모임에서 당시 소련의 외무상이었던 세바르드나제가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수상님, 가능하면 5, 6개월 이내에 독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오. 우리 소련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그 이후에 내가 외교무대에서 약속한 것을 그 이후에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⁵

이러한 발언은 1990년 6월에 서독이 소련에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약속하고 7월에 그 차관을 지급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서독 정부가 제공한 재정적인 지원은 소련 공산당의 28차 전당대회와 시간상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 전당대회에서 당서기장으로 다시 선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투표에서 1300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그것은 소련 공산당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고르바초프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잘 볼 수 있다.

1990년 5월에 미국을 방문한 고르바초프는 워싱턴에서 모든 국가들이 어느 동맹에 속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6월 22일에 베를린에서 열린 2+4 협상에서 소련 외상 세바르드나제가 동서독의 군대들이 차후 5년 간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 두 군사동맹의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가 이 제안을 한 이유는 독일군이 여전히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소련 주민이 독일의 급격한 변화를 보면서 갖게 된 심리적인 불안을 잠재우고, 동시에 소련 공산당의 전당대회를 치를 고르바초프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소련 국내정치의 불안한 상황은 독일에서 통일조약의 체결을 준비하는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아플라스 차관은 인터뷰에서 설명하였다.

.....

⁵ AbLaß, Werner B. Von der NVA zur Bundeswehr-Herbst 1989 bis 2. Oktober 1990. In: Bücking, Hans-Jörg/Heydemann, Günther. Hrsg. 2011. *Streitkräfte im Nachkriegsdeutschland*. Berlin: Duncker & Humblot, 175쪽.

1990년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틀 즉 동독과 서독의 주권이 제한되어 있고, 상이한 군사동맹에 소속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동서독 군대 통합에 관한 대화와 구체적 계획은 소련의 동의 및 2+4 조약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결국 군대 통합을 위한 시간은 1990년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뿐이었으며, 통합 준비를 위한 실질적 작업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불과 5주(1990. 8. 20~10. 2)뿐이었다.

1990년 7월 중순, 공산당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고르바초프는 코카서스에서 헬무트 콜 서독 수상과 만났다. 이 만남은 소련의 지도자가 통일독일이 나토 회원이 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독일 군대의 국제적인 지위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되고 있다.

1990년 7월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콜 총리의 코카서스 회담 후 통일을 향한 과정들은 주로 서독 행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인민군의 인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인민군은 자체 이해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다. 인민군은 로비활동이 없었던 것이다.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 내 군축국방위원회(Ausschuss der Volkskammer für Abrüstung und Verteidigung)가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추가조항을 넣고자 했지만(문서번호 82),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군축국방위원회가 너무 늦게 그리고 소극적으로 결정과정에 개입하였던 것이다.

인민군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동독 지도부 특히 동베를린의 중앙 행정부와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있던 군축국방부와 군 부대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각 지역의 군부대는 중앙정부와 군축국방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전혀 몰랐다.

제3절 동독 인민군과 서독 연방군 간의 상이한 기대와 평가

1989년과 1990년 동독 사회가 급격한 변혁을 거치던 시기에 동독과 서독의 인민군과 연방군의 장래 계획과 기대는 본질적으로 정반대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이하였다. 동독 인민군의 경우 자신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인민군으로 존속할 것이며 자체적인 개혁을 거쳐서 실질적인 인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민군은 동독에서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거나 로비를 해줄 수 있는 장치를 갖지 못했다. 반면에 서독 연방군에는 인민군을 여전히 독재자의 전투부대로 간주하고 인민군이 또는 적어도 인민군의 일부가 연방군으로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개혁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았다. 서독 연방군은 인민군의 개혁 노력 및 성과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독 정부는 이를 대부분 무시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1989년과 1990년에 벌어진 사건들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의 상이한 관점과 평가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스 엘러트(Hans Ehlert)의 저서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통해 잘 볼 수 있다.⁶

“동독의 관점에서 인민군의 마지막 한 해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1. 1989년 10월~1990년 3월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 시기의 특징은 내부의 불안감, 해체를 앞둔 종말현상, 구시대 정치 및 군사지도부의 무기력감, 규율의 붕괴 등이다. 1989년 11월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 군 개혁과 내부질서 재확립 노력을 통해 “새로운 인민군”의 전망을 창출하고자 했다.

2. 1990년 4월~7월

첫 번째 민주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민군을 나름대로 안정시키기 위한

⁶ Ehlert, Hans, Hrsg.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Zeitzeugenberichte und Dokumente*(미래 없는 군대. 동독 인민군의 종말과 독일 통일. 동시대 증언과 문서), Berlin: Ch. Links Verlag, S. 6f.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통일 후에도 크게 축소되었으나 독자적인 인민군이 존속할 것이라는 희망이 싹텄다. 군축국방부의 구조가 변경되었고, 인민군은 법적·구조적으로 서독 연방군에 맞춰나가야 했다. 그리고 인민군과 연방군 간 공식 접촉을 위한 근간이 마련되었다.

3. 1990년 7월~10월

코카서스 회담을 통해 통일 독일이 NATO에 속하게 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다음부터, 통일 후에는 단 하나의 군대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인민군 내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체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인민군 지도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불구하고 연방군 동부사령부 선발대(Vorkommando Ost)와 협력하여 인민군의 인수가 절도있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반면, 연방군의 관점에서는 이와는 다른 두 개의 기간으로 나뉘며, 그러한 구분의 계기가 되는 것은 코카서스 회담(독·소 회담)이었다.

1. 1990년 1월~7월

이 시기의 특징은 모든 군사적 계획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사전 논의를 하는 정도였다. 진행 중이었던 중요한 현안인 정치적 통일을 군사 문제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연방군과 인민군 간의 공식 접촉은 1990년 7월 1일 기본지침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소규모로만 이루어졌다.

2. 1990년 7월~10월

이전까지 있어왔던 군통합의 추상적 구상이 구체적 계획을 통해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진 시기이다. 또한 동시에 동독이 서독 기본법 효력 하에 가입하는 날에 인민군 인력과 물자를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통일과정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동독에서 제안되었던 조치들이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다. 동독 군인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한 것이 제대로 실천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병력 감축을 통해 절약한 비용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0년 9월 말까지 누가 군대에 잔류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민군 내부에는 불안감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10월 3일에 동독 인민군이 아무런 문제없이 어



면 폭력사태를 야기하지 않은 채 연방군에 인수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인민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의 인수와 전역/제대/해고 그리고 기타 인사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방침은 1990년 9월에서야 연방군 지도부에 의해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동독 과도정부의 군축국방부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만일에 동독의 군인들이 계획된 조치를 알고 있었다면 1990년 10월 3일이 그렇게 문제 없고 평화롭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동독의 인민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도기에 아무런 사고 없이 양쪽 군대의 통합, 달리 말하면 인민군의 해체를 잘 준비해서 연방군으로 인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연방군의 재정문제와 다른 기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수의 구 인민군 소속 군인들이 제대하게 된 것이었다. 실제로 제대한 사람들 중에 이러한 변화를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군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완수한 것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테오도르 호프만 장군은 군 통합 당시 구 인민군 소속 군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시대의 증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89년 11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스 모드로우 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인민군의 개혁을 주도하였고, 1990년 4월부터 9월 15일 사이에 인민군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1995년 경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초까지 인민군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인민군은 당시 동독 사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동독 군대의 개혁에 있다고 보았다. 이 개혁에는 모든 정당과 사회운동 세력이 함께 참여해야만 했고 국민의 다수가 동참하는 것이어야만 했다. (...) 평화적으로 독일 통일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민군이 조직적으로 절도 있게 인수되었다는 것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도기

동독의 정치적 지도자들, 인민군의 책임자들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군인들, 민간 군무원들 그리고 국경수비대들이 함께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국방부로부터 인민군에 파견되어 함께 일하였던 연락참모부의 역할을 꼭 언급하고 싶다. 이들은 양측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동독 헌법이 규정한 기구로서 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동맹 틀 안에서 평화를 유지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투기술을 익혔다. 그것 때문에 인민군 소속 인원들이 소외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며, 그에 대해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가 인민군에 복무하였다는 것에 반복해서 사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1989/90년에 특히 인민군과 국경수비대의 직업군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절도 있고 합리적으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충직한 태도에 대해 어떤 칭송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충직함에 대해서는 충직함으로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문서번호91)

준비기(1990년 7월-10월)

제1절 변혁의 물결과 자체 개혁을 위한 노력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초 동독의 정치 및 군 수뇌부는 당시 동독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많이 놀라고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동독 사회 내부에서 그렇게 격한 사회변혁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규모 시위와 같은 사회운동이 발생했을 때 심적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 결과 1989년 가을 동독의 사회 정치 체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정치와 군부 지도부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이 무기력해진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인민군 내부에서도 많은 불만과 변혁 욕구가 표출되었고, 실제 40여개가 넘는 지역에서 파업과 시위가 잇따랐다. 당시 동독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변혁의 요구를 더 이상 거스르지 못하고 인민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었다:

- 의무 복무 기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근무
- 군인의 농업 및 민간산업 투입 중단

- 근무시간 주 5일/45시간으로 제한
- 휴가 및 외출 규정 유연화
- 병사 대표단의 구성

이러한 조치는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그 후에도 인민군 내에서는 개혁이 지속되었다. 실제로 그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89년 12월 18일 “군개혁원탁회의(Der Runde Tisch Militärreform)”⁷가 구성되었다. 1989년 12월 21일에는 모드로우 정부가 군개혁위원회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새로운 국방법, 군복무법 그리고 승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모드로우 정부의 군개혁위원회는 두 번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는 많은 수의 군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전화를 통해 또는 직접적인 의사발언을 통해 개혁위원회의 심의 중에 전달된 사안이 12,500건 그리고 군개혁위원회로 전달된 편지가 4,500통에 달했다. 이들 위원회는 개혁과정을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총 15회에 걸쳐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의 방향이 잡히는 등 정치적 변화가 훨씬 가속화되면서 이들 개혁위원회에서 계획한 개혁안들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1990년 4월 군개혁위원회와 군개혁원탁회의는 해체되었고, 1990년 3월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이 등장한 드메지에르 정부에서 “군개혁담당관” 직책이 신설되었다. 군개혁담당관에는 세 명의 직원이 배치되었다.

1990년 3월의 총선은 동독 주민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

⁷ 전 중앙원탁회의(Zentraler Runder Tisch)에 참가했던 정당, 시민단체, 동독국방부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1989년 12월 18일 첫 회의를 포함하여 1990년 3월까지 총 7회의 회의를 통해 인민군의 역할과 상황에 대한 “건설적 의견”이 교환되었다.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독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990년 4월 12일 민간인의 신분으로 동독의 군축국방부 장관직을 맡게 된 라이너 에펠만은 인민군이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간주하였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반면에 서독 정부와 연방군은 인민군 내부의 개혁에 대해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2+4 협상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발생하지 않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였을 뿐이다.

에펠만 장관은 취임 후 독일 영토에 두 개의 군대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1990년 5월 2일에 동독 군축국방부가 있었던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열린 지휘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이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한, 국가 안보를 위해 인민군은 적절한 규모에서 엄격하게 방어적 성격을 띤 구조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후에도 동독지역에는 제 2의 독일군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군대는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속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국토 안보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군의 구조, 보유 무기, 군사교육도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동독 지역에는 NATO군이 주둔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문서번호 17)

에펠만 장관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성명서를 통해서 이미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유럽에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 두 개의 군사동맹이 존재하는 한 인민군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다.”⁸

에펠만과 유사하게 예측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에펠만의 생각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 특히 당시에는 소련이 여전히 통일된 독일이

.....

⁸ Ablaß, Werner E. 1992 : *Zapfenstreich. Von der NVA zur Bundeswehr*. Düsseldorf: Kommunal Verlag, 80쪽.

NATO 회원국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군축 국방부 내에서도 통일이 빨라야 1992년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바르샤바조약기구와 NATO가 공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민군이 동독 연방주에 주둔하는 동부 영토방위군(Territorialheer Ost)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에펠만 장관이 제시한 2개 군대 구상은 인민군에게 환영 받았는데 이는 군사 안보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인민군 소속인원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민군의 장래와 관련해서 당시 동독 군축국방부 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에펠만 장관은 프랑스식 모델을 선호했다. 그것은 당시 프랑스와 나토 간의 관계처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인민군이 일정한 과도기 동안에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잔류하도록 두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통합적 군사 구조에는 구속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에펠만 장관은 인민군 전체 병력을 10만 명으로 축소하려 했으며, 이 목표를 1992/93년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대나 기타 다른 단위의 부대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데에 1년 반에서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민군의 장래와 관련하여 고려된 또 다른 문제는 거주지에 대한 계획이었다.
- 인민군이 관장하던 주택기금은 총 90,0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70%가 군축국방부가 법적 소유자인 사택이었다. 나머지 30%는 인민군이 배정권을 갖는 업무용 주택이었다. 주택기금은 국영으로 유지할 계획이었다.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인민군 소유 토지와 시설을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있었다. 이러한 주택과 시설 토지를 관리하는 군축국방부의 주택관리부서를 공익적 성격의 자본회사로 전환하여 시장경제의 조건에 맞추고자 하였다.



- 국방부에 인사평의회(Personalrat)를 설치하여 향후 처리해야 할 인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심의하도록 했다.
- 인민군의 개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써 기존의 이념 사상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이러한 계획이 도입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44년 7월 20일에 있었던 반파시즘 시위를 추모하기 위해 1990년 7월 20일에 동독에서 열린 추모식이었다. 이 추모식을 계기로 몇 개의 건물을 파시즘에 저항하였던 군부 내부의 주도자였던 슈타우펜베르크 공작과 헤닝 폰 트레쉬코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로 하였다.(문서번호 26) 그러나 당시 인민군의 최고 책임자였던 호프만 장군은 1990년 7월 16일 아침보고서에 새로이 도입된 인민군 선서를 거부했다는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총 2,500명이 그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은 당시 동독 인민군의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문서번호 24, 문서번호 1) 그 중에서 장교와 하사관이 149명(0.25%)이나 포함되었다.(문서번호 33) 독일에서는 그때까지 나치 통치의 과거와 관련하여 독일군의 선서 자체가 특별한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왜냐하면 히틀러에 저항했던 군인들조차 자신들이 범죄자로 생각하는 히틀러의 이름에 대고 선서를 했다는 사실로 인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 인민군 내에서 인사상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예상하였다. 그러나 1990년 봄/여름에만 해도 인민군 군인들 사이에는 자신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배웠으므로 은행과 보험사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드레스덴에 소재한 인민군의 군사아카데미를 컨벤션센터로 재건축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1. 군축과 물자수급 인력전환 계획

1990년 3월 자유총선거 후 4월부터 동독의 국방부는 군축국방부로 그 명칭을 개정하였다. 부처의 명칭에 이미 이 부처가 담당할 과제가 반영되었다. 실제로 새로운 지도부는 기존의 군수생산시설을 민간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단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민군의 군수물자 수요는 1989년에 약 15% 감소했으며, 1990년에는 42%까지 감소시켜 나가는 계획이 세워졌다. 그것은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군수물자 생산을 반 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물자수급을 위한 계획과 군수물자 생산을 대체할 생산품 제조로 전환하기 위한 어떠한 시장분석, 기술적, 조직적 준비도 없었다. 그 결과 당시의 상황에 대한 현황분석이 아주 부정적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 만일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1990/91년 말에 많은 군수산업체가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 당시 동독 군수산업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 생산업체 100개
- 생산규모 약 30억 마르크
- 총 고용 인력 약 10만 명
- 수출비중 평균 15%, 우수 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50%

1990년 여름부터는 군수품에 대한 내수가 거의 없었고, 화폐통합 이후에는 동독 생산품의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면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사라졌다. 그 결과 1990년 7월 31일에 최대 100개의 “국영업체”에 대해 인민군과의 연계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것은 약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군수물자의 감축뿐만 아니라 군사인력을 민간부문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직업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인민군 육해공군에 인력전환담당관(Konversionsbeauftragte)실이 설치되었다. 각 군의 전환담당관들은 월 한 번씩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열리는 공동 회의를 통하여 서로 경험을 교환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인민군 소속 군인의 3,000~5,000명이 민간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1990년 8월 28일에 내려진 명령 33/90을 통해 에펠만 장관은 군사 인력의 전환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이 연구소에 53명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문서번호 62) 그러나 이미 그 때부터 이 업무가 서서히 단계적으로 연방군 직업지원국에 넘겨지고 있었다.

에펠만 장관은 1990년 7월 6일에 쓴 동독최고인민회의의 청원위원회 위원장에게 쓴 편지에서 당시에 인민군이 인력 감축과 전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하였다.(문서번호 31)

이같이 동독 군축국방부의 이름으로 “군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개혁을 추구하며 인력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 같은 조치들은 실제로 아주 진지하게 추진되었다. 당시 동독의 군축국방장관이 보았을 때 동독이 군축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동독에 존재하던 안보독트린을 근거로 군의 존재가 과대하게 팽창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에펠만 장관은 1990년 8월 17일 서독의 국방장관 슈톨텐베르크에게 보낸 문서에서 군축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당시 인민군에서 근무하던 민간인들의 예를 들며 이들을 극단적으로 변화된 노동시장에 통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보여주기 위해 이들의 근무기간과 일반적인 자격요건에 관해 설명하였다.(문서번호 56)

이와 같이 동독 과도기의 드 메지에르 정부와 군축국방부는 자체적인 힘으로 군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다. 에펠만 장관과 군축국방부 직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

한 것처럼 당시 촉박한 시간 때문에 그런 개혁방안이 거의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더욱이 1990년 9월에 이미 인민군이 연방군으로 편입, 인수될 것이며 인수될 규모 또한 아주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서독의 연방정부나 연방군에서는 아무도 동독 인민군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2.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동독에는 1962년에 병역의무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그 이유는 체제의 이념적인 입장 때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동독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만일에 양심적인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유지해야만 하는 병력의 규모를 채울 수 없었다. 게다가 인민군의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부족한 생산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생산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동독 청년들은 무기를 손에 들 의사가 없었다. 동독 당국은 이들에게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1964년에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동독 국방부의 명령에 따라 인민군 내에 공병대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동독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청년들은 18개월 동안 이른바 공병대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엇보다 개신교 교회가 강력하게 그것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도입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동독은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보유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공병대원”은 현실적으로 많은 고향포를 감수해야만 하였다. 공병대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대학진학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약 12,000명에서 15,000명이 공병대원으로 복무하였다. 1980년부터는 공병대원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989년에 동독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 중에서 1%가 공병대원이었다. 이들 중에 많은 인원들이 생산인력이 부족한 산업현장에 투입되었다.

1989년 2월 9일 동독의 최고인민회의는 징병대상자와 신체검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병역대상자를 공병대로 소집하는 것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동독에서 공익근무가 도입되었다.(문서번호 7, 8, 14) 이러한 ‘공익근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국방부와 청소년체육부는 동독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의 담당관들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문서번호 38) 병역의무와 공익근무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동독 헌법의 해당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병역의무와 공익근무 사이에서 결정을 반복하는 것도 허용하였다.(문서번호 64) 그리고 1990년 4월 26일 동독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군의 선서를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문서번호 1)

3. 군인담당관

1990년 4월에 도입된 개혁에는 군축국방부에 “군인담당관”실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사병담당관실에는 군인 5명, 민간인 4명으로 총 9명의 인원이 배치되었다.(문서번호 37)

이 제도는 서독 연방의회의 “군담당관”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서독의 군담당관과 동독의 군인담당관 사이의 차이는 동독의 담당관이 국방부에 소속되었고 서독의 담당관이 연방의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이었다. 동독의 군인담당관이 1990년 4월 18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그의 업무영역에는 첫째, 군인의 기본권 보호, 둘째, 군사규정과 법

적 규정 그리고 해당 법률의 틀 내에서 군인의 업무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이해관계 보호, 셋째, 군축국방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인의 업무적, 인적 그리고 사회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문서번호 37, 1쪽) 등이 포함되었다. 군인담당관이 받은 편지와 전화 문의의 수는 총 324개로 그 중 대다수는 재정적인 문제와 직업 전망과 관련된 우려가 포함된 것이었다.

제2절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1990년 7월 15~16일 이틀 간 코카서스에서 열린 고르바초프와 헬무트 콜의 회담이 독일 통일과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실제 이 회담을 통해 통일로 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통일된 독일이 실질적으로는 영토가 확장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나토의 회원국으로 남아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나아가 통일된 독일의 병력은 최대 370,000명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코카서스 회담의 결정사항은 동독과 서독에게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먼저 서독 연방정부와 연방군에게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확실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결국 통일독일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군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군대는 나토 회원인 연방군이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반면 이 회담의 결과는 동독 정부와 인민군이 이미 갖고 있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켜 주었다. 통일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누가 연방군으로 인수될지 그리고 인수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인민군의 군인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제출된 항의서나 의견들을 통해 잘 볼 수 있다. 동독 국방부는 1990년까지 매년 약 2,500에서



3,000건의 항의를 접수 처리하였다. 반면에 1989년 10월부터 1990년 5월 사이 약 7,300건의 항의가 접수되었다.(문서번호 16)

우리는 여기서 당시 소련이 통일독일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독의 영토에는 20개의 소련군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소련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기에 동독의 개혁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독 내에서 소련군을 대하는 분위기가 1990년 5월부터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이 소련군에 의한 다양한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를 고발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소련군에 반대하는 시위, 나아가 소련군 비행장의 활주로를 점령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새로이 선출된 민주적인 동독 정부의 지도부는 자신들이 시민운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운동을 응원하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런 시민운동이 “2+4 회담” 성사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려 섞인 눈으로 보았다.

통일과정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의식한 서독 정부는 고르바초프를 위해 저액의 차관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에게도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90년 7월 1일에 화폐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동독에 거주하던 소련 주민들에게도 동독 주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동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그들이 소유하였던 동독 마르크를 2:1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로 교환할 수 있었다. 단지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화폐·경제·사회 통합이 실현된 후부터는 소련군 서부군단 또한 관세 면제, 다른 일반 법규 그리고 건축법 및 환경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동수(同數)의 양쪽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재법원이 구성되어 “양측에서 각 한 명

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양 중재인은 또 다시 중재법원의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⁹

헬무트 콜과 고르바초프의 코카서스 회담과 2+4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는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 서부군단의 본국 송환 규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 소련군 병력과 화폐통합

동독에 주둔하였던 소련군 서부군단 역시 1990년 7월 1일에 실현된 화폐통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소련군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화폐교환율과 그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이었다. 동독의 최고인민회의는 1990년 8월의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군 서부군단의 보급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문서번호 44, 문서번호 63) 특히 동독의 마르크를 서독의 마르크로 교환하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서부군단이 갖고 있는 많은 금액을 고려할 때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소련군 군인 개인이 동독의 야전은행에 유치해 두었던 동독의 마르크는 1:1의 비율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던 것이다.

소련군의 철수문제가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동독의 군축국방부는 육군대령과 기술적인 문제를 관장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하여금 실무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소련군 철수 준비과정에서 업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실무팀은 이 과정에서 동유럽 이웃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철수한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특히 체코에서의 경험을 통해 양측의 인사들로 구성된 혼합 위원회에 서로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⁹ Ablaß, Werner E. 1992. *Zapfenstreich. Von der NVA zur Bundeswehr*. Düsseldorf: Kommunal Verlag, 113쪽.



수 있었다. 그래서 동독의 군축국방부는 통일 이후에 소련군의 철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연방의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그에게 다른 연방부처 뿐만 아니라 소련 측에 대해 충분히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문제를 두고 동독의 군축국방부와 서독의 국방부 실무자급 회의가 본에서 열렸고 나중에는 연방군과 소련군 서부군단의 사령부 간에 연락참모부가 설치되었다.

동독 군축국방부 실무팀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경험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던 이유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독도 체코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법률상으로 볼 때 군부대와 시설물의 인수 시점에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였다.
- 각 전문부처가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모두 국방부로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었다.
- 양측의 신뢰 부족과 갈등 해결 능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언어, 사고방식, 계급 차이)
- 재정적인 측면에서 소련군은 무기의 암시장 유통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했다.
- 기존 건물 등기부나 목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 측의 군 인사, 실무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체코슬로바키아·소련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동으로 수문지질학적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비용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염제거비용은 소련이 각각 부담했다.
- 잔여 탄약과 불발탄 발굴에 대해서는 체코슬로바키아군이 책임을 지기

로 했다.

2.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의 탈퇴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은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탈퇴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밀유지(암호, 해독, 비밀 자료, 전략 구상) 문제 때문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동독 인민군으로부터 해고되거나 스스로 전역한 군사 전문가나 기밀정보 소지자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의 군사정보를 포함한 자신의 지식을 외국의 보안회사에 넘길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 1990년 9월 24일자 회의록에는 인민군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문서번호 87) 이 회의에서 동독은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모든 위원회에서 탈퇴한다.
-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한 모든 지불을 정지한다.
- 동독과 바르샤바조약기구 사이에는 재정문제를 포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요구나 의무 관계도 없다.
- 소련에서 생산된 암호화 기술과 특수 무기를 이양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소련과 체결한 협정 혹은 의정서에 따른다.
-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지도기구들로부터 받은 모든 문서는 반환하거나 지도기구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파기한다.
- 동독은 이 문서의 내용을 제3국에 제공하지 않는다.¹⁰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탈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 동독

.....

¹⁰ 이와 관련 당시 인민군 참모총장이었던 테오도어 호프만(Theodor Hoffmann) 제독이 저술한 책의 내용이 흥미롭다. 그는 책에서 당시 리히터(Ekkehard Richter) 연방군 장군(인민군 내 연락반총지휘관)에게 동독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의 목록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들과 체결한 수많은 조약들이 무효화되었고 그로 인해 범칙금을 물어야만 했다. 이 범칙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동독은 소련에서 구입한 약 3억 마르크 상당의 “민감한 기술”을 돌려주어야만 했다.(문서번호 60, 7쪽)

제3절 인민군과 연방군의 통합

인민군과 연방군의 통합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성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승전 연합국이 독일에 대해 갖고 있는 유보권을 포함한 이들의 지위를 고려해야만 하였고, 주변 이웃국가들이 중부유럽의 통일독일이라는 강력한 국력을 지니는 국가가 다시 탄생하는 것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자기는 독일을 워낙 좋아해서 두 개의 독일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는 것은 통일과정의 에피소드로 잘 알려졌다. 그리고 나아가 동서독 간에 지속적인 소통과 왕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군과 인민군은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게다가 45년 동안 적대관계에 서 있던 두 군대가 하루아침에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도 없었다.

동서독의 군대에 내려져 있던 접촉금지 명령이 해제된 것은 1990년 1월의 일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동서독의 군대 간에 방문이 시작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에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 주관 군사교리에 관한 세미나는 연방군과 인민군 장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실제로 서독의 뵘머(Willy Wimmer) 연방국방부 차관과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인민군 장군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양측 군부대를 교차 방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만남은 점점 더 밀도가 높아졌고, 점점 더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양측 국방부 대표 차원에서의 일차 실무회담은 1990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서독에서 개최되었다. 장군 차원에서 진행된 2차 실무회담은 1990년 3월 27일과 28일 사이에 동독의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들은 서독의 연방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연방국방부는 1990년 여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여러 기본 방안들의 틀을 만들 수 있었다. 연방국방부의 차관 갈과 군축국방부의 차관 아플라스 사이에 총 16차례 회의가 열렸다. 양측의 국방차관이 주도하는 공식 회담은 5월 4일 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1990년 2월부터 그때까지 양측의 회담은 비공식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앞으로 개최될 2+4 협상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2+4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양측 군대 간의 회의가 공식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국방차관 회의가 열린 하루 뒤에 5월 5일 본에서 2+4 참가국 외무부 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양측 국방차관의 회의는 국방장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만남이기도 하였다. 양측 국방장관 슈톨텐베르크와 에펠만은 1990년 4월 27일 쾰른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그것은 에펠만 장관이 인민군 지도부와 만나기 전에 먼저 서독의 국방장관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에펠만 장관은 5월 2일에 열린 사령관 회의에서 인민군 사령관을 처음 만났다. 동서독 국방장관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장관들이 논의해야 할 내용에 관한 메모와 회의 내용을 요약한 문서가 작성되었다.(문서번호 15, 문서번호 95) 이 문서를 보면 동서독 내의 변화 외에 소련과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동향과 입장이 지속적인 고려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모임의 제반조건이 변하였는지 잘 볼 수 있다. 1990년 4월의 첫 만남에서 양측은 군 통합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서히 접근해도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아직 갖고 있었다. 에펠만 장관은 쾰른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에 동독이 체결한 조약에 따른 군사적 부담을 점차로 축



소할 의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나아가 인민군을 감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의결, 다시 말해 첫 번째 비엔나 협정을 언급하면서 인민군 병력을 현재 168,000명에서 약 100,000명으로 감축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동독 과도정부는 인민군 병력을 감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1990년 10월 3일에 연방군으로 인수된 인민군 병력은 총 90,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동독에서 과도기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통일 이후 군대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인민군의 약 10%만이 연방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컸었다.

동서독 군대 지도부가 만나기 시작한 초기 단계는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고 소통을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오해도 많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공감대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 접근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태도가 앞으로 2+4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고 소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남아도 좋다고 동의한 것은 1990년 7월이 되어서였다.

에펠만 장관과 슈톨텐베르크 장관은 양측 군대가 서로에 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군과 인민군 군인 간의 업무 상의 그리고 업무 외의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은 1990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문서번호 23) 독일 통일과정에서 행정체계를 구축할 때 동서독의 각 지역과 도시 그리고 연방주 단위에서 체결된 자매결연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연방군과 인민군의 부대 단위 또는 업무단위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이 기본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공동 여행을 조직하거나 스포츠와 문화행사 또는 시민교육 행사 또는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는 것 등이 제안되었다.

1. 소통 및 정서적 이해의 부족

분단이 지속되던 시기에 서독 연방군과 동독의 인민군 사이 강한 이질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접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연방군과 인민군 모두 서로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고,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접촉이 시작되었을 때 접촉하는 개인이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990년 3월 말에 연방 국방부가 동독 군축국방부에 파견한 프리트헬름 크뤼거-슈프렐렐(Friedhelm Krüger-Sprengel) 국장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신임 에펠만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자기 사무실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의 임무는 서독 연방국방부 구조를 모델로 군축국방부의 조직 및 구조 개편과 관련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긴장상황이 연출되었고, 크뤼거-슈프렐렐 국장은 결국 5월 초에 다시 서독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를 통해 정보, 정서적 이해력, 소통의 부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컨대 동독의 연대와 서독의 대대 사이에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통일과정 초기에 동독과 서독의 군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지식의 수준도 더 높아져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히 유럽 주변 국가들이 독일로 인해 겪었던 부정적인 역사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자신의 운명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다. 특히 소련을 비롯한 폴란드와 같은 이웃국가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2. 협력의 시작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동서독 국방부 장관의 첫 공식 접촉은 1990년 4월 27일에 있었고, 언급한 것처럼 첫 차관급 회담은 1990년 5월 4일에 서독 수도 본에서 있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심적인 사안은 동서독 문제였지만, “2+4”의 틀도 당연히 고려해야만 했다. 양측은 논의 주제를 행정, 법, 예산, 무기와 물자의 구조 등을 하나로 묶고 안보정책을 다른 한 영역으로 정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각각의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0년 6월까지만 해도 연방군과 인민군의 공동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아직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문서번호 25) 이러한 상황이 연방군이 인민군을 인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막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1989년 11월/12월에 연방국방부 내에서 군 구조에 대한 비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비밀논의에 참여한 사람은 국방장관, 연방군 총감찰감¹¹ 및 몇몇 차관 등으로 서독 연방국방부 내 소그룹이었다.

그 후에는 “외교 및 안보정책 협력”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실무팀이 구성되었다. 이 실무팀의 논의 결과물은 구상안으로 정리되어 1990년 2월 7일 구성된 내각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당시 미래의 기본 여건은 불확실했지만, 1990년 2월 이후 실무팀 논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전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독일에 군대는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1국가 1군 원칙). 둘째, 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한다. 셋째, 통일독일은 NATO 회원국이 된다. 넷째, 구 동독 영토에는 NATO군이 주둔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는 당연히 기밀사항이었다. 왜냐하면 국제협상을 위협에 빠뜨

¹¹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 연방군의 최고 직책으로 장군(4성)이다. 연방국방장관과 연방정부의 자문 역할을 한다. 총감찰감은 국방의 전체적 구상의 개발과 수행에 책임을 지나, 총 지휘권을 갖지는 않는다. 연방군 통수권은 평시에는 연방국방부 장관이, 전시에는 연방총리에게 있다.

리지 않기 위해 서독의 연방정부가 이와 유사한 사항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독 연방정부와 연방군 측의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였던 것에 반해 국제사회의 기본 여건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했다. 1990년 6월 12일만 해도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독일이 바르샤바조약기구와 NATO 모두에서 준회원이 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1990년 6월 26일 연방국방부 차관이 슈트라우스베르크 소재 동독 군축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각 군 참모총장들(Chefs der Stäbe)이 포함된 실무팀이 구성되었다. 이 실무팀의 과제는 실무를 위한 제반조건을 확정하고, 인민군 혹은 그 후속 군대 구조 구축을 위한 제안서 및 시간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실무팀은 연방군에 의한 인민군의 인수와 관련된 협의가 내용적으로 199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화폐통합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진행되던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의 틀과 그 결과를 고려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서 동독 정부는 통일조약의 협상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그에 대한 예가 아플라스 국방차관이 통일협상의 동독 쪽 책임자였던 귄터 크라우제에게 보낸 편지와 기본입장에 관한 문건이다.(문서번호 94)

인민군이 취한 조치들은 대부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 인민군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하였고, 인민군의 구조개혁 계획들이 서독 연방군과 합의 하에 만들어져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군축국방부는 국경수비대를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동독의 내무장관의 방안을 지지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군축국방부로서는 그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서독 국방부와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문서번호 41)

인민군과 연방군의 협력을 위한 기본틀은 1990년 6월 1일자로 발효된 기

본지침을 통해서야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 기본지침은 두 군대의 협력 분야를 더 세밀하게 밝혔을 뿐 아니라, 금지된 행위도 명시하고 있다.(문서번호 22) 1990년 7월 중순에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콜 총리가 체결한 기본원칙합의(Grundsatzentscheidung)에 따라 연방군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조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문서번호 43)

서독의 연방국방부가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지만 실제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콜 총리의 코카서스 회담 이전에 이미 인민군 해체와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 편성에 대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리고 1990년 8월 중순에는 이를 지휘할 인물로 연방군 쉘봄 장군과 쉘벤 장군을 임명했다. 연방국방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운 사령부는 연방군 장교 및 부사관 240명, 구 인민군 장교 및 부사관 360명, 민간인 2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인수 작업을 위해 9월 말에 연방군의 장교와 부사관 1,200명을 선발하여 10월 4일 이후 신 사령부와 구 인민군 1,500개 부대 및 부서의 핵심 업무분야에서 핵심인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3. 군축국방부 내 연방군 연락참모부

1990년 7월 이후부터는 인민군의 실무팀이 정기적으로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했다. 8월에는 연락참모부가 업무를 개시하고 인민군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양측 국방장관 에펠만과 슈톨텐베르크 간의 제3차 회의에서 인민군 내에 연방군의 연락참모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문서번호 50) 이들은 인민군의 실무팀과 협력하도록 되어 있었다.

연방군 연락참모부는 8월 20일부터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위치한 군축국방부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연락참모부의 인원은 민간인과 군인으로 구성된 약 20명으로, 이들은 연방국방부와 연결하는 두 개의 직통선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 연락참모부 인력들

은 겨우 이틀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 인민군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연방국방부 칼 차관은 이들의 업무배정 등에 관한 인사지침을 마련해서 전달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사항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있던 연락참모부는 어디까지나 군축국방부 내 “손님”이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했다.

- 연락참모부는 어떠한 충고도 하지 않는다.
- 연락참모부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연락참모부는 자료를 수집한다.
- 연락참모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연락참모부 소속 인원 중에 9명의 장교가 동부 지역 즉 동독에 가족 또는 친지가 살고 있거나 개인적인 기억을 갖고 있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에는 약 2,000명의 연방군 장교와 부사관이 자발적으로 동부 방위사령부로 지원하여 갔다. 그 중의 대부분이 동쪽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

1990년 8월 26일에 연락참모부가 연방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인민군 실무팀이 협조할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민군 지도부가 연락참모부에게 당시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고 전한다: 1989년 11월부터 1990년 2월까지 불안감이 지배적이었다. 그 후에 1990년 2월 초에서 8월 초까지 일종의 안정기가 찾아 왔고 이어서 일자리의 불확실성과 대규모 해고로 인해 상황이 심각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군인들은 정치지도자들이 사회정치적인 조치를 통해 그들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요구한다.”(문서번호 60)



4. 인민군 군인의 인수와 지속적인 고용

1990년 통일 당시에 인민군 소속 인원들에게는 그들이 연방군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분명하였다. 장군들과 정치장교들은 인수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들 중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인수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모든 인민군 소속 군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자신의 직업적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할 수 있었다.

헬무트 콜과 고르바초프 간의 코카서스 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 1990년 7월 13일만 해도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장관은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병력을 6만 명 정도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 8월 4일에는 신연방주 병력으로 5만 명 선을 이야기했으며, 그나마 인민군 인력의 비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1990년 9월 10일, 슈톨텐베르크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독일연방에 가입하게 될 지역에 약 5만명의 군인을 주둔시켜야 할 것이다. 그 중에 25,000명은 직업군인 또는 기간제 군인으로 그리고 25,000명은 의무복무병이 될 것이다.”(문서번호 80, 3쪽)

그는 나아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서방 승전연합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 부대 규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에 독일 영토에 주둔한 (이들 승전연합군의 규모가) 약 150,000명에서 170,000명이 될 것이다. 이 규모는 우리의 안보정책을 위한 수요에 부합하는 것이다.”(6쪽)

이러한 예측은 나아가 1990년대 후반에는 독일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모두 철수하게 되지만 서방의 연합군은 그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독일에 주

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슈톨텐베르크가 독일의 안보정책을 위해 연방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을 때 동독 인민군 소속 군인들의 다수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 인지는 그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인민군 소속 군인들 중에 몇 명이 장기적으로 연방군에 인수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대충 돌려서 표현하였다.

“인민군 중에 많은 수의 군인들이 연방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3쪽)

1990년 8월 16일에 서독의 뉴스통신사(Deutsche Presse-Agentur : DPA)는 인민군의 변화 특히 내부의 분위기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우려 섞인 보도를 하였다.

에펠만 장관에 따르면 원래 170,000명에 달하였던 인민군의 규모가 1990년 여름에 이미 약 98,00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는 통일된 독일의 총 병력 370,000명 중에서 50,000명 또는 최대 60,000명 정도는 구 인민군 소속이었던 군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문서번호 54)

이 시기에 동독의 군축국방부나 인민군 지도부 모두 연방군에 인수될 수 있는 인민군의 구체적인 숫자에 관해 예측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였다. 그렇지만 본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원하는 인민군 소속 군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 필요성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원하는 정확한 자료 또는 확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해 동독 군축국방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좋은 예가 1990년 9월 6일 에펠만 장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여기에서 에펠만은 고르바초프와 콜의 1990년 7월 코카서스 회담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당시 인민군 내부에서 자주 논의되던 의문사항들을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문서번호 73)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은 이 시기에 인계될 수 있는 인력 규모로 5만~6만 명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인민군 장교와 부사관급은 자신들이 인계될지, 인계된다면 그 조건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민군의 직업군인들이 민간시장에서 직장을 얻기가 아주 힘들 것이라는 점이었다.

인민군 중에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독일 연방군에 인수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정보가 난무하고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추진되면서 인민군 내부에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런 정책의 한 예가 1990년 9월 연방군 기지 푸르스텐펠트브루크(Fürstentfeldbruck)에서 280명의 인민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이었다. 여기 참가한 인민군 장교들이 연방군으로 인수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래 연방군에서의 활용을 위한 양성과정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인민군 군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인민군 내에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경이롭게 보인다. 물론 그런 돌발 상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인민군 참모총장이었던 호프만 제독은 1990년 9월 초, “오늘 밤에 우리가 나간다. 탱크가 나올 것이다.”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무기와 탄약 관리를 위한 추가적 안전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대량해고를 앞두고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인민군 내에서 일부가 쿠데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군 지도부가 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서번호 76)

1990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그나마 정치장교와 국경수비대, 인민군 장군

과 제독은 연방군에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들 중 5명은 10월 3일 이후에 민간 고문 자격으로 연방군과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그로서 인민군 소속 민간 군무원, 국경수비대¹², 민간방위대원들 중에서 최소 17,500명이 새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들을 위해 전환보조금 지급과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했지만, 이를 위한 자금도, 이들을 교육할 장소나 교육기관도 없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늦어도 1990년 말이 되면 약 8,020명의 군인 및 민간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1990년 9월 7일 군축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여군들이 해고되었다.(문서번호 79) 그러나 여군 중에서 위생장교로 근무하는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로 해고되지 않았다. 해고된 여군들에게는 군의 행정을 담당하는 민간인으로 다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많은 수의 여군들은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절하였다.

군축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인민군, 국경수비대, 민간방위대 소속 장교, 견습사관(Fähnrich)¹³, 부사관급 직업군인 중 1990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1990년 9월 30일자로 해고되었다.(문서번호 51) 군축국방부가 원래 계획한 것은 50세를 해고 상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었지만, 인민군

.....

¹² 국경수비대의 해체와 인수에 관해 언급할 때에는 어느 시기의 어떤 국경수비대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통일 이후 국경수비대 해체 과정을 총괄하였던 롤프 옥켄(Rolf Ocken) 장군은 자유대 연구팀과의 인터뷰에서 동독 국경수비대의 인원 중에서 아주 적은 수만 통일 후에 국경수비대에 인수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연방의회문서(문서번호 100)를 보면 동독 국경수비대 소속 인원 총 4,650명 중에 4,040명이 통일 이후 동부 국경수비대로 인수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옥켄 장군의 기억력이 감퇴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동독의 국경수비대와 연방의회의 1991년 자료에 언급된 동독 국경수비대가 동일한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독 국방부가 1990년에 인민군의 개혁, 즉 군축을 시작하였고, 이틀에서 국경수비대도 개편되었다. 그때까지 국방부 소속이었던 국경수비대를 서독의 국경수비대처럼 내무부 소속으로 전환하고 인원도 40,000명이었던 것을 대폭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4,650명이 남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국경수비대의 인원 감축에 관해 이야기 할 때 1990년 7월 이전의 국방부 소속 국경수비대의 인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내무부 소속의 국경수비대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¹³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사이의 급.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개입하여 이를 바꾼 것이었다. 하지만 퇴직 상한연령을 5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군 군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1990년 12월 31일까지 전역하면 제공되는 조기정년연금과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기 전역을 신청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직전에 연방군으로 인수될 인민군 군인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발표되었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을 하였다. 통일 이후 최종적으로 인민군 중에서 연방군에 인수된 사람은 약 10,000명 이었다. 통일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50,000명 정도는 인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망의 정도가 아주 컸다. 실제로 1990년 9월 6일에 서독 연방의회 다수당이던 기민당/기사당의 원내 국방정책 연구회 회장이 작성한 문서에도 인민군 중에서 몇 명이 연방군으로 인수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50,000명 정도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장기근무자와 의무복무병이 각각 50% 차지할 것”이라고 답하였다.(문서번호 74)

한편 서독에서는 통일독일의 연방군으로 인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인민군이 한 명이라도 연방군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우베 로네부르거가 1990년 5월 중순에 바로 그런 발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비록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통일 이후에 연방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인민군 군인을 해고하는 것은 더 큰 맥락에서 당시 동독의 경제와 연관시켜 고려되어야 할 문제였다. 1990년 7월에 동독에는 이미 약 985,000명의 실업자, 단기근로자 그리고 실업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수치는 8월 말, 즉 화폐통합이 이루어지고 8주 후에는 1,34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인민군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전환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동독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선 실업자군에 인민군으로부터 해

고되는 사람이 추가되는 것은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연방군의 규모가 370,000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인민군을 대거 인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인민군을 위한 총괄적인 해결방안이 정말 없었는가 하는 점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독일의 기본법은 정치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민군 장교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하에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둘째, 1955년에 창설된 연방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개인적으로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을 선서하고 전쟁에 참가하였던 독일군 장교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인사문제는 단지 독일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인민군은 1972년부터 외국 군대 소속 군인의 교육을 담당해 왔다. 1990년 7월 말에 13개국에서 온 620명의 군인들이 동독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5개국과 체결한 22개의 정부협정이 있었는데 이 협정은 동독 외무부를 통해 해지되었다.

제4절 외국과 체결된 계약의 파기

동독의 군축국방부는 군인을 해고하는 문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자를 파악하여 판매하는 문제까지 해결해야만 했다. 이 모든 일을 1990년 4월부터 9월 사이의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7월 23일에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동독이 소련으로부터 군사 장비

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것을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미 1990년 5월부터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동독은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 구입하고 이미 대금을 전부 지불한 군사 장비를 소련으로 다시 돌려보내야만 하였다. 물론 운송비용은 동독이 부담하였다. 동독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독이 보유한 군사 장비를 재수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탱크 T 72에 관심을 보였다.

군축국방부는 총 23억 동독 마르크(약 12.5억 서독 마르크) 상당의 군사 장비 구매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파트너의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의 상황이 급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동시에 동독은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계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동독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만 하였다. 그것은 사실 해결 불가능한 과제였다. 1990년 9월 초에 군축국방부는 한 달이 있으면 통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0년 후반기에 인민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 1990년 9월에 작성된 군축국방부의 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1990년 7월 22일에 결정한 예산안에 의거하여 1990년 8월 1일자로 발효된 전체적인 계약해지와 군사기술장비 유지용 부품제공을 정지하는 조치를 통해 인민군에 제공하기로 한 1990년 6월의 계획은 최하 수준으로 낮춘다.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6,600 마르크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1990년 6월의 계획은 삼분의 일 수준으로 줄인다. 각 항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과 수입계약을 체결한 것 중 약 9,200,000 마르크 상당의 훈련용 헬리콥터 Mi-24 한 대를 포함하여 2,410만 마르크 상당의 금액을 해지할 수 있었다. 동독정부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체결한 모든 조약을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지 통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파트너 국가의 통상기구들에 의해 단호

히 거부되었다.”(문서번호 78)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들과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양도받은 비행기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문제 그리고 니카라과에 군사장비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도 있었다.(문서번호 19) 동독은 인도, 예멘, 쿠바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수출계약도 맺었다. 동독 통상청이 1990년 8월 7일에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그 금액이 총 7,800만 마르크였다.(문서번호 42)

외국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손해 그리고 동독의 일자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외국과 거래를 하던 동독 전역에 흩어져 있는 1000여개의 기업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출계약 뿐만 아니라 수입계약도 해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 파트너 국가들도 동독에 수주한 계약을 파기해도 좋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1990년 7월 말에 에펠만 장관은 동독이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계약을 맺은 것을 이행하는 것이 동독에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동독이 “특수 품목을 수출하기로 체결한 계약도 파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다. 그 금액이 약 4억 마르크였다.”(문서번호 67)

더욱이 연방군이 동독의 기존 무기를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군축국방부는 무기매각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문서번호 55) 그렇기 때문에 동독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경제조정팀”을 구성하여 매각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였다. 매각 과정은 서독의 연방국방부와 공조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독일 연방정부의 동의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0년 8월 16일에 에펠만 장관은 명령 31호를 통해 매각을 통해 군수물



자를 처리하기 위해 그때까지 도입된 모든 조치를 더욱 신속히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물론 매각과정에서도 서독을 준거점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무엇이 전쟁무기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그에 해당하는 통제법에 나와 있는 전쟁무기 리스트였기 때문이다.(문서번호 52) 전쟁무기와 관련된 수입 수출 재수출 계약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국방부 차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했다.(문서번호 61)

이 과정에서 일부는 물물교환거래의 형태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내무부와 군축국방부가 물물교환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동독 내무부에 소속된 인민경찰이 대형 병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내무부는 국경수비를 위해 헬리콥터가 필요했는데, 군축국방부는 헬리콥터가 있었다. 그래서 10월 3일 공식 통일이 되기 직전에 병원과 헬리콥터에 대한 물물교환거래가 이루어졌다. 병원 및 병원 근무 인력은 일단 군축국방부 자산으로 처리되었다가 추후 연방군에 인수되었다.

1990년 여름이 되면서 동독이 납품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계약을 변경하든지 간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군수물자의 파기, 그리고 탄약 관리 및 폐기를 위한 비용은 총 35억 서독마르크였다. 건물, 통신, 인프라를 포함한 인민군 기지를 연방군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데에는 최소 100억 유로가 필요했다.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 부분은 군수물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기술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 내의 군축에 관한 협상 때문에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1989년 1월 15일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 후속 회의의 최종결정에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재래병력 축소에 관한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소요된 비용의 전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에 대해 연방국방부는 1990년 9월에 작성된 한 보고서에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인민군 장비를 축소하는 것은 그때까지 없었던 거대한 규모의 작업이었다. 비엔나 협상에 따라 지금까지 처리된 결과를 보면 대포 1,400문, 전차 1,500대, 탱크 5,000대, 장갑차 138대, 전함과 보조함 85척 그리고 탄약 100,000톤 등이다. 처리되어야 할 인민군 물자의 규모는 이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문서번호 67)

인민군의 군수물자를 처리하는 모든 작업은 인민군에 파견된 서독 국방부의 연락참모부와 협력하며 동서독의 국방부 간의 합의 하에 진행되었다.

군수물자의 처리와 같은 조치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과도적인 상황에서도 취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소련과 동구에서 기존의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소련과 동구가 생산한 무기를 판매한 예가 많이 있었다.

무기 처리보다는 비교적 덜 위험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던 것이 문서와 기타 자료를 폐기하는 작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군축국방부의 에펠만 장관은 1990년 9월 14일에 모든 폐기작업을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다.(문서번호 83) 군문서고의 과제와 조직 문제는 1988년 11월에 정해진 규정 039/201과(문서번호 2) 1990년 7월 30일 호프만 제독이 내린 지침 20/90에 따라 정해졌다.(문서번호 40)

제5절 탄약과 무기의 안전한 보관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특히 동독 내의 무기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그를 위해 에펠만 장관은 1990년 8월 30일에 장전 탄약/신관 제거 명령을 내리고, 이 조치를 9월 18일까지 종료하도록 하였다.(문서번호 65) 이 작업을 위해 100개의 장소를 지정하고 탄약, 미사일 연료, 전쟁무기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했다. 여기에 모은 물자는 연방군

이 사용할 물자, 사용하지 않을 물자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물자 등 세 종류로 구분되었다.

에펠만의 지시에 따라 100개의 장소에 탄약과 무기를 모아서 보관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군축국방부의 차관이었던 아플라스가 인터뷰에서 자신이 차관으로 있었던 동독 과도정부 하에서는 무기와 탄약 저장고에서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수 차례 강조하였지만 에펠만의 문서를 보면 당시 동독의 군지도부에서도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민군의 고급인력 중에 스스로 연방군으로 인수되기를 거부하거나 인수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이 전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당시 동독 인민군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인민군을 떠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모두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민군의 고급인력이 모두 전역하고 나면 1990년 10월 3일에 인민군의 군수물자를 안전하게 연방군으로 인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에펠만 군축국방장관은 1990년 9월 6일에 동독의 드 메지에르 수상에게 보낸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민군의 부사관에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직업군인, 기간제 군인들이 1990년 9월 30일까지 대거 전역하여 군부대 자체가 폐쇄되고 모든 종류의 무기와 로켓트 그리고 탄약고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문서번호 75)

에펠만의 이같은 우려는 다행스럽게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락참모부도 당시에 처리를 위해 수집된 무기와 탄약의 규모 때문에 놀랐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던 위험한 장소가 경비대에 의해 전문적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저장고를 둘러싼 철조망에 고압전류보안시설을 설치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독일통일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 10월 3일 후 연방국방부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서독의 규정에 따라 300여개의 시설과 저장고를 둘러싼 고압전류 보안시설을 차단해야 했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6,000명의 군인이 경비인력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문서번호 75)

군축국방부의 조치들은 정치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였다. 1990년 9월 21일의 명령 제49/90호에 따라 국경수비대가 해체된 것이 바로 그런 예이다.(문서번호 85) 국경수비대는 화폐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1990년 7월 1일부터 동독 내무부에 소속되고, 국경수비대원들의 급여만 1990년 말까지 군축국방부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축국방부는 많은 인원을 해고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내무부가 원래 40,000명이었던 국경수비대 중에서 단지 4000명만을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국경수비는 서독의 경우 경찰의 관할업무였다. 그리고 연방제 하에서 경찰업무는 각 연방주의 고유한 권한에 속했다. 동독에서도 1990년 5월 지방선거를 통해 주 단위의 행정구역이 도입된 이후 경찰업무는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각 지방에 분할되었다.

1990년 10월 2일과 3일 사이에 변경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과 그에 상응하는 준비 조치는 1990년 9월 21일에 에펠만 장관이 지시한 명령 제 48/90호에 나와 있다.(문서번호 84)

인민군의 해체는 인민군 스스로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었다.(문서번호 68, 문서번호 86) 조직관리 업무의 지속 여부 그리고 영공감시와 같이 안전보장과 관련된 임무의 계속 여부에 관한 정확하고 세밀한 지시가 내려졌다. 그리고 인민군 소유 물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드레스덴시에 있는 군사역사박물관에 보내는 작업도 이어졌다.

인수기(1990년 10월-1992년 말)

독일 통일이 완성되던 1990년 10월 3일에 사실 두 개의 독일군이 통합된 것도 아니었고 인민군이 연방군으로 완벽하게 편입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인민군의 일부만이 연방군으로 인수되었을 뿐이었다. 동독에서는 통일 이전부터 이미 개혁작업을 통해 병력을 감축해 왔다. 1990년의 과도기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군인이 탈영하였고 징집명령을 받은 청년들이 그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인민군의 병력 규모를 언급할 때에는 어느 시기의 인민군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만 한다. 동독 정부에 의해 진행된 개혁정책에는 인민군 병력의 감축도 포함되었다. 그 결과 1990년 4월 현재 약 17만 명이었던 인민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990년 10월 3일에 인민군에 남아 있던 인원은 약 90,000명이었다. 결국 연방군과 인민군의 통합 작업의 대상은 인민군에 남아 있던 90,000명이었다. 그 중에서 40,000명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의무복무병이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방군으로 인수되기를 원했던 인민군 장교와 부사관급 직업군인의 총 수는 약 50,000명이었다. 1990년 10월 3일에 이들은 일단은 모두 연방군 소속 군인으로 새로운 군복을 입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들 중 11,000명만 최종적으로 연방군에 남을 수 있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인민군과 연방군의 통합은 거의 연방군의 확장이자 동독군의 인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군

이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 주었던 이유가 군인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규율의식과 군사적 프로정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그들은 인민군으로 수행해야 했던 마지막 임무인 연방군으로의 인계 작업까지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한다. 동독에 주둔하였던 소련군의 경우와는 달리 인민군에서는 무기가 없어지거나 불법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었다고 동독의 마지막 군축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베르너 아플라스는 인터뷰 과정에서 자부심을 갖고 설명하였다.

인민군이 연방군에 인수되기 전 두 군대의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인민군과 연방군의 기대가 서로 달랐고, 양쪽이 갖고 있는 재량권도 서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인민군이 명백히 약자였기 때문에 인민군 내에 불안감과 좌절감이 팽배하였다. 당시 연방군과 인민군 모두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인수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여름부터는 동독의 인민군과 다른 무장조직 소속 인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해고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연방군에서 근무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모아졌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0월 3일 이후 실행된 조치들은 대부분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제1절 인민군의 해고¹⁴

독일통일을 거대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정치의 제반조건과 같은 것들이

.....

¹⁴ 인민군 해체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이 전해지기는 하지만 1990년 10월 3일 이후 인민군 인력을 해고하고 선택하여 연방군으로 인수한 과정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 또는 기간에 따라 해고되거나 인수된 인원의 숫자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실제로 통일의 현실을 살아가야만 했던 동독의 인민군들에게는 추상적인 정치문제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문제는 해고, 실업, 임시 고용 유지, 전환보조금, 기간제 군인으로서 보내게 되는 수습 시보 기간, 직업전환교육 등이었다.

나아가 연방군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수되는 문제를 둘러싼 정확한 정보가 일찍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군 내부에서도 개인과 가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군인들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공직자들의 연설, 토론 그리고 언론에서 언급된 수치는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한편으로는 해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군으로 인수될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적어졌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제도적인 영역에서도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연방군 역시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되었는데, 인민군의 해고 문제도 그러한 부담 중의 하나였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연방군은 구 인민군의 직업군인 및 기간제 군인 5만 명을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원만하게 해고해야 했으며, 그들이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직업전환교육도 실시해야 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결정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통일조약에서는 1994년까지 해고 및 인력감축조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나마 기술직에 있었던 직업군인들은 비교적 빨리 민간직장을 얻을 수 있었는데, 구연방주 즉 서독에서 직장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분야 종사자들은 1, 2년 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직업전환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나마 연수를 마친 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 연방군으로의 인수 대상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연방군에서 계속근무하

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 구 동독 지역의 의무복무병 약 4만 명에게는 연수받을 의무가 부과되었다.
- 연방국방부는 1990년 10월 3일부터 구 인민군 총 9만 명에 대한 책임을 인계받았다. 그 결과 이들의 봉급과 급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기 규정을 도입해야만 했다.

나아가 인민군의 장군, 제독 및 고위급 장교들을 모두 해고한 조치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실무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의 전문적인 능력의 폭이 아주 좁았기 때문에 연방군에서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자리를 찾는 것이 아주 어렵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사회주의와 계급투쟁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통일된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정한 의회민주주의와 다원주의적인 제도를 옹호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원 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연방군 종사자들이 인민군 장교로부터 명령받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벨리스호프(Wellershof) 총감찰감이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다.(문서번호 98) 그리고 구 동독의 주민들도 인민군 장군들이 아무런 처벌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연방군에서 보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인민군 장군 또는 제독 중에 자문역으로 연방군에서 단기간 근무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명도 연방군으로 인수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충분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설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절차를 보면 해고당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동독 인민군의 장군 또는 제독으로 임명받았을 때에는 그들이 동독의 국가원수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 통일 과정에서 그들에게 전달된 해고서류는 국방부 차관이 서명하였다.



통일 직후 인민군 고급장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적 차이와 같은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로 인해 연방군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방군의 군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전에 인민군 장교였던 사람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인민군과 연방군 군인들이 서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냉전이 지속되던 기간에 두 군대가 서로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한반도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니었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도 아니었다. 연방군에서 볼 때 인민군은 독재정권의 군대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서독 출신의 연방군의 장교는 일반적으로 동독 출신의 새로운 장교 동료들보다 별 것 아닌 사람으로 보았고 서독 출신 병사들은 이들을 상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반면에 인민군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아주 적었다.

고령의 장교, 정치장교 그리고 인민군 기무사 소속 인원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업무를 중지해야 했고 6개월 후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고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인민군에서 직업군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독 시스템을 지지하였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통일의 패배자라고 생각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한편 인민군 중에서 연방군에 인수된 사람들도 곧바로 서독 출신의 연방군 군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 1995년 여름이 되어서야 전 인민군 장교였던 사람 중에 몇 명이 연방군대에서 대대장으로 승진하였다. 2008년부터 전 인민군 소속이었던 여의사 한 명이 연방군의 의무병과 장군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2절 연방군으로의 인수

독일 공무원법에 따라 독일 연방군의 종사자는 공공업무 종사자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구 인민군 소속이었던 군인들이 연방군에 정식으로 인수되면 그는 통일독일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연방군으로 인수하는 과정에도 독일의 공무원 임명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민간 공공 부분에서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3년의 수습기간(Beamte auf Probe)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 인민군 소속인원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구 인민군 구성원 중에 연방군에 인수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2년 기간제 군인으로 연방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2년의 기간은 해당자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모든 구 인민군 소속 군인들에게 일단 2년 기간제 군인으로 연방군에 인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11,700명의 장교와 12,300명의 부사관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육군의 경우(해군과 공군 제외) 1991년 4월까지 약 4,000개의 신청서를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육군에서 최종적으로 인수될 수 있는 숫자는 1,150명의 직업군인, 700명의 기간제 군인 그리고 600명의 전문기술병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심사절차를 거치고 난 후 실제 인수된 숫자는 862명의 장교, 425명의 기간제 군인 그리고 462명의 전문기술병이었다. 그것은 국방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다.

1990년 10월 3일에 연방군으로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 인원 90,000명 중에 최종적으로 연방군에 남을 수 있게 된 11,000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스스로 전역하거나 해고되었다. 구 인민군 중 1994년까지 자발적으로 전역한 장교는 11,000명이었다. 나머지 인민군 장교 중 5,600명이 연방군에 정규직으

로 지원하였지만 이들 지원자 중에서 3,200명만 먼저 고용되었다. 그나마 이들 중에서 1,400명은 비밀경찰 슈타지에 협력한 전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다시 해고되었다. 그리고 인민군 장교 중 600명이 부사관으로 계급이 강등되는 것을 감수하고 연방군으로 인수되었다.

이들에 대한 선발심사는 15인으로 구성된 연방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업무는 1955/56년 연방군 건립 당시 대령 이상 지원자에 대해 실시했던 “인사평가위원회”의 경험을 모범으로 삼았다.

인민군의 의무복무병을 인수하는 문제는 행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의 연방제도의 특성과 관련 있는 재정적 문제도 발생했다. 서독에서는 의무복무병의 급여비용을 연방군이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1990년 10월 신연방주 내의 사회복지부서들이 아직 제 기능을 못했으므로, 과도기의 의무복무병 급여는 연방군이 담당했다.

병력으로만 보면 독일은 통일을 통해 분명히 평화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일 이후 20년 사이에 독일 군인의 수가 약 62% 감소하였다. 다른 수치도 통일과 평화가 왜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1989년에 서베를린과 동독 영토 내에 독일군과 외국군을 합해서 약 600,000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다. 1994년에 동일한 지역에는 58,000명의 연방군만 주둔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 연방군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국제협약의 일부였다. 그러나 인민군 군인 중에 많은 수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방군에 인수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렇지만 인력감소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는 충족될 수 없었다. 인민군의 인력 감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때로는 상이하기까지 한 정보가 혼재하고 있다. 특히 감소된 인력에 관한 수치가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다양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러한 수치가 언제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변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한 개념정의를 사용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연방군에서 “계속고용자”라는 명칭으로 분류한 그룹이다. 계속고용자(Weiterverwender)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특정한 과제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연방군에서 계속고용자로 분류되어 일단 인수된 사람들은 실제로 대부분 1계급 강등되어 인민군의 해체업무에 투입되었고 그 업무가 종료되면 전역하여야 하였다. 통일 당시에 인민군에는 23,354명의 장교가 있었다.

제3절 연방군에서의 계속고용

인민군의 인력감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 감축대상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누가 인수되고 누가 제대해야 하는지, 어떤 과도기 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될지 그리고 연방군으로 인수되는 경우 계급강등이 어떻게 실행될지 아무 것도 분명한 것이 없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아마도 당시에 시간과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통일 직후 동독 사회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에게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1990년 7월만 해도 서독의 국방부 장관이 인민군 중에서 약 60,000명의 군인이 인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다. 그러나 전 인민군 병사 중에 연방군으로 인수된 사람은 최종적으로 약 11,000명 밖에 되지 않았다.

전 인민군 소속 군인을 연방군으로 인수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전문적 능력의 적합도 외에 정치적 신뢰도에 대한 심사 그리고 동독 비밀경찰과의 연루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평가는 동독의 체제에 대해 서독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유보가 아니라 개별적인 심사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했다. 물론 이런 개별적인 심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개별적인 인사기록카드가 폐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1990년 8월에 연방의회는 동독의 체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인수 문제는 “세분화된 개별심사”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문서번호 97) 이런 심사절차는 포괄적인 설문지에 대한 답변과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심사는 모든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위원회(1955/56년 연방군의 설립기에 모든 대령급 이상 장교들의 심사를 담당했던 연방국방부 산하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사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신청자에 대한 개별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연방군의 군사정보 비밀정보기관과 연방정부의 동독 비밀경찰 문서청에서 서면으로 문서를 검토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한 부사관의 경우 90%는 인수되었다. 예비심사를 거친 1,740명의 육군 장교들은 다음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고 1,74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1%가 거부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정당과 노조, 경제단체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이루어졌고 연방군에서 “전문적인” 능력에서 적합도를 심사한 후에 의도적으로 NGO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간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 나중에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새로운 자료를 통해 심사절차에서 누군가 거짓을 말하거나 또는 부분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그것은 즉각적인 해고사유가 될 수 있었다. 즉각적인 해고의 경우에는 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이들의 해고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는 통일조약에 의해 규정되었다(부록 I, XIX장, 영역 A, 3부, 번호 1, 문단 5). 통일조약에 명시된 예외적인 해고의 중요한 사유는 특히 1. 인간의 존엄성 또는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 특히 1966년 12월 19일에 체결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서 보장한 인권 또는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인권선언의 기본원칙을 어겼을 경우, 그리고 2. 국가비밀경찰부 또는 국가안전보위부를 위해 활동했거나 그로 인

해 고용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등이다.

구 인민군 소속이었다가 연방군으로 인수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새로이 소집된 신연방주 출신의 군인들에게 정치 경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연방군 자체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군복입은 시민”이라는 연방군의 군인정신에 적응해야 했으며 영어를 구사할 능력도 갖추어야 했다. 군에서는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시민교육 세미나, 어학코스, 이직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

표 2-1 > 인민군 군인 현황/해고

인민군 군인 현황/해고	규모(명)
전시동원병력	330,000
평화시 병력, 일반 병역의무 기간 18개월	180,000
1990년 4월 현재 인민군 병력	170,000
- 그 중 경제활동에 투입된 인원	55,000
1990년 10월 3일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90,000
- 그 중 직업군인과 기간제 군인	50,000
- 의무복무병	40,000
- 민간 군속인원	47,000
1990년 10월 3일 신연방주에서 근무한 서독 연방군의 장교와 부사관급 하급장교	1,200
인민군 장교 중에 만 55세 이상인 사람은 1990년 9월 30일자로 모두 해고되었다. 1991년 1월까지 해고된 직업군인과 기간제 군인	35,000
- 그 중 자발적으로 전역한 사람	24,000
2년 기간제 군인(SaZ 2)	
- 장교 중에 신청한 사람	11,700
- 부사관급 하급장교 중에 신청한 사람	12,300
보수교육과정(Mannschaftslaufbahn) 신청자	1,000
구 인민군 소속 군인 중에서 정기적으로 연방군 정규 군인으로 인수된 사람	11,000
1998년 현재	3,900

표 작성자: Alexander Pfenning/Werner Pfenning



제4절 연방군 잔류문제와 연금문제

동독의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우가 1991년 3월에 연방의회에서 전 인민군 종사자들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다:

1990년 10월 3일에 50,000명의 인민군 장교와 부사관급 하급장교가 연방군에 인수되었고, 그 중에 현재 약 2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숫자를 약 25,000명으로 유지할 것이며 과도기 동안에 추가로 5,000명의 병사가 기간제 군인으로 근무할 것이다. 지금까지 23,000명의 전 인민군 소속 직업군인과 기간제 군인이 2년 기간제 군인으로 인수되기를 신청하였고, 그 중에서 12,000명의 지원자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통보할 수 있었다. 이 인수 작업은 1991년 4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조약에는 전 인민군 소속으로 연방군에 인수된 군인과 제대해야 했던 군인들의 사회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제대한 군인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고 민간사회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미 있는 조치는 전역한 군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과도기 수당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마지막 평균 급여의 70%를 지불하는 것과 민간직업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였다.

나아가 통일조약에는 연방군으로 인수되지 못한 인민군 군인이 민간직업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동지원법 규정의 혜택, 특히 직업교육과 재교육, 이직을 위한 직업전환교육의 혜택을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연방군이 제공하는 직업지원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인민군 제대군인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지원혜택과 법적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주기 위해 많은 강연을 준비하였다.

각 연방주의 노동청과 직업지원소는 신연방주가 독일연방에 가입한 후 몇 달 사이에 특히 전 인민군 군인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모두 잘 활용되었다.(문서번호 99)

연방정부도 1990년의 과도기에 이미 불확실한 직업적 장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년 기간제 군인으로 남게 되는 군인들 중에서 누가 연방군의 정규 직업군인으로 인수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간제 군인으로 2년만 근무할 수 있을지 분명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로 1991년 5월 13일에 국방부 차관 빔머는 연방의회회의 질의에 “독립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언급하면서 연방군 자체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민군 장교가 장기적으로 인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미약하다고 답변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전 인민군 병사로서 제한된 시간 동안 기간제 군인으로 연방군에 인수된 군인들이 안정된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직업군인으로 인수될 수 있을지 아니면 2년 기간제 군인으로 근무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조속히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부사관급 하급 장교와 사관후보생 그리고 장기근무병에게는 6개월의 근무기간을 마치면 2년 기간제 군인의 신분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었다. 이들 아직 젊은 병사들의 경우 오랜 테스트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문서번호 99, 문서번호 102, 20쪽)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장교와 준위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들의 인수 또는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제는 군인법 3조에 따라 개별 심사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 중에서 2년 기간제 군인으로 연방군에 남게 된 사람의 경우, 빨라야 1992년 8월/9월이 되어서야 최종적인 결정을 통보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동부 연방군의 새로운 조직정비가 1991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연방군인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그가 연방군에서 맡은 새로운 직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인민군 장교와 상사 중에서 1차로 2년 기간제 군인으로 연방군에 남게 된 사람의 경

우, 그들의 복무기간은 1993년 1월 말에 종료되게 된다. 그나마 많은 경우에 2년 기간제 군인으로 연방군에 인수된다는 결정이 1991년 1월이 지나서 내려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2년 기간제 군인으로 복무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간과 그들의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직업군인으로 잔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예산상의 조건 때문에 당시 준위 중에서 2년 기간제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인성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연방군의 병사로 연장근무하거나 직업군인으로 인수되었다.

그렇지만 2년 기간제 군인으로 근무하던 장교의 수와 실제 연방군이 필요로 하는 장교의 수가 크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복무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년 기간제 군인으로 남은 장교의 3분의 2 정도가 최종적으로 연방군에 인수되었고, 이들은 연방군의 직업장교로 인수되기 이전에 “독립 위원회”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문서번호 99, 문서번호 102, 20쪽)

인민군과 달리 국경수비대 소속원 중에서 계속종사자로 인수된 수가 많다. 그들의 업무영역은 화폐통합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었다. 국경수비대와 관련하여 에펠만 장군은 명령 제 10/1990호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동독과 서독의 국가조약이 발효되는 것과 관련하여 서독과 서베를린과의 국경은 1990년 6월 30일 24시를 기해서 국경감시와 국경 통과시 실시하는 통제를 중지한다.”(문서번호 96)

1990년 10월 3일부터는 동서독 간의 국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부터 동독의 국경수비대 소속원 약 3,600명 여권검색원 1,050명이 연방국경수비대에 의해 잠정적으로 인수되었다. 1991년 초에는 자격심사 절차를 거쳐서 이들 4,650명 중에서 4,040명이 동부국경수비대로 최종적으로 인수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1991년 7월에 수습시보에 임명되었다.(문서번호

100) 이들의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5년 3월에 발효된 쉥겐협정과 2004년 5월에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국가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럽연합이 동부로 확장했을 때였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의 비자형식과 경계가 변하고 국경수비대의 업무영역도 많이 변화하였다.

최소한 독일의 병력규모에 관한 한 독일의 통일을 통한 “평화의 배당”¹⁵ 효과는 확실하다. 독일 연방군의 규모는 1989년부터 2009년 사이, 즉 20년 동안 약 62%가 감소했다.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효과는 더더욱 명확해진다. 1989년에는 베를린과 동독지역에만 외국, 독일군 총합 약 600,000명의 군인들이 주둔하였는데 1994년에는 그 규모가 58,000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2-2) 통일이 가져온 독일의 병력 규모 변화

	1989년	1990년	1991년	200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	494,000명	469,000명	476,300명	250,000명
독일민주공화국(동독)	173,100명	137,700명		

.....

¹⁵ “평화의 배당”이라는 단어는 1989년 마루타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에서 냉전의 종결 이후 군사에 과도하게 투자되어온 자본분배를 민생부문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자원을 평화목적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구조조정기(1991년-1995년)

인민군이 연방군에 인수되는 작업은 구 동독 지역에 서독의 경제 사회 정치체제가 이전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¹⁶ 체제 이전에는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법치국가 원칙을 세우는 것도 포함되었다. “가입지역”으로 불리는 구 동독지역에 이전에 존재하였던 “주”라는 새로운 지역단위가 도입되고 동시에 기초단체도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되었다.

독일의 연방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뉘어 각자 별도의 명령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신연방주에서는 우선적으로 군대의 신속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 구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동부 방위사령부 사령관”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당시 해결해야만 하는 많은 과제 때문에 과도기 규정이 비교적 유연하게 해석 적용되었다.(문서번호 49) 그렇게 마련된 과도기 규정은 인민군 병력을 해체하고 신연방주에서 연방군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탄환과 무기의 확보와 폐기 그리고 인프라 구조의 개선과 같은 영역에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많은 업무가 처리되어야 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독일의 경우 분단시기에도 서로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¹⁶ 1990년 10월 이후 연방군의 통일 노력은 문서번호 266에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과정이 시작되었을 때에 서독의 연방군이 갖고 있던 동독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동독 군대가 보유한 무기의 숫자와 탄약의 양은 과소평가 되어 있었다. 반면에 공장에서 막 생산된 의복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나, 또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분야도 있었다.

국방부 차관 빔머는 이와 관련된 연방의회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예를 들어 인민군의 다양한 의복과 장비를 연방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연방군의 외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들은 그것이 전부 소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연방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자는 연방군 물자 분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판매회사 VEBEG 유한회사를 통해 판매하거나, 계약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신연방주의 도시 탕어문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군사장비 판매회사 VEMIG를 통해 판매하고, 또는 신연방주의 지자체에 양도하거나, 나토의 방어와 물자 지원의 틀에서 도움을 준다거나 방어와 물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 또는 인도적 목적을 위해 제공할 수도 있다. 인수받은 의류를 폐기할 계획은 없다”(문서번호 115).

제1절 군사장비와 시설

인민군의 군사장비와 시설은 1990년 10월 3일자로 자동적으로 연방 소유의 재산이 되었다. 이러한 시설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서 보아야 했다.

- 무기, 탄약 그리고 연료 특히 로케트에 필요한 연료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저장 감시하는 것
- 군사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검토(예를 들어 소련군이 제작한 현대적인 군용기를 일시적으로 연방군에 수용)

- 군사시설의 현대화와 개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산출과 확보(예를 들어 건물과 군사훈련장 등)
- 군사장비의 판매 또는 기증(예를 들어 나토의 파트너나 다른 국가, 유엔의 평화유지군, 박물관)
- 물자의 폐기

병영시설, 특히 위생시설과 부엌의 상태는 아주 열악하였다. 소련군이 사용한 병영은 인민군이 사용한 병영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였다. 이 시설을 위해 신속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만 했다. 먼저 신연방주의 연방군을 위한 현황파악과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다.(문서번호 70) 인민군은 약 2,100개의 부대시설을 그리고 소련군 서부군단이 약 1,300개의 부대시설을 갖고 있었다.

연방군은 대형 장비에서 군복 그리고 군인용 식기까지 모두 합해서 173,000개 항목의 물자를 인수받았다. 1991년부터 이 물자는 연방관청으로 새로 설립된 물자저장서비스회사(MDSG)에 의해 40개의 저장고에서 저장 관리되었다. 이 비용은 1994년에 5억3천만 마르크였다.

이런 인민군의 유산으로 인해 연방정부 내에서는 재정적으로 아주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물자들의 보관관리 비용은 국방부에서 지불하였지만 판매금액은 재무부가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물자를 계획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민간회사에 판매하려고 노력하였다. 부분적으로는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물자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 되기도 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항상 비용이었고 그 결과 MDSG를 민영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비용문제 때문에 군사시설과 장비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구 인민군의 무기와 탄환이 사라진 것이 거

의 없다는 사실이다. 독일에 주둔하였던 소련군의 물자는 이와 상황이 달랐다. 많은 무기가 소련군 장비로부터 암시장에 나왔다.

제2절 통일의 완성을 위한 연방군의 노력

1993년 초까지 전 인민군 소속이었던 4,900명의 직업군인과 5,900명의 기간제 군인이 연방군으로 완전히 인수되었다. 이 숫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어서 2002년에는 총 7,000명의 전 인민군 소속 군인이 연방군에서 직업군인으로 또는 기간제 군인으로 복무하였다. 연방군 전체의 수에 비교하면 이 숫자가 비교적 적은 것이었지만, 연방군으로 이들을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형식적인 통일이 이루어진 지 1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연방의회의 민주사회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이 2002년 4월 25일에 제출한 제안(문서번호 300)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제안의 몇 가지 내용은 과장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민군 소속이었던 군인이 연방군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소외감이 이 제안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에서는 이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정치행위를 통해 분열이 아닌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적 필요와 기본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유일한 태도라는 것이 1990년 이후 행동강령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군대를 통합하는 속도와 방향이 소위 말하는 패자에게 항상 공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인민군으로부터 인수된 군인과 군속이 전체적으로 이등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급여와 연금 그리고 의료문제와 관련된 규정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통일 조약에서도 이미 드러났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두 군대를 “통일된 군대”로 통합하는 것은 인민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이 문서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두 군대는 상이한 교육과정과 인력구조를 갖고 있었다. 인민군에서 장교의 비율은 35%인데 반해 연방군에서는 9%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인적구조에 적합하도록 인민군과 연방군을 숫적으로 공평하게 감축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든 독일인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전문적 성과에 따라 모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 기본법 33조 2항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 독일과 소련 간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인력구조-모델 370,000’에 따라 통일된 연방군의 직업군인과 기간제 군인은 구 연방군에서 95%를 그리고 전 인민군 출신 5%로 구성되었다.
-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동부와 서부가 여전히 상이한 급여를 받는다. 신연방주에 근무하는 군인이 외국에 파견될 경우 그들은 파견기간 동안에 코블렌츠에 있는 육군사령부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만 “서부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원대로 복귀하고 난 후에는 다시 “동부 급여”를 받는다.
- 지금까지도 기본법의 36조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방기관의 최상위직에는 모든 연방주 출신 국가공무원이 인구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민군에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 중에 아직 한 명도 연방군 장군/제독의 직위에 오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국방부에는 신연방주 출신으로 최고위 공무원이 된 사람도 없고 군인으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
- 국가적 통일이 이루어진 지 12년이 된 지금도 구 인민군 소속 인원들은 그들의 법적 지위가 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느낀다. 국방부 장관은 그들이 외국 군대에서 “복무”하였다고 해석하고 이들에게는 예를 들어 훈장을 수여할 때에 복무규정 10/8항을 적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국방

부 장관은 인민군 출신으로 훈장을 받는 사람을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말살전쟁을 일으켰던 국가 사회주의의 도구였던 군대에서 복무하여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 전역한 사람이 인민군 시절의 계급에 연방군에서 전역한 군인이 사용하는 a.D.(예비역)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묵인될 뿐이다.
-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의료장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통일 당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제한된 기간 동안 연방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현재 약 12명의 군의관들이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직업군인 장교로 임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자신이 평생 이루어 놓은 성과와 자격에 맞지 않는 물질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 인민군에서 취득한 직업교육수료증이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한다.
- 인민군에서 복무한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승급하는데 불이익이 온다.
- 공무원연금 정산에는 연방군에 복무한 기간만 계산된다. 인민군에서 복무한 기간은 단지 일반연금으로 산정될 뿐이다. 게다가 일반연금으로 계산될 때에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연금점수는 낮다. 반면에 연방군에만 근무한 군인은 근무기간에 대해 연금계산에서 훨씬 높은 연금점수를 받는다.(문서번호 102, 문서번호 224, 225)

민사당은 연방의회에서 이 제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금요일 오후로 배정받았다. 그것도 30분이었고, 제안 설명을 위해 배정된 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았다. 민사당의 의원 한 명이 발표하였고 나머지 의원들은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하였다. 이 제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졌다.(문서번호 300)



제3절 신연방주의 고용주로서의 연방군

연방군 내에서 구 인민군 출신 군인들의 통합에 대한 어려움과 차별대우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특별히 언급해야 하는 것은 연방군이 신연방주에서는 고용주이자 투자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8년 연례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연방군은 신연방주에서 가장 큰 고용주에 속한다. 현재 32,900명의 직업군인과 기간제 군인, 그리고 14,000명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자원한 병사와 13,700명의 민간 군무원이 신연방주의 군대와 군사행정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군은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주택을 포함한 인프라의 개선과 군대의 병영, 시설물의 신축과 보수하는 작업을 위해 지출한 총 액수가 1996년에서 2006년 사이에 93억 유로였다. 군사장비 구입을 위해 연방군은 1991년에서 2007년 사이에 중앙과 각 지역의 조달 사업의 틀에서 총 530억 유로 상당의 용역과제를 발주하였다. 이 용역은 주로 수상과 육로의 차량, 전자제품, 식유제품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었다. 연방군은 군대의 급식을 결정할 때 지역의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의 경제지원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전체 건설투자수요는 약 13억 유로이다. 그 중에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인프라 구조를 위한 조치에 약 7억8천만 유로가 사용될 예정이다.”(문서번호 251)

제4절 인프라

신연방주의 군시설과 연방군의 인력이 감축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문제는 그 지역의 고용관계와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1990년 11월 연방의회의 질의시간에 담당 차관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연방정부는 현재 병력이 감축될 지역에서 대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 그러나 군사시설의 폐쇄로 인해 군인과 민간 군속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들을 돕기 위해 지역지원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안을 동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특히 조선시설이 인민군 해군의 용역에 주로 의존하던 오스트제(Ostsee) 지역의 도시들과 같이 이미 구조가 취약해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서 신탁청은 회생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였다: 1991년에 시작된 1차 걸프전쟁 중에 연방군은 약 7억8천만 마르크 상당의 인민군이 보유한 물자를 미군과 영국군에 제공하였다.(문서번호 123)

병영과 군용비행장의 경우 나중에 민간경제에서 이용하게 된 곳도 몇 군데 있었다. 예를 들어 포츠담시의 문화재로 지정된 군대숙소는 인기가 좋은 민간주택으로 변경되었고 몇 개의 군용비행장에는 대규모 토지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태양열 발전공원시설을 통해 대체에너지 시설이 들어섰다. 이런 주택의 관리는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연방재무부의 하위기관인 연방재산청과 각 주 재무부 산하의 재무국이 맡았다. 이런 주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토론이 1991년 2월에 연방의회에서 열렸다.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연방의 재산으로 수용된 인민군의 주택은 - 연방이 소유한 모든 주택처럼 - 우선 연방공무원과 그의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 수요가 없을 경우에 연방정부는 수요가 없는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문서번호 121)

후유증 등 제반문제 처리기(1993년-현재)

독일 통일 이후 공공기관과 군대에서의 “동등한 대우” 문제는 항상 거론되는 주제였다. 특히 군대의 경우 동일한 업무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군인 개인의 위신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아주 구체적으로 공정함이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연방군과 인민군의 레이더 장치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다.(문서번호 237, 255, 268, 288) 이러한 요구는 연방군에서 1986년까지 그리고 인민군에서는 1990년까지 사용한 레이더장치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암과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결과에 근거한 것이다.(문서번호 268)

독일의 연금은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동안에 받았던 급여와 근무연수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연금과 공무원연금(장교를 포함한 공무원에게 지급) 사이에는 그 지급 액수에 큰 차이가 있다. 연금계산에서 인민군에 복무하였던 기간이 공무원연금 체계에 의해 정해진 근무연수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일반 연금에 의해 계산되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이 제대하고 난 후에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2년 기간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연방군에 인수되지 못하고 전역하였을 경우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일반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과도기연금은 60세 생일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군인은 52세부터 제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서독 연방군

장교의 경우 52세에 전역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전역 후 곧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구 인민군 출신 장교 중에 2년 기간제 군인 근무를 마치고 52세에 전역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전역한 군인이 새로운 민간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면 생활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일회적으로 면세되는 과도기보조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통일 직후 구 동독 지역에서 나이든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1998년에 실시된 연금개혁을 통해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약간 개선되었고, 2011년에는 연금의 추가분이 지불되기도 하였다.(문서번호 297)

위에 언급된 내용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숫자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실제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연방군과 인민군에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한 군인을 비교할 경우, 연방군에서만 근무한 군인이 받는 연금의 액수는 인민군에서 근무하였고 통일 이후 연방군에 인수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해서 군에 근무한 총 기간이 동일한 사람에 비해 약 30% 더 많다.(문서번호 225)

인민군 출신이 받는 연금의 액수만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반국민 연금 수혜자로서 허용된 추가소득의 한도도 공무원연금을 받는 연방군 출신 군인에 비해 훨씬 낮다.(문서번호 245)

연방군에 남은 전 인민군 소속 군인의 연금 문제는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산하 “신연방주의 병력문제” 소위원회와 주민청원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문서번호 247)

인민군 소속이었던 연방군 군인에 대한 동일하지 않은 대우가 오래 지속될수록 연방의회 내에서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한 제안은 민사당의 의원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정치가들이 자기 선거구에서 직접 부딪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기민당/기사당 소속 의원이 연



방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하지 않은 급여가 연방군의 내적 통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상이한 급여체계는 그 어떤 설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그들이 뮌헨, 드레스덴 또는 마인츠, 노이브란덴부르크에 주둔해 있든지 상관없이 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튀링겐에 주둔한 군인에게 그가 주둔한 지역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바이에른주에 있는 그의 동료는 100%의 급여를 받고 그는 92.5%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매달 7.5%의 급여의 차이는 나이에 따라서 매달 200유로를 더 받고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문서번호 237)

여기에서 언급된 급여의 격차는 인민군에서 담당했던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기준, 즉 지역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동부 임금지역”, 다시 말해 신연방주에 있는 모든 일자리는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서부에 비해 적은 임금이 지불된다. 이 격차는 1990년 10월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힌다.

전 인민군 소속이었던 군인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동독과 서독의 상이한 법문화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 문제는 특히 몇 년동안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이군인연금을 승인하는 문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문제에 대해 기민당/기사당의 파울 리더 의원은 2010년 12월 2일에 연방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겠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여러 번 부딪힌 문제이기도 하다: 동독의 연금체계는 직업군에 따라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었다. 이 체제를 소득에 기반을 둔 연방공화국의 연금체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도 독일통일 과정에서 수 없이 던져진 문제, 즉 어떻게 하면 두개의 상이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 나왔다. 연방군과 인민군에서 상이군인에 대한 보상 또한 서로 다른 법적근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방군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데 반해 구 인민군 소속 군인들은 공무원연금체제로 수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독에서 인민군 병사의 사고가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일과정에서 입법부는 구 인민군 소속으로 상이군인연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인 사고보험 즉 사회보험 영역 VII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구 인민군 소속이었던 직업군인과 기간제 군인에게 사고가 날 경우 산업재해 보상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런 상이한 처리방식은 당연히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구직자의 경우 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틀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소득을 산출할 때 그 차이는 아주 크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는 상이군인연금은 연방공무원연금의 기본연금으로 계산된다. 그 결과 연방군 상이군인의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반면 인민군 소속이었던 상이군인은 산업재해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목적이 규정된 소득으로 계산된다. 이들이 구직하는 기간 중에 기초생활보조비를 신청하면 연금도 소득산출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결국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상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 대우를 문제 삼아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전부 기각되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상이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등성의 원칙을 어겼다는 논지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문서번호 271)

이러한 상이한 대우로 인해 연방군 내의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방군 지도부는 인사이동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여 연방군 내의 통합을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통일 초기에 약 1,000명의 서독 출신 연방군 장교가 신연방주로 전근되었고 약 376명의 장교가 신연방주에서 서부 독일로 전근되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에도 1992년 7월 1일부터는 이와 동일한 원칙에 의해 배치되었다. 이들의 경우 가능한 한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도록 고려하였지만 의도적으로 서독 출신의 병역의무 이행자를 동쪽으로 배치하거나 그 반대로 신연방주 출신을 서독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연방군의 내적 통합과 같은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다. 그 주요 원인은 신연방주의 주민 중에서 연방군에 자원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혼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서독 관계자들의 강연 및 인터뷰

시대증인 인터뷰 자료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는 독일 통일 당시 인민군 해체과정에 직접 참여한 동독과 서독의 관계자들의 강연과 인터뷰를 모은 것이다. 베르너 아플라스 장관, 베르너 폰 쉘른 장군과 보도 옥켄씨 그리고 마틴 쿤제씨는 통일부의 “독일 정부의 통일 및 통합 관련 문서 공유” 프로젝트의 틀에서만 본인들의 인터뷰와 강연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동독 군축국방부와 인민군 해체

베르너 아플라스(Werner E. Ablaß)

이 원고는 2013년 2월 14, 15일 양일간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개최된 <독일 통일과 한반도문제> 워크숍에서 베르너 아플라스 전 군축국방부 차관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아플라스 전 차관은 1990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독 군축국방부 차관직을 역임한 독일통일기 역사의 산증인이다.

베르너 E. 아플라스 저는 1989년 가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곳은 1990년 3월에 동독에서 자유총선을 통해 새로운 과도정부가 구성되고 난 후입니다. 1990년 3월 동독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동독 역사에서 58년만에 처음으로 실행된 민주적인 자유선거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자유선거가 열린 것은 1932년의 일이었습니다. 1990년 3월 자유총선거 당시 동독 인민군의 병력은 130,000명이었지만,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의 수가 380,000명이었습니다. 단순히 군대의 규모로만 본다면 동독이 소련에 의해 점령당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항상 고르바초프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자유총선 당시 동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통일문제가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승전 연합국의 입장을 파악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0년 3월 동독총선거 이후에 과도기 민주정부를 구성되었을 때 인민군의 장군들이 민주정부에 충성을 다하



겠다는 맹세를 함으로써 과도정부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1990년 4월 동독이 여전히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민간인이 군축국방부의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군보다 민간정치가 우선된다는 원칙이 군 내부에서도 수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으로서 국방부를 통솔하면서 저희가 했어야 했던 과제는 군축이었습니다. 군인을 해고하고 군사장비를 줄이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독의 군수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수십만명과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동독의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체결된 무기구입계약의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통일과정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헬무트 콜 수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당시의 콜 수상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콜 수상이 프랑스가 독일통일에 동의하는 댓가로 독일이 “마르크를 포기”하고 유럽공동의 화폐 “유로화”를 도입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영국 또한 독일통일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 수상은 영국이 1차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두 차례나 이겼는데, 독일이 통일되어 다시 강해진 국가로 나타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소련이 내적으로 두 개 진영으로 분리되어서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이 군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1990년 5월 8일에 고르바초프를 방문하러 모스크바에 갔는데 그때 당시 팔린이 저를 불러서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나토에 남아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모스크바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고르바초프가 실각한다면 독일 통일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독일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국경을 마주한 폴란드 또한 독일통일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폴란드에는 이미 개혁적인 민주정부가 통치하고 있었고, 민주정부를 구성하던 자유노조는 동독의 원탁회의 사람들과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5월에 저희가 폴란드 정부대표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독일의 통일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독일 영토에 8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거대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독일통일로 인해 폴란드가 서쪽에 독일 그리고 동쪽에 소련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에 둘러 싸이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 5월 당시 폴란드 정부대표는 저희에게 만약에 언젠가 독일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토 회원군으로 동맹체제 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나토 회원으로 남아있어야만 그나마 통제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4월 29일 소련정부가 동독 정부에 서신을 통해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소련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해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가 2차 세계대전의 승자였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7월 13일에 슈트라우스베르크 소재 동독 군축국방부 외청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저희는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열 가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는 찬성을 표했고, 체코는 기권, 불가리아, 소련은 반대를 표했습니다.

1990년 7월 13일 회의에 10개 사항을 발표하고 나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들에게 독일 통일이 너무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다음 번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의를 1990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



하기로 약속하고 폐회하였습니다.

질문 하지만 이미 1990년 6월에, 통일이 10월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아닙니다, 통일이 1990년 10월에 이루어진 것은 일종의 우연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날짜가 10월 3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1990년 7월 말입니다. 그것은 독일 화폐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4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후 4주 사이에 동독에서 약 6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많은 수의 주민들이 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독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만일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이 실현되지 않아서 주민이탈이 지속된다면 1990년말까지 약 50만 명이 동독을 떠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들 50만 명이 대부분 고급 전문인력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두 동독을 떠났을 때 발생할 문제를 동독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앞당겨 실행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990년 7월 15일에 고르바초프 소련정부가 통일된 독일은 나토에 잔류해도 된다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에 파리에서 2+4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4 회담은 각 지역의 수도에서 개최하는데 런던 워싱턴 본 베를린에서 이미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7월 16일의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서 독일의 동쪽 국경은 폴란드와 현재 접경하고 있는 오테나이스강, 즉 그 국경을 인정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폴란드가 우려하였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독일 통일과 관련된 양쪽 독일 간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습니다. 정확한 가입 시점은 유엔총회의 일정까지 고려하고 동독의 건국기념 일인 10월 7일 이전, 10월 3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0년 10월 3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10월 3일이 10월 1일과 7일 사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서독의 수도 본에서 2차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이 끝나고 1990년 8월 31일에 통일 조약이 서명되었습니다. 조약이 서명된 장소는 운터 텐 린덴(Unter den Linden) 가에 위치하고 있는 크론프린첸팔레(Kronprinzenpalais) 궁전입니다. 얼마 전 통일 2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그 곳에 세워졌습니다. 1990년 9월 12일에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들에 의해 2+4 협약이 조인되었습니다. 2+4 협약에 독일에 대한 승전연합국의 권리를 폐지하는 조항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되지만 여전히 완전한 독립주권국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0년 9월의 협상 당시 소련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저희에게 승전국 권리해지요구를 잠정적으로 포기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소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스탈린이 독일에 승리하였는데 고르바초프가 독일에 패배하였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 독일통일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협정에서는 일단 독일에 대한 승전연합국의 권리와 유보권을 폐지하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대한 승전연합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90년 10월 1일에 열린 유엔총회였습니다. 당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35개 회원국이 모두 유엔총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독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총회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10월 1일이었지만 실제로 승전연합국의 의회가 모두 승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의 경우 1990년 11월에 의회에서 승인하였지만, 소련은 1991년 4월에야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받

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 최고인민회의에서 반대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을 위한 최종단계는 동독이 바르샤바조약 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되었고 1990년 9월 24일에 공식화되었습니다.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그 합의를 얻기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10월 3일이 왔습니다. 제가 동독 정부에서 일했던 6개월의 기간 동안 동독 인민군의 장군들이 저에게 완벽한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군인들에게 어떠한 전망을 줄 수 없었고, 실책도 많이 범했습니다. 사실 동독경제가 그렇게 엉망인 낙후된 경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를 서독식의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동독 경제가 단기간에 붕괴되면서 1990년 말에 이미 180만명의 실업자와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고용에 익숙해 있던 동독 주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실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한 가지 첨부할 것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면서 약 3억 마르크 정도 동독이 지불하였는데 그것은 현금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서로 군사기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통일 이후 동독의 군사장비가 나토의 수중에 들어가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비밀이 나토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 국방부장관이었던 루시코프가 동독의 로타 드 메지에르 수상에게 동독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민감한 군사장비들을 전부 소련에게 이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나토가 그것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드 메지에르 수상이 저에게 의견을 구하였고 저는 소련이 언급한 장비는 동독이 3억 마르크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드 메지에르 수상은 그것을 소련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지금 동독군 장교단이 충분히 통제에 따랐고 거기에 복종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야전장교와 정치장교 중에 야전장교들이 무조건 명령에 복종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정치장교들이 개혁정부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치장교들이 통일협상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결과를 수용하였다면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그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장교를 전원 해고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장교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 추산하기로는 당시 600에서 650명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600명의 정치장교가 있었다는 것은 남자만 아니면 연대나 여단 레벨까지만 추산한 것입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동독의 경우에는 1989년 11월 9일 평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치장교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군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폴란드는 1990년 1월에 모든 정치장교를 야전장교로 전환시켰습니다.

질문 쿠데타와 같이 군 내부의 저항에 대한 위험은 없었나요?

베르너 E. 아플라스 드 메지에르 과도기 정부 때에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90년 7월에 시작된 농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걱정은, 만약 농민들이 전체 농경지에 불을 지를 경우 군대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1990년 9월에 통일조약이 발표가 되고 군대가 모두 해체된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였습니다. 통일조약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적지 않은 수의 인민군들이 인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진 후에 대대급에서 소수의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거리를 폐쇄할 것이다” 또는 “베를린까지 진격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질문 베아일리츠 지역의 부대 명령거부 및 직업군인 파업사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아 그 사건은 훨씬 이전 일입니다. 모드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들 모두 우리 정부 이전의 일입니다.

질문 소련에서는 정치장교를 통해 군의 쿠데타 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장교들은 공산당 당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 논리로 생각하면, 당시 동독에서도 정치장교들을 전부 해고하기보다는 우선 인수하고 이들을 통해서 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군사 쿠데타와 같은 군의 저항이 예상된다면 말입니다.

베르너 E. 아플라스 그런데 동독에는 이미 공산당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이 있어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1989년 11월 9일 이후 사통당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통치 능력이 없는 당이었고 수호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리고 58년 만에 역사적 첫 민주총선으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질문 소련을 보면 1990년대에 군사쿠데타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실제로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1991년 초이지만, 1990년 여름에도 이미 소련군 내부에서 쿠데타 위험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고르바초프의 정책에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독의 상황은 소련과 또 달랐습니다. 당이 지배하던 동독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당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독재국가의 구조 자체가 와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동독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어떻게 인수 받았습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신 부분들은 인민군의 무기 중에 아까 아플라스 차관님이 언급하신 “민감한 기술의” 소련 무기들 얘기입니다. 그것에 동독의 미사일이나 다른 인민군 무기들도 포함이 되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민군이 회수한 무기를 독일연방군에 인계하였습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동독에 주둔해 있던 소련군의 핵무기는 1990년 여름 소련군이 자체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독 인민군은 아주 많은 양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 뿐만이 아니라 각종 준군사조직들이 보유한 무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과 군사차량에 설치된 대공기관포 등도 있었습니다. 대공기관포가 40만대가 넘었습니다. 인민군 보유탄약이 300,000톤이 넘었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화기는 120만 정이 넘었습니다. 이 군수물자들이 모두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연방군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면 바로 이것이 인민군의 가장 큰 공헌이었습니다. 동독의 과도기 정부가 집권한 6개월 동안 손실된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일되고 난 후에 분실된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과였는가는 소련군과 비교하면 더 확실해 잡니다.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 무기의 많은 양이 도난되거나 암시장에 판매되었습니다.

질문 슈타지 군대가 만이천명이라고 하셨나요?

베르너 E. 아플라스 네 맞습니다. 국가안전부 슈타지 사단만 만이천명이었습니다.

질문 탄약이 정말 30만톤이었습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1990년 통일이 되고나서는 이 탄약들의 일부는 폐기처리 또는 발사가 불가능하도록 뇌관을 제거하고, 일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군함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연합국 중에 그리스와 터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1차 걸프전쟁에 독일이 참전하지 않았었는데, 참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분담했어야 했습니다. 그 때 인민군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일이 분담할 몫을 대신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 중 하나였던 미그29기의 경우에는 폴란드에 무상으로 증여되었습니다. 1996년도 연방정부의 보고서를 통해 인민군 무기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통일 과정에서 구 동독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해고되었는데 형평성을 위해서 서독 쪽에서도 상응하는 해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해고된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통일된 후 2년 사이에 실업자가 28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실업연금을 받았고 사회보장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질문 1990년 4월 29일의 소련이 동독에 전달한 메모명령서(Aide-memoire)를 보면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련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같은 시점에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고 중립국가로 남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두 번째 사항의 경우 소련이 후에 그 요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혹시 소련이 첫 번째 사항의 경우에도 차후에 독일이 원한다면 재고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당시 소련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장을 더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 명령서를 통해 점령기간(1945-49)에 자신들이 내렸던 조치들을 어떤 식으로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당시 소련이 요구한 것은 그 뿐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소련에 그 어떠한 피해도 입혀서는 안된다는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통일된 독일이 이전에 동유럽 국가와 동독 간에 체결된 국제조약들을 모두 완벽하게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독이 소련과 체결한 모든 조약은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구 동독에서 철수하는 소련군 군인들을 위해 150억 마르크를 들여서 주택을 지어주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헬무트 콜이 소련 지시가 치밀함에 놀랐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독일연방공화국이 소비에트연방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저는 만약에 소련이 2+4 협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승전국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리고 약 40만 명의 소련군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미군 철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들에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우호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는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은 포츠담 조약에 따라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1990년 6월 22일 당시에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이 했던 연설을 번역한 비공식문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셰바르드나제는 독일문제를 언급하면서 동독과 서독의 새로운 국경은 기존의 국경을 조금 반듯하게 만드는 정도로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독일에서 분단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독일은 모스크바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차관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우리”가 “동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서 모두”를 염두에 둔 개념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소련의 명령(1990년 4월 29일 Aide-memoire)이 동독에 전달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서독정부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협력하였습니까?

베르너 E. 아플라스 제가 “우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동독 정부를 의미합니다. “저” 혼자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독 정부에서도 특히 국방부 장관과 저를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동독 과도기 정부의 수장은 드 메지에르 수상 이었고, 동독 과도기 정부의 연정 협약서 5번 조항을 보면, 전체 독일 관련 정책은 수상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드 메



지에르 수상이 방향을 정하고, 저희들은 “장,차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조금은 독재적이라도, 누군가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당시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는 국방부와 저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동독 국방부 차관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총 178일입니다. 그 중에서 40일은 장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본에 있는 국방부 동료들과 31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주제는 항상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장관이 재직할 당시 회의에서 그가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순간이 있으면, 워싱턴이나 런던 아니면 파리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고,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상에 용기있게 응하면 그 쪽에서 벌써 동의가 온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독 쪽에서도 모스크바와 항상 조정을 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990년 6월 26일부터는 동독과 서독의 국방부 대표들이 함께 만나서 불가능한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동서독 군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군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이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밀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 9월24일 탈퇴하는 협정서에 서명하였을 때 서독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9월 17일에 본에 있는 국방부 차관이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의 “탈퇴 시점, 탈퇴할 의향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느냐” 등을 물어왔지만 저희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본에 있는 관계자들은 9월 24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에 서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탈퇴하는 전 과정은 6주 동안에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만을 빼면 대부분의 사안들은 공동으로 오픈된 상태로 진행되었고 거의 다 협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방군과 동부부흥

베르너 폰 쉘벤 장군 강의원고

베르너 폰 쉘벤(Werner von Scheven)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연방군 사령관 준장으로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의 사령관을 지냈다. 그는 1990년 10월부터 동독 인민군의 일부를 통합시키기 위해 창설된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폰 쉘벤 중장은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 사령관을 맡은 바 있다. 이 글은 그의 강연원고로 군 통합 과정을 직접 지휘한 쉘벤 장군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을 번역 인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쉘벤 장군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통합 준비과정

1989년과 1990년에는 독일과 유럽 내에 다양한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고,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또한 당시의 역사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89년 12월에 소련군 장성들이 간부사관학교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해 주는 것이었다. 1990년 전반기에는 NATO 군대의 장교들이 간부사관학교의 육해공군 장성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서 앞으로는 동독 인민군 장교와 친분을 쌓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과 함께 통일 과정에 협력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간부사관학교의 책임자였던 나는 1990년 8월에 이 논쟁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독일정부와 사회 누구도 독일통일을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서독 연방군 역시 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만약 통일 이전에 국방부에서 또는 간부사관학교에서 미래의 장성들을 위해 통일이



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기획했었다면, 국방부 장관이 아예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주제가 다른 많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금기시 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연방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하던 날, 동독의 군대 또한 독일 연방군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정보기관들조차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서독 연방군과 동독 인민군의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1990년 6월 1일에 동독 인민군과 서독 연방군의 특정 군부대와 군사학교 간의 제한적인 접촉을 허용한다는 명령이 양쪽 군대에 동일하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접촉을 허용한다는 것이었을 뿐,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독 연방군의 간부사관학교는 드레스덴에 소재한 동독 육군사관학교와 접촉하였다. 이 만남에 참석한 양 쪽의 대표단은 서로 상이하게 구성되었다. 서독의 간부사관학교의 사절단은 항상 그래왔듯이 3명의 장성급으로 구성되었으나, 동독 사관학교의 대표단은 11명의 장성급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사회주의국가의 군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 인민군도 군 수뇌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첫 인상을 받았다.

서독 국방부 장관은 1990년 8월이 될 때까지 통일 이후 연방군의 규모에 관해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그는 8월이 되어서야 통일독일의 병력규모는 370,000명이 될 것이며, 동독 인민군 중에서 최대 25,000명만이 연방군으로 승계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일반 병역의무는 통일 이후에도 변함없이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병역의무의 기간은 12개월로 확정되었다.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도 일상적인 군대의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어서 동독 인민군의 경우 9월 1일에 다시 한 번 신병 소집이 이루어졌으며, 서독 연방군의 경우 신병 소집이 기존과 다름없이 10월 1일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동독 군대의 유산은 완전히 청산되어야만 했다.

1990년 10월 1일 동독의 탈퇴와 더불어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날은 동독의 군축·국방부 장관의 이름으로 인민군의 모든 육해공군 장성, 모든 55세 이상의 군인, 그리고 의무대를 제외한 모든 다른 부서의 여성 사관후보생들이 해임된 날이기도 하다. 기타 여성군인은 군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군사법 및 군정책 핵심 간부진 대부분은 이미 이전에 해임되었다.

같은 시각 서독에서는 약 1,200명에 이르는 육·해·공군의 장교 및 부사관들이 세 곳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이틀 후 독일연방국의 일원으로 “가입할” 동독지역의 군대 즉 인민군의 지휘권을 이양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동독의 국경선을 넘어 동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0월 1일 오후에 나는 슈톨텐베르크 국방장관의 참모 책임자인 외르크 쇤봄(Jörg Schönbohm) 육군 중장과 함께 헬기를 타고 본(Bonn)에서 하노버(Hannover)로 갔다. 하노버 소재 사관학교에는 육군 지휘참모진 중 850명의 장교 및 부사관들이 집결해 있었다.

쇤봄 장군의 임무는 이틀 후인 10월 3일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동독 국방부의 잔재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창설되는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 그리고 각기 다른 부대에서 차출된 서독 연방군 관계자들을 지휘하고, 약 1,500명의 동독 인민군 병력과 군부대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비록 9개월 동안의 기간이었다고 하지만 이 때 독일 연방군 역사상 처음으로 한 명의 장군에게 한 지역에서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총지휘권이 부여되었다. 나는 첫 6개월간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게 되었다. 내가 담당하였던 업무 중에 특별히 흥미로운 과제가 바로 인민군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하노버 서독 육군 사령부에서 인민군의 지휘권을 인수하는 지휘관들이 알아야 할 가장 필수적인 문제들에 관해 설명해 주는 과정의 마지막 발표자는 육군 총감이자 준장인 헨닝 폰 온다르차(Henning von Ondarza)였다. 그는 동쪽으로 출발해야 하는 850명의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



졌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은 계속해서 답변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의 목적지로 이동하십시오. 그곳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독 인민군의 지휘부 책임자들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독선적 행동을 지양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끌어내십시오. 그곳 병사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나와 국방부 장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립적으로 행동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이 익숙지 않은 것이고,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서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다: “현재의 상황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전투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의 지시는 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그런 내용의 지시를 우리의 동료들에게 두 번 되풀이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동독에서 일던 자유의 열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육군 총감의 말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추진력과 결단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다. 연방군은 통일과 더불어 훌륭한 “임무형전술”의 부활을 경험하였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에 맞추어서 행동하도록 하는 임무형 전술을 교육하는 것이 원래 독일군의 오랜 전통이었다. 35년여 이어진 평화와 미디어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행정관료적 규정의 압박 속에서 쇠퇴해갈 위험에 처해있던 독일군의 전통이자 교육의 목표였던 “임무형전술”이 되살아난 것이다.

1990년 10월 2일 동독의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은 인민군을 해체하였다. 그는 “동독의 전통과 결부되어 있는 모든 상징성과 결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병영 명칭 그리고 연방군의 전통적 규정에도 맞도록 변경되어야 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그는 군사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영공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기능 및 병력의 유지

를 명령하였다. 끝으로 그는 당일자 명령을 통해 (원래 인민군 총 170,000명 중) 아직 남아 있던 89,000명의 “군 관계자”와 47,000명의 군무원을 10월 3일 0시를 기하여 해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자리를 지키던 동독 국기가 내려졌다. 같은 날, 나는 간부사관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과 작별을 고했다. 당시 나는 우리 모두가 통일 이전의 연방군 및 독일연방공화국과 작별해야 한다는 점을 그들에게 주시켰다. 이제 곧 과거의 흔적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그것을 이해했을까? 서독의 연방군과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후에도 오랫동안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통일의 날

10월 3일, 구 동독 인민군의 모든 주둔지와 병영에 독일연방공화국 국기가 게양되었다. 나는 함부르크에서 슈트라우스베르크로 이동하였다. 하벨(Havel)을 경유하며 나는 하벨란트(Havelland)에서 보낸 유년기와 초등학교 6년 간의 학창시절을 떠올렸다. 슈톨텐베르크 장관은 이날 오후 “인민군의 수도”에서 “구 동독지역 내 병력”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을 넘겨받았으며, 직속으로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화려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위한 의식이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군악대의 병사와 군악대장은 양측 군대에서 선발되었다.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제복의 견본을 충분히 제작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모든 계급의 병사는 거의 동일하게 NATO12의 올리브색 군복을 착용하였다. 단지 해군에 한하여 푸른색의 제복이 그대로 유지되어, 서독 해군 대령의 경우 세 개의 금색 단추, 동독 해군 대령의 경우 네 개의 금색 단추의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전 인민군 해군에게는 새로운 모자만이 제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는 현악



기 연주자 없이 약간 전투적으로 연주되었으나,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서곡은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일정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동독 군축·국방부 소속의 약 600명의 잔류 인원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상관이었던 장군들이 없다는 것을 유감스러워 하였다. 그 이유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잔류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전체적 상황을 알고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제의 적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구 동독의 인민군 관계자 모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약 200명의 연방군 파견병은 중장년층 군인 중 몇몇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은 아직 없었다. 군통합과 관련된 서독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늦게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단지 에케하르트 리히터(Eckehardt Richter) 준장을 포함한 소규모 연락참모부가 8월 말부터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서독 정부”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참모부의 방식대로 준비되고 있었다. 이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혼란이 2+4 협상에 부담주지 않기 위하여, 동서독 양국군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했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에펠만 전 장관은 연설을 통해 그가 자신의 “병사와 장교에게 유대감”을 가졌던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군율을 준수하며, 질서 있고, 능력 있게” 행동하여 존경받으며 “진정으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군대를 이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슈톨텐베르크 장관 역시 인민군에서 연방군으로 승계되는 어려운 결정을 감행했던 약 50,000명의 직업군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약속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일은 화해를 전제로 합니다. 통일은 동독과 서독 군의 서로 다른, 그리고 부분적

으로 상충하는 전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단순히 덮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함께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통일 독일의 연방군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직면하게 되는 큰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베를린과 독일 전국에서 통일을 자축하는 축제가 열렸다. 단지 슈트라우스베르크의 거리에서만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

다음날 아침인 1990년 10월 4일, 나는 독일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칼 라슈니코프로 무장한 “1,000인대”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를 뉘른 중장에게 신고하였다. 사령관은 “나는 어느 누구의 후임자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휘권을 넘겨 받았다. 이어서 우리는 철십자 표식이 부착된 소련제 Mi8 기종의 인민군 헬기를 타고, 업무상 구분되어 있는 라이프치히와 노이브란덴부르크(육군/군사구역 5 및 7), 로스톡(Rostock, 해군), 예거스도르프(공군), 포츠담/겔토프(육군/비군사구역)에 있는 다섯 명의 상급 사령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우리의 의도는 사령관 및 상급 지휘관이 그들 직속 부대로 파견되기 전에 직접 부대로 안내하고 그들의 동료들을 소개시켜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돌아온 후 구 동독의 국방위원회(Nationaler Verteidigungsrat) 자리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나의 부관과 동독 인민군으로부터 채용된 러시아어 통역장교를 알게 되었다. 다음날 나는 방공호에 자리잡은 동독 군축·국방부의 작전센터에서 열리는 오전 작전회의에 처음 참석하였다. 우리는 이후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아침마다 (동독의 인민군 출신) 대령이 칠판에 쓴 “현 운영체제 상황은...”이라고 시작하는 발표를 들어야 했다. 그 후 나는 구 군축·국방부 출신 인사 중에서 비서와 운전사를 선발하였다. 마침내 나는 내게 주어진 업무 영역을 적어도

서류를 통해서 익히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업무 대상은 군축·국방부 소속 장성이 총책임자로 있었던 모든 인민군 관할 부대 및 시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가 일부 병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군과 연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베를린 및 슈트라우스베르크 소재 양측 연대(Wachregiment-er) 14, 동독의 군 거부자로 구성된 공병대, 영불해협에까지 이르는 바르샤바 조약 군대의 공격을 위해 도로, 철도, 다리 복구 인력을 포함한 이른바 군 수송장비대, 국방부의 통신부대, 화재방 방위부대 및 경찰대, 공병부대, 베네룩스와 프랑스 북부 지역에 이르는 비밀 특수지도 및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프렌츨라우 제2측량부대, 대형 탄약고 및 군수품 보관소와 고독성(高毒性) 액상 미사일 연료, 군 경찰대, 24대 철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수송대, 슈베트(Schwedt) 소재 군 형무소, 동독의 군 역사 연구소와 군 박물관, 정책간부 양성소인 그뤼나우 소재 군정책대학교와 이미 위에서 언급했던 바 있는 드레스덴 소재 육군사관학교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올림픽 또는 분데스리가 시즌에 맞추어 여전히 정치적으로 그 향방을 결정해야 했던 네 곳의 올림픽 선수단 훈련소와 청소년 및 어린이 체육학교 등을 포함한 인민군의 군 종합운동장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더(Frankfurt an der Oder) 지역 축구팀 “전진(Vorwärts)” 역시 나에게 배정된 업무 분야였다.

전시를 대비하여 방공호 내에 자리 잡은 지휘부 내에는, 특히 반트리츠에서 멀지 않은 프렌덴 소재 에리히 호네커의 지휘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오케스트라, 칼 마리아 폰 베버 합창단, 카바레, 발레 그리고 자체 병참업무가 내 업무 영역인 인민군의 연회 앙상블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연회 앙상블은 명실공히 동독 내에서 대단히 대중적이었지만, 서독 국방예산에는 이와 관련하여 평화의 시대에 그와 같은 전방위문공연이 전혀 편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를

“청산”하는 것은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 연방국방부 장관에게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구 동독 국경부대와 서독 및 서베를린 주변 국경 시설물 철거에 대한 책임이 이양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매우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퀴니히스 부스터하우젠 근교 패츠에 소재한 지휘부를 포함한 약 6,000명의 과거 “국경”근무 직업군인이 퇴직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임시 고용직으로 전환되어 국경 차단 시설물 철거 업무를 민간인 신분으로 계속 수행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나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롤프 옥켄(Rolf Ocken) 대령은 이와 같은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된 일터미”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받아 포괄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민감하기까지 한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재직 중인 인사들에 대한 해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명과 관련하여 알려진 사례는 전혀 없다.

동독 민방위 해체 중앙지휘부 또한 나의 관할이 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사회주의통일당(SED) 국가의 전쟁 준비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규모 및 치밀성은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다른 많은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을 통해 동독이 철저히 군부화된 국가 및 사회 체제를 지니고 있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군 시설물자의 인수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처음에 2,285곳의 토지를 포함하여 약 900곳의 기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800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서독 군사훈련장 규모에 이르는 9곳의 대형 군사훈련장과 19곳의 연병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민군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 많은 곳에 고전압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1990년 10월 3일 서독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기 울타리에 전원공급을 차단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첫 달에 11,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전기 울타리 대신 경계 및 안전근무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병역 근무자를 대상

으로 하는 체계적 훈련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신속한 작전투입 준비를 갖추는데 필요했던 인민군 군 건축물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기술 및 임무지원 분야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특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구 서독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군 사격장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 모든 병영 옆에 위치한 대지가 인민군 야외 사격 훈련 부지로 제공되고 있었다. 군인 숙소, 복지 및 관리 시설은 매우 형편없는 상태였다. 상당수의 주방 및 위생시설은 연방군의 기준으로 볼 때 즉시 폐쇄시켰어야 할 상태였다. 갈탄을 사용하여 정화필터 없이 가동되는 대형 난방시설은 비경제적인 주요 오염원이었으며, 몇몇 병영에서는 내무반 난방은도가 12°C에 그쳤다.

신체 및 생명의 위험, 법적 의무 이행과 청결한 숙소와 같은 분야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91년 한 해 동안 긴급조치로 2억 마르크가 책정되었다. 현 실태를 정비하기 위한 총비용으로 처음에는 160억, 이후 2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매년 10억 마르크가 책정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건축용역을 위해서도 별도로 집행되었다.

연방군은 처음에 필요에 따라 587곳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1,500곳 이상의 토지는 한편으로는 국방예산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긴급하게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연방의 일반재산으로 인도되어야 했다. 연방정부는 불필요한 토지를 즉시 처분하고 양도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이를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운 법이다. 동독에 존재했던 모든 무장조직, 예를 들어 400,000명의 노동자 계급 남성들로 구성된 강력한 전투군과 40,000명의 남성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국경수비대는 1990년 내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군용 차량, 군 장비, 무기와 탄약을 인민군에 반납하였다. 모든 군사 기지 및 병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각종 병기와 군수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민군의 “물품” 중에서도 특히 엄청난 규모

의 막대한 무기 및 군수품 보유 현황은 단순히 동독 인민군의 병기 수집이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었다. 궁핍한 사회주의 경제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무기 및 군수품에 대한) 극심한 사재기 욕구가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극비사항에 속했던 종합군사기지가 발견되었다. 이 기지는 신속하게 배치 될 수 있는 인민군의 다섯 개 육군 사단을 위한 것이었다. 이곳에는 모든 기술 및 장비가 곧바로 “실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일사분란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부대의 지휘단 및 전문가 간부집단은 인근 군사훈련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예비군은 몇 개월 간 훈련에 소집되었으며,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어떠한 국가도 실행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군비 축소 및 군수품 반납

1990년 12월 파리 조약으로 인해 매우 엄격한 국제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군축과정이 전 유럽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170만 건의 무기와 300,000톤의 탄약에 대한 특별한 처리가 요구되었다. 이제 이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무기 체제를 수치화하여 특별하게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민군 소속 세 곳의 공군 기지 내에 약 440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페네뮐더(Peenemünder) 항구에 70척 이상의 인민해군함정, 뢰바우(Löbau) 내 전차 2,300대가 군축목록에 포함되었다(이 중 뢰바우 내 전차는 1995년 5월 독일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참관 하에 폐기됨). 기타 무기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분류되었다. 확실하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무기 [A]와 이후 연방군의 심사를 거쳐 재사용될 수도 있는 무기 [B]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철갑차량 7,850대(전차 아님), 대포 3,400대, 지대지 미사일 250개(SS-21 포함), 지대공 미사일 10,600개, 대전차 미사일 46,000개, 차량 70,000대와 약



100,000톤의 개인 군장, 부속품 및 부품이 포함되었다. 모든 미사일은 1975년까지 핀 노브/우커마르크 소재 부크(Buck)사 공장에서 해체되어 재활용되었다.

백여 곳 이상의 군사 기지의 재고 정리 및 군수품 보유량에 대한 구체적 정리, 그리고 사용가능한 군수물자의 다른 나라, 특히 쿠웨이트와 전쟁 중이었던 연합군으로의 재배치로 인해 1947년에 있었던 미군에 의한 베를린 공수작전 이후 독일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일사분란하게 조정되어 진행되는 수송작전이 수행된 것이다. 연방군의 필요에 따라 잠정적으로 BMP 1 기갑전차, Mi 8 헬기, 해안경비정, 차량, 군인용 무선기기와 개별군장품목, 권총 등은 계속해서 활용되었다. 공군은 한동안 MiG 29 전투기 24대를 사용하였다.

인민군은 국가와 사회 내에서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임무와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서독의 방위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 인민군은 전화망, 게스트하우스, 요양소, 스포츠 및 문화시설을 갖춘 지역 공간(예를 들어 슈트라우스베르크, 에게신, 동독 유일의 항공구조대와 기타 많은 시설물)을 갖추고 있었다. 인민군은 그 반대급부로 제3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난방공급을 책임졌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직업군인을 위한 군무원 직업교육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민군은 기숙학교가 갖춰진 일급 스포츠센터, 자체적인 요양 및 휴양 시설 제공,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했다. 인민군은 자체 산림관리소와 사냥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다.

동독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과 군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독립적인 (민간 신분의) 군무원 사이의 업무분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서독 기본법 97b조에는 각각의 임무와 해당 임무를 관할하는 담당기관 사이의 관계가 즉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서독의 극소수 공무원들만이 동독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분은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몇 년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소극적 태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처음 구 동독지역으로 장기 파견된 공무원들이 다시 구 서독지역으로 돌아오기 위해 지원하였을 때, “당신들이 구 동독지역으로 갔을 때 당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대체직원들이 이제야 비로소 충원되고 있다는 동료의 말을 들었으니 말이다.

구 동독지역 내 연방군의 새로운 조직구조

독일 해군은 로스톡에 동부 지구 사령부를 설치하였고, 바르네뮐데에 고속함대를, 슈트랄준트에 기술학교를 마련하였다. 독일 공군은 슈트라우스베르크-에거스도르프에 공군 5사단 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쾰른과 윈스터를 신연방주 영토에 대한 종합사령부를 설치할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베를린 가토브에 위치한 공군 3사단 내에 동일한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부대는 독일 북부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국방행정부는 특히 26개 지방병무청과 19개 군사기지 행정사무소에 대한 총괄지휘부로서 새로운 방위지구 행정기구 VII를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설치하였다. 포츠담에는 군사법원 재판부가 마련되었다.

독일 육군의 경우, 15개 구 단위 방위사령부와 45개 군 단위 방위사령부와 함께 동시에 두 개의 새로운 방위지구 사령부 VII(라이프치히)와 VIII(노이브란덴부르크)가 설치되었다. 베를린에서는 하소 프라이헤르 폰 우슬라 글라이헨 육군 준장이 국방지역방위사령부 VBK 100와 “가장 오래된 군사기지가 있는 베를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나는 1991년 4월 포츠담/겔토브에 위치한 새로운 동부방위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부임하였으며, 위에서 이미 언급한 두 방위지구 사령부를 휘하에 두었다. 연방을 상징하는 색상과 독수리 문양과 함께 동부(OST)라고 쓰여진 소매 문장(紋章)을 사용했는데, 이 문장이 “오씨(Ossis)”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종종 받곤 했다. 구

서독지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북부(NORD)와 남부(SÜD) 방위지구 사령부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방위지구 사령부 사령관인 리히터(Richter) 소장과 하슬러(Hassler) 소장은 사단 사령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 사령부와 더불어 인민군 군사 행정구역에서 6개 향토방위여단(37 드레스덴, 38 바이스펠스(Weißfels), 39 에어푸르트(Erfurt), 40 슈베린(Schwerin), 41 에게신(Eggesin), 42 포츠담 아이헤(Potsdam-Eiche)) 그리고 다수의 연대와 대대를 배치받았다. 조직구조와 무장상태에 따라 구분된 일반 기갑여단과 기갑보병여단에 향토방위여단 명칭을 부여한 것은 1994년 말까지 NATO 관할구역으로 할당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것이었다.

부사령관으로 각각 두 명의 준장을 휘하에 두었던 이들 사단장은 1991년 4월부터 포츠담 근교 켈토브 소재 제 [IV.] 군단 지휘대장인 내 휘하로 들어왔다. 따라서 나는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KTK Ost] 사령관 및 지휘대장”이라는 일회적이며 그다지 기억하기 쉽지 않은 직위명칭을 갖게 되었다. “육군 조직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라 불리운 이와 같은 새로운 조직구조가 우리의 임무를 간소화 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일 육군의 모범이라고 보아선 안 된다. 결국 나에게도 이러한 이중 직책으로 인하여 마르크비탄 소장(공군)과 브로마이스 소장(육군) 이렇게 두 명의 부사령관이 배정되었다.

1991년 6월 30일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소재했던 동부 방위사령부가 해체되었다. 신연방주 동부 지역에서도 이제 다시 서독 정부의 임명을 받고 병력의 일부가 이동하였다. 쇤봄 중장은 1991년 10월 1일 독일 육군 총감으로 임명되었다.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 그리고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위치해 있으며 요하니(Johanny) 위원장의 지휘 하에 운영된 방위지역 행정기구 VII 간의 협력은 처음부터 깊은 신뢰와 양 측의 호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협력관계에는 베르너 아플라스(Werner Ablaß) 전(前) 국무차관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슈트라우스베르크 소재 연방국방부 지부도 함께 포함된다. 부분적으로는 구 동독과 구서독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이해 차이를 공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해야만 했다. 의회민주주의 속에서 군이 항상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국가의 재정적 압력은 연방정부의 변화된 우선순위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군인과 군무원을 포함하여 약 750,000명에 이르게 된 연방군 관계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부담요인을 떨쳐내라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존재하는 듯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예나(Jena) 지역 광학 사업의 부흥에 일조한 로타르 슈패트(Lothar Späth)가 언급하였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구 동독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구 서독지역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토론을 들어주는 일이다.”

복잡한 임무

구 인민군의 재고 자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매우 힘든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단순히 구 동독 군사시설이 남겨 놓은 불필요한 물적 자산을 처리해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민군의 해체와 일부 군대의 새로운 신설, 신연방주 내 연방군 부대 설치 등도 해결되어야 될 난제로 남아 있었다. 1994년 말까지 신연방주에 총 58,000명의 연방군 군대가 배치되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 공화국의 군대와 국경 인접 지역 이웃국가 간 군부대 연락체제 역시 새롭게 구축되어야 했다.

또 다른 주요 과제로는 곧 설립될 주정부 및 주행정관청과 민군 협력의 구축, 독일 내 소련 주둔군 지원, 1990년 크리스마스까지 베를린 장벽 철거,

1991년 말까지 지뢰를 포함한 기타 국경 시설물 철거, 소련군 및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지속적 영공감시체제 유지, 인민군이 수행해왔던 올림픽 준비를 연방군을 통해 계속 시행하기 등이었다. 그러나 모든 관계자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병역의무병 활용기회를 이용하여, 독일 통일에 기여한다는 사실이었다.

지속적으로 3개월마다 병역의무자들이 군대에 징집되었으며, 이제 곧 서베를린에서도 징집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인민군 병영은 부분적으로 활용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구 동독지역과 구 서독지역 병역의무자를 급여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결과, 구 동독지역의 신병은 입대 첫 해 3개월 간 구 서독지역 부대에서 일반적인 기본훈련을 이수하였다. 이처럼 대규모로 구 동독지역과 구 서독지역의 젊은 남성들이 부대에서 함께 섞여 통일 독일을 위해 복무하였다는 사실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통일 후 5년 간 200,000명 이상의 신연방주 출신 젊은 남성들이 기본병역복무를 연방군에서 이행하였다.

이른바 군부대의 통합

지금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 두 양국 군대가 하나의 군대로 통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론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동독이 서독에 가입한 날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인민군의 기존 조직을 완벽하게 해체하기 위해 연방군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인민군 해체는 개별 부대에 따라서는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되었다. 서독 국방법에 따른 지휘 및 훈련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독의 156개 사령단과 175개 훈련단이 일반적인 기본훈련을 위해 해당 연대 및 대대로 파견되었다. 이들 연대 및 대대는 선정된 군사기지의 기존 핵심인력을 재구성해 새로운 연방군 부대의 근간을 형성해야 했다. 기타 모

든 군부대와 군기관은 해체과정이 진행되고 추가적인 후속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인민군 출신 지휘관을 둔 지원군을 배정받았다. 그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 지휘관, 사령관, 기관장들은 예외 없이 모두 구서독의 연방군 출신이었다. 서독 인사를 포함한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의 최초 구성인원은 구서독 지역 연방군 출신 2,000여명의 군인과 250명의 군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구 동독지역의 각 육군부대는 특성에 따라 구 서독지역 부대에 배정되었다. 이와 같은 비관료적인 지원규정을 통해 국방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원 및 기기에 대한 수많은 전력증강이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통일 과정 중에 있어서 전체 독일 육군의 전우애와 단결심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 결과, 동독의 재건은 실질적으로 전체 연방군의 사업이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성공비결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안이 있었을까? 연방군과 인민군이 다른 방법으로 통합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독의 라이너 에펠만 장관은 1990년 초 군사개혁과 더불어 인민군을 위한 새로운 군복을 고안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견본은 베를린에 있는 재단사 양성소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드레스덴에 있는 군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 후 1990년 5월 3일, 에펠만은 사령관들에게 조국 내 존재하는 두 개의 군대에 대한 과도기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커다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1990년 7월 20일 마침내 에펠만은 장교위원회에게 인민군 전체가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시간이 흐른 이후에 뿐만 아니라, 얼마 못 가 동독과 서독 양국 병력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생각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말까지 독일 전체 병력이 600,000여 명에서 370,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 개편은 1990년 7월 16일부터 (콜 총리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코카서스에서 가진 회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에 맺어진 비엔나 협약과 관련하여

독일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군축 규모가 명확해졌다. 무엇보다도 독일 영토 내 동독과 서독의 양국 군사는 근본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너무나 달랐다. 전후 시기 독일에서는, 전혀 다르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군사 문화가 자라났다. 두 문화가 이전 독일 군대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

인민군 - 완전히 다른 독일의 군대

“현존 사회주의”는 서구 사회제도의 극복을 목표로 삼아왔다. 현존 사회주의는 서구 사회제도에 적대적인 대항모델이었다. 독일 민주주의공화국(동독)은 다른 독일 국가를 단호하게 부정하며 공격적 자세로 일관했다. SED는 동독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가 서구 사회의 가치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유도하였다. 개인의 인권보다 집단에 가치를 두는 선전선동, 공동체 생활에 있어 거의 성공했던 탈기독교화 그리고 아동교육의 국영화는 계속 영향력을 미친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독에서 권력은 권리보다 위에 놓여져 있었다. 권력의 문제였던 계급적 관점은 군대 내에서 권리, 내부 질서, 교육 및 훈련 등의 다른 모든 사항들보다 우선시 되었다.

인민군의 정치 업무에 관한 모든 문서를 살펴보면, 연방군은 주적으로 설정되어 증오심을 갖기 위한 핵심대상이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에는 이와 같은 지나친 주입식 교육 때문에 또는 주입식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금방 알게 되었다. 아마도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강요된 증오심 주입교육의 결과가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민군의 직업군인 간부들은 실제로 서독이 공격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믿었으며, 바르샤바 조약과 소련 군사 이론과 관련하여 그리고 1941년 소련의 경험을 고려하여 예측가능한 기습공격을 진압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었다.

인민군은 SED의 지도를 받았고, SED는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았다. 바르샤바조약기구 사령부가 모두 소련의 장성들로 구성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인민군은 40년이라는 존립 기간 동안 놀라울만한 열의를 갖고 소련을 모범삼아 행동하고자 노력하였다. “소련으로부터의 학습은 승리의 학습”이라는 구호는 80년대 중반 소련으로부터 SED 정권을 위협하는 개혁정치가 확산되기 전까지 인민군의 모든 병영에 걸려 있었다.

인민군의 군사용어는 대부분 소련 군사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인민군 고위 장성들은 일반적으로 소련 군사학교 출신이었다. 따라서 소련 군사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동독 군사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열쇠였다.

이는 친구와 적이라는 생각, 파시즘이라는 단어의 사용, 보안체계 및 극단적인 비밀주의 정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군 관계자가 자신의 동지를 감시하도록 슈타지를 끌어들이는 것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또한 종속관계의 구조뿐만 아니라 직급, 급여에도 해당되며, 마찬가지로 각 직급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격차와 수와 능력에 따라 하사관을 경시하는 것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군인정신이나 동지애를 위한 목표나 훈련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군사적 역량과 “사회주의적 경쟁”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규율이나 정치사업의 일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항은 독일의 군사 전통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며, 또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러시아 제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베를린에 있는 전쟁기념을 위한 노이에바헤 역시 독일의 군사전통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인민군 관계자들은 군대와 당의 이중 규율을 따랐다. 모든 직업군인은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당에 입당하도록 강요받았다. 직업군인은 특정한 전문 영역에 대한 군사전문가였다. 전권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에 대한 개인



의 역량을 독자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집단적 의식교육을 받았다. 전문화 그리고 상호교류의 차단은 대장급에까지 해당되는 것이었다. 소련군의 경우에서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에 대한 권한은 점점 더 높은 상급자에게로 옮겨갔다. 연방군과 비교하여 보면, 인민군의 구조에서는 장교는 세 배 더 많고, 육군 대장과 해군 대장은 네 배 더 많으며, 하사관 및 사관생도 수는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 인민군과 공산당이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직무수행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 통일 전까지 군부대의 85%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한 시간 이내에 병영에서 전투 준비를 갖추고 출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점검이 종종 예고도 없이 실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수 및 정비 불량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했다. 이 모든 것은 민간인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인민군 내에서는 직무와 전문 분야에 따라 정해진 직무만을 수행해야 했으며, 단지 제한적으로만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유롭게 향상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과거 인민군에 소속되어 있던 군인들이 연방군으로 전환되는 변혁의 시기에 남다른 의욕과 “인내심”을 보였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에서 통일조약의 연금규정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그들은 동독의 그 어떤 집단도 자신들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국가에 의해 제한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도 비생산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군인들이 국민경제에 투입되어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독군인이 과거에 특권을 누려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대장급에도 해당된다고 한다.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PDS)을 제외한 구 동독지역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관점을 옹호하는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인민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프러시아의 샤른호르스트 장군이 말한 국민군대의 개념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동독의 군대가 스스로를 인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인

의미에서일뿐 현실에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동독의 노동권이 생산지향적이며, 전혀 시장지향적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서독과는 다른 인간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인민군의 수많은 장교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 또한 대부분 그다지 완벽하지 못한 주변 상황 속에서 모든 규정을 최대한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휘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어 있었으며, 지휘에 있어 인간적 측면은 주로 정무장교가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동지들은 처음에는 군인들의 정신상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드 메지에르 정부는 인민군의 정치조직을 곧바로 제거해버렸다.

인민군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는 조기경보 및 동원 역량과 관련된 영역이었다. 이 분야에서 인민군은 그들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연방군과 달리 광범위하며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정보는 극소수의 고위 장교들에게만 제공되었다. 이와 같이 고도로 발달한 출동대기태세와 관련된 전문적 사고는 다른 사회주의 인민군과 비교해 볼 때, 무기와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동맹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갖는 것은 보안시스템상 어려운 일이었다. 소련 측 역시 이러한 접촉을 전혀 원치 않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소련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참모 장교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접촉을 가졌으며, 계속 유지하였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러한 접촉을 통해 아내를 맞이하였다.

연방군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행하고 있지만, 인민군의 직업군인 교육의 내용에는 상황에 따라 군무직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동독 직업군인의 업무 관계는 일방적이었다. 인민군의 경우 동독의 다른 군사조직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연금제도가 있었으며, 이는 많은 부러움을 샀다. 연금은 복무기간이 25년 이상 되는 경우에 주어졌으나, 충분한 액수는 아니었다. 장교와 하사관들은 특정 연령 또는 특정 직급에 도달하게 되면, 기준이 되는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인민군의 군무직 또

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환배치되었다.

1988년부터 직업 군인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내부불만의 징후가 포착되었다. 국가, 당, 군대 내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들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군의 직업군인들은 동독의 붕괴를 그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생존의 위협 그리고 그들의 자아상과 충성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여겼다. 인간은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상태로 내몰리게 되고, 더 나아가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이전과 달리 불합리한 요구에 저항하게 된다.

인민군은 통일 이후, 희망과 실망, 고무와 침울함 사이의 감정을 번갈아 경험했다. 순수한 책임의식과 의무감에서 많은 장교들은 동독의 몰락과 함께 붕괴해 가고 있는 군대를 지켜내기 위해 강하게 버텼다. 통일 독일의 연대 의식도 어느 정도 여기에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동독 국민과 그들의 “군사조직”이 나중에 흘리게 될 눈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조직해체와 일반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인민군이 상당한 정도로 막아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희망이 경험을 이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연방군이 이 뛰어난 지도역량을 인계받기를 기대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다음 진술과 같이 분명한 것이었다:

우리 역시 어린 시절 냉전시대를 경험하였고, 이제 이러한 시기는 이미 극복된 지 오래다. 우리는 또한 독일과 유럽에 평화와 안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파시즘에 사로잡혔던 독일의 과오로 인해 빛어졌던 상황은 그저 일회적인 것이었을뿐이다. 우리는 또한 독일에 의해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반(反)파시즘 국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문가처럼 훌륭하게 대응해왔다. 우리는 동독 붕괴 당시 재난과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 지도부에 실망하였던 과거가 있으나, 이제 통일 독일의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인민군 소속 직업군인의 인적 통합

인민군에서의 상황이 열악하였던 만큼 연방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져만 갔다. 이러한 기대감은 현실적 가능성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는 아직 연방군 재조직화 계획이 완결되지 않은 가운데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부대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전우들에게 계속 정보를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곧바로 군부대 차원의 실무실습교육과 서독지역의 연방군 훈련학교와 사관학교를 통한 기초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과거 인민군의 군인들의 “NATO군”에 대한 통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들에게 제공된 공정한 기회는 정책적으로 최대 25,000명의 구 동독 인민군 직업군인으로 제한되었다. 연방군은 인민군과 달리 인적 구조에 있어 장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하사관을 필요로 하며, 그들 중 다수는 부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인민군은 연방군의 규모와 자질에 적합한 하사관 집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민군의 하사관들은 소련 모델에 따라 교육을 받은 보조인력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경력에서 지도 능력은 거의 기대되지 않았으며, 이는 연방군과 비교할 때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단지 사관후보생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구 동독 인민군의 하사관들은 동부 지역에 주둔하는 연방군이 자신들의 현인원(약 18,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약 21,000명/모든 육·해·공군)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군 내에는 해당 수요와 관계 없이 지나치게 많은 전문가와 넘치는 자격을 갖춘 이들은 많았지만, 하사관의 수는 너무 적었다. 통신병의 수는 너무 많았고 “전투병”의 수는 너무 적었다. 다른 기지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 대기부대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부족하였다. 인민군의 하사관 및 사관후보생 경력을 지닌 11,500명의 하사관들은 연방군에 일단 2년 정도 더 남아있기 위해 지원했다. 육·해·공군 본부는 서독 연방군의 전환배치에 소극적이었으나, 공정한 기회에 대한 약속은 의심



의 여지없이 이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통신 상병이 장갑차 운전병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지않도록 유의해야 했다. 동시에 이루어진 대규모 교육차출로 인해 군 부대 일상 근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각 부대는 서독 출신 하사관의 임시변통적 지휘로 근근히 버텨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나마 조건에 맞는 지원자들을 과감하게 대부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가 너무 많아, 신연방주 재건 지역 주둔지에서 능력있는 하사관 인력의 보충이 시급하게 필요로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불행한 상황은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 동독지역 내 군대의 교육운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의 자체 후임병 출신의 젊은 하사관이 육성되었을 때인 4년째가 되어서야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

장교의 경우에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 평화체제 하에서 새로운 통일 독일의 전체 병력 규모는 370,00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연방군규모(495,000명)를 감축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직업군인의 수를 줄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감축은 현행법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1935년에서 1944년 사이에 출생하여 1960년대 징집되었던 장교들의 인원 초과로 인해 부대 내 직업 장교들의 상대적인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군 인력 활용에 있어서, 특정 연령대를 넘어 오래 근무하게 되는 중장년층 장교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20대 병역의무자가 다수인 군부대 인적 구성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70년대와 80년대에 육군은 불편한 경험을 겪은 바 있다. 1985년 제정된 인력구조법은 일반 여론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왔지만, 어느 정도 왜곡된 인력구조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동독과의 통일을 이유로 군대 내에서 다시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를 허락치 않았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는 이른바 인력조정법이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92년에서 1994년 사이 만 48세에서 만 50세가 되는 직업장교는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군측은 1939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용된 6,056명의 장교들은 지원서뿐만 아니라, 특히 슈타지와 공모하여 직무상의 본분을 벗어나 협력했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진술한 직무진술서를 제출해야 했다. 적성 검사는 국방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또한 상급자의 추천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검토 서류는 모드로우(Modrow) 정부가 정해 놓은 “간부 인사기록 검증”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채용 시 급여는 다른 공직과 마찬가지로 서독지역 지급급여액의 80%로 확정되었다. 연방군은 인민군처럼 공직에 있어 특별한 급여규정 및 공급규정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들에게는 전습근무관계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서독 군인법(Soldatengesetz)에 따른 서약이 요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에펠만 서약”에 따른 것으로, 일 년이 채 안되어 요구된 두 번째 서약이었다.

계급은 전습근무관계 상태에서 구연방군 기준에 따라 조정되었다. 공정한 기회를 줌으로써, 서독 연방군 동료들이 구 동독 인민군 출신 군인들은 완전히 다른 직무체계와 승진체계에서 비롯된 직급상의 혜택을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게 되었다는 뒷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급 조정은 보통 한 개 또는 일부는 두 개, 그리고 예외적 경우에 심지어 세 개 계급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계급조정은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그 사이에 연방군 중대의 지휘가 인민군의 대대보다 더욱 어렵고 많은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수용되었다. 적지 않은 수의 장교들이 연방군 하사 계급으로 지금까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년 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약속받은 장교들은 임시 조직의 직책에 투입되거나 또는 제한된 시기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기존 동독군의 잔재를 청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인민군에서 운동과 군 신체단련을 담당했던 장교는 구 동독지역 내 새로운 부대로 투입됨으로써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들을 계속해서 군 운동강사 내지는 최소한 민간인 신분의 운동교사로 부대에 존속시키는 것은 내가 지휘 대장으로서 직접 추진했던 사안으로, 과거 감독관 경험을 통해 연방군 내에서 운동이 1994년 무렵까지 소홀히 다루어졌던 교육 분야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교의 경우 초과인원이 많아, 종종 하나의 직책을 여러 명이 수행하는 중복 임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대장과 포병 중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직무전환 교육과 지도는 구 서독지역 출신 전문가의 참관여부와는 무관하게 거의 전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1991년 초까지 육군에는 약 45,000명의 과거 인민군 출신 군인과 의무복무 군인 그리고 신연방주 군사기지에서 복무 중이었던 구연방군 군인 1,200명이 있었다. 구연방주 출신 군인의 수는 특히 구 동독 인민군 군인에 대한 2년 계약 종료 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1994년 가을에는 장교와 하사관 약 5,500명, 그리고 의무복무 군인 3,000명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 인력은 당시 장교 2,942명, 하사 11,619명, 사병 26,64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에게 허용된 인력 규모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다.

후임인력의 충원상황은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인사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전반적으로 좋았다. 구 동독 인민군 장교들에게 여러 주에 걸친 보충교육과정이 육군훈련학교, 코블렌츠 내부지도자양성센터, 함부르크 연방군 간부사관학교에서 제공되었다. 그밖에도 전문가 및 무기교육관을 위한 전문적인 직무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약 2,000명에 이르는 장교와 수많은 하사관들이 서독 군사기지에서 4주에서 6주에 걸친 군부대 실습을 이수하였다. 그뿐 아니라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의 경우에, 인민군 출신 직업 군인들은 독일의 헌법 및 군법, NATO 조약 등과 관련하여 사령부 법률자문단이 진행하는 단기과정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다.

1993년 초, 2년 계약을 맺었던 육·해·공군의 모든 장교 및 하사관들은 2

인 이상의 상사로부터 서면으로 상세하게 성격상 특징, 능력, 적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육·해·공군의 인사 담당 기관에서 시행된 8,282건의 평가서와, 이에 버금가는 분량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성범주별 직무자격평가서가 연방군에 한꺼번에 올라갔고 이로 인해 연방군은 기존에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까다로운 평가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이 직무자격평가서(경력평가)는 지원자를 다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심사 대상자 중 적합한 또는 더욱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세 개의 집단이 약 80% 정도, 제한적인 또는 부적합한 두 개의 집단이 약 20%로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군 방첩기관은 기밀사항에 대한 접근을 다루기 때문에 정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적성검사를 위한 연방정부의 독립적 위원회가 연방군의 직업장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지원자에 대해 청문권과 추천권을 행사한다. 이 위원회는 약 500여 명에 대해서는 지원자 면접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로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약 40명의 후보자는 추천을 받지 못하였고, 당연히 채용되지 않았다.

2년 계약을 맺었던 모든 장교와 하사관들은 베를린에 소재한 비밀문서관리를 담당할 소위 “가우크칭”으로부터 구 동독의 슈타지와 공모한 책임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긍정적인 검토 결과 책임자로 판정된 지원자 5명 중 1명에게 이른바 적색 사례가 나타났다. 각 적색 사례는 당사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연방군으로부터 무기한 해임되거나 2년 간의 계약관계 종료 후 직위해제 되었다. 이와 같은 “적색 사례”의 발생 빈도는 병과 및 이력에 따라 상이하였다. 통신부대와 위생대 간부, 그리고 제트기 조종사들에서 이러한 적색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육·해·공군에 2년 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구 동독 인민군 장교 출신 5,662명 모두가 연방군 정규직에 지원하였다. 이들 중 3,575명은 1993년에 직업군인 또는 최대 15년 간 복무하는 기간제 계약 군인으로서 채용되었다. 또한 약 600명의 인민군 전 장교들은 연방군의 하사관으로 전환배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만족하였다. 약 1,600명은 인민군 전 장교에서 방위지구 행정기구 VII의 공무원 또는 사무직 직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인으로 채용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과거 인민군의 참모장교로, 이들이 함부르크 소재 연방군 간부사관학교의 참모장교 기본교육과정에 별다른 허가 없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의 형식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독의 동료들과 한데 섞여 강당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동시에 참모 장교급(소령, 공무원 급여등급 A 13) 활동에 대한 적성심사를 받았다. 과거에 다른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발생한 핸디캡은 존재했지만,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진 않았다.

1993년에 이르면, 과거 인민군 이력을 지닌 장교들이 최초로 참모진 교육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당사자들이 이와 같이 매우 까다롭고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개발과정을 사전에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지금도 독일통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으며, 이들은 이제 통일의 패배자 집단, 다시 말해 어찌면 복수를 열망하는 잠재적 반동세력으로 전략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해 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우리는 흠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과만 함께 춤을 출 수 있다”고나 할까. 그리고 새로운 동료들이 통합되었던 반면, 동시에 연방군의 축소로 인해 이전의 전우들이 조기에 퇴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연방군의 기존 장교 집단이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년의 시험 기간은 모든 지원자로 하여금 그들이 장교이든 하사관이든 한편으로는 공정한 기회로,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각자 두 가지 시각에서 구분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3개월 동안 간부사관학교에서 참모장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중대장을 살펴보자. 그는 육군전술 통합 향상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계속교육을 혼자서 차분히 생각할 틈도 없이 빠듯한 교육과정 일정을 쫓아가야만 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대를 이끌어야만 했는데, 부대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를 대신하여 다른 동료에 의해 지휘되었다. 그는 직업장교로 연방군에 채용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준비해야 했으나,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따라서 그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감으로 인해, 2년 후 군인직을 퇴임할 준비도 동시에 해나가야 했다. 승계확인증과 함께 지원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과거 인민군의 직업 군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커다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독일을 위해 군을 동시에 해체, 전환, 구축하는 일회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응을 위한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하면서 그리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하였다. 이들은 재고조사, 군자재 선별, 군자재 반납 및 사용, 이후 소련군 그리고 이후 러시아군의 서부군대 지원에 동참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통일 조국의 역사에 있어 한 장을 장식하는 것이었으며, 이들 스스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바이체커(Weisäcker) 연방대통령은 1991년 4월 29일 내가 지휘하고 있는 포츠담 소재 동부 연방군을 방문하였다. 당시 그는 이미 알려진 연방군의 재건 능력을 “부대의 통일이 독일인의 통합을 촉진한다”라는 말로 치하하였다. 이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자극이자 모토가 되었다.

인민군과 연방군의 인적 통합은 다른 모든 국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복지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절차의 투명성, 특히 평가과정은 새로운 감독기관 내의 신뢰를 강화시켰다. 3년 후 군부대 내에서는 구 서독지역 출신 군인과 구 동독지역 출신 군인을 구분지어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들은 하나의 팀으로 성장하였고, 수많은 구 동독 인민군 출신 군인들이 정상적인 임기에 따라 이미

독일 서부 및 남부 지역 군부대로 전임되었다. 이들은 이미 1994년에 다수의 정기 진급조치에 따라 인민군 소속 당시 계급까지 승진하게 된다. 1994년부터 더욱 많은 수의 구 동독 인민군 장교들이 영어 및 프랑스어 외국어 교육 과정에 파견되었다.

완벽한 통합은 한 세대 전체의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포함한다. 따라서 어떠한 세계에서 새로운 동료들이 오는 것인지를 알고, 각자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일반적 특징을 찾아낼 수는 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상호 대체될 수 없는 개인이다. 그렇지만 구 동독 장교와 구서독 장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인민군에서 승계된 장교들의 자질 및 정신상태

통계상으로 나타난 인민군의 연방군 배치 후 평균 직위는 대위이다. 이들은 인민군에 입대하기 전, 이론 및 실무 교육,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자 격시험인 아비투어를 이수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직업교육과 직업 실무를 포함한 아비투어가 “비(非)프롤레타리아” 가정 출신 어린이를 위한 제2의 사회주의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독의 생활환경은 직업 군인에게도 부대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다양한 즉흥적 창작활동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그들 중에는 퍼즐이나 수수께끼를 즐기는 사람, 모형제작자, 취미로 수공예를 즐기는 사람 등이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을 이수한 장교들의 경우, 직업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높았다. 단지 이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도 교육제도에 있어 구 동독과 구서독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음이 곧바로 드러났다.

인민군의 장교 지원자들은 국가와 당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지원동기는 서독의 군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안전,

에 관심을 갖지만, 아내들은 남편의 직업에 별다른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서독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근무 외 시간에 상관 또는 장교클럽의 주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교 가족들의 공동생활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통계상 장교 가족들은 서독과 비교할 때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두고 있다. 주택은 표준화된 조립식 주택으로 다층형 건물이며, 다른 군인 가정의 주택과 나란히 늘어서 있다. 이러한 주거 상황으로 인해 동독의 근무 외 시간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계단식 주택의 집단공동체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공동생활이 이루어진다. 이제 극소수만이 연방군에서 계속 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웃 간 관계가 매우 불편해졌다. 그들은 러시아식 목조별장 “다차(Datsche)”가 있는 정원에서는 사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인민군 시절에는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 간부진에게 신고를 해야 했다. 근무 시간 외에 장교들은 보통 가족과 함께 하거나 또는 취미로 이것저것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장교는 이미 사관학교에서 전문병과에 할당된다. “병과 사령관”(중대에도 사령관이 있었음)과 관련된 이력은 연방군의 군 직무와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장급에 이르는 군 전문직의 경력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장교는 일반적으로 서독의 동료들보다도 더 많이 실무에 신경을 쓴다. 장교는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나, 학습 중에는 그다지 조직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장교는 학습에 있어서도 힘들게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학습은 흥미위주라기 보다는 지식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필기 내용을 외우며 학습한다. 동독에서 지식에 대한 테스트는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구 동독 인민군의 장교는 동일한 사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장교는 자유 세계에서 다원주의와 개방적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



을 느낀다. 공개적으로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는 개방적인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장교는 아마도 일정한 시간 동안 자기 확신감의 결여를 보이게 되고, 오히려 관찰과 경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감의 측면에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열등감으로 인해 구 동독 인민군은 독자적 주도권, 독립적 분석이나 결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 구서독 출신 동료들보다 더욱 많은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한다.

SED체제 국가는 서로 다른 비판적 사고와 말을 장려하지 않았다. 연관성에 대한 생각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정보는 하달되었다. 항상 명확한 계급적 관점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SED체제 국가는 언어교육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였다. 상투적이며 모호한 언어는 공산주의 지도자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군사적 표현방식 및 행동방식은 일종의 엄격한 의식에서처럼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집단 내 군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 동독 인민군의 직업군인에게서 처음부터 자발적인 개방성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두 사람만의 대화에서는 적극적인 개방성을 보여주어 놀라웠다. 사회주의는 사회집단 내 자유로운 소통을 무너뜨렸다.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미래가 임명장이나 사령장을 통해 안정적이 되어야 비로서 여유있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인민군의 명령방식은 연합군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사전에 계산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이 장교 학습과정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군 지휘부는 항상 앞서 생각을 해야 하지만, 미리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이론적 원칙은 실제 장교 교육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명령이나 계획의 실행에 대한 독자적 주도권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실무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다. 권한의 재위임이나 안정 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 평균적인 일반 장교들은 상당 수준의 러시아어를 구사하지만, 영어 실력은 기껏해야 기본 지식

을 갖추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운동에 있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으며 체력수준 또한 좋은 편이 아니었다.

구 동독에서 장교는 교회와 접촉이 전혀 없었으며 세례도 받지 않았다. 장교는 종교 문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 장교들은 민주시민교육과 서독 군목의 신앙상담, 그리고 정무업무와 인민군을 구분짓는 것을 어려워했다. 가끔 장교들은 드물지만 주위에 군목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과 절제된 관심을 보여주는 목사와 마주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사는 교구(敎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구 동독지역 내 주(州)교회는 1957년 체결한 군목 신앙상담 조약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극심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군인은 설득력 있는 주장의 명확성 그리고 진실된 동기의 공개를 원한다. 부차적인 문제가 주된 문제로 과대평가 되어버렸고, 평화윤리적 기본원칙의 전면적 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교회 분열의 우려로 인해 유보되었다. 몇몇 교회 목사와 주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은 “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장교들은 인민군 직업장교이자 전문가에서 연방군의 직업장교로 전환되기 위한 공식적인 자격전환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이 훈련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병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하며, 동시에 다방면에 실력을 갖춘 참모 장교가 되어야 한다. 연방군 제복을 입은 채로 이러한 전환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전환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인 분야에서 목표의식을 상실하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존감에 대한 상실은 삶의 위기로 다가오며, 이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정상적 반응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상실감을 겪게 되면, 장교들은 삶의 일상적 상황에서 불확실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상실감



으로 인해 장교들은 동독에 대한 서독의 단호한 평가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는다. 비법치국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언급한 자가 의미하는 것과는 훨씬 다르게 그에게 받아들여진다. 진정이 담긴 행위는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들이 내보이는 예민함 뒤에 동독에 대한 은밀한 그리움이 감춰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장류하게 된 구 동독 인민군 장교들은 자격재취득과정에 대한 동기 부여가 잘 되어 있었다. 별도의 향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능력은 두드러지게 한 방향으로만 발달하였다. 비공식적이며 자율적인 향상교육과정은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다. 자유는 또한 동시에 여가시간이 아닌가,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경력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각인되지 않은 듯 보였다. 인민군의 경우, 진급은 위로부터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배치전환을 위한 자격취득과정이 5년 후 포괄적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연방군의 지휘부 조치와 구 동독지역 군사 기지에 대한 서독 동료들의 태도가 완화되어 자격취득이 용이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들 “선구자들” 대부분은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료와 공감하고 도움을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차별적인 주관적 감정이 서독 동료 대부분이 갖고 있던 기본적 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곧 구연방군 내에서 축소 및 구조조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바르샤바 조약이 폐지되고 과거 가입국 군대와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후, 국방과 관련된 정책적 환경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방군 내 동부군과 서부군은 공동의 재학습과정을 모색하였다. 이는 동시에 구 동독 인민군 군인의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이들은 몇몇 서독 동료들과 달리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독일의 국제적 의무와 관련하여 군병력의 외국 투입에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다.

구 동독 인민군의 직업 장교들은 통일 후 처음 3년 간 구 동독지역 내에

서 전환학습, 적응 및 선발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 대통령으로부터 모범적 사례로 치하 받았던 연방군의 구 동독지역 재건 사업에 동참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동독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독인들 “베씨(Wessi)”에게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이었다. 다시 말해 많은 장애물과 제한적 기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정복해갔다.

인민군 출신 장교는 연방군 내에서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무병에 대한 생각을 빠르게 전환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여러 사례를 통한 많은 교육과 지도를 필요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 장교층의 경우에는 특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5년 후 대부분 극복되었다.

군의 이미지와 “연방군 브랜드” 활용 방식에 대해 통계상 인민군 출신 장교들은 오히려 실망감을 갖고 있으며, 별로 엄격하거나 강력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구 동독 인민군 출신 장교들은 초기 재건 기간 동안 자신들과 매일 협력했던 서독 동료들에게 연대감을 느꼈다. 서독 동료들 역시 점차 그들에게 연대감과 공감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통일 후 구 동독지역 내 특수 상황에 대한 서독의 무지와 무시를 비판하였다. 연방국방부와 서독 연방군이 보여준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오만함과 독선에 대해 공동으로 민감하게 대처하였다. 따라서 동독 투입 시 나타났던 베씨라는 표현이 “보씨(Wossi)”라는 표현으로 곧 바뀌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완전히 구 동독지역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함께 이사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구 서독지역에서 보면 이들은 완전히 구 서독지역에 속해 있다고도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통일과정의 전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오씨에 대해 갖는 단호한 평가에 보씨가 대신 나서서 싸워주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구 동독지역에 대한 보상비용은 신연방주 내에서 제한된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것보다 구 서독지역에서 계속 경력을 쌓고 싶어 했던 구 서독지역 출신 동료들에게 가끔 질투심을 불러 일으켰다.

구 동독 인민군 장교와 보씨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방식에 따라 각자 개인적 생활환경 속에서 연방군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항상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연방군 전체가 변화함에 따라, 구 서독지역 동료들 역시 그들의 문제에 대해 구 동독지역 동료들에게 더 많은 이해를 구해야 했다.

결산

구 동독지역 내 연방군은 신뢰 구축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이를 안전한 미래에 투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민군 내 과거 군 상사가 구 동독지역 신임병으로 그리고 구 서독지역 동료들로 수용된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었다. 연방군과 소련군(이후 러시아군) 서부부대의 협력이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연합군은 도대체 어떤 국가가 1995년 예정된 NATO 관할구역에 가입국으로 수용될지 회의적 시각으로 의심을 품었다. 이제 이들은 독일식 모델을 바탕으로 과거 바르샤바 조약국의 NATO 회원국 가입을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신연방주 내 연방군은 그들의 방식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구 동독 인민군의 직업군인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여 독일인의 공동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1993년 7월 콜 연방총리는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을 방문하였다. 라테노브 북쪽에 위치하며 하벨강과 엘베강 사이에 놓여 있는 클리츠 소재 연방장에서 전투 훈련의 일환으로 무장상태에 있던 모든 계급의 군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때 독일연방공화국의 구 동독지역과 구 서독지역 출신으로서 위대한 과업에 동참했던 많은 병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사에 있어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적이 동료가 되었으며, 이들의 임무는 독일 민족의 권리와 자유를 용감하게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군은 우리 조국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확산하건대, 과거를 회고할 때 독일 군대의 업적이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한 장을 장식할 것입니다.”

1994년 9월 연방군 감찰관인 클라우스 나우만 대장이 NATO 군사위원회와 통합된 연합국 군대 참모총장들을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으로 초대하였다. 나는 연병장에서 1990년대 독일 육군의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전투 훈련 중인 부대를 진두 지휘할 수 있었다. 나는 베를린에서 상세한 상황 발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다. 의도했던 효과가 연방군 감찰관의 말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후 NATO 군사위원회가 나우만 대장을 차기 의장으로 임명한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1995년 2월 연방국방부 장관은 연합국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NATO 위원회를 그 사이 명칭 변경된 구 동독지역 소재 제 IV 군단으로 초대하였다. 총지휘관이자 지금은 중장인 요아힘 슈피어링이 다시금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여 클리츠 연병장에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전투 훈련을 진두 지휘할 수 있었다. 이들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연방주 내에서 오랜 기간 성장해 온 육군 병력과 견주어 전혀 뒤쳐짐 없이 높은 동기부여 의식을 갖고 연방군의 주요 국방병력 기준에 따라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독일 육군 제 IV 군단은 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 관할구역을 배정받았다. 그 이후 총지휘관은 두 명의 간접적인 상사를 배정받았다. 한 명은 코블렌츠에 새로 창설된 육군 지휘사령부의 사령관으로 과거 방위사령부의 임무를 또한 이어받게 되었다. 다른 한 명은 현재 하이델베르크 소재 NATO 중앙지상군(Landforces Central Europe, LANDCENT)의 네덜란드 총사령관으로서 병력투입의 결정 및 이와 관련된 군사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국토 방위는 연합방위이다. 구체적인 적을 상정하지 않고, 방위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럽 내 평화를 위한 독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유럽은 오직 모든 국가의 공동의 책임 하에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은 자국의 자유와 독립을 좀 더 큰 전체적 틀 안에서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더 큰 틀 안에서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 그리고 유럽을 위한 공동 책임은 독일인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군사 수단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과제들이 도출되는 것이다. 독일은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UN, 북대서양조약기구, 서유럽연합,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의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독일이 통합되는 사이에 독일의 크기, 지리적 상황과 경제력으로 인해 늘 역사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던 유럽 내 인접국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 군대는 독일에서, 서독 연합군은 베를린에서 철군하였다. 독일인들은 각기 다른 이유에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베를린과 구 동독지역 영토에서 4년에 걸쳐 중부 유럽 군비축소 및 군비 통제라는 주요 업무가 진행되었다. 사실상 이것이 만족할만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군 외에도 통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 동독지역과 구 서독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종종 부당하고 감정적이었다며 실망감을 표출한다. 동부 지역 인접국가 군대와와의 만남에서 우리는 항상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들의 문제를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와 문제를 공유하겠는가? 이러한 경험은 매우 숙고할 만하다. 독일인들은 서로를 제대로 참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권력의 탄압이 느슨해지자마자 관습을 거부하고 부서버렸던 것인가? 동독인들은 단순히 서독 마르크와 서독의 번영만을 원했고, 덧붙여 조용히 내버려 두기를 원했던 것인가? 서독인들은 국가의 통일이 그들의 기득권과 관습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가? 서독인들은 국가의 전후 부채에 대한 연대감에 있어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 그칠 줄 모르는 성장이 그들의 국가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독일인들은 유혈사태 없는 자유 통일이라는 선물에 감사해 하지 않는 것인가? 독일인들은 정말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전체 하에 모든 소식을 믿는 것인가? 몇 가지 간접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신의 활동 영역 안에서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고 있다. 만일 독일이 이미 통일되지 않았다면, 유럽이 어떻게 통합되었는가?

독일인들은 40년 간 서로 떨어져 살았다. 동독과 서독의 군대는 서로 적이었다. 연방군과 인민군은 서로 매우 달랐다. “동독”의 경험과 “서독”의 경험은 공통된 독일 역사의 일부이다. 그리고 물론 국민들 사이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체성이 자라났다. 서로 다른 두 군사문화가 30년 이상 독일 영토에 존재하였다. 구서독에서는 서유럽과 북대서양 정체성이 자라난 반면, 구동독지역에서는 또 다른 정체성이 성장하였다. 신연방주 내에서 앞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목표가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하고 확고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제IV군단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 서유럽과 북대서양 국가 간 정체성 확대가 추구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공동의 교훈을 지니며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지닌 경제·문화권의 중심, 중유럽에서의 국가적 정체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시종일관 유럽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의 지리적 운곽은 알타협정의 부당한 규정을 통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염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유럽의 생각은 유럽의 안전을 오직 공동으로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구 동독지역에서 연방군이 수행했던 재건사업과 더불어 통일 조국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라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향후 더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축적되어 왔다.



인터뷰 - 로프 옥켄(Rolf Th. Ocken) 장군

시간: 2012년 3월 22일

장소: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

로프 옥켄 장군은 여단장으로 동독 국경수비대 청산과 내독 경계시설 철거의 책임을 맡았다. 그는 이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전부 녹음하였고 나중에 노트에 기록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동독 국경수비대의 해체와 관련된 군대의 공식적인 일지는 많은 부분이 손실되었다.

동독 국경수비대의 해체

동독 체제 하에서 국경 수비대는 인민군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과도기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독 내무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 결과 동독의 총병력이 갑자기 50,000명 감소하였다.

동독의 국경수비대가 내무부에 소속되게 되었다는 것은 통일 과정에서 국경문제를 내무부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당시 연방 내무부 장관이었던 볼프강 쇼이블레는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게 내무부가 국경 시설을 철거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그것은 연방국방부의 과제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에 따라 국방부가 이 과제를 넘겨 받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슈톨텐베르그가 직접 로프 옥켄을 국경수비대 담당관으로 임명하였다.

슈톨텐베르그 국방부 장관이 통일되던 날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부가 위치한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이제 모든 가입지역에서 군대에 대한 명령권은 내가 넘겨 받게 되었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와 연방군이 실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서독은 당시 동독에 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많은 유연성

을 갖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인민회의에서 동독에 신설된 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방 국방부의 기획과에서 인수계획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990년 7월에는 인민군과 연방군의 협력에 관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지도부는 그런 활동을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언론이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군사적으로 인수받았다고 보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무서워서 국방부 지도부가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언론이 통일 준비과정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국방부와 연방군의 준비작업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하였더라면 야당과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 국방부와 연방군에서 통일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인 명령은 1990년 8월/9월에야 내려졌다. 이런 명령이 동독과 협상을 통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단지 과도기 동독 정부가 자료를 넘겨주었고 연방 국방부에서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독일연방공화국은 1990년 7월에서 동독의 군사령부가 있던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연락장교 한 명을 파견하였다. 이에 대한 결정은 이미 1990년 6월에 내려졌다.

인민군의 실질적인 인수는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다. 그 후 여단과 사단의 명령권자는 모두 서독출신으로 교체되었다. 대대급에서는 반 정도 교체되었고 나머지 단위에는 서독의 자문이 파견되었다.

인수작업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는 통일된 연방군의 군복과 관련된 것이었다. 통일된 연방군의 군복을 한꺼번에 통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연방군은 신연방지역에 있는 전 인민군 소속의 연방군들이 적어도 인민군 군복을 입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를 위해 1990년 10월 3일 직전의 주말에 많은 양의 연방군 군복을 동독으로 운반하였다. 1990년 10월 2일까지 인민군 군복을 입고 근무하던 군인들이 10



월 3일자로 모두 연방군 군복을 입고 출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적어도 군복에서는 차별이 없었고 신속하게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인민군과 연방군 - 공존 또는 해체

과도기 동독정부가 통일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통일 이후 인민군이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동독의 국방부 장관, 라이너 에플만과 같은 경우 1990년 5월까지도 앞으로 두 개의 독일군대가 존재할 것이라고 그리고 인민군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방의회에서도 몇몇 정치인들은 다른 어떤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연방군과 인민군이 통일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두 개의 군대가 공존한 것도 아니었다. 인민군이 완전히 해체되었고, 해체된 인민군의 소속 인원 중의 일부가 연방군에 의해 인수되었다.

그러나 1990년 10월 4일에는 누가 연방군으로 인수될 것인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인민군 소속 모든 군인들에게 새로운 군복을 지급하였다. 왜냐하면 누가 인수될 지 모르지만 일단은 구 인민군의 군인을 이끌어 통일 후 처리해야 할 수 많은 일들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통일 직후의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은 구 인민군 소속 군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그 때까지 사용하던 사무실에 서독에서 온 후임자가 앉아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구 인민군 소속 군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냥 집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통일 직후 인민군 중에 약 50,000명이 계속 근무하겠다고 신청하였다. 나머지 제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7,500마르크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1990년 4월까지 인민군의 총인원이 170,000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3분의

2가 넘는 인원이 제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군에서는 군대 행정 또한 군인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서독 연방군과는 달리 군에 근무하는 민간인은 많지 않았다. 그 결과 전문직, 특히 군의관의 경우 대부분 인수되었다.

인수 또는 합병의 문제

롤프 옥켄 장군은 전역 이후에 नेपाल에서 자문과 강연활동을 하였다. नेपाल에는 그보다 먼저 미국에서 온 자문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नेपाल 정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은 군대통합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동독의 국경수비대를 해체한 경험이 있는 그가 이러한 자문을 담당할 적격자로 비추어진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 नेपाल은 너무 많은 군인과 아주 적은 돈을 갖고 있었다. नेपाल의 모택동주의자들은 그들의 군대가 하나의 단위로 नेपाल의 정규군에 통합되기를 원하였다.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의 군대를 단체로 다른 군대에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된 독일은 인민군을 그러한 방식으로 통합하지 않았다. 그냥 다양한 단위에서 군인들을 개별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다.

옥켄 장군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의 군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과 저항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통합능력을 가진 지도부가 있어야 하고 인수된 사람들에게 줄 적합한 과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옥켄 장군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재교육과 같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기와 탄환의 처리

통일 이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기가 폐기되어야 했다. 인민군은 300,000톤 이상의 탄약을 남겨 놓았다. 비밀경찰 요원의 경우 예를 들어 집



에 권총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등록이 일부는 아주 부실하게 진행되어 무기의 반환문제를 통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인민군의 차량을 운행정지 시켰을 때에는 연료로 인해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했다.

1990년 10월 3일에는 (유럽 연합의 규정에 따라) 탄약고의 경비를 위해 흐르던 고압선 전류를 절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탄약고의 경비를 위해서 아주 적은 인력이 존재할 뿐이었다. 인민군의 전차는 다른 나라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보스니아에 있는 유엔군에게 제공되었고, 또 많은 수가 폐기 처분되었다.

국경수비대의 해체

전 인민군 소속인원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통일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스스로 제대하였지만, 더 오래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연방군에 통합되어서, 지금은 누가 전에 인민군 소속이었는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국경수비대에 속했던 군인은 (군의관을 제외하고) 아주 적은 수만이 연방군으로 인수되었다.¹ 실제로 이 부대는 통일과 함께 해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990년 10월부터 이 부대는 연방 국경수비대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지위”를 갖는 부대로 별도의 단위가 되었다. 당시 이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들 중에는 롤프 옥켄 장군만이 유일하게 연방군에 소속된 군인이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시민들

¹ 1991년에 연방의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총 4,650명의 동독 국경수비대 소속 인원 중에서 4,040 명이 동부 국경수비대로 인수되었다(문서번호 11). 그러나 1990년 10월 2일 현재 동독의 국경수비대는 이미 개혁작업을 거쳐서 동독 내무부로 소속이 이전된 국경수비대였다. 1990년 6월 이전에 동독의 국경수비대는 인민군 소속이었고 인원도 40,000명이 넘는 대규모 부대였다. 옥켄 장군이 말하는 대규모 해고는 동독 과도기에 진행된 개혁과정에서 해고된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옥켄 장군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베를린의 시민들에게 “녹색 SS”라고(녹색 나치 친위대) 불릴 정도로 동독의 지배기구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무장 단체의 소속 군인이 일반시민들보다 더 많이 독재자에 봉사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 댓가로 그들은 주거를 쉽게 배정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받았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등 업무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부담이었다. 그래서 동독 국경수비대가 해체되었을 때 어떤 대원은 오히려 부담을 덜었다고 느끼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베를린 장벽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동독의 국경수비대가 해체되면서 많은 부대원들이 해고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들 중에 다수가 당시 호황을 누리던 건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옥켄 장군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에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부대에 사람을 보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찾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부대원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너희들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즉시 상사에게 신고하고, 일하던 장비들은 그 자리에 잘 놓고 가라”고 명령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크레인운전사와 같이 국경철거작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게다가 국경수비대에 소속되었던 크레인운전학교는 이미 폐쇄된 후였다. 그래서 옥켄 장군은 당시 연방군 동부 방위사령관이었던 요르크 쇠봄 장군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크레인운전학교를 다시 열었다. 쇠봄 장군의 국경의 시설물들은 제거되어야 하는데 국경수비대의 소속기관을 새롭게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쇠봄 장군에 따랐다면 옥켄 장군은 1990년 12월 성탄 직전까지 1,200명의 인원을 해고해야 했다. 그 중에는 적지 않은 임산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옥켄 장군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켰고 결과적으로 이



들은 해고되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 본인의 고집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이라는 예외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필요한 사안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통일이 예외적인 경우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당시에 “연방감사원에서 문제삼으면 우리는 다음 번에 통일할 때는 잘 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

독일군인인 옥켄 장군의 이러한 태도가 놀랍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통일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의 유연성있는 대응능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것을 문제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연방군 장교 중에 한 명도 통일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 동독의 국경수비대 소속이었던 군인들을 데리고 동서독 간의 국경지역에 매설되어 있던 지뢰를 제거하면서 폭발사고로 인해 인명을 잃은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옥켄 장군은 강조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당시에 지뢰제거 작업이 철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국경지역에는 현재 지뢰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첨부문을 참조). 그러나 당시에는 국경지역에 지뢰가 여기 저기에서 계속 발견되었기 제거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총 3년의 시간이 들었다고 한다.

연방군으로 인수되지 않은 구 동독의 국경수비대 인력을 데리고 국경시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옥켄 장군은 이들이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만들었다. 그를 위해 이 부대원들은 형식적으로 군대에서 해고되고 유한 회사에 고용되게 되었다. 연방군은 이 회사에 연방군의 번호가 붙은 차량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들 “회사원”들의 급여도 연방군이 지급하였고 차량의 주차장까지 제공하였다.

동서독 간의 국경지역과는 달리 오테강으로 사이에 둔 폴란드와의 국경에는 경계시설이 많지 않았다. 단 오스트제의 해변에 지어진 경계탑을 철거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어떤 탑에는 이미 “탑이 매각되었음 - 철거하지 말 것”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탑을 제거하는 작업은 아주 큰 공사였다. 이 공사를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옥켄 장군이 인솔한 팀은 현지의 관청 공무원들이 이 시설을 조사하러 오기 전에 철거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공사현장을 깨끗이 청소해서 뒤에 온 사람들이 불평할 근거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옥켄 장군은 1990년 12월에 국방부로부터 해체된 베를린 장벽을 판매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베를린 장벽의 구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임의적으로 마음에 드는 고객을 선택하여 장벽을 판매하였다고 한다.

신연방주의 하나인 튀링겐주에서는 모든 감시탑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옥켄 장군은 당시 튀링겐의 지자체 대표들에게 감시탑을 남겨둘 경우 그로 인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따졌고 그에 놀란 지자체 대표들이 감시탑의 제거를 허락하였다고 회상하였다.

베를린의 경우 베르나우어가에 있는 장벽을 기념물로 남겨두는 것/ 재건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베를린의 시정부는 장벽 보전 또는 재건 문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것보다 급한 일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장벽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리고 장벽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 보존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지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감시탑을 포함한 국경시설의 철거를 연기하거나 나중에 아예 철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옥켄 장군은 당시 국경시설 철거작업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현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중앙의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동독 국경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던 50마리의 개들의 경우 안락사시키라는 상



부의 지시가 있었지만 옥켄 장군은 그것을 반대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모두 판매되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옥켄 장군은 통일 당시 자신이 맡았던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을 내릴수 있는 영역이 많았고 각 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옥켄 장군 인터뷰에 대한 부연설명: 국경의 경계시설과 지뢰

분단시절 동독은 자국민의 탈출을 막기 위해 내륙 국경지역에 약 1백3십만 개의 지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부터 외국에서 오는 많은 압력으로 인해 동독은 이 지뢰들의 철거작업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또 다시 철거작업이 시작되었다. 1995년 당시 연방 국방장관이었던 폴커 류에는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내륙 국경지역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유대 연구팀은 2012년 3월의 인터뷰에서 구 동독 국경수비대의 해체작업과 함께 국경시설과 지뢰제거작업의 총 책임을 맡았던 옥켄 장군으로부터 이와 동일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통일 직후에 지뢰제거 작업이 철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뢰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독일 언론은 튀링겐의 구 국경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미 2010년 8월에 튀링겐주의 존네베르크지역에서 버섯을 찾던 시민들이 소련식의 대인지뢰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튀링겐주의 정부는 바이마르에 소재한 엔지니어사무실에 이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요청하였다는 것이었다.

자유대 한국학과 연구팀은 이 보도와 관련해 튀링겐주의 환경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그 쪽의 담당자가 자세한 응답을 보내왔다. 그에 따르면: 튀링겐에서 적어도 25km 지역에는 아직 “최소한 잔여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참고로 튀링겐 전체의 국경지역 그린벨트는 총 763km이며 지뢰의 리스크가 있는 곳은 그 중에 약 3%이다.

통일 이후에 튀링겐의 국경지역에서 약 32,000 개의 지뢰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뢰제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주정부가 의뢰한 조사평가서에 따르면 총 42개 지역에 다양한 크기의 지뢰가 남아있고 그것이 폭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한다. 42개 지역의 크기는 20미터로 비교적 좁은 영역도 있고 약 1킬로 정도의 긴 지역도 있다.

경사진 지역에 매설된 지뢰가 강한 비를 맞는다거나 홍수가 나서 또는 동물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뢰제거작업 중에 의도하지 않게 밀렸을 수도 있다. 2010년 8월에 발견된 지뢰의 경우 구 국경 시설 중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던 “죽음의 띠”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이였다.

튀링겐 주정부 내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 담당자는 2012년 5월에 자유대 연구팀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실제로 튀링겐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잔류 지뢰에 의한 위험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42개 지역, 총 길이 25km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참고로 튀링겐의 그린벨트는 총 길이가 763km이다. 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그 토지의 특성과 남아있는 지뢰매설 보고서를 함께 비교하였다. 1차 조사의 결과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인터넷과 다른 여러 홍보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여기에는 지뢰가 잔류했을 위험이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지도, 그 지역서의 행동수칙 등의 정보가 포함될 것이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다. 지뢰 잔류 위험지역에 대한 표식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와 상관없이 2차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이미 발주하였다. 이 2차 조사에서는 지뢰 제거작업을 어느 정도 규모에서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인터뷰 – 페터 톰슨 (Peter Thomsen) 전 인민군 육군 중령

시간: 2012년 4월 4일

장소: 텔토프 플레밍군 그로스베렌 읍, 디더스도르프 성

분단 시기에 동독 인민군 국경수비대 중령이었던 페터 톰슨은 베를린 남쪽의 글리니케지역의 국경시설 즉 장벽을 담당하는 부대에 속했다. 이 지역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국경 경비시설을 책임지지는 않았다.

당시 그는 부하들에게 차량에 항상 쇠파이프를 싣고 다니라고 지시하였다. 왜냐하면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과도기에 베를린장벽의 조각을 떼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장벽의 아랫부분부터 두드려서 장벽의 윗 부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도 있고 세관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벽을 깨어서 기념으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을 왜 그냥두었는지 그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통일이 되기 하루 전 1990년 10월 2일에 인민군 전부대에 연방군 군복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톰슨 중령은 이 군복을 지급받기를 거부하고 저녁 10시에 귀가하였다. 그는 동독의 과도기가 시작된 초기, 이미 1990년 3월 4월에 통일이 되어 인민군이 연방군에 인수된다면 자신은 군복을 벗을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연방군에 남을 의사가 없었던 톰슨 중령은 동료들에게 각자 자신의 문제 이니까 잘 검토하고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부대에서는 한 명의 장교도 인수된 사람이 없었다. 그의 동료 중 몇 사람은 당시 며칠 휴가를 내서 프랑스의 마르세이유에 있는 용병대에 지원하러 갔다. 그들은 이 용병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당시 서베를린에 이전에 용병대원이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다.

통일과 동시에 군대를 떠난 톰슨 중령은 본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



경시설을 제거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당시 서베를린에 살던 지인이 베를린 시정부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지인이 여러 사람을 건설회사와 독일 연방정부 산하 재난구조대인 기술지원단(technische Hilfswerk)에 소개해 주었다고 그는 설명하였다.

톰슨 중령의 기억에 의하면 통일 이전에 동독의 군인들이 이미 인민군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그의 부대원들 중에서 군대를 떠나려는 사람들은 그에게 전역을 신고하고 떠났다고 한다.

톰슨 씨는 (언제 어떤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통일 직후부터) 1992년까지 베를린 지역의 국경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그는 당시 연방정부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자신이 독일 영토 내에 있는 내독 국경시설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이미 국경시설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가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톰슨 씨와 그의 동료는 그 사업을 맡았고 매일 열 시간에서 열두 시간 씩 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국경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역을 다시 회생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을 담당하였을 때 톰슨 씨는 본에 본부를 둔 토지 개발과 매각 회사(Gesellschaft für Rekultivierung und Verwertung von Grundstücken mbH)의 사원이었다. 1993년 이 회사의 이사회에서 신연방지역 출신의 이사를 두 명 선출하게 되었다. 직원의 선거명단에 다섯 명의 후보가 있었고 그 중에 두 명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선거명부에 5순위에 올라 있던 톰슨 씨는 자신이 선출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사들 중에 톰슨 씨만이 신연방지역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독 출신이었다.

톰슨 씨는 국경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이 종료된 후에 비터펠트시의 공장을 철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62세에 정년퇴직하였다.

문서 목록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개혁기				
1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및 기타 과거 독일 국기의 사용, 선거, 의무	1952년 - 1990년	경찰, 군, 장교, 부사관, 사병	불명
2	국가국방부령 039/9/201호 - 군사기물물보관소의 조직과 업무	1988년 11월 1일	국가국방부	사통당 독재 청산제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115
3	연방군의 예비군 계획과 인적계획	1989년 10월 23일	메타스하이머,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1/230
4	즉각적 조치에 관한 국방부 장관 지시	1990년 1월 3일	테오도어 호프만 국가국방부 장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및 국경수비대, 독일민주공화국 건설, 주택부 장관	군사개혁, 1/1990, S. 1
5	전쟁무기 및 군사장비의 수출입과 생산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 -정부장관회의 결정	1990년 1월 13일	동독 장관각료회의; 모드로우 총리, 호프만, 제독, 인민군, 합참의장	사통당 독재 청산제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6	1990년 상반기 군의 해임과 병역대상자의 신체검사 및 입영에 관한 의회결정	1990년 2월 8일	동독인민회의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8, S. 44
7	독일민주공화국 헌법개정에 관한 법률	1990년 2월 20일	동독인민회의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9, S. 60
8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복무에 관한 규정	1990년 2월 20일	동독인민회의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10, S. 79-81
9	장관직 인계를 위한 테오도어 호프만 국방부 장관(제독)의 보고서	1990년 3월 1일	테오도어 호프만 국가국방부 장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베르샤버조약기구, UN 군축회의, 연방군,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와 각료회의(Ministerrat)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3764, S. 10~29
10	인민군의 미래역할에 대한 인민해군 참모총장의 입장표명서	1990년 3월 14일	국가인민군 인민해군 참모총장 부제독 본	사통당 독재 청산제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4
11	국방부 장관 업무 인계를 위한 보고서 발췌 내용	1990년 3월 23일	테오도어 호프만 국방부 장관, 국방부, 인민군, 국경수비대, 민방위군	Theodor Hoffmann, 1994, Das letzte Kommando, Ein Minister erinnert sich. Berlin: Verlag E.S. Mittler & Sohn, S. 320-323.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	군축국방부 회의	1990년 4월 17일	군축국방부 장관 에펠만, 차관 비초레크, 차관 아플라스, 차관 미치넥, 제독 호프만, 헤를스트, 크뤼거-슈프렌겔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 (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112
13	베르트람 비초레크(Bertram Wiczorek) 군축국방부 의회차관 최고인민의회 연설	1990년 4월 20일	베르트람 비초레크 독일민주공화국 군축국방부 의회차관,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의회, 인민군, 유럽안보협력회의(CSCF)	Theodor Hoffmann, 1994, Das letzte Kommando, Ein Minister erinnert sich, Berlin: Verlag E.S. Mittler & Sohn, S. 324-326.
14	병역법 개정에 관한 법률	1990년 4월 26일	동독인민의회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25, S. 237
15	1990년 4월 27일, 쾰른에서 열린 군축국방부와 연방국방부 부처간 회의(군축국방부의 제안서)	1990년 4월 27일	군축국방부와 연방국방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 (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16	군축국방부 장관 앞으로 접수된 소원수리 및 청원 평가 - 1990년 5월 월례분석보고	1990년 5월 1일	군축국방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4
17	인민군 사령관회의 - 군축국방부 장관 강연	1990년 5월 2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18	국가보안부/국가인보청의 해체에 필요한 업무와 조치들에 관한 장관회의 결정	1990년 5월 16일	아플라스, 군축국방부 차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160
19	동독이 니키트라, 이라크와 맺은 수출계약에 관하여	1990년 5월 21일	동독경제부 특수무역국, 멘첼 대령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20	아루젤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회담, 1990년 5월 22일 (담화메모)	1990년 5월 22일	보이첵 아루젤스키 폴란드 대통령,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21	미조비키 폴란드 총리와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회담, 1990년 5월 22일 (담화메모)	1990년 5월 22일	티데우스 미조비키 폴란드 국무총리,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22	(사독) 연방군 군인과 (동독) 인민군 소속자 간 업무·비업무 접촉에 관한 기본지침	1990년 5월 28일	슈틀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연방군, 인민군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143738, Bl. 65-67.
23	연방군과 인민군 소속원 간의 근무 또는 근무 외적 접촉에 관한 지침	1990년 6월 1일	연방국방부, 군축국방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4	군축국방부 장관령 5/90호 - 1990년 4월 26일부로 발령된 인민군 소속원의 새로운 선사와 서안, 그 준비와 시행	1990년 6월 5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25	서독 연방국방부와 동독 군축국방부의 공동 지도구조 구축을 위한 연방국방부 조직위 위원장 호퍼 국장의 기본안	1990년 6월 13일	연방국방부 조직위 위원장 호퍼(Höfer) 국장, 연방국방부, 군축국방부, 연방군, 인민군, 비르사버조약, NATO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BMW/ 286238
26	1990년 7월 20일 군축국방부 기념식의 준비와 거행을 위한 계획	1990년 7월 20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동독정부장관의회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27	군축국방부 조직구조	1990년 6월 22일	군축국방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
28	군축국방부 장관령 7/90호 - 해수유동 관측 및 해저측량 업무의 군축국방부에서 교통부로의 이관	1990년 6월 24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교통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29	군축국방부 장관령 9/90호 - 군사정치대학 구조 개편과 인보정책연구소 설립에 관하여	1990년 6월 24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30	독일민주공화국 - 헝가리인민공화국 국방부 장관 회담	1990년 7월 1일	에펠만, 군축국방부장관; 라요스, 헝가리 국방부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72
31	군축국방부 장관과 인민회의 국민총원위원회 - 청원 "독일의 완전한 탈무장화"	1990년 7월 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과산, 동독인민의회 국민총원위원회 위원장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67
32	물자구매 및 조달과 유지보수 임무를 위한 구조전환으로서의 조달청 설치 - 차관 제안	1990년 7월 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장관; 아틀라스, 마치비, 군축국방부차관; 호프만 제독, 인민군참모의장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33	군축국방부 내부회의	1990년 7월 17일	아틀라스, 군축국방부 차관; 호프만; 에펠만; 하인; 길러; 벨게; 클로트; 함팔; 밀라; 레더러; 군축국방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07
34	소련 아르키스(스타브로폴 크라이)에서 열린 관계자 확대회의에서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클 연방총리 간 대담	1990년 7월 16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한스 디트리히 겐서 연방외무부 장관, 세바르드나체 소련 외무부 장관	Kusters, Hanns Jürgen/Hol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90, München: Oldenbourg Verlag, S. 1355-1367.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5	군형사건 관할권에 대한 결정과 시범절차법의 시행규정	1990년 7월 18일	동독인민회의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46, S. 811
36	통일변혁기 동인의 시민저항운동 통제에 대한 인민군의 역할, 연방의회 질의	1993년 5월 28일	유르겐 아우구스트노비츠, 연방의회원(기민/기사연합)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인쇄물 12/5082
37	군특임관의 업무에 대하여 군축국방부 장관에 보고	불명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마키엘 한, 군특임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06
38	개정 병역법 초안- 군축국방부, 청소년스포츠포부 공동기초화건	불명	군축국방부, 청소년스포츠포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2. 준비기				
39	국경수비대 미테, 권터 레오 대령이 동베를린 시장 티노 슈비어처니에게 보낸 국경비장지 출거 상황에 관한 서한	1990년 7월 27일	동베를린 미테 국경수비대 권터 레오 대령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Stadt/Detail/?id/593879/page/2
40	군축국방부 장관령 20/90호 - 해제되는 부서와 부대의 문건에 대한 파악, 분류, 인수에 대한 조치	1990년 7월 30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155
41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이 국경수비대에 보낸 서신 - 새로운 국경수비대의 구성과 국경수비업무의 이관에 대하여	1990년 8월 1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국경수비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7
42	동독 1990년 하반기 엔지니어와 기술수출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관계	1990년 8월 7일	동독경제부 무역국 엔지니어 기술수출 부서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43	연방군과 인민군 통합에 관한 서독 연방국방부 최초의 종합적 고찰.	1990년 8월 7일	연방군 총감찰감 에케하르트 리히터 연방군 장군, 연방군, 인민군, NATO, 연방국방부, 연방군 동부사령부	Hans Ehlert,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Verlag, S. 454-460.
44	소비에트연방 서부군단 보급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8일	동독인민회의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53, S. 1070-1071
45	군축국방부 장관령 26/90호 - 대민업무 기관 및 부서의 해체	1990년 8월 8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6	인민군 교육기관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1990년 8월 9일	비초레크, 군축국방부 차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47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과 디스투버 체코연방 외무부 장관 회담	1990년 8월 9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우베 헬펠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72
48	군축국방부 회담기록, 체코 프라하	1990년 8월 9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바츨, 체코 국방부 장관, 두카츨 차관; 빈센, 진드라, 페카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49	군축국방부와 연방국방부 회담, 1990년 8월 10일 - 기록문, 관련서류	1990년 8월 10일	군축국방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50	게르하르트 슈투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이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 - 연락사령부 설치 관련	1990년 8월 15일	게르하르트 슈투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연방국방부, 군축국방부, 인민군	Hans Ehlert,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Verlag, S. 462-463
51	인민군 추가 축소 조치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28/90호	1990년 8월 15일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독일민주공화국 국경수비대 및 민방위군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497
52	군축국방부 장관령 31/90호 - 인민군의 군사장비 및 물자의 매각에 관한 조치	1990년 8월 1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67
53	군축국방부 자문위원회 회의보고 - 해임된 정치장교에 대한 진담사항	1990년 8월 16일	군축국방부 자문위원회, 차관 비초레크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67
54	군축국방부 장관의 소련사부군단 철군 과도기 중 동독-소련 규정 요구	1990년 8월 1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55	인민군 재고 물자 매각 절차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 31/90호	1990년 8월 16일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497.
56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이 슈투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	1990년 8월 17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슈투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57	독일민주공화국 협상단 1990년 8월 20일 본에서 열린 3차 협상	1990년 8월 20일	동독정부 각 대표부와 신연방주 대표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8	동독 군축국방부 내에 설치된 서독 연방국방부 연락사령부 군사부문 총지휘관 리히터 연방군 장군의 최초 약식 보고서	1990년 8월 21일	연방군 총감찰감(Generalsinspekteur),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참모총장 테오도어 호프만 제독, 인민군, 연방국방부	Hans Ehlert.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Verlag, S. 464-466.
59	신탁장범에 대한 제2차 시행규정	1990년 8월 22일	동독정부 장관회의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56, S. 1260
60	연방군의 인민군간 연락지도부의 보고서	1990년 8월 2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정부장관회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61	군축국방부 장관령 32/90호 - 국방물자의 수출입 허가를 위한 신고의무	1990년 8월 28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62	군축국방부 장관령 33/90호 - 군축국방부 산하 차관 직속 연구관, 군전환 연구소의 설치	1990년 8월 28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63	소비에트연방 서부군단 보급물자의 관세, 소비세면제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29일	동독인민회의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63, S. 1608-1609
64	통일조약의 근간으로서의 의무 - 청소년스포츠팀부와 군축국방부의 공동 의지 표명서	1990년 8월 29일	코르둘라 슈베르트, 청소년스포츠팀부 장관;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65	인민군 각 군 전투장비의 장전 탄약 제거에 관한 명령	1990년 8월 30일	인민군, 인민군 각 군, 인민군 참모총장, 인민군 부대장,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Werner E. Ablaß. 1992. Zapfenstreich. Von der NVA zur Bundeswehr. Düsseldorf: Kommunal-Verlag, S. 156
66	독일 통일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조약 - 통일조약	1990년 8월 31일	연방국방부, 인민군, 연방군	1990년 9월 6일자 연방정부언론정보청 관보 제 104호, S. 877
67	연방국방기술조달청(BWB)의 조달청(AIB) 인수, 흡수	1990년 9월 1일	연방국방기술조달청,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연방군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67
68	최후명령 등	1990년 9월 / 10일	연방국방부 연락사령부(Verbindungsgruppe), 군축국방부, 인민군, 인민군 참모총장, 연방군 동부사령부,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Bw 2/22095, Bw 1/286223,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Hrs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Eine Bilanz. Bonn: Presse- und Informationsstab, S. 16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9	군축국방부 장관령 38/90호 - 인민군 기밀서류와 식별기호의 검토 및 재분류에 관한 조치	1990년 9월 3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39
70	주 동독 소련군 내 연락조직 설치에 관한 메모	1990년 9월 5일	주 동독 소련군(스리사부지역군단), 군축국방부, 연방국방부, 인민군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Bw 2/22095
71	군축국방부 장관령 39/90호 - 인민군 군복 및 개인장비의 전환	1990년 9월 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72	군축국방부 장관령 40/90호 - 1987년 12월 22일자 독일민주공화국 국가국방부 장관령 123/87(국가국방부의 동독 방어태세 준비에 관하여)의 파기	1990년 9월 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39
73	연방군의 인민군 인수에 관하여 - 군축국방부 장관 편지	1990년 9월 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33
74	연방군의 인민군 인수에 관하여 - 기민/기사연합 원내 국방정책 실무자 그룹	1990년 9월 6일	기민/기사연합 원내 국방정책 실무자그룹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4
75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이 드 메지에르 총리에게 보낸 서신 - 연방군의 인민군 인수에서 위협한 문제들	1990년 9월 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드 메지에르 총리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112
76	연방국방부와 인민군 상황보고	1990년 9월 6일/7일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BW 1/235270, DVW 1144513, DVW 1/44514
77	인민군 국방물자의 조기매각 - 연방국방부의 이익제기 품목	1990년 9월 6일	군축국방부내 연방국방부 연락관; 올만 중장, 조달창; 시몬, 장관조정실장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78	군축국방부 장관 회의 - 1990년 하반기 물자, 기술 수요	1990년 9월 7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팔스, 차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79	여성 인민군 소속자의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 41/90호	1990년 9월 7일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497
80	통일 후 독일연방군의 미래에 관한 슈틀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의 답변서	1990년 9월 10일	슈틀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1	독일 관련 최종 규정에 관한 조약	1990년 9월 12일	한스 디트리히 겐서 외무부 장관, 로타 드 메지에르, 플랑 뒤마, 더글라스 허드,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제임스 베이커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1990. Verträge zur politischen Einheit. Bonn.
82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군축국방위원회의 통일조약 관련 성명	1990년 9월 13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관, 헬무트 콜 연방총리,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 군축국방위원회, 연방군 동부사령부(Bundeswehrkommando Ost),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연방국방부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566
83	군축국방부 장관령 45/90호 - 인민군 문건 파기 금지 명령	1990년 9월 14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76	연방국방부와 인민군 상황보고	1990년 9월 6일/7일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BW 1/235270, DVW 1/44513, DVW 1/44514
77	인민군 국방물자의 조기매각 - 연방국방부의 이의제기 목록	1990년 9월 6일	군축국방부내 연방국방부 연립반; 올만 중장; 조달창; 시몬; 장관조달실장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78	군축국방부 장관 회의 - 1990년 하반기 물자, 기술 수요	1990년 9월 7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팔스, 차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79	여성 인민군 소속자의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 41/90호	1990년 9월 7일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497
80	통일 후 독일연방군의 미래에 관한 슈탈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의 답변서	1990년 9월 10일	슈탈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81	독일 관련 최종 규정에 관한 조약	1990년 9월 12일	한스 디트리히 겐서 외무부 장관, 로타 드 메지에르, 플랑 뒤마, 더글라스 허드,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제임스 베이커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1990. Verträge zur politischen Einheit. Bonn.
82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군축국방위원회의 통일조약 관련 성명	1990년 9월 13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관, 헬무트 콜 연방총리,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 군축국방위원회, 연방군 동부사령부(Bundeswehrkommando Ost),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연방국방부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566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3	군축국방부 장관령 45/90호 - 인민군 문건 피기 정치 명령	1990년 9월 14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92	소련군에 대한 독일 연방장교부	일자 미상	연방군	연방군
93	국방부 슈트라우스베르크 외청 조직도	1991년	연방국방부	연방국방부
94	군통합 관련 문제에 관한 양측 국방부의 양자회의 결과 - 군축국방부 차관 아플라스가 특임장관실 차관 크라우제에게 보낸 편지	불명	군축국방부 차관 아플라스, 특임장관실 차관 크라우제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
95	군축국방부 에펠만 장관과 연방국방부 슈톨텐베르크 장관 회담기록문	불명	군축국방부(에펠만, 비츠레크, 아플라스, 마르치네, 호프만, 그레츠, 멜처, 로트, 햄펠, 헤를스트, 벨케); 연방국방부(슈톨텐베르크, 빔머, 팔스, 쇤보, 프랑크, 비헤르트, 슈바인슈타이거, 라이헤르트)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3. 인수기				
96	군축국방부 장관령 10/90호 - 동독의 국경수비업무관할권 변동과 새로운 국경수비대의 구성에 관한 조치	1990년 6월 26일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97	연방 국경수비대의 주요 지위에 있는 구 인민군 장교	1990년 8월 30일	비티히, 연방회의의원(사민당); 슈프랑어, 연방내무부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7761
98	연방군 총감찰감(Generalinspekteur) 디터 벨라스호프 제독이 연방군 사령관들에게 보낸 서신	1990년 9월 24일	연방국방부 감찰감 디터 벨라스호프 제독, NATO, 연방군, 인민군, 연방국방부	군사역사연구청, 문서 FB IV.
99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민군 소속원의 감축	1991년 3월 20일	모드로, 연방회의의원(사민당); 헤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17 (S. 1062A-D/Anlage 9)
100	연방국경수비대에 의한 동독 국경수비대의 인수와 심사	1991년 3월 21일	슈바니츠, 연방회의의원(사민당); 린트너, 연방내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18 (S. 1195D-1196B/Anlage 31)
101	조기 정년 퇴직한 인민군 소속원의 건강보험	1991년 4월 18일	켈러, 연방회의의원(사민당/좌파연합); 바펜슈미트, 연방내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432 (S. 1)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2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직업군인의 연금 공백기 문제, 인민군 전력 군인이 계급에 연방군 전역군인이 사용하는 aD, 표시를 사용하는 문제, 인민군에서 획득한 교육증명서 인정	2002년 6월 16일	놀팅, 브라운, 반 에센, 니벨, 알보비츠, 브뤼달레, 부룩버허, 플라흐, 풍게, 굿마허, 하움트, 하우스만, 하인리히, 히르헤, 홀부르거, 호이어, 클브, 쿨, 코펠린, 오토, 파르, 피퍼, 렉스로트, 슈미트-오르치, 슈슬러, 제인, 솔름스, 틸레, 튀르크, 이상 연방의회의원(지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4. 구조조정기				
103	인민군의 군사훈련장과 특별수립지역	1990년 10월 18일	크나베,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157
104	작센-안할트주의 알트마르크에 있는 인민군 부대 대지의 민간 이용	1990년 10월 24일	바이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1/230
105	군대와 기후	1990년 10월 24일	크나베,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337
106	1990년 10월 3일 이후 군사통신주파수의 이용	1990년 11월 2일	호스,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라베, 연방우편전화통신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427
107	인민군의 군사훈련장과 특별수립지역	1990년 11월 13일	크나베,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435
108	군사시설을 공사가 이하로 지자체에 양도	1990년 11월 29일	게스티,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포스, 연방재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513
109	전 인민군 군인들의 연방군 편입	1995년	연방국방부, 인민군, 연방군, 국가안전부(슈타지), 국가안전청(AINS)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1995.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Eine Bilanz. Presse- und Informationsstab, S. 17-20. http://www.welt.de/646247
110	벨기에는 인민군의 물자 중에서 MG 하나와 탄환 하나만을 원했을 뿐이다	1996년 2월 7일	독일 신문 벨트지	
111	전 인민군 잉여 물자 처리 종결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	1997년 7월 30일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및 국경수비대, 군축국방부, NATO, 국가안전부	Hans Ehlert,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Verlag, S. 525-528.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2	구 인민군 시설의 처리 방안	2001년	작성주 환경농림부	http://www.smul.sachsen.de/11/pu_bilkkationen/download/4182_1.pdf
5. 후유증 등 재반문제 처리기				
113	지역전환과 관련한 브란덴부르크주 지역개발포로그램 상황/물자 보고서	불명 (1991/1992년)	브란덴부르크주 시무국, 지역개발부,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과 주거연구소(SW)	브란덴부르크 주 문서기록보관소
114	인민군 소속원에 대한 형사재판	1991년 1월 14일	아우구스티노스-비츠,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안, 연방법무부 차관	-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038
115	인민군 물자의 보관과 매각처리	1991년 1월 23일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3(S, 6182B-D/Anlage 4)
116	"물자저장 서비스 회사"에 대한 연방의 지분과 직원의 총원과 계약관계	1991년 1월 23일	오켈,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3(S, 6182D-6183A/Anlage 5)
117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 전환지침의 준비와 제정	1991년 1월 29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기민당, 사민당, 민시당-좌파연합, 자민당, 녹색당)	브란덴부르크 주 문서기록보관소
118	인도네시아에 인민군 전함 양도	1991년 2월 11일	레온하르트-슈미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140; S, 12162C/Anlage 3
119	인도네시아에 인민군 전함 양도	1991년 2월 11일	간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140(S, 12162D/Anlage 4)
120	BEJUMA회사에 인민군의 무기와 탄환 양도	1991년 2월 11일	괴페,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140(S, 12163A/Anlage 5)
121	인민군 주택에 대한 연방정부의 계획	1991년 2월 12일	질라프,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카스텐, 연방재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160
122	인민군 탄환의 안전성 문제	1991년 2월 26일	오켈,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178
123	결포잔정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인민군의 물자 제공; 미그 29기의 테스트	1991년 2월 28일	오켈,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213(S, 38)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겔스도르프 조선소에 대한 해군의 수리 주문의 소멸 위험	1991년 3월 4일	루치기, 연방회의의원(시민당); 리들, 연방경제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213(S, 23)
125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인민군의 물자 제공	1991년 3월 20일	루치기, 연방회의의원(시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17(S, 1061C-D/Anlage 7)
126	신연방지역 군대 주둔지의 자연보호	1991년 3월 21일	뤼어, 연방회의의원(자민당); 카스텐, 연방재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18 (S, 1201B-D/Anlage 44)
127	징수대에 있는 인민군 사격장의 이용과 확장	1991년 4월 5일	쉐퍼, 연방회의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352
128	헝가리와 체코에 인민군 보유 무기와 탄환 양도	1991년 4월 17일	로박, 연방회의의원(기민/기사연합);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20(S, 1302C-D/Anlage 6)
129	인민군 부대를 대륙에 양도	1991년 4월 18일	젠퍼, 연방회의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432(S, 13-14)
130	인민군 훈련장의 인수를 위한 연방 국방부의 선택 기준	1991년 4월 18일	젠퍼, 연방회의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432(S, 15)
131	크로스칼프(라게)의 공급기지를 폐기된 인민군 군사차량의 보관지역으로 전환 그리고 공황의 민간이용, 군용기의 민간전환	1991년 4월 25일	파이게, 연방회의의원(녹색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472(S, 22-23)
132	인민군 탄환의 이용, 보관 비용과 일정, 경비와 폐기처리	1991년 4월 29일	호른, 연방회의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472(S, 23-25)
133	국방부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인민군 시설의 지자체에 대한 무상증여	1991년 5월 2일	노이만, 연방회의의원(시민당); 차이틀러, 연방재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500
134	신연방지역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 검사기준, 간혹병의 대응	1991년 5월 13일	놀링, 연방회의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585
135	연방군에 인수되지 못한 인민군 군인의 참원	1991년 6월 6일	연방의회, 국민총원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683
136	군부대 주둔지의 오염 처리에 소련의 참여	1991년 6월 7일	롬머, 연방회의의원(기민/기사연합); 카스텐, 연방재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 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767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7	신연방지역 군부대 주둔지의 오염 제거	1991년 6월 12일	오벨, 연방회의의원(시민당); 카스텐, 연방재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767
138	신탁청에 양도되어야 하는 군부대의 대지와 시설에 대한 동독 국방부와 인민군 장교들 사이에 맺어진 이용계약과 소자계약	1991년 6월 13일	슈바니츠, 연방회의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31(S, 2414A-D)
139	신연방지역의 군부대 주둔지, 오염지역	1991년 6월 19일	노이만, 연방회의의원(시민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33(S, 2618B-2619B)
140	인민군의 로켓트와 미사일 폐기	1991년 6월 19일	간젤, 연방회의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33(S, 2730B-C/Anlage 58)
141	인민군 주둔지역의 환경오염	1991년 6월 19일	퀴블러, 연방회의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840
142	인민군 시설의 폐쇄 계획	1991년 7월 15일	첼퍼, 연방회의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976
143	군수산업의 민간산업으로 전환	1991년 7월 29일	비스만, 힌스켄 도스, 펠, 키텔만, 페츨즈, 폴러, 슈피러, 슈프룽, 바우마이스터, 라트만, 오스트, 빌링, 카스텐스, 피셔, 호르눔, 유트너, 칸지, 코센데이, 레어, 림버흐, 마이어, 오스발트, 쉘켄, 이상 연방회의의원 (기민/기사연합); 브레드호른, 그뤼베크, 그뤼너, 한센, 히츨러, 놀링, 페티스, 쟈, 티레, 펠드만, 이상 연방회의의원(시민당); 연방장부; 연방경제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997
144	MBB의 인민군 탄환 폐기계획	1991년 7월 29일	슈티클러, 연방회의의원(시민당); 팔스,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025
145	신연방지역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탄환과 폭발물 그리고 위험물의 폐기계획	1991년 9월 5일	오벨, 연방회의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142
146	타국에 인민군 보유 무기와 군사장비의 양도	1991년 10월 10일	엘러, 연방회의의원(시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47(S, 3912A-D)
147	헝가리에 인민군 군수물자와 장비의 양도	1991년 10월 30일	오벨, 두베, 테어보그, 엘러, 브레히트, 간젤, 하이스타만, 이상 연방회의의원(시민당); 벡만, 연방경제부 차관	-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52(S, 4332B-4335D)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48	인민군 물자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위해 이스라엘에 양도	1991년 10월 30일	엘러, 연방회의의원(사민당); 키텔만, 연방회의의원(기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2(S. 4340B-4345C)
149	연방군에 의한 인민군 무기외 무장용품의 인수	1991년 10월 30일	바흐마이어, 연방회의의원(사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2(S. 4354A-D/Anlage 7)
150	분류 처리된 인민군 무기외 무장장비	1991년 10월 30일	웅만, 연방회의의원(사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2(S. 4357C/Anlage 16)
151	니토, 서유럽연합 그리고 유엔의 규정과 인민군 무기외 장비의 양도	1991년 10월 30일	오벨, 연방회의의원(사민당); 셰퍼, 연방외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2(S. 4360B/Anlage 23)
152	우루과이와 핀란드에 인민군 무기 양도	1991년 11월 14일	빌로우, 연방회의의원(사민당); 백만, 연방경제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633
153	인도적 목적을 위한 인민군 물자 양도	1991년 11월 28일	괴처, 연방회의의원(기민/기시연합);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766(S. 19-20)
154	지속적으로 근무 중인 인민군 교관의 법적 사회적 상황, 학생교육의 지속성	1991년 11월 28일	젤퍼, 연방회의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766(S. 20-21)
155	제3국에 판매할 인민군 합성의 탈무장화/개조, 판매금액	1991년 12월 5일	루치가; 웅만; 이상 연방회의의원(사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4(S. 5418C-5419D)
156	작센-안할트주의 군사훈련장	1991년 12월 5일	바이스, 연방회의의원(사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4(S. 5419D-5420A)
157	터키와 다른 니토 파트너에 인민군 무기외 탄환 양도	1991년 12월 10일	루치가; 연방회의의원(사민당); 플스,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839
158	더 이상 필요없는 인민군 군함과 수송차량의 처리	1991년 12월 12일	클보우, 벤리트, 폰 빌로우, 엘러, 폭스, 간젤, 길게스, 하이스타만, 호른, 이베르젠, 웅만, 카스트너, 페르퍼, 퀴블러, 라이딩어, 노이만, 니게마이어, 오벨, 셰어, 솔테, 슈타이너, 티체, 보이트, 발터, 바이스, 차프, 슈트록, 포겔, 이상 연방회의의원(사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820
159	폴란드를 통해 구소련 독립국가 연합으로 인민군의 트럭을 운반	1992년 1월 9일	엘러, 연방회의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959(S. 38)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60	일본어에 인민군 의료차량을 제공	1992년 1월 10일	빔,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쾰른, 연방외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959; S. 1-2
161	에이전시를 통한 인민군 무기와 다른 군사장비의 판매	1992년 1월 13일	두베, 연방의회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62	인민군 물자의 경매와 "물자자산서비스 회사"	1992년 1월 15일	앵켈만, 연방의회의원(민사/좌파연합); 오펠, 연방의회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9(S. 5849C-5851A)
163	타타에 대한 인민군 무기의 제공 계획	1992년 1월 15일	코펠만, 연방의회의원(자민당); 인트레타, 연방의회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9(S. 5851A-5852B)
164	타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민군 지원자지의 투입	1992년 1월 15일	아우 구스티노비츠,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9(S. 5854D)
165	신연방지역의 군부대 지역의 민간이용	1992년 1월 15일	자이퍼트, 연방의회의원(민사당/좌파연합)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9(S. 5858C-5859A)
166	타타에 제공된 인민군 물자의 소재	1992년 1월 22일	엘러, 연방의회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67	인민군의 무기, 장비, 탄환 그리고 다른 군사물자의 사용과 양도	1992년 1월 31일	엘러, 베르라트, 브레히트, 폰 빌로우, 두베, 앵게, 폭스, 간젤, 길게스, 글로츠, 하이스타만, 호른, 이베르센, 웅만, 수잔네 카스트너, 피르퍼, 콜보우, 코슈닉, 쿨러, 퀴스터, 라이딩어, 마테르네, 맥켈, 노이만, 니게마이어, 오펠, 산츠, 웨어, 솔데, 조엘, 슈타이니, 테어보그, 티체, 페어호이겐, 포이트, 발더, 바이스, 바이스키르헨, 차프, 쇠펠, 슈트룩, 클로제, 이상 연방의회의원(시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68	신연방주에서의 징집	1992년 2월 6일	레더러, 연방의회의원(민사당/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여성청소년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69	인민군 군수물자와 군용트럭에 대한 신연방지역 민간독립단체들로부터의 문의	1992년 2월 10일	뮐러, 연방의회의원(시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70	인민군 시설의 안전장치	1992년 2월 13일	크나베, 연방의회의원(시민당); 그뤼네벨트, 연방재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6(S. 6387C-D/Anlage 10)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71	신연방주의 구 공용버행장의 사용에 관해	1992년 2월 17일	레더리, 연방회의원(민사/민사/조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72	타키에 제공된 인민군 무기의 소재	1992년 2월 19일	부리, 연방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73	베르그-카리비흐에서 타키에 양도된 인민군 무기의 투입	1992년 2월 20일	폰 레네세, 연방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9 (S. 6620B-C)
174	인민군 물자의 매각처리에 대한 보고	1992년 2월 20일	이담, 연방회의원(기민/기사연합); 엘러, 연방회의원(사민당); 켈퍼, 연방회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9 (S. 6689B-6693C)
175	타키에 제공된 인민군 무기의 소재	1992년 2월 24일	레더리, 연방회의원(민사/조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76	타키에 인민군 물자 제공	1992년 4월 9일	엘프케, 연방회의원(민사/조파연합); 연방정부, 연방외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77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용병이 된 구 인민군 군인	1992년 4월 14일	레더리, 연방회의원(민사/조파연합); 연방정부, 연방외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7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 있는 더 이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군사설의 이용	1992년 5월 25일	레더리, 연방회의원(민사/조파연합);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79	신연방지역의 군사훈련장의 이용 - 현재와 미래	1992년 6월 1일	블렌베르거, 연방회의원(녹색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80	처리되지 못한 인민군 물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1992년 6월 17일	치어러, 연방회의원(기민/기사연합), 백만, 연방경제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97 (S. 810D-8102B/Anlage 18)
181	핀란드에 인민군의 전자 양도	1992년 6월 17일	엘러, 연방회의원(사민당); 빔초,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97(S. 8102D-8103A/Anlage 20)
182	브란덴부르크주 지역전환지침 - 의회결정 - 주정부 발안(의회제출을 위한 각료발안)	1992년 8월 21일	브란덴부르크 주 의회, 사무국국장	브란덴부르크 주 문서기록보관소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83	포괄적 소재 인민군 탄환 실험실의 해체	1993년 1월 21일	슈타이너, 연방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134; S. 11704B-D/Anlage 6
184	인도네시아에 인민군 합정 제공	1993년 2월 17일	엘러, 연방회의원(사민당); 트롬프, 연방외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85	무기중개상 칼 하인츠 솔츠의 회사 베이스마에 인민군 합정 제공	1993년 2월 24일	노이만, 연방회의원(사민당)가이거,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86	인레보고서 1992 (34, 보고):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소속원, 노후보장, 고향에서 먼 지역에서 병역무를 이행하는 자,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사이에 진전대상병의 교환, 인수된 인민군 소속원들을 위한 상담의 부족, 신연방지역 병영의 시설	1993년 3월 23일	빌레, 연방의회 군특임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87	인민군 탄환을 재공급는 국가와 그 곳에서의 탄환의 사용	1993년 4월 6일	괴페, 연방회의원(녹색당) 가이거,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88	인도네시아에 인민군의 합정 양도	1993년 5월 11일	산츠, 연방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89	그리스에 인민군 탄환 제공	1993년 5월 26일	괴페, 연방회의원(녹색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90	내륙 국경선 지역의 지원제거	1993년 5월 27일	우트너, 연방회의원(기민/기시연합); 가이거,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91	연방군이 인수한 인민군의 헬리콥터	1993년 9월 9일	마테르네, 연방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92	하게노프의 비텐베르크 지역에 군 주둔지 이용	1993년 9월 15일	니제, 연방회의원(사민당); 가이거,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93	인도네시아에 양도된 인민군 합정의 사용을 위한 인도네시아 해병 교육	1994년 1월 20일	슈텐, 연방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205; S. 11700A-B
194	인민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무기, 탄환 그리고 장비의 1990년 10월 3일자 가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 시설 해체를 위한 비용, 장산	1994년 2월 16일	엘러, 연방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95	독일연방대법원 - 동독지도부의 1980/81 폴란드자유조약동 건설택획에 관한 처벌가능성	1994년 11월 23일	연방대법원 연방검찰청블루멘비츠 교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207
196	인민군 출신 기간제 군인의 근무기간 연장	1995년 1월 26일	루치기, 연방의회의원(시민당); 가이거,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97	연방군의 물자 중에 인민군의 지뢰, 다른 나라에 인민군 지뢰의 양도	1995년 5월 22일	베어,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198	An Army Surplus - The NVA's Heritage	1995년 6월	오토프리드 나사우어, 베를린 대서양안전정보센터	http://www.bits.de/public/bicc95.htm
199	원자력 폐기물 저장고 모스라벤의 인민군 연락장교	1995년 6월 26일	신베르거,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00	타가에 인민군 전함 양도	1995년 9월 1일	베어,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정부; 연방경제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01	구 유고슬라비아에 인민군 무기, 특히 크로아티아에 미그 21기 제공	1995년 9월 12일	간젤, 연방의회의원(시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02	크로아티아 공군 NVA 미그 21기 보유	1995년 9월 20일	리펠트, 연방의회의원(녹색당); 간젤, 연방의회의원(시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03	인민군 차량의 매각처리	1995년 10월 12일	그라프 폰 아인지델, 레더러, 티파흐, 초베렌츠, 기지, 이상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04	인민군 소속원의 근무기간 계산과 연금	1995년 12월 6일	말로이다, 연방의회의원(민사당); 클라우스,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05	연방 재산관리청에 의한 인민군 주택 임대	1995년 12월 11일	루치기, 연방의회의원(시민당); 카버츠기, 연방재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06	인민군에서 연방군으로 인수된 직업군인의 노후연금에서의 공백기 발생 문제	1995년 12월 21일	탈하임, 연방의회의원(시민당); 비헤르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07	군시설로 인한 오염지역의 조사와 평가 처리와 관련된 국제 경험	1996년	연방환경청	http://www.umweltbundesamt.de/b_oden-und-alltasten/alltast/webi/berichte/mooredeut/milllab_t.htm
208	TU-1347의 매각처리	1996년 1월 30일	그라프 폰 아인지델, 레더러, 티파흐, 초베렌츠, 기지, 이상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09	인민군 무기의 수출	1996년 12월 4일	루프트, 쿠츠무트, 기지, 이상 연방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0	군부대 시설을 구 인민군 장교에게 매각	1996년 12월 12일	허거, 연방회의의원(사민당); 키비츠키, 연방재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1	인민군 물자 매각에서 "인터넷셔널 비즈니스 회사"의 역할	1997년 5월 14일	나흐트바이, 연방회의의원(녹색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2	포츠담의 쿠퍼펠더 들판 인민군 군사훈련장의 이용	1997년 11월 24일	쿠츠무트, 연방회의의원(민사당); 로제,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3	동독 국가 시설물과 인민군 시설물의 수리와 이용	1997년 11월 28일	티피흐, 그라프 폰 아인저텔, 이상 연방회의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4	연방군의 의무반 직업장교로 인수된 인민군 소속인의 검중	1998년 4월 6일	지버트, 연방회의의원(기민/기사연합); 비헤르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5	연방군에 의해 인수된 인민군 소속원인 노후연금 공백기간 문제	1998년 4월 8일	루치가, 연방회의의원(사민당); 비헤르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6	인민군 소유 물자부품의 매각	1998년 12월 1일	루프트, 엘레르트, 쿠츠무트, 이상 연방회의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7	인민군 소유 물자부품의 매각	1998년 12월 21일	루프트, 엘레르트, 쿠츠무트, 이상 연방회의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8	타키의 쿠르드지방에 인민군 차량 투입	1999년 4월 1일	헵케, 연방회의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외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19	타키의 쿠르드지방에 인민군 차량 투입	1999년 5월 4일	헵케, 연방회의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외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20	구 인민군 시설 중에 연방소유 주택의 매각	2000년 3월 22일	오스트로브스키, 연방회의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21	구 인민군 시설 중에 연방소유 주택의 매각	2000년 4월 6일	오스트로브스키, 연방회의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30	인도네시아에 제공된 인민국 함정 이용 상의 계약위반	2004년 6월 30일	라이브레히트, 연방회의원(자민당), 뮐러, 연방외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31	자민당 제안, 전역한 전 인민국 군인이 자신 계급을 이름에 포함하여 쓰는 것을 허용	2005년 2월 23일	놀팅, 다움, 반 에센, 브롱크호스트, 부룩바허, 폰게, 골드만, 관터, 굿머허, 하프-카산, 하인리히, 호이어, 코펠란, 라이브레히트, 뢰닝, 오토, 피퍼, 슈테너, 튀르크 비싱, 게르하르트, 이상 연방회의원(자민당);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32	가입지역(신연방주)에서의 근무중 임은 상해에 대한 보상법과 사회보상법 규정의 개정	2006년 1월 24일	기민/기사연합, 사민당 원내회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33	연방예산 2006: 구 인민국-주택, 인민국 소속원의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	2006년 3월 17일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34	인민군의 미그 29기의 수리 점검	2006년 3월 29일	셰퍼, 쿠네르트, 라저, 이상 연방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경제과학기술투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35	가입지역(신연방주)에서의 근무상해에 대한 보상법과 사회보상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초안	2006년 4월 5일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36	연방예산 2006: 구 인민국 소속원의 공무원연금과 일반연금	2006년 6월 9일	연방의회 예산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37	급여, 연금 그리고 인민국 전역 군인의 aD.표식 사용	2006년 6월 28일	홀부르거, 연방회의원(자민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38	인민국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	2006년 6월 30일	슈나이더, 에른스트, 빈디, 비스키, 봉에, 키핑, 크노헤, 쿠네르트, 파우, 라인케, 셰퍼, 자이퍼트, 탁만, 이상 연방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39	인민국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	2006년 7월 28일	슈나이더, 에른스트, 빈디, 비스키, 봉에, 키핑, 크노헤, 쿠네르트, 파우, 라인케, 셰퍼, 자이퍼트, 탁만, 이상 연방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40	연방예산 2007: 구 인민국 주택, 구 인민국 소속원 공무원연금과 일반연금	2006년 8월 11일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41	인민군 소속원의 사고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문제	2006년 9월 11일	자이퍼트, 에른스트, 빈더, 골츠, 회거, 노일링, 키핑, 슈나이더, 슈피트, 기지, 리폰텐, 이상 연방회의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노동사회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42	인민군 소속원의 사고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문제	2006년 9월 28일	자이퍼트, 에른스트, 빈더, 골츠, 회거, 노일링, 키핑, 슈나이더, 슈피트, 기지, 리폰텐, 이상 연방회의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노동사회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43	인민군 소속 군인의 연금과 군부 중입은 상해보상 문제	2007년 2월 27일	예프케, 연방회의의원(기민/기사연합); 퇴데스,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44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소속 군인의 노후보장문제	2007년 5월 11일	붕에, 퇴취, 키핑, 쿠네르트, 자이퍼트, 슈피트, 분더리히, 이상 연방회의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45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소속 군인의 노후보장문제	2007년 5월 30일	붕에, 퇴취, 키핑, 쿠네르트, 자이퍼트, 슈피트, 분더리히, 이상 연방회의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46	구 인민군 병사의 연금 공백기	2007년 8월 6일	연방의회 국민청원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47	인민군 소속 레이다 피해자 보상법	2008년 2월 15일	기지, 퇴취, 나우만, 페우, 슈나이더, 이상 연방회의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48	연방군에 있는 인민군 장교의 수 신연방지역의 연방군 소속원이 병역의무 수행 중 상해보상을 입었을 경우에 받을 연금	2008년 3월 20일	클라우스, 연방회의의원(좌파연합); 볼프,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49	구 인민군 소속 군인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문제, 구 동독 비밀경찰의 급여와 연금체계에 관한 정보의 제출, 연방군 내에서 구 인민군 출신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제	2008년 6월 17일	연방의회 국민청원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50	연방군에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 군인의 노후보장문제, 지역한 진 인민군 군인이 계급에 연방군 전역군인이 사용하는 a.D 표시를 사용하는 문제	2008년 7월 11일	홍부르기, 호프, 슈테너, 이디스, 브뤼델레, 브롱크호스트, 부룩버허, 도릴, 다이크만, 플라흐, 프릭케, 프리드호프, 프리드리히, 가이젠, 그루스, 권터, 허피츠-카잔, 하우스타인, 호이어, 카우흐, 퀴닉스하우스, 콜프, 콕, 코펠만, 린파만, 라우라쉴, 라이브레히트, 렌케, 린크, 워당, 마이어호퍼, 마인하르트, 뮌케, 뮐러-산센, 나벨, 오토, 파르, 피퍼, 로데, 셰퍼, 실리, 슈스터, 텔레, 톤카, 바이츠, 빈터슈타인, 비싱, 볼프, 차일, 베스터벨레, 이상 연방회의의원(자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5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8 연례보고서: 신연방지역 군사시설에서의 자연보호	2008년 9월 24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52	전 인민군 소속원의 연금	2008년 11월 12일	바이젤, 헤스, 비클라인, 이상 연방회의의원(사민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53	전 인민군 소속원의 연금 외 제한 추가소득의 한도	2008년 11월 12일	호흐바움, 연방회의의원(기민/기사연합); 라이헬, 연방회의의원(사민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54	연방군에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 군인의 추가 소득 허용 한계	2008년 11월 12일	연방의회 내무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55	방사선 피해자의 보상	2009년 1월 29일	헤르만, 연방회의의원(기민/기사연합), 크라머, 연방회의의원(사민당); 홍부르기, 연방회의의원(자민당); 피취, 연방회의의원(좌파연합); 나흐트바이, 연방회의의원(녹색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56	네 번째 연금보고: 노령의 구 인민군 군인의 연금	2009년 4월 21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57	연방군에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 군인의 노후보장문제, 전역한 전 인민군 군인이 계급에 연방군 전역군인이 사용하는 aD 표시를 사용하는 문제	2009년 4월 22일	홍부르기, 호프, 슈티너, 이디스, 브뤼델레, 브롱크호스트, 부룩버허, 되링, 다이크만스, 플라흐, 프리케, 프리드호프, 프리드리히, 가이젠, 그로스, 귄터, 하파흐-카잔, 하우스타인, 호이어, 카우호, 퀴닉스하우스, 콜프, 롬, 코펠린, 린페만, 라우리쉬, 라이브레히트, 렌케, 링크, 루닝, 마이어호퍼, 마인하르트, 뮌케, 뮐러-쉴센, 니벨, 오토, 파르, 피퍼, 로데, 웨퍼, 쉴리, 슈스티, 티레, 톤카, 바이츠, 빈터슈타인, 비싱, 볼프, 차일, 베스타벨레, 이상 연방의회의원(자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58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9년 연례보고서; 신연방주 군사시설에서의 자연보호	2009년 6월 1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59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09년 6월 27일	봉에, 에른스트, 바츨, 블룸, 클라우스, 골체, 키팅, 쿠너르트, 로이테르트, 라츨, 나우만, 라멜로우, 라인게, 슈나이더, 자이퍼트, 슈피트, 탁만, 분더리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60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09년 7월 1일	봉에, 에른스트, 바츨, 블룸, 클라우스, 골체, 키팅, 쿠너르트, 로이테르트, 라츨, 나우만, 라멜로우, 라인게, 슈나이더, 자이퍼트, 슈피트, 탁만, 분더리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61	방사선 피해자의 보상	2009년 7월 2일	브뤼닝,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베그너,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홀부르기,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라츨,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나흐트바이,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62	전 인민군 소속원의 상이군인연금	2009년 7월 2일	미 크,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크뤼거-라이스너,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하우스타인,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63	비밀경찰의 연금체계에 대한 정보 제출;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군인의 노후보장문제 해결; 비밀경찰 요원의 연금법적 제한규정의 폐지	2010년 4월 21일	연방의회 국민정당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64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장교	2010년 6월 8일	슈타인베흐,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코센데이,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65	동독 인민군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	2010년 6월 30일	볼에, 리취, 바츨, 비르크발트, 블룸, 보크한, 클라우스, 쿠네르트, 레이, 로이테르, 자이퍼트, 쟈어-쉴퍼, 슈타인게, 슈투버, 탁만, 포클러, 바인베르크, 분더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66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10년 연례보고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던 지역의 환경보호, 군대 통합 20년	2010년 9월 22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67	구연방주와 신연방주에서의 방사선 피해자 피해보상과 연금	2010년 9월 29일	회거, 쉘퍼, 포클러, 부흐홀츠, 봉에, 그로트, 훈코, 코흐, 리버히, 노르트, 자이퍼트, 쟈어-쉴퍼, 올리히, 바인베르크,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68	인민군 소속 레이더 방사선 피해 군인의 신청서	2010년 11월 10일	회거,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코센데이,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69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노령연금과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10년 11월 11일	봉에, 리취, 바츨, 비르크발트, 블룸, 보크한, 클라우스, 쿠네르트, 레이, 로이테르, 자이퍼트, 쟈어-쉴퍼, 슈타인게, 슈투버, 탁만, 포클러, 바인베르크, 분더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70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노령연금과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10년 12월 2일	하인리히, 레리더,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슈미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볼브,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슈트랑만-쿤,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79	10차 활동보고서 2011 - 비밀경찰, 인민군 그리고 국경수비대의 문서	2011년 3월 10일	비르틀러, 구, 동독슈타지문서 연방특임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80	인민군 해체 이후 증가한 군사장비 수출	2011년 3월 18일	불만, 연방의회의원(시민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81	특히 인민군 병역의무 수행자의 근무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된 동독 사회보장기구의 법적인 후속기관	2011년 3월 21일	회거,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푸흐텔,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82	인민군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피해보상	2011년 3월 23일	회거, 쉘퍼, 포글러, 반 이켄, 부흐홀츠, 봉에, 닥델렌, 데엠, 게르케, 그로트, 핸젤, 훈코, 엘프케, 호흐, 리버히, 모바시, 노르트, 울리히, 베르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83	인민군 레이더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피해보상	2011년 4월 6일	말착, 코일, 페닉스, 누푸어, 벡, 벡, 폰 크리문-타우비델, 회프킨, 호페, 케케리츠, 코치, 밀러, 로트, 사라진, 슈미트, 슈트뢰발레, 이상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84	용병이 된 구 인민군 소속 군인	2011년 4월 13일	슈타인바흐, 연방의회의원(기민/기시연합); 피퍼, 연방외무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85	방사선피장으로서의 인민군과 연방군의 강력한 진파	2011년 5월 5일	회거, 코흐, 쉘퍼, 훈코, 부흐홀츠, 모바시, 포글러,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장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86	인민군 레이더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피해보상	2011년 7월 8일	회거, 쉘퍼, 포글러, 반 이켄, 부흐홀츠, 봉에, 닥델렌, 데엠, 게르케, 그로트, 핸젤, 훈코, 엘프케, 코흐, 리버히, 모바시, 노르트, 울리히, 베르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87	실업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인민군 사고연금을 전부 계산에 포함하는 문제	2011년 7월 22일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호오페,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88	인민군 소속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의 보상	2011년 11월 10일	회거, 쉘퍼, 포글러, 반 이켄, 부흐홀츠, 봉에, 닥델렌, 데엠, 게르케, 그로트, 핸젤, 훈코, 엘프케, 코흐, 리버히, 모바시, 노르트, 울리히, 베르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슈미트, 연방국방부 차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89	인민군과 비밀경찰 소속원과 그들의 가족의 연금을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비용보상을 위한 추가지출의 승인	2011년 12월 21일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90	연례보고서 2011 (53, 보고), 인민군 레이더 피해자 연금	2012년 1월 24일	페닉스하우스, 연방의회 군특임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91	인민군과 비밀경찰 소속원과 그 가족이 받는 연금	2012년 3월 2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92	인민군과 연방군의 레이더장치로 인한 방사선 피해자의 동등한 대우	2012년 4월 5일	셰퍼, 게르케 반 아켄, 부흐홀츠, 훈코, 코흐, 리베히, 포클러, 바인베르크,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93	연방군 개혁과 동반하여: 연금법적으로 평가되는 인민군 교육기간	2012년 4월 18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94	지뢰 위험에 대한 경고	2012년 4월 20일	독일 신문 괴팅어 타게스블라트/ 이익스펠더 타게스블라트	http://www.goettinger-tageblatt.de/Nachrichten/Duderstadt/uebersicht/Stiftung-warnt-vor-Minengefahr
295	두더슈타트의 그린벨트지역 일부에 지뢰 위험 존재	2012년 4월 24일	북독일방송(NDR)	http://www.ndr.de/regional/niedersachsen/harz/minen101.html
296	연방군의 군인 중에 인민군에서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연금계산에서의) 불평등한 대우	2012년 5월 9일	아놀드, 바르텔스, 브링크만, 엘러, 에른스트베르거, 에버스-마이어, 클라이케, 그로벡, 키스트너, 클링비일, 페르페, 콤포, 메스머, 오펜, 슈타인마이어, 이상 연방의회의원(시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97	추가-/ 예외지출/ 2011년 4분기의 승인: 인민군과 비밀경찰 소속원과 유족의 연금을 지불하는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비용 보전	2012년 5월 9일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298	연방정부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를 위한 기금 설치	2012년 5월 21일	독일 신문 차이티지	http://www.zweit.de/politik/deutschland/2012-05/unterstuetzung-soldaten-haerfall-fonds
299	독일연방공화국 국방예산	일자 미상	연방정부	독일연방정부
300	연방군의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2002년 4월 25일	하이디 리프만, 모니카 발트, 페트라 블래스 외, 이상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4/8920

문서 요약

1. 개혁기(자료번호 1~38)

독일의 국가기관인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은 베를린 자유대 연구팀이 라이너 에펠만 동독 과도기 군축국방장관 기증 자료를 “독일 정부의 통일 및 통합 관련 문서 공유” 프로젝트의 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이 문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독재청산재단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에펠만 기증문서의 인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및 기타 과거 독일 국가의 서약, 선서, 의무
1952년 - 1990년 담당자 / 기관: 경찰, 군, 장교, 부사관, 사병

내용_

- 병영인민경찰(Kasernierte Volkspolizei)의 의무(1952년~1956년)
- 전 병영인민경찰 소속자들을 위한 과도기 의무(1956년)
- 인민군의 선서(1956년~1961년)
- 인민군 부사관 및 사병의 서면 의무선언(1956년~1961년)
- 인민군 장교의 서면 의무선언 (1956년~1961년)
- 독일 국경경찰의 선서(1958년~1961년)
- 인민군 선서(1962년~1989년)
- 붉은 노동자 및 농민의 소련군의 선서(1939년~1991년)
- 국경수비대 선서(1962년~1989년)
- 건설공병의 선서(1964년~1989년)
- 장교의 선서(인민군 1979년~1989년, 국경수비대 1970년대 말)
- 국경수비대 장교의 선서(1980년대)
- 국경수비대의 선서(1990년 봄)
- 인민군의 선서(1990년 5월~10월)
- 연방군 군인의 서약과 선서(1955년부터)
- 독일제국 국방군의 서약(1919년~1933년)
- 독일제국 국방군의 서약(1933년~1934년)
- 독일제국 국방군의 서약(1934년~1935년)
- 독일제국 국방군의 서약(1935년~1945년) / 국방군의 서약(1935년~1945년)
- 친위대(SS)의 서약(1934년~1945년식)

출처_ 불명



문서
번호 2

국가국방부령 039/9/201 호 - 군사기록물보관소의 조직과 업무
1988년 11월 1일 담당자 / 기관: 국가국방부

내용

이 문서는 군사기록물보관소의 업무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군사기록물보관소의 주요 업무는 국가국방부 관련 문서, 동독 국경수비대 관련 문서, 인민군과 민방위 관련문서 등을 파악, 수집하고 기밀 등급에 따른 분류작업을 위해 정리, 보관하는데 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115

문서
번호 3

연방군의 예비군 계획과 인적계획
1989년 10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메터스하이머,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국방부

내용

녹색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

원칙적으로 동독에서 탈출해 오거나 이주해 온 남성 중에 징집대상자는 모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병역 의무는 서독에 정착하고 난 이 년 후에 발생한다(병역법 41조).

동독 탈출자와 이주자 중에 서독에서 징집대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수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경우 서독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1/230

즉각적 조치에 관한 국방부 장관 지시
1990년 1월 3일

담당자 / 기관 테오도어 호프만 국가국방부 장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및 국경수비대, 독일민주공화국 건설주택부 장관

내용

1990년 1월에 마련된 새로운 군복무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사병의 복무기간은 12개월, 기간제 군인은 최소 24개월이다(두 가지 모두 소급적용). 징집 대상자의 소집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거지역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집대상자의 연령은 18~21세로 한다.

인민군이 그 동안 운영해 온 교육기지와 선발대대는 해체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규정이 건설공병대에게도 적용된다.

새로운 내무규정을 만들어서 즉시 인민군과 국경수비대에 도입한다. 그 내용은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5시간으로 제한하며,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할 경우 휴가로 대체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군대 내의 호칭 또한 “동무(Genosse)”에서 일반적인 “씨(Herr, Frau)”로 변경한다.

인민군 소속 근무자들은 신분증과 여권을 본인이 보유하도록 하고, 외출 외박의 경우 부대 지역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며, 부사관급 기간제 군인들에게도 군인신분증을 지급한다. 나아가 각 개인의 취미에 따라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허용된다.

출처 군사개혁, 1/1990, S. 1



문서
번호 5

전쟁무기 및 군사장비의 수출입과 생산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 -정부장관회의 결정

1990년 1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장관각료회의; 모드로우 총리; 호프만 제독, 인민군 합참의장

내용_

동독 정부장관회의는 전쟁무기 및 군사장비의 수출입과 생산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무기와 전쟁기술의 수출입과 관련한 법규정의 초안을 작성하여 인민의회에 의결안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수출은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국민총생산의 약 1%에 달하는 군수물자생산을 감축하기로 한 결정에 부응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군수물자생산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현재의 생산 및 유지 수용성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동독은 국방과 동맹국 의무를 다하는 수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만을 수입한다.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무기감축 정책에 따라 동독의 무기수입은 더욱 감소되어야 한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문서
번호 6

1990년 상반기 군의 해임과 병역대상자의 신체검사 및 입영에 관한 의회결정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 동독인민회의

내용_

인민의회는 1990년 2월 8일자로 1990년 상반기 인민군 충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병역대상자의 소집과 영장발부는 현재대로 존치한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는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병역기간은 해당법률에 따라 12개월로 한다.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무기드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서면으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출처_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8, S. 44

문서
번호 7

독일민주공화국 헌법개정에 관한 법률
1990년 2월 20일 담당자 / 기관: 동독인민회의

내용_

동독 헌법 23조의 군복무조항은 서독의 국방의 의무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체복무제로서의 공익근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출처_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9, S. 60

문서
번호 8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복무에 관한 규정
1990년 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인민회의

내용_

이 법에 따라 동독의 남성 중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무기 들기를 거부하는 자는 사회복무를 통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상자는 지역사령부에 서면으로 믿을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 법은 나아가 복무의 기간과 장소, 신체조건의 적합성, 복무희망자의 적성 및 숙식을 포함하는 복지, 복무기관의 복무자에 대한 지휘체계와 신고의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출처_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10, S. 79-81

문서
번호 9

장관직 인계를 위한 테오도어 호프만 국방부 장관(제독)의 보고서
1990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도어 호프만 국가국방부 장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바르샤바조약기구, UN 군축회의, 연방군,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의회(Volkshammer) 와 각료회의(Ministerrat)

내용_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안보정책, 군축, 군사동맹 관련: 현재 유럽에는 전쟁 위험이 없다고 본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전망은 긍정적이며, 앞으로 가속화되어야만 한다. 현재 인민군은 평화를 보장하고 군비 축소와 병력축소 실현이라는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다. 동독은 지금까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특히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 인민군과 연방군 지도부 간에 회담이 열렸다.
- 인민군 상황, 재고, 보전: 인민군은 육군, 공군, 인민해군으로 구성되어 있다.(1990년 3월) 현재 인민군의 전투기동력과 동원병력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동맹 의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동독 내부의 변혁과 함께 인민군의 개혁작업이 이미 시작되어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인 개인의 동기가 결핍되고, 그리고 군인들이 생산활동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인민군의 병력 정원은 176,850명이었다. 이것은 직업군인 및 기간제 군인, 의무복무병 외에 민간인 56,350명도 포함한 숫자이다. 그리고 인민군의 전시 동원병력으로 총 561,350명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3월 15일 현재 인민군의 실제 병력은 군인 135,000명과 민간인 32,000명, 그리고 인민군, 국경수비대, 민간방위대 종사 직업군인은 72,191명이다. 직업군인 후보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전투장비, 무기, 예비품, 예산을 위한 계획제안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 군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 상황: 인민군의 개혁을 위해 전문가그룹이 포함된 정부 산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보를 요하는 사안 및 자문받아야 할 사안이 정해졌으며, 개혁과 관련된 모든 제안들이 폭넓게 토론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작업은 “원탁 회의”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나아가 최고인민의회가 새로이 도입될 헌법에 인민군의 위상, 역할,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르샤바조약 동맹국으로서의 동독이 지켜야 할 의무와 인민군 규모, 구조, 무장, 장비, 교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인민군의 새로운 구조를 위한 틀로 110,000명 규모의 징병군, 혹은 70,000명 규모의 모병군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병력 감축으로 인해 해임될 인민군 소속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준비를 돕기 위해서 군축국방부 장관의 전권위임자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동독 국경수비대는 축소되어 내무부 산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출처_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3764, S. 10~29

문서
번호 10

인민군의 미래역할에 대한 인민해군 참모총장의 입장표명서 1990년 3월 14일

담당자 / 기관 국가인민군 인민해군 참모총장 부제독 본

내용

인민해군 참모총장 부제독 본은 인민군, 특히 인민해군이 통일과 함께 수행하게 될 미래의 역할에 대하여 입장표명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군의 변화는 사회적 상황의 전개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현재 인민군의 상황은 주적개념의 해체와 동기 상실로 인한 군기강의 해이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모드로우 정부가 인민군의 장래에 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당시 인민해군이 바르샤바조약의 범위 안에서 최소화된 작전 업무와 기타 전략교육훈련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동독의 군대가 동독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혁 과정 속에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는 헬싱키 조약과 유럽안보협력과정 등이 이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인민해군은 1만에서 1만 2천 명 정도의 병력으로 자연재난방제 업무와 같이 국민에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도 담당하는 군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4



문서
번호 11

국방부 장관 업무 인계를 위한 보고서 발췌 내용
1990년 3월 23일

담당자 / 기관_ 테오도어 호프만 국방부 장관, 국방부, 인민군, 국경수비대, 민방위군

내용_

- 1990년 3월 중순 현재 인민군에 종사했던 군인은 135,000명이며, 민간인은 32,000명이었다. 국경수비대는 전투 군인 28,000명, 민간인은 3,800명이었다. 인민군에는 직업군인 72,101명이 있었고, 민간방위에 1,248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 이 시기에 구조적 변화로 인해 근무배정을 받지 않은 장교는 2,203명이었다. 후진 장교들의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 1990년 3월 현재 인민군의 전투장비, 무기, 예비품 선별 목록을 붙인다. 예비품은 방어 상태에서 29~64일 동안 보급 가능하다. 음식물은 75일까지, 의약품은 30일까지 보급 가능하다.
- 인민군과 국경수비대의 물자·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0년 5,727,000마르크의 예산이 계획되었다.
- 인민군과 국경수비대의 건축기초자산(baulicher Grundfonds)의 자산가치는 약 279억 마르크에 해당한다. 이 중 240억 마르크가 군사물자 분이고, 30억 마르크가 64,000개 주택 분이다. 건물 상태는 “좋음”에서 “양호” 사이이다. 군축국방부의 법적 소유에 있는 토지 면적이 241,000ha였으며, 이 중 172,000ha가 임야지였다.
- 전투기동력 및 동원병력 계획은 무효화되었다. 인민군 전투기동력 및 동원병력은 더 이상 동맹 의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이유: 군복무 기간 단축, 예비군 비(非)소집, 동기 결핍, 경제활동 참여)
- 민간방위는 군축국방부 책임 소관에서 분리된다.
- 잠재 예비군 규모는 군사훈련을 받은 2,600,000명의 예비군이다. 동원이 필요할 시에는 예비군 395,000명을 소집하고, 차량, 건설장비, 기타 기술 장비 69,000대, 그리고 보급물자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출처_ Theodor Hoffmann. 1994. Das letzte Kommando. Ein Minister erinnert sich. Berlin: Verlag E.S. Mittler & Sohn, S. 320-323.

문서
번호 12

군축국방부 회의 1990년 4월 17일

담당자 / 기관 군축국방부 장관 에펠만, 차관 비초레크, 차관 아플라스, 차관 마치넥, 제독 호프만, 헤릅스트, 크뤼거-슈프렐링

내용

군축국방부 내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다:

- 구조조직과 인사문제 : 장관급, 차관급, 국장급 그리고 군대장급등 군지휘부, 각급 차원의 새로운 의사전달구조를 개편하고자 함. 군개혁을 위한 특임관이 구성되어야 함.
- 장관과 차관들을 위한 특별사무실 설치 결정.
- 군의 전략적 이동 및 배치에 관한 질문들이 거론됨.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112

문서
번호 13

베르트람 비초레크(Bertram Wieczorek) 군축국방부 의회차관 최고인민 의회 연설 1990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 베르트람 비초레크 독일민주공화국 군축국방부 의회차관,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의회, 인민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내용

- 군축국방부 설립은 긴장완화와 군축에 대한 중요한 기여이다. 이러한 명칭은 1987년부터 추구되어 오던 방위 중심 노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 엘베(Elbe)강과 오더(Oder)강 사이에는 NATO 군 군대도, 연방군 군대도 주둔해서는 안 된다.
- 인민군은 인력과 군비를 축소하고, 조직과 무기를 공개하며, 양 동맹군과 모두 협력한다.
- 현재 인민군에는 구입 가격 860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3,130개의 무기류가 있다. 탄약만 폐기한다 해도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다. 이 작업은 생태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 계획된 군축 및 직업전환 과정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이 거의 2백만 명이다.

출처 Theodor Hoffmann. 1994. Das letzte Kommando. Ein Minister erinnert sich. Berlin: Verlag E.S. Mittler & Sohn, S. 324-326.

문서
번호 14병역법 개정에 관한 법률
1990년 4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인민회의

내용_

이 법에 의해 동독 군인들의 서약과 선서가 개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군인은 평화 유지와 국가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선언해야만 한다.

출처_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25, S. 237

문서
번호 151990년 4월 27일 쾰른에서 열린 군축국방부와 연방국방부 부처간 회의
(군축국방부의 제안서)

1990년 4월 27일

담당자 / 기관_ 군축국방부와 연방국방부

내용_

이 제안서를 통해 동독 군축국방부는 동독 정부가 동맹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여 기존의 군사동맹체계를 해체하고 군사적 기능을 약화시킨 전유럽적인 차원의 안보체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병력과 주요무기체제를 약 3분의 1 또는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방어구조로 군의 체계를 재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국가들의 안전보장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겠지만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동독이 갖는 군사적 의무들 또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변국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2+4 협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통해 동독 군축국방부는 서독의 경우 군사적으로 동독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양국 국방부가 비공식 협의한 인민군과 연방군의 향후 접촉과 소통에 관한 기본 지침은 1990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민군과 연방군의 조화와 미래지향적 통합계획에 관한 정보교환과 그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양국공동군사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군축국방부 장관 앞으로 접수된 소원수리 및 청원 평가
- 1990년 5월 월례분석보고

1990년 5월 1일

담당자 / 기관_ 군축국방부

내용_

동독 내부에서 변혁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매년 약 2,500에서 3,000건 정도의 청원이 국방부 장관실에 접수되었었다. 그러나 변혁이 시작되면서 청원 또는 항의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도 한 해에 군축국방부 장관실에 접수된 청원의 숫자가 약 10,0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청원의 수와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동독 사회에서 정부당국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정부와 관청은 더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표자들 그리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시민의 청원과 전화 상담에 응하는 담당자들에게 모든 질문에 대해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인력관리의 개선을 위한 조사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민군에서 조기퇴직을 신청한 인원 중에 기간제 군인과 부사관이 약 70%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이들이 군 당국에 제출한 청원의 내용이 주로 제대하는 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이다.

인민군 소속이 인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해 제출된 사안들을 보면 사면복권 및 보상문제, 고용보험 및 산재처리문제 그리고 이미 탈영한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원과 관련된 그래픽과 도표를 볼 수 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4

문서
번호 17

인민군 사령관회의 - 군축국방부 장관 강연
1990년 5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에펠만 장관은 사령관들에게 먼저 자신과 자신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들에 대해 소개하고, 군축국방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군축국방부의 업무를 민주총선을 통해 선출된 최초의 시민정부라는 문맥 속에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 나아가 다원적인 민주정부의 정책과 업무와 인민군이 이전까지 경험했던 구체제의 의무와 업무방식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서독 양국의 통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군축국방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업무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문서
번호 18

국가보안부/국가안보청의 해체에 필요한 업무와 조치들에 관한
장관회의 결정
1990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아플라스, 군축국방부 차관

내용_

이 문서는 국가보안부와 국가안보청의 해체와 관련하여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해 내려진 결정과 합의 사항 그리고 체결된 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장관회의에서는 토지 소유권 문제를 포함하여 동산과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밀경찰 문서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 문서의 7쪽과 8쪽에서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등본, 문서, 녹취 그 외의 기타 다양한 개인과 관련된 기록물을 취급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160

문서
번호 19

동독이 니카라과, 이라크와 맺은 수출계약에 관하여
1990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경제부 특수무역국; 멘첼 대령

내용_

동독은 니카라과와 이라크와 수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이 두 국가가 앞으로 계속 수출대금의 결제를 지연한다면 동독은 시장경제의 조건 하에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그런 경우 국내외에서 체결된 계약이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파기로 인해 어떤 제재를 받게 될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1990년 3월 31일 현재 이라크가 체불하고 있는 금액은 일억팔천사백십만 마르크(184,100,000 DM), 니카라과와 체불 금액은 일억사천팔십만(140,800,000 DM)마르크이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
번호 20

야루젤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회담,
1990년 5월 22일(담화메모)
1990년 5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보이첵 야루젤스키 폴란드 대통령,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회담에서 에펠만 장관은 드 메지에르 정부의 입장은 오더-나이스 국경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더 나아가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동독이 맺은 모든 협약이 지켜질 것이며 그런 입장을 서독에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야루젤스키 대통령은 동독 정부가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폴란드 국민의 60%가 폴란드와 독일 간의 역사적 경험과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규모의 격차 그리고 폴란드 일부 정치가들의 발언 때문에 독일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나아가 드 메지에르 정부가 바르샤바조약에 근거한 상호안보체계가 와해된 상황에서 인민군을 존속시키는 조치와 같이 기존의 안전보장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산다고 하였다. 그가 볼 때 유럽안보의 차원에서 통일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으로 남거나 중립국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에펠만 장관은 유럽을 위해 “독일이 독자적인 길”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신 동독과 인민군이 동서 양진영을 잇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인민군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문서 번호 21 마조비키 폴란드 총리와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회담,
1990년 5월 22일(담화메모)
1990년 5월 22일

담당자 / 기관 타데우스 마조비키 폴란드 국무총리,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

에펠만 장관은 “폴란드와 독일 간의 우호협력관계의 상징으로” 양국 공동다국적군을 창설하고 유럽의 군사 개념, 전략 그리고 안보모델을 논의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2+4 협상국과 독일 주변국들의 국방장관과 회담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국방장관들 간의 회담도 성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소련 또한 유럽의 단일한 안보 체계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서독) 연방군 군인과 (동독) 인민군 소속자 간 업무·비업무 접촉에 관한
기본지침

1990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연방군, 인민군

내용_

동독의 인민군과 서독의 연방군 군인들은 이제부터 즉시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접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만남을 권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만남의 목적은 양측 군의 소속자들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접촉에서 이루어질 대화의 주요 주제는 내적 지휘 원칙/국가시민활동이어야 한다. 그런 대화를 통해 “제복 입은 국민”인 군의 기본지침을 전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방문행사나 공동회의, 세미나 정보행사와 같은 것들을 개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양쪽의 군인들이 상대군대에서 실시하는 전투 훈련과 사격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군대의 퍼레이드나 신병의 선서식 그리고 무기전시 행사 등에도 해당된다. 양쪽 군대가 만남의 장을 갖는 행사에 언론이 참가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민군과 연방군 간에 일종의 지원관계를 맺을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_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143738, Bl. 65-67.



문서
번호 23

연방군과 인민군 소속원 간의 근무 또는 근무 외적 접촉에 관한 지침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국방부, 군축국방부

내용_

이 문서는

- 경험교환
- 교육과 훈련의 내용과 과정
- 교육과 훈련의 교수법 및 방법론
- 전문 자격증과 졸업증의 국가공인
- 교육과 훈련 관련 문서 및 학문 연구 출판물의 교환
- 교육인력의 교환과 상호방문

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침을 정한다.

위에 언급한 방문 및 접촉은 상호신뢰와 협력이라고 하는 근간 위에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비용문제는 해당 관리규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
서, 문서번호 6

문서
번호 24

군축국방부 장관령 5/90호 - 1990년 4월 26일부로 발령된 인민군 소속
원의 새로운 선서와 서약, 그 준비와 시행

1990년 6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장관령으로 인민군 소속원들의 새로운 서약(국기에 대한 맹세)이 도입되었고, 시행방안
이 구체화 되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
서, 문서번호 39

서독 연방국방부와 동독 군축국방부의 공동 지도구조 구축을 위한 연방국방부 조직위 위원장 호퍼 국장의 기본안

1990년 6월 13일

담당자 / 기관 연방국방부 조직위 위원장 호퍼(Hofer) 국장, 연방국방부, 군축국방부, 연방군, 인민군, 바르샤바조약. NATO

내용

서독 연방국방부에서 작성한 이 문서를 보면 1990년 6월에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고 통일 독일연방공화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다는 기본입장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동독 개혁정부의 군축국방부의 구조가 서독 연방정부의 국방부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독 군축국방부의 경우 차관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고, 책임영역 또한 일치하지 않으며 서독 연방군과 달리 군사 지휘권이 인민군 참모총장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국방행정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부각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독 쪽에서는 동독의 군축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조 1993” 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구조 1993” 방안을 보면 통일독일의 동독 또는 동부지역에 자체적인 국방부 장관 또는 적어도 자체적인 국방부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을 따른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양쪽 구조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조 1993”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동쪽 국방부에 3,500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너무 많다. 연방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독일에서는 연방국방부의 장관을 한 명만 두며, 군이 아니라 정치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력과 예산 조직 그리고 군행정을 연방 국방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출처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BW 1/ 286238

문서
번호 26

1990년 7월 20일 군축국방부 기념식의 준비와 여행을 위한 계획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동독정부장관회의

내용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은 1990년 7월 20일 군축국방부 기념식에 관하여 장관회의에 알리고 있다. 에펠만 장관은 이 기념식이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1944년 7월 20일) 46주기를 기리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행사가 인민군의 민주적인 개혁에 긍정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보고, 기념식의 준비와 여행 계획, 귀빈명단 등을 이 문서에 담았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문서
번호 27

군축국방부 조직구조
1990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_ 군축국방부

내용_

이 문서는 군축국방부의 각 조직과 구성 그리고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망라하고 있다:

- 차관급
- 주요 인사부서/예산부서
- 인민군 지휘부의 장
- 교육훈련부의 장
- 무기 탄약 관리 책임자
- 군 시설 및 인프라 관리 부서의 장/자연생태 관리부서(MBU)의 장
- 대민업무부서의 장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

문서
번호 28

군축국방부 장관령 7/90호

- 해수유동 관측 및 해저측량 업무의 군축국방부에서 교통부로의 이관
1990년 6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교통부

내용_

이 장관령은 해수유동관측 및 해저측량 업무가 1991년 1월 1일부로 군축국방부에서 교통부으로 이관할 것을 명한다. 이에 따른 구조 조직 개편을 1990년 1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0년 6월 30일까지 인민군의 특정 업무를 위해 필요한 구조를 도입하도록 한다. 해저측량 업무와 관련된 숙소 토지 등은 교통부에 이관되며 보직이 없어지게 된 장교는 전보 발령 조치를 취하거나 전역하도록 하며, 해당 민간 군무원들의 경우 다른 보직을 알선하도록 명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
번호 29

군축국방부 장관령 9/90호

- 군사정치대학 구조 개편과 안보정책연구소 설립에 관하여
1990년 6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장관령은 1990년 6월 30일부로 “빌헬름 피크 군사정치대학”을 “베를린-그뤼나우 군사정치대학”으로 개명하며, 총 120명의 민간인과, 60명의 군속이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대학구조개편을 지시한다.

이 대학에 차관 직속의 안보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이 지시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 연구센터를 1990년 9월 1일까지 구축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독일민주공화국 - 헝가리인민공화국 국방부 장관 회담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장관; 라요스, 헝가리 국방부장관

내용_

에펠만 장관을 대표로 하는 군축국방부 사절단이 헝가리에서 헝가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만났다. 이 만남은 동독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선거를 통해 구성된 첫 민주정부와 헝가리의 초대 민주정부가 함께 자리한 것이었다.

헝가리의 경우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며 장군을 임명할 권한도 갖는다고 하였다. 헝가리의 군은 1992년까지 약 25~30%, 127,000명에서 90,000명 정도 감축될 예정이며, 1991년 말에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탈퇴한다는 것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헝가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계획은 없으며 단지 지역별 양자 안보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이 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에펠만 장관은 헝가리의 이러한 결정이 독일과 유럽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독 인민군 개혁의 중점사안은 주변국과의 군축과 군사시설을 민간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는 동독의 무기를 전부 폐기하는데 4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독 인민군의 경우 최종 명령권자는 군축국방장관 자신이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도 장군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헝가리에 주둔하였던 360,000명에서 380,000명에 달하는 소련군의 철수문제에 관한 에펠만 장관의 질문에 라요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소련군의 철군과정에서 헝가리와 소련 모두 이미 체결된 계약은 준수하였다. 그러나 군 시설지역에서 발행한 오염을 제거하는 것과 재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종적으로 헝가리와 동독 군대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에 양측은 서로 합의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72

문서
번호 31군축국방부 장관과 인민의회 국민청원위원회
- 청원 “독일의 완전한 탈무장화”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괴싱, 동독인민의회 국민청원위원회 위원장

내용_

동독의 에펠만 군축국방장관은 괴싱 최고인민의회 국민청원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민청원 “독일의 완전 탈무장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하였다.

두 개의 독일이 공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청원은 양국 정부 모두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 유럽적인 평화질서를 위해 독일, 구체적으로 동독을 탈무장화하는 것은 군축국방부장관 에펠만의 기본적인 입장일 뿐만 아니라 드 메지에르 정부의 정책입장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인민군의 단계적인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방예산 또한 1989년 10%, 1990년에는 26% 삭감되었다.

나아가 시민복무(공익근무)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강제적인 병역의무는 폐기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동독지역을 -나토 또는 바르샤바조약기구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구역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이 문서에는 그 외에 새로운 안보정책 시행 및 소련군 철수 문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67

문서
번호 32물자구매 및 조달과 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구조전환으로서의
조달청 설치 - 차관 제안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장관; 아플라스, 마치벡, 군축국방부차관; 호프만 제독, 인민군합참의장

내용_

아플라스 차관과 마치벡 차관 그리고 인민군 합참의장 호프만 제독은 군수물자의 구매와 조달 그리고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할 조달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다음날인 1990년 7월 2일부터는 군수물자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적인 구조와 조직형태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독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이러한 시각은 앞으로 실현될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물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물자를 공급하는 기관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서독의 “공공용역서비스 및 조달과 계약에 관한 일반조항(VOL/A)”을 그 근간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그들은 보았다. 그것을 근거로 동독에서도 조달기관의 형태로 과제를 수수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적인 조건 하에서 이러한 관청을 통해 인민군을 위한 물자조달 과정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
번호 33

군축국방부 내부회의

1990년 7월 17일

담당자 / 기관 아플라스, 군축국방부 차관; 호프만; 에벨링; 하안; 길레; 빌케; 클로트; 험펠; 뮐러; 레더러; 군축국방부

내용

이 문서는 군축국방부의 주요부서의 장들이 참여한 내부회의의 회의록이다. 이들은 인민군의 현재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 인민군 무기 매각 방안
- 인민군의 심리상태 확인
- 동독에 있는 화학무기 처리문제
- 국경수비대 군인들의 임금 계산문제
- 군축국방부 정보교환을 위한 내부 네트워크 확대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07

소련 아르키스/스타브로폴 크라이에서 열린 관계자 확대회의에서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콜 연방총리 간 대담

1990년 7월 16일

담당자 / 기관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한스 디트리히 겐서 연방외무부 장관,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부 장관

내용

고르바초프와 콜 수상 간의 대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독일 통일과 함께 완전한 주권을 획득한다.
2. 통일독일과 소련은 현재 동독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을 철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소련군은 양자 간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현 동독 지역에 계속 주둔한다. 이 양자 간 협약은 소련과 독일연방공화국이 지금 준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서독은 동독과 비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독일이 어느 동맹에 속할 지는 독일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소련군이 독일민주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NATO 조직이 그 지역까지 확장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군이 철수하고 난 후 독일의 거취문제는 주권국가인 독일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출처 Küsters, Hanns Jürgen/Hof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90. München: Oldenbourg Verlag. S. 1355-1367.



문서
번호 35

군형사사건 관할권에 대한 결정과 사법절차법의 시행규정
1990년 7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인민회의

내용_

이 법에 따라 이전까지 군수사기관과 군법원에 속해 있었던 군형사사건들은 앞으로 해당 보통법원 관할로 이관하게 되었다. 새로운 관할권 배정은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이 정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전까지 동독 군법정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각 해당 지방법원에 인계하도록 하였다.

출처_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46, S. 811

문서
번호 36

통일변혁기 동안의 시민저항운동 통제에 대한 인민군의 역할,
연방의회 질의

1993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유르겐 아우구스티노비츠,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내용_

이 질의서는 아우구스티노비츠 연방의회의원의 통일변혁기 동안의 인민군의 역할에 관한 질의에 베르트 빌츠 차관의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빌츠 차관은 인민군 장교급 군인의 거의가 완전히 사통당 당원이었을 정도로 “당의 군대”였고, 군 내부의 반대세력에 대한 통제는 경찰이나 슈타지와 같은 외부의 힘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변혁기간 인민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관련 문건들의 폐기로 인해 면밀히 평가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소수 고령의 인민군 장교들은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젊은 장교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고, 진압작전과 같은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인쇄물 12/5082

문서
번호 37

군특임관의 업무에 대하여 군축국방부 장관에 보고
불명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미카엘 한, 군특임관

내용_

이 보고서는 군축국방장관에게 새로 도입된 군특임관(주: Soldatenbeauftragter, 서독의 Wehrbeauftragter 의 성격을 가짐)의 업무영역과 내용(1990년 4월 18일-10월 2일)을 보고 하는 것이다. 군특임관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 군인의 기본권 보호 대변
- 군인의 개인적, 업무적, 사회적 요구의 관련법률, 군사규정에 따른 대변
- 군축국방부 정책결정에 있어 군인의 개인적, 업무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변 이외에도 통일 과도기 동안에 군특임관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 시기에 많은 군인들 특히 직업군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과 불안감,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06

문서
번호 38

개정 병역법 초안- 군축국방부, 청소년스포츠부 공동기자회견
불명

담당자 / 기관_ 군축국방부, 청소년스포츠부

내용_

군축국방부, 청소년스포츠부, 개신교와 가톨릭교회 대표자회의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군복무와 시민복무로 구성되는 새로운 “복무법”(병역법)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이 초안은 1974년 10월 7일부터 발효했던 동독 헌법 23조(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복무 의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시민복무와 군복무의 복무내용 및 복무기간 뿐만이 아니라 병역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행 절차 등, 시민복무와 군복무의 구성과 조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문서 요약

2. 준비기(자료번호 39~95)

독일의 국가기관인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은 베를린 자유대 연구팀이 라이너 에펠만 동독 과도기 군축국방장관 기증 자료를 “독일 정부의 통일 및 통합 관련 문서 공유” 프로젝트의 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이 문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독재청산재단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에펠만 기증문서의 인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문서
번호 39

국경수비대 미테, 귄터 레오 대령이 동베를린 시장 티노 슈비어치나에게 보낸 국경경비장치 철거 상황에 관한 서한

1990년 7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동베를린 미테 국경수비대 귄터 레오 대령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Start/Detail/id/593879/page/2>

문서
번호 40

군축국방부 장관령 20/90호 - 해체되는 부서와 부대의 문건에 대한 파악, 분류, 인수에 대한 조치

1990년 7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해체되는 부서의 문건을 파악, 수집, 인수인계, 평가와 분류하는 작업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문건이 어떤 관할 행정문서기록보관소에 인계되는지, 어떤 문서가 폐기처분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한다. 문건의 인수인계에 앞서 분류와 목록 작성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155



문서
번호 41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이 국경수비대에 보낸 서신
- 새로운 국경수비대의 구성과 국경수비업무의 이관에 대하여

1990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국경수비대

내용_

동독 인민군 소속 국경수비군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 에펠만 장관은 국경수비군의 해체와 국경수비대로의 구조전환에 관해 설명하였다. 구조전환을 통해 새로이 구성될 국경수비대는 국경업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질서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중앙경찰조직의 일부가 될 것이며, 새로이 편성될 국경수비대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수비군 전원이 국경수비대로 인계될 수 없다고 그는 밝혔다. 그렇지만 인수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1990년의 국가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하였다. 국경수비군의 문제 외에 언급된 것은 중앙집권적으로 설치된 기관을 해체하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각 주에 더 많은 관할권을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경찰조직을 각 주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이다. (이 서신은 그 외에도 국경수비군의 전역해임 기준, 여군과 여성 군무원의 인사, 경찰의 자립적 주체적 구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7

문서
번호 42

동독 1990년 하반기 엔지니어와 기술수출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관계

1990년 8월 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경제부 무역국 엔지니어 기술수출 부서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하반기에 동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이 아닌 국가에 수출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동독은 이 시기에 인도(천칠백오십만 마르크), 이라크(육백오십만 마르크), 알제리(육백삼십만 마르크), 북예멘(천사백십만 마르크), 우간다(팔십만 마르크), 니카라과(천삼백십만 마르크), 이집트(삼백칠십만 마르크), 모잠비크(백십만 마르크), 가나(팔십만 마르크), 북한(사십만 마르크), 유고슬라비아(이십만 마르크), 쿠바(천이백사십만 마르크) 등을 수출할 의무가 있다. 총액이 칠천육백구십만 마르크이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담당자 / 기관 연방군 총감찰감 에케하르트 리히터 연방군 장관, 연방군, 인민군, NATO, 연방국방부, 연방군 동부사령부

내용

서독 연방군에서 작성한 이 문서에서는 인민군과 연방군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독 쪽에서 인민군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는지 잘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는 1989년 이후 언론, 교회지도자, 노조, 학자들이 이미 연방군과 인민군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연방군의 군인들은 대부분 인민군과 교류할 의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군 통합 과정에서 인민군을 구분 없이 전원 인수하는 것은 반대한다. 특히 인민군의 전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과거 오랫동안 존재하였던 적대감으로 인해 이 문제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을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들을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인사문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인민군의 군인들은 인력심사절차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위한 사회보장조치가 취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그들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인민군 군인들은 연방군의 내적 지휘 개념과 상관과 부하군인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의 간부들은 인민군 군인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카톨릭 사제들은 인민군 군인들 간에 “동지애”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연합군의 군인들의 경우 독일 통일을 매우 긍정적으로 관찰하면서도 그에 대한 선입견과 우려도 함께 갖고 있다. 서독의 연방군 소속 군인들이나 일반 여론의 경우 동서독의 관계를 승자와 패자의 구도에서 보는 정서가 다행히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각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서독의 여론이 일반적으로 인민군이 전체 국민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보고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 단지 통일조약에 따라 기간제 군인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통일조약에 따른 인민군 소속원의 해고기준이 정치장교, 대령 이상의 장교라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나아가 연방군과 인민군의 통합 또한 최종적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목표를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에 설치될 연방군 동부사령부에 배치될 인력문제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인수될 인민군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도 빨리 정해



적야만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제대해야만 하는 인민군을 위한 사회보장문제도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 실무팀과 지원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처_ Hans Ehlert.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Verlag, S. 454-460.

문서 번호 44 소비에트연방 서부군단 보급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인민회의

내용_

동독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소련군 서부군단(WGS)에 보급되는 식량, 건설물자, 각종 교통, 우편, 연료, 상하수도시설등 기타 용역의 계약은 앞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경제부와 서부군단 사령관의 협조를 통해 조정하도록 한다.

출처_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53, S. 1070-1071

문서
번호 45

군축국방부 장관령 26/90호 - 대민업무 기관 및 부서의 해체
1990년 8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장관령은 인민군과 국경수비대와 민간수비대에서 이루어진 정치사상 교육 작업을 중단하고 해당 기관을 1990년 10월 31일까지 해체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인민군 중앙오케스트라와 드레스덴 군사박물관 등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기타 세부사항 참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인민군의 추가 감축을 위한 구조 변경으로 인해 정치교육, 선전, 통제 업무를 즉시 중단하기로 한다.
2. 모든 정치사상 교육 활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1990년 10월 15일까지 폐지하도록 한다. 무장군비, 장비 및 기타 물자는 해당 처리부서에 인계한다. 회계와 관련된 과제는 10월 15일까지 종료하도록 한다. 인민군 합참의장이 본 명령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인민군 합참의장은 1990년 10월 31일까지 규정에 따른 폐지의 실행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
번호 46

인민군 교육기관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1990년 8월 9일

담당자 / 기관_ 비초레크, 군축국방부 차관

내용_

동독 군축국방부의 비초레크 차관은 1990년 8월 9일에 인민군의 교육기관들의 장래에 관한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주관하였다. 이 회의는 군축국방부의 정책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외국군 간부의 교육 및 훈련을 중단하고 이 보고서에 첨부된 목록에 명시된 교육훈련 시설을 새로이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문서
번호 47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과 딘스트비어 체코연방 외무부 장관 회담 1990년 8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우베 험펠

내용_

이 담화메모는 에펠만 장관이 딘스트비어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을 만나 독일 통일 관련 주제로 나눈 회담내용을 담고 있다. 딘스트비어 장관은 독일의 분단과 통일 문제가 유럽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럽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독일 통일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라고 에펠만 장관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국민들의 일부가 독일 통일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국경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딘스트비어 외무장관은 자신이 보기에는 실제 해당 주민의 수가 아주 적고 실제로 외국이 독일 통일 과정에 그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 딘스트비어 외무장관은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독일 통일이 실현되는 경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협약들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두 국가가 신속하게 협약을 체결하여 경제협력관계를 규정하여야만 한다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이에 에펠만 장관은 동독의 드 메지르 수상과 서독 정부에 반드시 그의 의견을 전달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회담의 마지막 주제로 소련의 역할이 언급되었다. 에펠만 장관은 소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면 유럽통합의 진행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72

담당자 / 기관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바츨, 체코 국방부 장관, 두카츨 차관; 빈센, 진드라, 페가

내용

이 회의록은 동독의 군축국방부 장관 에펠만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방부 장관 바츨 간에 열린 회담을 기록한 것이다. 이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의 탈무장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생태환경에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동독의 경우 특히 직업군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민군의 인력과 물자를 급격하게 감축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며 동독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안고 있는 것은 경제적 생태 환경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전차의 폐기 문제가 제시되었다. 1,500대의 전차를 어떻게 폐차처리 할 것인가? 체코슬로바키아 경제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전차생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전차를 군사용에서 소방차와 같은 민간용으로 개조하자는 안이 제시되었다.

- 다른 중요한 논점은 공익근무제도의 도입과 공익근무 기간, 그리고 공익근무자와 병역이행자의 비율에 관한 것이었다. 공익근무자와 병역이행자의 비율을 50:50로 균형을 잡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그것은 직업군인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제가 동독과 통일독일에서뿐만이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문서
번호 49

군축국방부와 연방국방부 회담, 1990년 8월 10일 - 기록문, 관련서류
1990년 8월 10일

담당자 / 기관_ 군축국방부

내용

1990년 8월 10일에 있는 양독 국방부 장관 회담을 위해 군축국방부에서는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도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 자료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회담의 목적과 주요 논점은 통일 독일의 군 통합과 그 전환이다. 현재 동독지역과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나토에 통합하지 않기 위해서 동부지역군을 별도로 구성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축국방부는 별도의 부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부지역군의 부대조직과 군 행정조직은 연방군의 그것과 동일해야 하며, 인력규모는 전체 독일병력의 5분의 1, 약 50,000~70,000명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였다. 동부지역군을 별도로 구성하는 작업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았다.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으로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군축국방부는 그 기능을 상실하며, 육해공 3군의 사령부와 2개 지역 군단의 작전지휘권 또한 소멸하지만, 군 통합과 전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시적으로라도 각 사단 및 함대의 지휘부를 존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통일조약의 안보정책과 군사문제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통일조약에 “안보정책, 군사, 군축”이라고 하는 별도의 장이 도입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동독 군축국방부의 입장은 그 대신에 통일조약 제13조와 16조에 이에 상응하는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3조 2항에 통합되는 인민군의 각 부대, 군사조직 및 부서를 명시하고, 16조 3항에는 전 인민군 군인들을 연방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그들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문서
번호 50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이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 - 연락사령부 설치 관련

1990년 8월 15일

담당자 / 기관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연방국방부, 군축국방부, 인민군

내용

서독연방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동독의 군축국방부 장관은 연방국방부 연락반(Verbindungsgruppe)을 슈트라우스베르크에 배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연락반은 양측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운영하며, 군사 및 민간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연락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동독이 독일연방에 가입한 후 내려질 결정에 대한 준비,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참여, 연방국방부의 지휘권 및 명령권 인수 관련 자문, 새로운 지도기구들 구성 준비.

출처 Hans Ehlert.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Verlag, S. 462-463

문서
번호 51

인민군 추가 축소 조치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28/90호

1990년 8월 15일

담당자 / 기관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독일민주공화국 국경수비대 및 민방
위군

내용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국경수비대 및 민방위군 지휘관 전체 중 55세 이상인 자는 1990년 9월 30일자로 해고된다.

출처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497

문서
번호 52

군축국방부 장관령 31/90 호 - 인민군의 군사장비 및 물자의 매각에 관한 조치

1990년 8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명령은 1990년 8월 당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방물자와 군사장비의 재처리 및 매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매각대상 중에서 방위물자와 전쟁무기는 엄격하게 구분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 때까지 인민군 물자 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군부서와 민간조직들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각업무 수행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외국에서 구매의사를 표시해 온 물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즉시 매각이 가능한 물자와 매각제안이 들어 온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 분야에서 구매계약해지로 인해 반송된 물자 또한 매각대상 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한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67

문서
번호 53

군축국방부 자문의위원회 회의보고 - 해임된 정치장교에 대한 전달사항

1990년 8월 16일

담당자 / 기관_ 군축국방부 자문위원회; 차관 비초렉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8월 15일에 열린 회의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 동독의 군축국방부 장관 에펠만은 비초렉 차관에게 해임되는 정치장교들에게 군축국방부 명의로 편지를 쓸 것을 부탁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초렉 차관은 모든 인민군의 정치사상 교육 업무의 중지를 명하는 장관령 26/90호가 공식적으로 군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보고하였다. 호프만 제독과 안더스 장군은 군의 정치적 업무와 군사적 업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치장교들을 다른 장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군축국방장관이 요청한 편지는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이며 장관령 26/90호를 낭독, 공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초렉 차관뿐만 아니라 영엘하르트 장군 및 동석한 장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67

문서
번호 54

군축국방부 장관의 소련서부군단 철군 과도기 중 동독-소련 규정 요구
1990년 8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은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 서부군단(WGS)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과도기보고서를 요구하였다.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된 독일정부와 소련 간에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에 관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현재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소련군에 의한 또는 소련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1989년에 심각하게 증가하였다. 에펠만 장관은 동독에서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약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때까지 연방군의 부대가 동부지역에 주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1991~1994 소련군 서부군단 철수에 관한 계획”은 1991년 1월에 수립되었으며 독일과 소련의 실무자그룹에 의해 1991년 5월 14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
번호 55

인민군 재고 물자 매각 절차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31/90호
1990년 8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경제상호원조회(COMECON)

내용_

이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방위물자 매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전투무기와 일반 방위물자를 철저히 구분한다.
- 정확한 시장분석을 통해 외국 구매 의사자 수요를 조사한다. 경제상호원조회(COMECON) 회원국, 특히 물자의 원 생산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필요시 기업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이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여 군축국방부에 제출한다.

출처_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497.



문서
번호 56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이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
1990년 8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내용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이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 에펠만 장관은 이 서신을 통해 델리취 시에 존재하는 17개의 인민군 훈련장의 해체를 부탁하고, 이 시설들이 생태재활을 위한 환경센터로 개조되어야 함을 전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문서
번호 57

독일민주공화국 협상단 1990년 8월 20일 본에서 열린 3차 협상
1990년 8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정부 각 대표부와 신연방주 대표부

내용_

통일조약을 위한 3차협상에 참가한 동독 대표부 명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음)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동독 군축국방부 내에 설치된 서독 연방국방부 연락사령부 군사부문
총지휘관 리히터 연방군 장군의 최초 약식 보고서

1990년 8월 21일

담당자 / 기관 연방군 총감찰감(Generalinspekteur),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참모총장 테오도어 호프만 제독, 인민군, 연방국방부

내용

리히터 장군은 그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다.

동독의 군축국방부는 동독에 서독의 연방국방부가 파견한 연락반을 설치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였다. 인민군 내부의 정서적 변화에 대한 리히터 장군의 관찰에 따르면 1989년 11월에서 1990년 2월 사이가 불안감이 고조되던 시기였고 1990년 2월에서 8월 사이에는 일정한 정도의 안정을 찾은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8월 20일 경에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불만감과 불안감이 지배적인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인민군들 사이에는 50세 또는 40세 이상 인원의 해고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군인들의 입장표명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이라고 리히터 장군은 평가하였다.

그는 나아가 연방군의 군인이 인민군과 접촉할 때 전투복을 입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민해군과 연방해군 간의 교류는 이미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 1990년 8월 말부터 인민군과 접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리히터 장군은 보고하였다.

동독의 군축국방부는 회수된 인민군의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시설을 경비하기 위해 고압 전선 시설을 설치하였다. 총 304개의 창고에 보안울타리의 총 길이가 500km이다. 보안장치로서의 고압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6,000명의 경비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출처 Hans Ehlert.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Verlag, S. 464-466.

문서
번호 59신탁청법에 대한 제2차 시행규정
1990년 8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정부 장관회의

내용_

이 법을 통해 인민군 국방장비의 재처리와 및 분류된 부대시설의 민영화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에 따르면 분류된 군재산은 모두 신탁청에 인계되어야 한다. 신탁청은 분류된 군재산을 민영화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부대시설은 공시하여 매각한다. 국방장비는 매각, 폐기하거나 민간 이용 목적에 따라 개조처리 한다. 신탁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구성과 업무영역에 대해 군축국방부와 조율하도록 한다.

출처_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56, S. 1260

문서
번호 60연방군의 인민군간 연락지도부의 보고서
1990년 8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정부장관회의

내용_

이 문서를 통해 연방군 연락반은 에펠만 장관에게 현재 인민군에 파견된 연방군 연락반의 원활한 작업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연락반의 상황과는 달리 인민군 내부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민군 군인들이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차분하게 그들의 장래를 위한 사회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군인을 너무 일찍 은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 극소수라도 몇 명의 동독군 장군에게는 “명예직”으로 장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권하였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 전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연방군으로 인수 되는 인력의 최대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문서에서는 나아가 동독 인민군에서 탈영한 사람들을 위한 사면조치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무기와 관련하여 정부의 동의 하에 인민군의 무기를 소련으로 재수출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비스마르 지역의 노동시장 문제를 고려하여 불가스트 조선소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나아가 해고되어야 할 국경수비군 소속 군인과 정치장교의

교육생의 수를 정하고 그들을 민간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마지막으로 병참과 관련된 문제, 군부대 시설 그리고 인민군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는 문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문서
번호 61

군축국방부 장관령 32/90호 - 국방물자의 수출입 허가를 위한 신고의무
1990년 8월 28일

담당자 / 기관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전쟁무기의 수출입 계약 체결은 해당 조달청의 책임자의 검토 후에 원칙적으로 군축국방부 차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2. 소련,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로의 전쟁물자 재수출은 군축국방부 특임관과 조달청 책임자의 감독과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3. 이 장관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명령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
번호 62

군축국방부 장관령 33/90호

- 군축국방부 산하 차관 직속 연구기관, 군전환 연구소의 설치

1990년 8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명령을 통해 군축국방부 장관은 1990년 10월 31일까지 군수산업을 민간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루는 연구소를 설치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연구소는 군축국방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차관의 감독과 명령을 받으며 군축과 군수산업의 민간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든 업무에서 파생되는 분야에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군축국방부 관련 연구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종의 민간, 군 연구소와도 협조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이 연구소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재정 및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
번호 63

소비에트연방 서부군단 보급물자의 관세, 소비세면제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인민회의

내용_

1990년 8월 29일에 제정된 이 규정을 통해 소련군 서부군단에 제공되거나 귀속되는 물자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면제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서부군단에 제공되는 물자 중 소비세 및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관한 것들이다. 이 규정들은 서부군단 소속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출처_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법률, Teil I, Nr. 63, S. 1608-1609

문서
번호 64

통일조약의 근간으로서의 의무
- 청소년스포츠부와 군축국방부의 공동 의지 표명서

1990년 8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코르돌라 슈베르트, 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선언을 통해 동독 장관회의는 공익근무와 병역의무에 관한 내용을 서독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통일조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동독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던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청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7

문서
번호 65

인민군 각 군 전투장비의 장전 탄약 제거에 관한 명령

1990년 8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인민군, 인민군 각 군, 인민군 참모총장, 인민군 부대장,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명령을 통해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탄약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과, 로케트의 저장과 탈장전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각 군의 참모총장들이 1990년 9월 18일까지 장전 탄약의 제거 완료에 대해 텔렉스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출처_ Werner E. Ablaß. 1992. Zapfenstreich. Von der NVA zur Bundeswehr. Düsseldorf: Kommunal-Verlag, S. 156



문서
번호 66

독일 통일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조약
- 통일조약

1990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국방부, 인민군, 연방군

내용_

통일조약에는 국방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인민군 소속 군인들은 연방군의 군인이 된다. 이들이 임시로 어떤 계급을 달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국방장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국방장관은 나아가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50세 이하에만 적용되는 직업군인의 인수문제를 결정해야만 한다. 장교의 경우 연방군으로 인수되기 전에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인민군 군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인민군 군인 중에 국가안전부(일명 슈타지) 또는 국가안전청을 위해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민군은 모두 해고한다.

출처_ 1990년 9월 6일자 연방정부언론정보청 관보 제104호, S. 877

문서
번호 67

연방국방기술조달청(BWB)의 조달청(AfB) 인수, 흡수

1990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국방기술조달청: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연방군

내용_

조달청(AfB)은 단계적으로 국방기술과 조달을 위한 연방청(연방국방기술조달청:BWB)에 통합된다. 연방국방기술조달청-구 동독지역 외청의 기능은 인민군 군사장비의 감축과 폐기뿐만 아니라, 재처리, 매각을 포함하여 신연방주에 보급되는 연방군 표준장비의 조달업무를 관할한다. 베를린 외청은 구 동독 지역의 기업과 협력하도록 한다. 경제성 보장을 위해 각 청들은 재처리 및 폐기 기술과 기타 시설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부서를 설치한다. (기타 수출입 관련통계, 계약체결/해지와 관련한 사항)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67

문서
번호 68

최후명령 등
1990년 9월 / 10일

담당자 / 기관 연방국방부 연락사령부(Verbindungsgruppe), 군축국방부, 인민군, 인민군 참모총장, 연방군 동부사령부,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인민군 군인에게 내려진 최후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그 명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민군 내에 배정된 지휘권자들은 일단 자신의 명령범위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한다. 단 1990년 10월 4일부터 특정 부대의 지휘권은 서독 연방군인의 장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다른 부대에는 지원그룹이 배정될 것이다.

군의 기본적인 임무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본에 있는 연방국방부와 연방국방부 베를린 외청, 그리고 연방군 동부사령부, 국방구역행정국 VII, 연방군사기술조달청 또는 신연방주 소재 사무소 등에 인계하도록 한다.

출처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Bw 2/22095, Bw 1/286223,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Hrsg.).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Eine Bilanz. Bonn: Presse- und Informationsstab, S. 16

문서
번호 69

군축국방부 장관령 38/90호
- 인민군 기밀서류와 식별기호의 검토 및 재분류에 관한 조치
1990년 9월 3일

담당자 / 기관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

인민군 기밀서류의 검토 및 재분류 업무의 책임자를 규정하고 기밀의 기간과 보안의 기한에 따라 폐기 또는 보관할 것을 결정한다. 보관되는 모든 기밀자료에 '비밀등급'에 따라 새로운 식별기호를 부여한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39

문서
번호 70

주 동독 소련군 내 연락조직 설치에 관한 메모
1990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_ 주동독 소련군(소련서부지역군단), 군축국방부, 연방국방부, 인민군

내용_

1990년 9월 5일에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 서부군단 내에 연락조직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군축국방부 담당자와 회의가 열렸다.

동독 인민군의 경우 소련군 내에 어떤 연락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은 1990년 8월까지 동독 정부 군축국방부 내에 대표부를 두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군축국방부는 통일 이후에 소련군 서부군단 최고사령부에 연방 국방부 또는 연방정부가 담당관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5개의 신연방주 정부와 25개의 각 군 기지에 연락반을 설치할 것도 제안하였다.

소련군 측에서는 소련군 장교들이 동등한 계급의 장교만을 협상의 파트너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인민군이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이 사용한 병영, 토지, 물건, 훈련장, 주택 등에 대한 상세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동독 주둔 소련군은 동독 영토의 약 2%에 해당하는규모인 2,300km²의 면적에 2,000개 이상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_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Bw 2/22095

문서
번호 71

군축국방부 장관령 39/90호 - 인민군 군복 및 개인장비의 전환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장관령으로 인민군의 기본 개인장비 및 군복전환 시행일정, 책임자와 그 외 세부지침이 정해졌다. 1990년 10월 3일까지 모든 인민군 소속인 자는 연방군 표준 개인장비 및 군복을 지급받는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
번호 72

군축국방부 장관령 40/90호
- 1987년 12월 22일자 독일민주공화국 국가국방부 장관령
123/87호(국가국방부의 동독 방어태세 준비에 관하여)의 파기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장관령은 동독의 방어태세 준비를 위한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시설 및 부서를 임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명하고 이에 따라 사용처가 불분명해진 물자들의 처리 규정과 책임 소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군사설과 관련하여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군 인프라/생태부서(MBU) 책임자와 협조하여 해결한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39

문서
번호 73

연방군의 인민군 인수에 관하여 - 군축국방부 장관 편지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군축국방부는 이 편지를 통해 정부 장관회의에 1990년 7월 15일에 있었던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코카서스회담에서 다뤄진 내용 중 인민군 관련 결정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장관령 31/90호-48/90호 참고)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Akte 33



문서
번호 74

연방군의 인민군 인수에 관하여
- 기민/기사연합 원내 국방정책 실무자 그룹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기민/기사연합 원내 국방정책 실무자그룹

내용_

이 문서는 기민/기사연합 원내 국방정책 실무자그룹이 원내 의원들을 위해 작성한 내부문건이다.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 양국 군대의 통합 모토
- 인민군 인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990년 10월 3일 기준 인민군 병력 추산
-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조직과 구성
- 임금
- 국경수비대의 해체
- 사회정착지원
- 연방군의 지원
- 기타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4

문서
번호 75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이 드 메지에르 총리에게 보낸 서신 - 연방군의
인민군 인수에서 위험한 문제들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드 메지에르 총리

내용_

에펠만 장관은 이 서신을 통해 드 메지에르 총리에게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지는 연방군의 인민군 인수에 의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1990년 9월 30일까지 많은 군인들이 인민군을 떠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지역사무소 전체가 폐쇄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에펠만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경우 모든

무기와 로켓트 기지, 탄약을 보관하는 시설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었다. 그래서 에펠만 장관은 드 메지에르 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을 알리면서 서독 연방정부에도 조속히 이 사실을 알릴 것을 부탁하였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112

문서
번호 76

연방국방부와 인민군 상황보고

1990년 9월 6일 / 7일

담당자 / 기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내용

1990년 9월 초 통일조약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민군 군인들 특히 고령 군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인민군에는 퇴직신청서가 빗발치면서 인민군의 통솔, 질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민군 공군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인사 전환을 거부했다. 군인들은 통일조약 내용이 불분명하게 표현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이 빠르고, 정확하고, 특히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원했다.

일부에서는 통일조약 중에 인민군과 관련하여 작성된 부록이 동독이 서독 정부에 모든 전권을 위임한 법안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실제로 적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인민군들이 자기가 이류, 삼류 군인인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나아가 약속한 직업전환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출처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BW 1/235270, DVW 1144513, DVW 1/44514



문서
번호 77

인민군 국방물자의 조기매각 - 연방국방부의 이익제기 품목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군축국방부내 연방국방부 연락반; 올만 중장, 조달청: 시몬, 장관조정실장

내용_

군축국방부에 설치된 연방국방부 연락반은 인민군 국방물자의 조기매각이 결정된 품목 중에서 군통합 이후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부 물자를 조기매각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이 결정의 기준은 향후 통합된 군의 구조에 달려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문서는 조기매각목록 중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무기체계를 비롯한 인민군 국방물자목록도 담고 있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문서
번호 78

군축국방부 장차관 회의 - 1990년 하반기 물자, 기술 수요
1990년 9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팔스, 차관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하반기 인민군의 물자 및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와 1991년 수요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하반기 물자 구입과 판매 금액은 삼억이천구백만 마르크가 감소되었다. 군축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오억오천만 마르크의 비용은 검토중이라고 하였다. 1991년 계획안과 관련하여 지역군단의 조직과 구성, 기능, 병력규모와 이들의 무장과 표준장비, 그리고 무기, 기술, 탄약 등의 안전한 보관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한 관할권을 동부지역군단사령부 또는 지역군단이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
번호 79

여성 인민군 소속자의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제41/90호

1990년 9월 7일

담당자 / 기관_ 라이너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인민군

내용_

에펠만 장관은 1990년 9월 7일에 전달된 명령을 통해 의무병을 제외한 인민군 소속 모든 여성들을 1990년 9월 30일자로 해고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여성 인민군 소속원들이 담당해 왔던 보직은 1990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며, 그 업무는 자격요건에 따라 민간보직으로 전환된다. 여성장교와 여성 견습사관 후보생은 민간직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참여하며, 인민군에서 시작한 대학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출처_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497

문서
번호 80

통일 후 독일연방군의 미래에 관한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의
답변서

1990년 9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내용_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은 1990년 9월 10일, 통일 후 통합된 독일군의 미래에 관한 본(Bonn)정부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슈톨텐베르크 장관은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서기장 간의 협상, 2+4 협상 그리고 빈(Wien) 협상 등을 통하여 통일 독일을 위한 제반조건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통합된 독일연방군의 병력은 37만 명으로 정해지고 1990년 가을에 통합된 군을 위한 기본구조가 결정되어야함을 설명하면서, 독일은 나토의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며 소련서부군단의 철수가 완료되는 1994년까지는 동독 지역, 즉 신연방주에는 오직 연방군만 주둔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서독의 군사헌법은 신연방주에서도 적용되며 그외에도 공공분야를 위한 일련의 특수조항이 적용될 것임을 적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구 인민군 소속원들이 연방군에 인수될 기회가 있음에 반해 국경수비대는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하면서,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연방군 동부사령부가 중앙사령부로서 신연방주의 모든 부대와 그 지휘부 그리고 관련 시설들에 대해 최소 6개



월간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연방군 소속 장교 240명 그리고 인민군 소속 장교 360명의 투입을 적고 있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8

문서 번호 81 독일 관련 최종 규정에 관한 조약
1990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 한스 디트리히 겐서 외무부 장관, 로타 드 메지에르, 롤랑 뒤마, 더글라스 허드,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제임스 베이커

내용

이 조약을 통해 독일 통일과 함께 4대 승전연합국이 베를린 및 독일에 대하여 갖는 권리 및 책임은 모두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더 나이스 강을 포함한 통일독일의 현재의 국경은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 독일과 폴란드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조약을 통하여 양국 간 국경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한다. 독일은 통일 된 이후에 더 이상 새로운 영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국방과 관련하여 독일은 화생방 무기 생산 및 보유 포기의사를 확인하였고, 통일 이후 3~4년 안에 병력의 규모를 370,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1994년에 종료되는 독일 주둔 소련군 문제는 독일과 소련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소련은 현재 동독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이 1994년에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속하지 않는 독일군만 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그 때까지 프랑스 영국 미국 군대는 독일 측의 요청에 따라 베를린에 계속 주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무기를 반입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소련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주둔지역에 군사동맹에 소속된 독일군도 주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지역에 핵무기 발사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출처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1990. Verträge zur politischen Einheit. Bonn.

문서
번호 82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의회 군축국방위원회의 통일조약 관련 성명
1990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의회 (Volkskammer) 군축국방위원회, 연방군 동부사령부(Bundeswehrkommando Ost), 연방 하원 국방위원회, 연방국방부

내용

동독 최고인민의회 국방위원회는 다수의 의견으로 통일조약에 동의하였다. 나아가 통일독일의 기본법에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병역대체복무인 공익근무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 동독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콜 총리가 합의한 독일의 안보정책상 지위는 문서로 확정되어야 한다. 연방군 동부사령부를 위해 5개 신연방주 출신 위원이 참여하는 의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북국방조정관은 전 독일 연방의회가 5개 신연방주 출신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출처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566

문서
번호 83

군축국방부 장관령 45/90호 - 인민군 문건 파기 정지 명령
1990년 9월 14일

담당자 / 기관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

군축국방부 산하 군정보부의 추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군 관련 문건과 기타 증거 자료의 파기를 즉시 정지한다. 이 명령은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
번호 84

군축국방부 장관령 48/90호 - 군통합 관련 인민군의 임무 1990년 9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장관령 제 48/90호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부대깃발, 휘장 등 모든 인민군 상징물을 제거한다.
2. 새로운 계급체계가 도입된다.
3. 장관령 38/90호에 따라 (연방군에 상응하는) 표준장비가 지급된다.
4. 새로운 군사조직구조는 2+4 회담의 최종 합의 문서에 따라 그 효력을 발휘한다.
5. 연방군의 규정으로 대체 되지 않은 인민군의 군사규정은 폐지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효하다.
6. 인민군 부대의 안전규정의 실천과 군복통합에 관한 규정과 일정을 확정한다.
7. 사관학교 등 군교육기관의 해체 및 전환교육기관으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
8. 영공권 수호를 중단없이 이행할 것을 명함
9. 전환교육을 신청한 직업군인과 민간군무원들은 희망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해임을 불가한다.
10. 민간보호업무는 장관령 37/90호에 상응하는 업무영역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한다.
11. 물자와 재정보호는 현재의 규정을 따른다.
12.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거나 미래에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보관되어야 한다.
13. 지역군단의 장은 해당 군규정의 제정 권한을 갖는다.
14. 1990년 10월 2일 24시를 기해 인민군의 지휘통제권은 연방국방부장관에게 이양된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에펠만 장관은 이 명령을 통해 동독 국경수비대의 해체를 지시하였다. 동독 인민군에 소속되었던 국경수비군은 이미 1990년 6월 26일자 명령 제10/90호를 통해 독일 내무국경선 수비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1990년 7월 1일자로 국경수비업무는 내무부 소관으로 이전되었다. 이와 함께 국경수비대도 형식적으로 내무부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에펠만 장관이 9월 20일에 내린 장관령 제49/90호가 국경수비대의 해산을 지시하는 공식문서로 알려져 있다. 1990년 9월 현재 국경수비대에 남아 있었던 인력은 통일독일의 국경수비대로 인수될 인원 약 4,500명과 해고될 인원 15,000명이었다. 참고로 1989년까지 동독 인민군의 국경수비군 총 인원은 44,000명이었다.

명령 제49/90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국경수비대 해체임무를 위한 지휘부는 기존 지휘부 내에서 구성한다.
2. 연방국경수비대로 인수되는 인원은 1990년 9월 30일까지 형식적으로 해임하도록 한다.
3. 연방국경수비대로 인계되지 않는 인력은 전보대기 상태로 전환하였다가 통일조약이 정하는 세부규정에 따라 해임하고 민간직 고용관계에 통합되도록 한다.
4. 동독 국경수비대에 속한 부사관, 기간제군인 등은 1990년 9월 28일부로 지역군단으로 전보 발령조치한다. 이하 조기 해임되는 군인들에 대한 세부조항을 규정.
5. 개인화기와 탄약 반납규정
6. 국경수비대 군시설과 동서독 국경 시설의 철거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7. 존치하는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규정
8. 국경수비대의 각종 시설 및 물자 그리고 차량을 포함하는 장비의 파악과 매각, 폐기, 재처리 또는 연방군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
9. 부대마크, 깃발, 휘장등 부대상징물들은 1990년 10월 2일까지 드레스덴 군사박물관에 제출한다.
10. 1990년 9월 27일부터 회른라인 소장이 국경수비대의 지휘권을 갖는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
번호 86

인민군의 전(全) 독일군 편성 관련 수행과제에 관한 라이너 에펠만 군측
국방부 장관 명령 제49/90호

1990년 9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라이너 에펠만 군측국방부 장관, 인민군, 연방군 동부사령부

내용_

이 장관령은 독일이 통일과 함께 주권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인민군이 전독일 연방군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에 관한 지시이다.

부대 기(旗), 부대휘장, 일일명령(日日命令), 증명서, 부대 현판 등은 군사역사박물관에 전달하고, 문장(紋章)은 1990년 10월 2일까지 제거하도록 한다.

1990년 10월 3일을 기하여 무기창고 등 군 시설보호를 위해 설치되었던 고압전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안을 위해 추가 경비구역을 설정한다.

출처_ 연방문서보관소 - 군사문서보관소, DVW 1/44497

문서
번호 87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군대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에 관한 의정서

1990년 9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민주공화국 군측국방부 장관, 바르샤바조약기구 최고사령관

내용_

- 제1조: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과 더불어 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며, 조약과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 제2조: 인민군은 바르샤바조약 가입국가의 군대를 위해 어떠한 참모진도 제공하지 않는다.
- 제3조: 바르샤바조약 지도기관에서의 인민군 소속자의 활동은 중단된다.
- 제4조: 군사적 안보 이익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 간 협약을 따른다.
- 제5조: 독일민주공화국은 문서들을 바르샤바조약 군사기구에 반환하거나 혹은 군사기구의 동의에 따라 파기한다.
- 제6조: 인민군 지도부와 바르샤바조약 군사기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요구나 요청을 하지 않는다.

출처_ Ehlert, Hans(Hrsg.).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S. 511-512

문서
번호 88

인민군 군인의 계급을 연방군 계급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명령
(계급이전행정령)

1990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_ 헬무트 콜, 수상; 게르하르트 슈톨텐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한스 A. 엔겔
하르트, 연방법무부 장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독일연방공화국(서독) 법률

문서
번호 89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구조

1991년 2월

담당자 / 기관_ 연방군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연방군

문서
번호 90

국방부의 꼼수: 인민군 고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싼 방법을 선택

1994년 9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신문 차이트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http://www.zeit.de/1994/40/trickserei-auf-der-hardthoehe>



문서
번호 91

군축국방부의 정치, 군사 고위부 간 협력에 관하여
1990년 상반기 - 강연문

불명(1995년)

담당자 / 기관_ 호프만 제독, 전 인민군 합참의장

내용_

인민군의 1990년 상반기 상황과 통일과정에서 진행된 조직구조 변화에 대한 강연문(강연자, 전 인민군 합참의장 호프만 제독). 이 강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89년 가을까지만 해도 동독의 국방부 장관은 인민군의 정치, 군지도부의 합일성을 보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급격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군지도부의 일부는 당적을 갖지 않았다. 1990년 3월 18일에 치러진 첫 민주자유총선 이후에는 군 내부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등장하였다.

당시 동독의 군과 사회가 겪어야만 했던 위기는 오직 모든 정당과 사회운동세력이 동참하는 군 개혁을 통해서만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에펠만 장관은 1989년 가을에 인민군이 취한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당시 저항운동에 참여하였던 그 누구도 모욕당하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 해고당하지 않았다.

인민군 지휘부는 한편으로는 인민군을 점차적으로 연방군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최소 수준에서라도 바르샤바조약이 정하는 임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국방부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국방차관들을 돕기 위해 경험이 많은 자문위원들이 추천되었다. 그러나 당시 급격히 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군의 명령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시민' 정부의 지시는 때때로 지휘관들에게 월권행위 내지는 권한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독 연방국방부가 인민군 처리와 관련되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인민군 지도부도 잘 알지 못했다. 만일 1989년 가을 당시에 인민군 군인들이 개혁과 통일의 결과로 도입된 새로운 결정과 법규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들이 실제로 보여준 것과 같은 평화적인 태도를 취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139

문서
번호 92

소련군에 대한 독일 연락장교부
일자 미상

담당자 / 기관_ 연방군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연방군

문서
번호 93

국방부 슈트라우스베르크 외청 조직도
1991년

담당자 / 기관_ 연방국방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연방국방부



문서
번호 94

군통합 관련 문제에 관한 양독 국방부의 양자회의 결과 - 군축국방부
차관 아플라스가 특임장관실 차관 크라우제에게 보낸 편지

불명

담당자 / 기관_ 군축국방부 차관 아플라스, 특임장관실 차관 크라우제

내용_

동독 군축국방부 차관 아플라스가 군 통합 문제에 관한 동서독 정부 국방부회의에 대하여 특임장관실 차관 크라우제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동서독 국방부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차관 선에서 다양한 실무모임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최종적인 정치적 노선과 그에 부합하는 지시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전문가그룹의 업무는 현재 동독 인민군의 군 지도부와 군사행정기구의 조직구조와 인민군을 전 독일 연방군의 일원인 동부지역군단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아플라스는 5개의 신연방주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군작전권 유지과제, 국방대비과제, 연방주 군사방어차원의 과제.

그리고 민간적인 군행정을 장래의 방위조직의 두 번째 축으로서 간주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와 동시 특수한 군수산업을 민간산업으로 전환하고 오염지역을 다시 복원하는 과제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6

담당자 / 기관 군축국방부(에펠만, 비초레크, 아플라스, 마르치넬, 호프만, 그라츠, 멜처, 로트, 험펠, 헤르스트, 빌케); 연방국방부(슈톨텐베르크, 빔머, 팔스, 쇤뮐, 프랑크, 비헤르트, 슈바인슈타이거, 라이헤르트)

내용

이 문서에는 군축국방부 장관 에펠만과 연방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 회담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먼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국방 분야와 관련된 사항들이 비엔나군축협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로 인해 인민군의 전투기를 군축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은 인민군의 전투기도 군축협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요구하지만 소련의 경우 그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동서독에 있는 병력의 총 규모를 각 195,000명으로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그것은 특히 소련이 바르샤바조약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이유로 동독에 주둔하는 병력의 규모를 감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국방장관은 전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동서독의 국방부 장관들은 나아가 군축국방부와 연방국방부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동독 인민군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서독의 연방군이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민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동독에 새로이 도입된 대체복무규정과 같은 조치로 인해 서독 연방군 내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 회담에서 확인되었다.

동독의 에펠만 군축국방장관은 동독에서 1989년 가을 변혁이 시작된 이래로 약 1,400명의 장교 및 군인들이 탈영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동독 사회 전체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다시 말해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은 이들의 탈영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기를 제안하였다.

출처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3

문서 요약

3. 인수기(자료번호 96~102)

독일의 국가기관인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은 베를린 자유대 연구팀이 라이너 에펠만 동독 과도기 군축국방장관 기증 자료를 “독일 정부의 통일 및 통합 관련 문서 공유” 프로젝트의 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이 문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독재청산재단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에펠만 기증문서의 인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문서
번호 96

군축국방부 장관령 10/90호 - 동독의 국경수비업무관할권 변동과 새로운 국경수비대의 구성에 관한 조치

1990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에펠만, 군축국방부 장관

내용_

이 장관령은 국경수비업무 관할권 변동과 동독국경수비대의 재구성 및 작전실행에 관한 변경조치 시행을 명한다.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이 맺은 조약이 발효함에 따라 1990년 6월 30일 24시를 기해 서베를린 경계를 비롯한 내독국경 수비업무와 검문검색 업무를 중단한다. 단 외국인을 위한 비자업무는 유지한다. 소련인민군을 통한 연합군에 대한 검문도 유지한다.

동독과 주변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의 국경 그리고 해상국경을 비롯한 국제공항과 그 교통에 대한 검문검색은 국경에 관한 유럽공동체(EG) 지침사항을 따른다.

동독 국경수비대 대장의 책임 하에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경수비대를 구성하도록 한다.(새로운 국경수비대의 구성에 관한 상세규정, 국경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 등)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39

문서
번호 97

연방 국경수비대의 주요 지위에 있는 구 인민군 장교

1990년 8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비티히,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슈프랑어, 연방내무부차관

내용_

현재 동독은 나중에 서독의 국경수비대와 통합될 국경수비대를 구축하고 있다. 수비대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비밀경찰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처음부터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연방내무부는 통일이 실현된 이후 국경수비대를 통합하게 될 때 새로이 구성된 동독의 국경수비대원들을 내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다시 신원조회를 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7761



문서
번호 98

연방군 총감찰감(Generalinspekteur) 디터 벨리스호프 제독이
연방군 사령관들에게 보낸 서신

1990년 9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국방부 감찰감 디터 벨리스호프 제독, NATO, 연방군, 인민군, 연방국방부

내용_

이 문서를 통해 벨리스호프 제독은 연방군 사령관들에게 당시 연방군의 상황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연방군이 직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NATO와 독일군의 전략 및 작전계획을 유럽과 독일의 새로운 안보 상황에 맞추어야만 한다. 2. 통일된 전 독일 연방군을 형성하는 과제는 인간적 관점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3. 연방군의 대폭 감축을 실행해야 한다. 4. 전후시대의 종식과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으로 인해 안보정책과 군의 정당성에 대해 새로이 숙고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변화를 통해 동서 대결이 사라지고, 유럽에 평화가 더 확고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산당 독재의 도구였던 동독의 인민군은 통일과 함께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민군의 전통 중에 그 어느 것도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인민군이 연방군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군에 소속되었던 군인들이 개별적으로 연방군에 편입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동독에서 변혁이 시작된 이후 인민군 소속 군인의 수는 단기간 내에 1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승자의 정서나 오만한 태도를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민군 소속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단하거나 어떤 편견을 갖고 대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전 독일 연방군으로 인수될 수 있는 인민군 군인의 수는 아주 제한되어 있다.

출처_ 군사역사연구청, 문서 FB IV.

문서
번호 99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민군 소속원의 감축
1991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모드로우, 연방의회의원(민사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으로 인수되지 않은 인민군의 군인들은 제대할 때 원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과도기 지원금을 받았다. 나아가 그들을 위한 재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청과 직업훈련소들 또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17(S. 1062A- D/Anlage 9)

문서
번호 100

연방국경수비대에 의한 동독 국경수비대의 인수와 심사
1991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슈바니츠,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린트너, 연방내무부 차관

내용_

동독의 과도기에 국경수비대를 개편할 때 이미 서독의 국경수비대를 모델로 하였다. 그래서 서독 연방정부 내무부의 대표가 이 개편과정에 자문으로 동참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개편된 동독 국경수비대의 대원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다시 인적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런 심사를 통과한 부대원은 1991년 7월에 “시험 공무원”으로 임명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18(S. 1195D-1196B/Anlage 31)



문서
번호 101

조기 정년 퇴직한 인민군 소속원의 건강보험

1991년 4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켈러, 연방의회의원(민사당/좌파연합); 바펜슈미트, 연방내무부 차관

내용_

구 동독의 인민군 군인, 인민경찰, 세관원 그리고 비밀경찰 요원 중에서 조기정년퇴직하게 된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연방정부가 알고 있는가 하는 좌파 켈러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차관은 동독 시절에 특별연금체계에 가입되었던 사람들 중에 일반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연금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자비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432(S. 1)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직업군인의 연금 공백기 문제, 인민군 전력
군인이 계급에 연방군 전역군인이 사용하는 a.D. 표시를 사용하는 문제,
인민군에서 획득한 교육증명서 인정

2002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 놀팅, 브라운, 반 에센, 니벨, 알보비츠, 브뤼덜레, 부룩바허, 플라흐, 풍케, 굿마
허, 하웁트, 하우스만, 하인리히, 히르헤, 훔부르거, 호이어, 콜브, 콕, 코펠린, 오토, 파르, 피
퍼, 렉스로트, 슈미트-요르치, 쉬슬러, 제엔, 솔름스, 텔레, 튀르크, 이상 연방의회의원(자민
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

연방정부 답변:

1998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인민군에서 인수된 직업군인의 연금 공백기 문제는
1999년 1월 1일자로 해결되었다.

2001년에 신연방지역에 주둔하는 군인 총 31,005명 중 14,867명이 (총 48%) 차별적인 “동
쪽급여”를 받았다. 동일한 기간에 연방군에 근무하는 15,098명의 민간 군속들이 동쪽 지
역의 임금체계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통일조약은 인민군에서 받은 계급에 a.D.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래서 연방국방부 또한 스스로 나서서 인민군에서 획득한 계급에 연방군에서 획득한 계급
과 동일하게 a.D.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의도가 없다.

그리고 기존의 법적인 상황을 변경하려는 정치적 사회적 관심도 없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요약

4. 구조조정기(자료번호 103~112)

독일의 국가기관인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은 베를린 자유대 연구팀이 라이너 에펠만 동독 과도기 군축국방장관 기증 자료를 “독일 정부의 통일 및 통합 관련 문서 공유” 프로젝트의 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이 문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독재청산재단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에펠만 기증문서의 인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문서
번호 103

인민군의 군사훈련장과 특별수렵지역

1990년 10월 18일

담당자 / 기관_ 크나베,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내용_

각 지역에 인민군과 소련군이 소유한 산림의 현황과 각 지역의 특별수렵지의 상태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군소유 산림과 사냥터를 산림청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질문, 이 지역을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0년 12월 연방의회 선거 때까지 연방정부가 취할 방법에 대한 질문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157

문서
번호 104

작센-안할트주의 알트마르크에 있는 인민군 부대 대지의 민간 이용

1990년 10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바이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은 현재 신연방주에서 인민군이 사용하던 군사시설과 군부대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소련서부군단(WGS)의 주둔지와 시설에 관해서는 아주 적은 정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군부대와 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또는 이용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상관 없이 1990년 10월 9일자로 연방군이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100개가 넘는 인민군 군부대의 리스트를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그 중 24개가 작센-안할트주에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확실히 연방군이 사용하지 않을 인민군 군부대를 지명하여 연방 재무부장관에 알리고 그것을 연방의 일반재산으로 귀속시킬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1/230



문서
번호 105

군대와 기후
1990년 10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크나베,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국방부

내용_

통일 이전에 연방군과 인민군의 연료소비 비교

	연방군	인민군
석탄	217,000톤	3,000톤
코크스	67,000톤	500톤
갈연탄	5,000톤	542,000톤
갈탄	1,000톤	354,000톤
전력	1572,000MWh	589,900MWh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337

문서
번호 106

1990년 10월 3일 이후 군사통신주파수의 이용
1990년 11월 2일

담당자 / 기관_ 호스,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라베, 연방우편전화통신부 차관

내용_

군사적 통신주파수는 비공개정보이다. 연방우편전화통신부와 국방부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독-소위원회는 소련군 철수 후에 그들이 사용하던 주파수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질문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427

문서
번호 107

인민군의 군사훈련장과 특별수렵지역
1990년 11월 13일

담당자 / 기관_ 크나베,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국방부

내용_

이들 군용지의 이용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우선 자세한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용지로 사용되지 않을 대지의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의 일반 소유재산으로 전환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435

문서
번호 108

군시설을 공시가 이하로 지자체에 양도
1990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게스터,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포스, 연방재무부 차관

내용_

군이 소유했던 토지와 시설을 지자체에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기 위해 연방예산법 63조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연방 소유의 토지를 저렴하게 지자체에 양도하는 것은 연방 예산법 63조 3항 2문에 의해 이미 허용된 것이다. 토지의 경우 15%까지 저렴하게 공공주택의 건설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1/08513

문서
번호 109

전 인민군 군인들의 연방군 편입
1995년

담당자 / 기관_ 연방국방부, 인민군, 연방군, 국가안전부(슈타지), 국가안전청(AfNS)

내용_

- 인적 통합 구상: 인민군에서 복무했던 기간은 그대로 연방군에서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인민군 기간제 군인 및 직업군인은 세 가지 등급을 부여 받는다. (1. 대기 혹은 계속고용, 2. 2년 기간제 군인, 3. 지속적 고용)
- 통일조약 발효에 따른 전 인민군 인력의 상황: 연방국방부는 인민군 군인 90,000명을 인수했다. (의무복무병 39,000명, 대기자 1,000명, 계속고용 50,000명) 대기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중단되고, 대기보조금이 나왔다. (최대 9개월) 계속고용 시에는 이전 직급을 그대로 받았다. 계속고용 해당자의 절반이 연방군 측에 퇴직을 신청했다.
- 2년 기간제 군인 인수: 국가안전부 혹은 국가안전청 종사자, 정치장교, 경찰대(Militärische Aufklärung der NVA) 소속자는 제외되었다.
- 직업군인 인수/기간제 군인 근무기간 연장: 이와 관련, 기간제 군인은 1991년 10월 1일 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직업군인으로 예정된 장교들의 경우에는 “독립적 적격심사위원회(Unabhängiger Ausschuss Eignungsprüfung zur persönlichen Eignung)”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지원서에 거짓 정보를 기입한 장교 500명과 부사관 900명은 다시 해고되었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1995. Fünf Jahre Armee der Einheit. Eine Bilanz. Presse- und Informationsstab. S. 17-20.

문서
번호 110

벨기에는 인민군의 물자 중에서 MG 하나와 탄환 하나만을 잃었을 뿐이다
1996년 2월 7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신문 벨트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http://www.welt.de/646247>

문서
번호 111

전 인민군 잉여 물자 처리 종결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 1997년 7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및 국경수비대, 군축국방부, NATO, 국가안전부

내용_

- 연방국방부는 통일조약에 따라 해체된 인민군 및 인민군 보유 물자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다.
- 인민군은 공공안전을 위해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안전부(슈타지) 및 준(準)군사조직 소유의 많은 물자들을 인수한 바 있다.
- 인민군 물자의 일부는 1990년 독일민주공화국 재정을 위해 매각되었다.
- 인민군 물자는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제1그룹: 연방군 사용(3.5%), 제2그룹: 임시 사용(3.5%), 제3그룹: 사용 안 함(97%)
-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연방군 자체 수요 조달, 지방자치단체 및 신연방주 소재 단체에 무상 양도, 정부 대 정부 매각, NATO 방위보조, 장비 보조, 인도적 지원.
- 수입액은 345,100,000DM이며, 지출액은 1,769,900,000DM이었다. 866,400,000DM은 탄약, 미사일연료, 기타 폭발물 처리를 위해 지출되었고, 감시 및 저장을 위해 238,900,000DM, 폐기물 및 기타연료 제거를 위해 192,600,000DM가 지출되었다. 순지출액은 1,415,800,000DM이다.

출처_ Hans Ehlert. 2002.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Verlag, S. 525-528.

문서
번호 112

구 인민군 시설의 처리 방안 2001년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환경농림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http://www.smul.sachsen.de/lfl/publikationen/download/4182_1.pdf

문서 요약

5. 후유증 등 제반문제 처리기(자료번호 113~300)

독일의 국가기관인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은 베를린 자유대 연구팀이 라이너 에펠만 동독 과도기 군축국방장관 기증 자료를 “독일 정부의 통일 및 통합 관련 문서 공유” 프로젝트의 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이 문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독재청산재단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에펠만 기증문서의 인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주 사무국, 지역개발부;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과 주거연구소 (ISW)

내용

브란덴부르크 주 지역개발정책(1991/1992)의 준비절차를 위하여 주 지역개발부에서 지역전환과 개발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전체 주영토의 약 7%를 군용대지(훈련장, 비행장, 병영 등)로 사용하였다. 소련서부군단(WGS)이 1994년 말까지 철수하게 되면서 생기는 대지의 총면적은 1,170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WGS 철수와 NVA(인민군)의 해체 그리고 통합된 연방군의 감축으로 인해 약 85%의 병력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례로 슈트라우스베르크 지역의 경우 14,000명에서 2,000명으로 감축될 것이다.

심각하게 오염된 구 군사시설의 처리와 민간용 전환을 위한 대지의 정화에는 수백억 서독 마르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브란덴부르크 주 환경부 추산치). 탄약의 폐기 및 재처리와 구 부대시설의 급격한 토지가치 하락보전에 대한 조치의 조속한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전환정책에 가장 밀접하게 해당되는 도시 및 지자체들은 구 군용대지의 지자체용 전환 계획에 이미 착수하였다. 이들에게 군용대지의 민간목적으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구 훈련장, 사격장, 비행장 등의 일괄적, 계획적 파악에 있다.

“1991-1994 WGS 철수에 관한 계획”은 1991년 1월에 수립되었으며 독-소 실무자그룹 “계획적 철수”에 의해 1991년 5월 14일 최종 확정되었다.

(기타: 관련기관 부서목록, 전환정책 우선순위, 군사시설 목록과 소재지 목록 등)

출처 브란덴부르크 주 문서기록보관소



문서
번호 114

인민군 소속원에 대한 형사재판

1991년 1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아우구스티노비츠,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안, 연방법무부 차관

내용_

비밀경찰의 간첩활동에 대한 혐의로 인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수가 1990년에 601건이었다. 이것은 1989년과 비교할 때 100%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 약 3분의 1이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와 군대의 기무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38

문서
번호 115

인민군 물자의 보관과 매각처리

1991년 1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이 사용하지 않는 인민군의 물자의 관리와 처리의 위탁을 맡은 회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국방부 차관이 답변:

VEBEG 는 연방 소유의 회사로 연방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수물자를(인민군 물자 포함) 처리하는 회사이다. 물자저장서비스회사는 저장고의 관리만 담당한다. 그리고 민간회사인 VEMIG 는 VEBEG 와는 달리 구 인민군의 군복과 개인장비의 처리를 담당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3(S. 6182B- D/Anlage 4)

문서
번호 116

“물자저장 서비스 회사”에 대한 연방의 지분과 직원의 충원과 계약관계
1991년 1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오펠,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물자저장서비스회사는 100% 산업관리회사의 자회사이다. 산업관리회사의 경우 연방이 자본 지분의 55%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물자저장서비스회사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인민군 출신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기도 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3(S. 6182D-6183A/Anlage 5)

문서
번호 117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 전환지침의 준비와 제정
1991년 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기민당, 사민당, 민사당-좌파연합, 자민당, 녹색당)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들은 브란덴부르크 주 지역전환을 위한 지침을 준비하고 결정하였다.

소련군과 구 인민군 부대 시설 전환정책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군의 감축 또는 철수는 빈(Wien)군축협상의 해당규정과 통일조약이 정하는 사회친화적, 친환경적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약 5%에 해당하는 대지가 WGS(소련서부군단)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는 총 328개 물건이며 21개의 훈련장, 15개의 비행장을 포함한다. 구 인민군은 전체 주 영토의 2.8%, 총 97개의 물건을 사용하였다.

수십만 톤에 달하는 탄약 및 폭발물 뿐만이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에 쓰이고 버려진 군 시설 또한 엄격한 감독하에 탈무장, 폐기, 재처리 한다.

출처_ 브란덴부르크 주 문서기록보관소



문서
번호 118

인도네시아에 인민군 전함 양도 1991년 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레온하르트-슈미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정부가 인민군 군수물자 중에서 39대의 전함과 3대의 신축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가한 이유와 언제부터 전함의 건설과 수출이 허용되었는지에 대한 사민당 슈미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연방정부는 1980년대에 아세안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기수출과 동일하게 다룬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인민군 군수물자 중에서 39대의 전함을 (그 중에서 23대는 부분적으로만 탈무장화된 상태) 인도네시아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대의 신축 잠수함의 경우 1992년 10월 2일에 연방정부가 신축을 허가하였다. 전함과 잠수함 모두 선적일과 가까운 시일에 수출허가를 받을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140; S.12162C/Anlage 3

문서
번호 119

인도네시아에 인민군 전함 양도 1991년 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간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도네시아 쪽에서 39대의 인민군 전함을 양도받을 책임자는 자카르타의 실랑갑에 있는 인도네시아 해군 사령관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140(S.12162D/Anlage 4)

문서
번호 120

BEIJMA 회사에 인민군의 무기와 탄환 양도
1991년 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코페,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국가정보원 BND 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기증개상 칼 하인츠 술츠가 인민군의 군수물자에서 무기와 탄환을 구매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그가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녹색당 코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 차관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이미 무기증개상 술츠와 구 동독의 국방부 간에 군수물자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에 따르면 술츠가 동독으로부터 주로 전함, 무기 그리고 탄환을 구매하는 것이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국방부 장관은 이 계약을 이행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츠의 회사는 연방소유의 회사로 군수물자의 처리를 담당하는 VE-BEG 로부터 5대의 콘도급 지뢰탐지선(인민군 보유) 구입하였다. 이것들이 탈무장화되기는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양도되지 않았다.

연방군은 구 인민군 소유 무기와 탄환 중에서 어떤 것도 술츠의 회사에 넘겨주지 않았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140 (S.12163A/Anlage 5)

문서
번호 121

인민군 주택에 대한 연방정부의 계획
1991년 2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질라프,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카스텐, 연방재무부 차관

내용_

연방의 재산으로 인계된 인민군 주택은 연방 소유의 다른 주택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공무원의 관사로 이용될 수 있는지 검토될 것이다. 이러한 주택의 관리는 재무부 산하기관인 지역 재무관리국과 연방재산관리청에서 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160



문서
번호 122

인민군 탄환의 안전성 문제
1991년 2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오펠,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 보유 탄환은 일반적으로 다루기 쉽고 운반할 때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군에서는 현재 이들 탄환의 안전성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 검사의 대상은 연방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류의 탄환에만 한정되어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178

문서
번호 123

걸프전쟁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인민군의 물자
제공; 미그 29기의 테스트
1991년 2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오펠,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걸프전쟁기간 동안 독일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 미국에 제공된 총 9억2천만 마르크 상당의 물자 중에 약 5억 마르크의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던 군수물자가 포함되었고, 영국에는 4억2천5백만 마르크 상당의 군수물자가 제공되었고, 프랑스에 제공된 4천만 마르크 상당의 군수물자 중에 3백만 마르크 상당의 인민군 보유 물자가 포함되었다.

나아가 연방군은 1991년 1월 7일부터 인민군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미그 29기의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검사과정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1991년 중반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 차관이 답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213(S. 38)

문서
번호 12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겔스도르프 조선소에 대한 해군의
수리 주문의 소멸 위험

1991년 3월 4일

담당자 / 기관_ 루치가,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리들, 연방경제부 차관

내용_

겔스도르프 조선소는 인민군 해군의 함정을 주로 수리하던 곳이었다. 통일 이후 이 조선소에 해군함정의 수리 의뢰가 중단되어서 운영이 어렵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국방부 차관은 현재 해군 함정의 수리를 담당할 조선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겔스도르프 조선소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신탁청이 DMS 회사와 협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213(S. 23)

문서
번호 125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인민군의 물자 제공

1991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루치가,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약 7억8천만 마르크 가치의 인민군 물자를 쿠웨이트전에 제공하였다(1991년 3월 1일 현재). 특히 지상전을 위한 물자(무기와 탄환), 군용차량 및 ABC-물자와 위생용품이 포함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17(S. 1061C-D/Anlage 7)



문서
번호 126

신연방지역 군대 주둔지의 자연보호
1991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류어, 연방의회의원(자민당); 카스텐, 연방재무부 차관

내용_

연방환경부와 각 연방주는 군 시설 중에 자연보호지역에 해당되는 구역의 목록과 지도를 제공할 것이다. 자연보호구역으로 분류될 지역이 대규모인 경우 각 연방주의 해당부처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투자지역의 경우에는 투자법 2조 4항에 따라 각 지자체의 대의기관이 검토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18(S. 1201B-D/Anlage 44)

문서
번호 127

징스트에 있는 인민군 사격장의 이용과 확장
1991년 4월 5일

담당자 / 기관_ 쉘퍼,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징스트에 있던 인민군 사격훈련장을 연방군이 지속적으로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 차관은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지만 징스트 사격훈련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352

문서
번호 128

헝가리와 체코에 인민군 보유 무기와 탄환 양도
1991년 4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로박,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도 필요하다. 헝가리에는 중간보고를 보냈고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는 어떤 물자를 원한다는 구체적인 의사가 지금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20(S. 1302C-D/Anlage 6)

문서
번호 129

인민군 부대를 대학에 양도
1991년 4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쟈퍼,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 군부대 시설을 대학에 양도할 의도가 없는가 하는 자민당 쟈퍼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차관은 인민군의 시설 중에서 연방군에 의한 군사적인 수요가 없는 모든 시설은 연방 재무부 또는 연방재산관리청으로 인계될 것이며 이 두 부처에서 연방의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연방군의 검토를 통해 수요가 없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의사를 표명해 오면 국방부는 재무부에 그 시설에 관한 서류를 인계하면서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기입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432(S. 13-14)

담당자 / 기관_ 호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이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한 탄환에 관련된 사민당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국방부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연방군이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한 탄환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합하면 약 삼십만 톤이 된다. 이중에 연방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환은 최대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환의 안전성에 대한 연방군의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인민군에서 인수한 탄환은 모두 이와 관련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연방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 1991년 4월 1일부터 탄환저장고의 경비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였다. 이러한 경비를 위해 1991년도 예산에 2천만 마르크를 배정하였다.

1992년부터는 신연방지역의 군대구조 개편으로 인해 더 많은 민간경비업체가 이 업무를 위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탄환저장고의 경비를 위한 비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정부는 인민군의 탄환에 대한 검토와 폐기작업에 약 8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연방예산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년도의 연방예산에는 인민군 탄환의 폐기를 위해 1억5천만 마르크가 배정되었다. 1992년과 1993년에는 매년 2억 마르크가 배정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472(S. 23-25)



문서
번호 133

국방부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인민군 시설의 지자체에 대한 무상증여
1991년 5월 2일

담당자 / 기관_ 노이만,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차이틀러, 연방재무부 차관

내용_

국방부 차관의 답변: 연방군이 사용하지 않을 인민군 군부대와 부대시설은 원칙적으로 연방예산규정에 따라 시장가격에 판매될 것이다. 그 중에서 도시 근교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은 연방주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양도될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행정목적에 이용될 토지의 경우 시장가격의 반값에 인수할 수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500

문서
번호 134

신연방지역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 검사기준, 건축병의 대우
1991년 5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놀팅,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신연방지역 주민 중에서 동독 인민군에 소집명령을 받고 신체검사까지 받은 징집대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민당 놀팅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신연방지역의 징집대상자의 신체검사 서류는 독일연방의 기준에 의해 다시 검토될 것이다. 동독에서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통일조약에서 병역의무 거부자로 인정되었다. 인민군에서 건축병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방공화국에서 병역을 거부하기를 원하는지 개별적으로 묻게 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585

문서
번호 135

연방군에 인수되지 못한 인민군 군인의 청원
1991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국민청원위원회

내용_

1990년에 국방부와 관련된 청원의 수가 약 20% 증가하였다. 그 중에 많은 수가 구 인민군을 연방군으로 인수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구 인민군 소속의 군인 또는 군속 중에서 연방군으로 인수되지 않은 사람들의 청원이 많았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683

문서
번호 136

군부대 주둔지의 오염 처리에 소련의 참여
1991년 6월 7일

담당자 / 기관_ 롬머, 연방회의의원(기민/기사연합); 카스텐, 연방재무부 차관

내용_

국제법적인 계약에 따르면 소련은 법적 재정적으로 소련군 서부사단이 주둔했던 지역의 오염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연방정부는 오염위험이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에 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련군에 전달하였다. 연방 환경부장관과 소련의 국방부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767



문서
번호 137

신연방지역 군부대 주둔지의 오염 제거
1991년 6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오펠,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카스텐, 연방재무부 차관

내용_

국제법적으로 볼 때 주둔지역의 오염처리의 비용은 소련군이 책임져야 한다. 만일 주둔지역의 오염이 심해서 지자체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각 지자체가 주둔지의 소련군 사령부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소련군 주둔지의 많은 지역이 심하게 오염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주둔지의 원소유자인 연방정부가 제한된 수준에서 오염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군부대 대지와 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가격의 한도 내에서 오염으로 인한 위험제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767

문서
번호 138

신탁청에 양도되어야 하는 군부대의 대지와 시설에 대한 동독 국방부와 인민군 장교들 사이에 맺어진 이용계약과 소작계약
1991년 6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슈바니츠,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계약서만을 통해서 누가 인민군 소속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연방국방부에는 이 문제를 조사하는 특수사건 조사국이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31(S. 2414A-D)

문서
번호 139

신연방지역의 군부대 주둔지, 오염지역
1991년 6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노이만,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내용_

연방국방부는 총 3,320개의 인민군 군부대시설 중에 1,230개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 그리고 연방재무부가 나머지 중에서 1,320개소를 주택으로 또는 산림지역으로 전환하였다. 약 770여 개의 군부대는 계속 군사적으로 이용된다. 소련군의 부대시설은 1994년에야 연방정부에 완전히 이전될 것이다.

인민군 군사훈련장의 경우 어떻게 이용 또는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인민군의 군사시설이었던 토지를 매각하여 도시근교의 근린 휴양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 정부가 토지를 싼 가격에 지자체에 양도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행정 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만 그 토지를 시장가격의 반가격으로 매각한다. 정부의 재원은 군사기술의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염지역의 처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33(S. 2618B-2619B)

문서
번호 140

인민군의 로켓트와 미사일 폐기
1991년 6월 19일

담당자 / 기관_ 간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독일은 중장거리 핵무기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근거로 독일이 구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한 SS-23 로켓트를 폐기처분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이 시스템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할 모든 준비를 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33(S. 2730B-C/Anlage 58)

문서
번호 141

인민군 주둔지역의 환경오염
1991년 6월 19일

담당자 / 기관_ 퀴블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통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연방군은 이미 인민군 부대 지역의 오염문제를 조사하였다. 인민군 부대 주둔지의 많은 지역이 폐기물 폐유 등으로 오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 11월에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오염이 건강에 어떤 해를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를 명하였고 최종적으로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오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991년 말까지는 신연방지역의 연방군 부대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840

문서
번호 142

인민군 시설의 폐쇄 계획
1991년 7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쟈퍼,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 시설의 폐쇄 문제는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있는 국방부 외청의 특별담당관과 조정그룹의 지도 계획 하에 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976

담당자 / 기관 비스만, 힌스켄, 도스, 펠, 키텔만, 페츨즈, 폴러, 슈뢰러, 슈프룽, 바우마이스터, 라트만, 오스트, 빌핑, 카스텐슨, 피셔, 호르농, 유트너, 칸지, 코센데이, 레어, 림바흐, 마이어, 오스발트, 쉘켄,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브레드호른, 그린벡, 그뤼너, 한센, 히첼러, 놀팅, 페터스, 젠, 틸레, 펠드만, 이상 연방의회의원(자민당); 연방정부; 연방경제부

내용

신연방지역에서 인민군 부대를 폐쇄할 때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경우 군부대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지역을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국방부의 서면 답변:

신연방지역의 군부대 배치는 전체 연방지역에 군부대를 고르게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구 인민군의 부대가 주둔했던 대지 중에 지자체와 다른 공공기관의 소유였던 것을 무상으로 몰수했던 것은 원소유주에게 무상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몇 개의 군부대가 이런 과정을 거쳐 원소유주였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반환되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국방부는 갖고 있지 않다.

동독에 주둔하였던 소련군 서부사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서독에 주둔했던 연합군의 경우 지역의 민간인을 약 90,000명 정도 고용했지만 소련군은 1990년 현재 총 1,000명만 고용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련군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준 것은 단지 소비물자의 구매 수준에 머물렀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0997

문서
번호 144

MBB 의 인민군 탄환 폐기 계획
1991년 7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슈티글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팔스,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에서 인수한 총 300,000톤의 탄환 중에 그리스와 터키에 양도하고 난 후 남은 250,000톤의 탄환 처리 계획은 현재 VEBEG 회사의 자회사인 TREUAG 책임지고 있다. 각 탄환의 종류에 따라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전문회사에 위탁할 예정이며 DASA/ MBB 회사의 경우 대형 포탄의 처리와 관련된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 외의 다른 경쟁자가 있다. 사업위탁에 대한 결정은 1991년 3분기에 내려질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025

문서
번호 145

신연방지역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탄환과 폭발물
그리고 위험물의 폐기계획
1991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_ 오펠,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처리되어야 할 인민군 탄환에 대한 처리계획은 1990년 말에 작성되었다. 이 계획은 기존의 처리경험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국방부는 이 처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연방의회 국방 상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142

문서
번호 146

타국에 인민군 보유 무기와 군사장비의 양도
1991년 10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구 인민군의 무기가 걸프전쟁 동안에 미국 프랑스와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에 제공되었다. 나토 비회원국 중에는 이집트가 예외적인 경우였다. 이집트에는 30대의 ABC-감지탱크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핀란드와 우루과이와 같은 국가들과도 구 인민군의 무기 판매계약을 맺었지만 그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무기의 판매대금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 무기판매대금을 구 인민군의 시설을 경비하기 위해 들어가는 국방부의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사민당 엘러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연방재무부의 규정상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47(S. 3912A-D)

문서
번호 147

헝가리에 인민군 군수물자와 장비의 양도
1991년 10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오펔, 두베, 테어보그, 엘러, 브레히트, 간젤, 하이스터만, 이상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백만, 연방경제부 차관

내용_

우루과이 정부가 인민군의 물자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연방정부는 1991년 말에 우선 인민군 해군의 물자를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동의는 연방안전보장이사회에서 먼저 검토되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의 물자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장사할 의도는 없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52(S. 4332B-4335D)

문서
번호 148

인민군 물자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위해 이스라엘에 양도
1991년 10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키텔만, 연방의회의원(기민련);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이스라엘은 인민군의 물자 중에서 총 19개의 장비를 받았다. 그 중에는 전쟁무기로 두 대의 대공시스템, 대공미사일 발사차량 한 대 그리고 추적레이더가 포함되었다. 이것들은 전쟁무기 통제법에 적용을 받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들을 이스라엘에 양도하는 과정에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여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27개국에서 동독 인민군의 장비와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52(S. 4340B-4345C)

문서
번호 149

연방군에 의한 인민군 무기와 무장용품의 인수
1991년 10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바흐마이어,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주 무장이 잘 된 군대였다. 신연방지역의 가입을 통해 연방군이 인수한 인민군의 물자에는 약 15,500종류의 다양한 무기체계와 약 1백만 개의 물품 고유번호를 보유한 대형 장비가 포함되었다. 그 중에는 2,300개의 전투용 탱크, 7,800대의 장갑차, 2,500대의 대공포격포, 420대의 전투기, 50대의 전투용 헬리콥터, 100,000대의 다양한 2륜 차량, 1,200,000개의 수류탄과 그에 필요한 부품들이 있었다. 거기에 300,000톤의 탄환이 있었다.

인민군 무기와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과 조사 그리고 어떤 물자가 연방군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류는 1991년 말까지 완료될 것이다.

지금 현재로는 인민군 무기와 장비의 약 40%는 연방군에서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무기와 장비를 매각 처리할 때 경제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독일 연방공화국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연방군 물자의 폐기와 처리에 대한 규정”에 따를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52(S. 4354A-D/Anlage 7)

문서
번호 152

우루과이와 핀란드에 인민군 무기 양도
1991년 11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발로우,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벡만, 연방경제부 차관

내용_

연방군이 사용하지 않을 인민군의 군수물자를 우루과이 또는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 수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민당원의 질문에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

인민군 군수물자의 수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연방정부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의 내부상황, 수출할 무기의 종류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633

문서
번호 153

인도적 목적을 위한 인민군 물자 양도
1991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괴처,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이 사용하지 않을 인민군의 군수물자는 연방군 물자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것은 판매하거나 지자체에 양도될 수도 있고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 나토에 제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수받은 인민군 물자를 폐기처분할 계획은 없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766(S. 19-20)

문서
번호 154

지속적으로 근무 중인 인민군 교관의 법적 사회적 상황, 학생교육의 지속성
1991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켈퍼,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 장교학교의 교관 중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으로 우선 분류된 13인의 사람들은 1991년 12월 31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1991년에는 “계속 근무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사례비로 서독 연방군인 급여의 60%를 급여로 받게 되었다. 1992년 1월 1일부터는 과도기 보조금으로 6개월 간 최종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노동청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은 변화가 없다. 이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은 최소한 보장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766(S. 20-21)

문서
번호 155

제3국에 판매할 인민군 함정의 탈무장화/개조, 판매금액
1991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_ 루치가, 융만, 이상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정부 대 정부 간에 전함을 거래할 경우 그것을 개조하거나 탈무장화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연방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하에 비나토회원국에 전함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콘도 II급 지뢰탐지와 제거를 위한 함정 5대와 2대의 견인선이 우루과이에 판매되었다. 미국에는 타란틀 로켓함정이 양도되었다. 타란틀함의 경우 탈무장화가 없었다. 콘도 급의 함정의 경우 연방 해군에서 무기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무기판매를 통해 들어온 수익은 콘도함 두 대의 판매대금으로 310만 마르크가 전부이다. 미국으로 양도된 무기는 무상제공이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4(S. 5418C-5419D)



문서
번호 156

작센-안할트주의 군사훈련장
1991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_ 바이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헤닝,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1991년 말 현재 국방부는 신연방주의 군사훈련장의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없다고 국방부 차관이 답변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4(S. 5419D-5420A)

문서
번호 157

터키와 다른 나토 파트너에 인민군 무기와 탄환 양도
1991년 1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루치가,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팔스,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터키에 양도하는 무기와 탄환을 선적하는 작업은 경제적이고 노동시장정책적인 이유에서 로스토크의 항구에서 이루어진다. 나토 회원국에 양도할 무기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1991년 12월 11일에 국방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인민군 군수물자의 처리와 관련된 포괄적인 보고서는 1992년 1월 말에 제출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839

문서
번호 158

더 이상 필요없는 인민군 군함과 수상차량의 처리

1991년 12월 12일

담당자 / 기관 콜보우, 벤라트, 폰 뵐로우, 엘러, 폭스, 간젤, 길게스, 하이스터만, 호른, 이베르젠, 융만, 카스트너, 괴르퍼, 퀴블러, 라이딩어, 노이만, 니게마이어, 오펔, 셰어, 솔테, 조엘, 슈타이너, 티체, 보이트, 발터, 바이스, 차프, 슈트룩, 포젤, 이상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

인민군의 함정과 보트는 스포츠 클럽이나 구호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6대의 보트가 신연방주의 공공기관에(지자체, 대학)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지금까지 인민군의 함정과 보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과 같은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았다. 단지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의 수가 조금씩 줄기는 한다. 이 함정들을 폐기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우선적으로 판매하고자 노력한다. 더 이상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폐기처리한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전함과 다른 차량의 인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미국에 타란툴급의 로켓함정이 제공되었다.

인민군 군수물자를 VEBEG 회사를 통해서 매각할 경우 물자의 탈무장화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그 비용은 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4만 마르크에서 20만 마르크 사이이다.

부록 - VEBEG 회사의 사업목적과 사업규정에 관한 설명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820

문서
번호 159

폴란드를 통해 구소련 독립국가 연합으로 인민군의 트럭을 운반

1992년 1월 9일

담당자 / 기관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

인민군에서 인수한 물자 중에서 많은 양의 트럭을 구소련 독립국가연합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후 이 물자를 폴란드를 통해 전달한다면 폴란드의 도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철도로 운송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있으나 사민당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국방부는 대량으로 한꺼번에 트럭을 운반하려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959(S. 38)



문서
번호 160

알바니아에 인민군 의료차량을 제공
1992년 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뷔,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쉘퍼, 연방외무부 차관

내용_

연방정부는 알바니아의 열악한 상황에 인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예로 인민군 의료부대의 장비와 물자 중에 20대의 의료차와 44톤의 의료구호물자를 알바니아에 무료로 제공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2/01959; S. 1-2

문서
번호 161

에이전시를 통한 인민군 무기와 다른 군사장비의 판매
1992년 1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두베,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이 사용하지 않을 인민군 군수물자의 처리를 어느 회사가 담당하며 VEBEG 이외의 다른 민간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느냐는 사민당 엘러의원의 질문에 VEBEG 이외의 어떤 민간 회사에도 인민군 물자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답변하였다. VEBEG 회상의 경우 연방이 지분의 55%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62

인민군 물자의 경비와 “물자저장서비스 회사” 1992년 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앵겔만, 연방의회의원(민사/좌파연합); 오펔,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 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에서 분류한 인민군 물자의 관리 경비업무를 연방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저장서비스 회사에 위탁하였다. 이 회사에 50개 정도의 저장고가 위탁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9(S. 5849C-5851A)

문서
번호 163

터키에 대한 인민군 무기의 제공 계획 1992년 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코펠린, 연방의회의원(자민당); 안트레터,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국방부 차관의 답변: 1990년에 터키정부가 인민군 물자를 포함하여 독일로부터 인수하기를 원하는 물자의 목록을 보내왔다. 외무부와 재무부가 사용되지 않을 인민군 물자를 터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터키에 인민군 물자가 제공되었고 이 작업은 1992년 말에 완료될 것이다. 이번엔 합의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터키에 인민군 물자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9(S. 5851A-5852B)



문서 번호 164 타국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민군 지뢰탐지기의 투입
1992년 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아우구스티노비츠,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독일정부가 지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연방군을 파견하여 그쪽의 인력을 교육하는 것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기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 차관의 답변:

연방군은 지뢰제거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연방군이 보유한 작은 지뢰탐지기로 넓은 지역을 조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민군 물자 중에서 그런 목적에 투입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지뢰제거차량과 같은 전쟁무기의 경우 전쟁무기통제법과 연방정부의 무기수출정책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9(S. 5854D)

문서 번호 165 신연방지역 군부대 지역의 민간이용
1992년 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자이퍼트, 연방의회의원(민사당/좌파연합)

내용_

이 질의의 핵심은 인민군의 군부대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의 공공조합 또는 민간 주택회사에 양도하여 통일 이후 해결되지 않은 소유권문제로 인해 주민이 주거공간을 상실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프렘니츠와 같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이 인민군과 소련군의 부대가 있었던 지역을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69(S. 5858C-5859A)

문서
번호 166

터키에 제공된 인민군 물자의 소재
1992년 1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서 아르메니아의 대표가 이 지역에 터키에 제공된 인민군의 군수장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묻는 사민당 엘러의원의 질문에 국방부차관은 그런 사실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67

인민군의 무기, 장비, 탄환 그리고 다른 군사물자의 사용과 양도
1992년 1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엘러, 베른라트, 브레히트, 폰 빌로우, 두베, 엠케, 폭스, 간젤, 길게스, 글로츠, 하이스터만, 호른, 이베르센, 용만, 수잔네 카스트너, 피르퍼, 콜보우, 코슈닉, 퀴블러, 퀴스터, 라이딩어, 마테르네, 맥켈, 노이만, 니게마이어, 오펔, 산츠, 쉐어, 솔테, 조엘, 슈타이너, 테어보그, 티체, 페어호이겐, 포이트, 발터, 바이스, 바이스키르헨, 차프, 쇠펠, 슈트룩, 클로제, 이상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와 물자의 리스트에 대한 사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인수한 무기 체계와 물자의 리스트 그리고 개별항목의 가치의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이 물자를 제공받은 국가와 제공한 무기와 장비 그리고 물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나토 회원국과 걸프 전쟁에서 연합국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장비와 제공계획 외에 구매의사가 있는 국가의 리스트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연방의회에 보고 하였던 횡수와 보고자의 명단 그리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도 포함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68

신안방주에서의 징집
1992년 2월 6일

담당자 / 기관_ 레더러, 연방의회의원(민사당/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여성청소년부; 연방국방부

내용_

신안방주의 징집대상자들에게 신체검사 등 병역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와 관련된 정보도 전달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병무청에서 대체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청하는 좌파의 질문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관한 개별정보와 자세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신안방지역의 징집대상자에 대해 병역과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홍보체계에 관해 설명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69

인민군 군수물자와 군용트럭에 대한 신안방지역
민간독립단체들로부터의 문의

1992년 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뮐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 물자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약 400여 개의 독립민간단체의 신청서가 국방부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의 근거지가 신 안방지역인지 구 연방지역인지에 관해서는 세분해서 분류하지 않았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70

인민군 시설의 안전장치

1992년 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크나페, 연방의회의원(사민당); 그뤼네발트, 연방재무부 차관

내용_

연방군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인민군의 물자는 원칙적으로 연방의 일반재산으로 규정된다. 인민군 군부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방의 일반재산으로 규정된 부대시설은 연방재산관리청의 위탁을 받은 민간경비업체에 의해 관리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6(S. 6387C-D/Anlage 10)

문서
번호 171

신연방주의 구 군용비행장의 사용에 관해

1992년 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레더러, 연방의회의원(민사당/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인민군의 군용공항을 연방군이 인수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국방부는 연방군 공군과 육군이 몇 군데 공항을 인수하였으며, 연방군과 나토가 신연방지역의 군용공항에서 공동작업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72

터키에 제공된 인민군 무기의 소재
1992년 2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부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터키에 양도한 인민군의 무기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에서 아제르바이잔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에 대한 사민당원의 질문에 대해 국방부는 다시 한 번 그런 정보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73

베르그-카라바흐에서 터키에 양도된 인민군 무기의 투입
1992년 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폰 레네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구 인민군 무기와 장비 중에 독일이 터키에 제공한 구 인민군의 무기와 장비가 베르그카라바흐의 소수민족 아르메니아인을 억압하는데 투입되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 차관은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답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9(S. 6520B-C)

문서
번호 174

인민군 물자의 매각처리에 대한 보고

1992년 2월 20일

담당자 / 기관 아담,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켈퍼, 연방의회 의원(자민당); 빔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

인민군을 인수하였을 당시에는 인민군의 무기와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가 입력된 컴퓨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군은 1990년에 인민군 보유물자와 무기체계 중에 17%를(나중에 3% 추가) 인수하였다. 나머지 80%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인계되었다.

69대의 전함의 경우 판매하기 어려웠다.

터키가 15억 마르크의 인민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였다.

동독의 과도기에는 구 동독의 지배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인민군의 무기와 장비를 암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79(S. 6589B-6593C)

문서
번호 175

터키에 제공된 인민군 무기의 소재

1992년 2월 24일

담당자 / 기관 레더러, 연방의회의원(민사/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

터키에 양도된 인민군 무기가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제공되었다는 정보에 대한 좌파의원들의 질문에 국방부는 터키 정부는 독일이 제공한 인민군의 무기를 제3국에 양도할 경우 nato 규정상 독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76

터키에 인민군 물자 제공
1992년 4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엘프케, 연방의회의원(민사/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외무부

내용_

터키에게 제공한 인민군의 무기가 쿠르드족을 억압하는데 투입되었다는 좌파의원들의 질문에 국방부는 터키 정부가 나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터키는 독일로부터 양도받은 무기를 나토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에만 투입할 수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77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용병이 된 구 인민군 군인
1992년 4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래더러, 연방의회의원(민사/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외무부

내용_

구 인민군 군인들이 용병이 되어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에 참여하였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연방정부는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7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 있는 더 이상 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군시설의 이용

1992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레더러, 연방의회의원(민사/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내용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 있는 인민군 군부대 중에 어느 것을 연방군이 인수하였고 어느 것이 이미 연방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방재무부에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좌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국방부는 인수된 부대의 목록과 연방재무부에 인계된 지역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는 지역의 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소련군 부대의 주둔지에 대한 결정은 국방부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연방재무부에서 내린다고 답변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79

신연방지역의 군사훈련장의 이용 - 현재와 미래

1992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볼렌베르거,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인민군 군사훈련장을 연방군이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녹색당의원들의 질문에 국방부는 현재 그런 이용이 가능한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군사훈련장이 이전에는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군 육군은 16개의 훈련장을 사용할 계획이며 그를 위해 260명의 군인과 1,600명의 민간 군속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80

처리되지 못한 인민군 물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1992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치어러,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벡만, 연방경제부 차관

내용_

페네문데 항구에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50대의 인민군 함정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가치상실, 저장비용, 폐기비용 등)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97(S. 8101D-8102B/Anlage 18)

문서
번호 181

핀란드에 인민군의 전차 양도
1992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정부가 핀란드 정부와 인민군 군수물자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에는 100대의 T-72형 탱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 배포된 정보에는 그런 유형의 무기가 외국에 양도되는 무기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나토 회원국과 비회원국 중에서 어떤 국가와 TLE-무기체계의 양도에 관해 협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국방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연방정부는 여러 국가와 인민군의 군수물자의 양도에 관해 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1990년 11월 19일에 체결된 유럽의 재래식 군대에 관한 협정에 의해 허용된 것 뿐이다. 몇몇 국가와의 협상은 양국간의 합의 하에 협상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097(S. 8102D-8103A/Anlage 20)

문서
번호 182

브란덴부르크주 지역전환지침
- 의회결정 - 주정부 발안서(의회제출을 위한 각료발안)

1992년 8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사무국국장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브란덴부르크 주 지역전환에 관한 규정을 결정하였다. 이 지역전환에 관한 지침이 의미하는 '전환'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각종 자원과 구조를 민간용 목적으로 변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포함되는 모든 전환정책은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친화적 환경친화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립적 지역발전을 장려한다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1994년 말까지 이루어지는 소련군의 철수와 통일독일 군감축으로 인해 사용처가 없어진 부대시설 등은 민간용 시설로 전환시킨다.

(기타 세부조항 참고)

출처_ 브란덴부르크 주 문서기록보관소

문서
번호 183

포겔장 소재 인민군 탄환 실험실의 해체

1993년 1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슈타이너,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국방부가 1991년 8월 해체하기로 결정한 포겔장의 인민군 탄환실험실 2가 1992년 9월 현재까지 해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슈타이너 사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 차관의 답변: 탄환실험실 2 책임자가 인사관련 서류의 인계를 계속 미루고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해고통보가 14개월 째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이 75만 마르크이다.

연방군 행정사령부는 이러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연방군의 라이프치히 지역행정사령부와 탄환실험실 2 소장 간에 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협상은 아무 결과 없이 결렬되었다. 그래서 연방군 행정사령부가 1992년 3월에 직원들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통보는 인사위원회의 거부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134; S. 11704B-D/Anlage 6

문서
번호 184

인도네시아에 인민군 함정 제공
1993년 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트롬프, 연방외무부 차관

내용_

연방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민군 무기의 양도에 관해 협상하다가 동티모르 문제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9척의 인민군 전함을 양도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사민당 엘러의원의 질문에 국방부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 물자를 제공하는 문제를 유럽연합과 함께 검토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물자를 해안경비와 밀수를 단속하고, 수로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난 후에 정부는 39척의 전함을 인도네시아에 양도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85

무기증개상 칼 하인츠 슐츠의 회사 베이즈마에 인민군 함정 제공
1993년 2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노이만, 연방의회의원(사민당);가이거,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무기 증개상인 칼 하인츠 슐츠에게 인민군의 무기가 판매된 사실이 있느냐는 사민당의원의 질문에 국방부차관은 5대의 지뢰탐지 지뢰제거선이 판매되었다고 답하였다. 이 지뢰선의 탈무장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베이즈마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그 회사는 4척의 지뢰선을 1991년 10월 24일에 연방경제부의 인가를 얻어서 수리남에 판매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머지 한 대는 벨기에에 양도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연례보고서 1992(34. 보고):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소속원, 노후보장, 고향에서 먼 지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사이에 징집대상병의 교환, 인수된 인민군 소속원들을 위한 상담의 부족, 신연방지역 병영의 시설

1993년 3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빌레, 연방의회 군특임관

내용_

인민군의 개인 인사기록카드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연방군에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 기간제 군인에게는 1992년 4월 1일까지의 근무평가가 장기근무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방군에 의해 직업군인으로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 기간제 군인의 경우 노후연금에 공백이 발생한다. 연금의 공백을 위해 최대 7천 마르크의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그것으로 연금의 공백을 메우지는 못한다.

통일조약에 언급된 최종적인 목표인 통일된 연방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소속 군인들이 직업군인으로 또는 기간제 군인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 후에 신연방주와 구 연방주의 군인이 함께 섞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징집대상자들의 경우 가능한 한 고향에서 가까운 지역에 배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신연방지역의 부대에 배치된 서부독일 출신의 경우 군 부대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과 주변 지역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87

인민군 탄환을 제공받는 국가와 그 곳에서의 탄환의 사용
1993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_ 쿠피, 연방의회의원(녹색당); 가이저,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 물자 중에 다른 국가에 양도된 탄환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양도된 탄환이 구유고슬라비아내전이나 터키의 쿠르드지역에 투입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하는 녹색당원의 질문에 국방부차관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인민군의 탄환은 핀란드에 판매되었고 그리스와 터키의 경우에는 걸프전쟁 중에 나토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인민군의 탄환을 양도받았다. 그리스와 터키의 경우 나토의 목적에 맞게 이 탄환을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88

인도네시아에 인민군의 함정 양도
1993년 5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샨츠,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도네시아에 인민군의 함정을 양도하는 계약에 대한 사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차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계약은 1992년 11월 24일에 양국의 국방부장관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총 39척의 함정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거기에는 16척의 해안경비정과 9척의 지뢰탐지 매설선이 포함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89

그리스에 인민군 탄환 제공
1993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코페,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의 탄환 중에 그리스에 제공된 탄환이 실제로 그리스의 무기체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녹색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차관은 그리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90

내독 국경선 지역의 지뢰제거
1993년 5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위트너,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가이거,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내독 국경선에 매설된 지뢰제거작업의 진행상황과 비용에 대한 기민당원의 질문에 국방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동독은 1960년 이후 660km에 달하는 내독 국경선에 약 130만 개의 지뢰를 매설하였다. 1985년까지 동독 국경수비대가 지뢰금지지역을 제거하였지만 실제 34,000개의 지뢰에 대한 제거 또는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통일 후 지뢰탐지는 국경시설의 해체작업을 담당한 회사에 의뢰되었고 그를 위한 비용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2천만 마르크 소요될 것으로 책정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91

연방군이 인수한 인민군의 헬리콥터
1993년 9월 9일

담당자 / 기관_ 마테르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이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한 헬리콥터의 성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기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며 그를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연방군은 총 191대의 다양한 Mi 시리즈의 헬리콥터를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현재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92

하계노프의 비텐베르그 지역에 군 주둔지 이용
1993년 9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니제, 연방의회의원(사민당); 가이거,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하계노프에 있는 비텐베르그 지역에 “전차학교”를 세우기 위해 건물에만 6천5백만 마르크를 투자하고 100대의 마더-전차를 배치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가 맞는가 하는 사민당원의 질문에 국방부차관은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93

인도네시아에 양도된 인민군 함정의 사용을 위한 인도네시아 해병 교육
1994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슈텐,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독일의 웨로스탈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양도된 39척의 군함에 투입될 인력을 훈련하는 임무를 위탁받은 것에 관한 사민당 슈텐의원의 질의에 국방부 차관은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웨로스탈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으로 모든 비용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하며 연방정부는 그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교육과정에 구 인민군 출신인 사람이 투입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것은 웨로스탈 회사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국방부 차관은 설명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회의록 12/205; S. 17700A-B

문서
번호 194

인민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무기, 탄환 그리고 장비의 1990년 10월 3일자
가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 시설 해체를 위한 비용, 정산
1994년 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엘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이 1990년 10월 3일에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한 물자와 장비의 가치가 당시에는 약 800억에서 900억 마르크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현재의 가격으로 DM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묻는 사민당원의 질문에 연방군에서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 국방부 차관이 답변하였다. 그리고 인민군의 군수물자를 판매해서 독일이 얻은 수익은 1993년 말 현재 총 3억3천8백만 마르크라고 하였다. 나아가 인민군의 군수물자를 처리/폐기하기 위해 들어간 총 비용이 1993년 말까지 9억2백만 마르크라고 밝혔다. 인민군의 군수물자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의 손익계산은 아직 군수물자의 판매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95

독일연방대법원 - 동독지도부의 1980/81 폴란드자유노조운동 간섭계획에 관한 처벌가능성

1994년 11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대법원 연방검찰청;블루멘비츠 교수

내용_

“독일 사통당 독재 결과와 역사 청산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기민당 실무그룹은 1980/81 폴란드자유노조운동(정부에 속한 노조가 아닌,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간섭하고자 했던 동독지도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률감정을 의뢰하였다.

블루멘비츠 교수의 법리해석에 따르면 국제법상 평화 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각기 독일연방형법 80조(“침략전쟁 ...중략... 준비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을 전쟁위험에 처하게 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적용, 개인의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사건발생시점 당시 동독형법 85조, 86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으며 독일연방형법 80조와 동독형법 85조, 86조 사이에 불법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처_ 사통당 독재 청산재단 문서기록보관소,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기증문서, 문서번호 207

문서
번호 196

인민군 출신 기간제 군인의 근무기간 연장
1995년 1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루치가, 연방의회의원(사민당); 가이거,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 소속원 중에 40세가 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장교 또는 하급장교로 우선 2년제 기간제 군인으로 인수되었다가 후에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인민군에서 인수한 군인 중에 40세 이상의 장교와 하급장교의 수는 총 214명이다.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장교의 경우 최대 15년, 의무장교의 경우 최대 20년 연장가능하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97

연방군의 물자 중에 인민군의 지뢰, 다른 나라에 인민군 지뢰의 양도
1995년 5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베어,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연방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뢰에 관한 질문에 대한 국방부차관의 답변:

연방군은 현재 DM 31과 DM 51의 대인지뢰를 보유하고 있다(그 중에 MON 50은 인민군에서 인수한 지뢰).

인민군 물자 중에서 인수된 지뢰는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에 대한 기술 조사를 위해 연맹의 회원국에게 제공하였고, 우방국가들에게는 교육용으로 훈련지뢰와 대전차지뢰를 제공하였다. 어느 국가에 어떤 종류의 지뢰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협의에 따라 기밀로 다루기로 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198

An Army Surplus - The NVA's Heritage
1995년 6월

담당자 / 기관_ 오프프리드 나사우어, 베를린 대서양안전정보센터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http://www.bits.de/public/bicc95.htm>

문서
번호 199

원자력 폐기물 저장고 모스레벤의 인민군 연락장교
1995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쇤베르거,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동독시절에 원자력 폐기물 저장고인 모스레벤에 인민군 연락장교가 상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녹색당원의 질문에 국방부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연방정부는 인민군 연락장교의 상주에 관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동독의 비밀경찰이 해당 시설의 재해보호체계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민군의 장교 또는 민간방위대가 모스레벤의 저장고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00

터키에 인민군 전함 양도
1995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_ 베어,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정부; 연방경제부

내용_

연방해군이 1988년 이래 어떤 유형의 전함을 터키에 양도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차관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연방해군은 전쟁무기통제법에 의해 통제받는 총 16,150,000 마르크 상당의 함정을 터키에 제공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01

구 유고슬라비아에 인민군 무기, 특히 크로아티아에 미그 21기 제공
1995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_ 간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의 미그 21기가 크로아티아 공군에 있다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자 국방부는 인민군에서 인수한 미그 21기의 소재를 정확히 밝혔다. 40대는 폐기되었고, 5대는 VEBEG 회사를 통해 박물관에 판매되었으며, 1대는 연방군 공군 박물관에 보관되었고, 1대는 코트부스의 비행기 박물관에 비치되었다. 그리고 다른 2대는 시험비행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02크로아티아 공군 NVA 미그 21기 보유
1995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 리펠트, 연방의회의원(녹색당); 간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

연방정부가 폐기했다고 밝힌 인민군의 미그 21기가 크로아티아 공군에서 발견된 것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국방부는 이 전투기의 폐기확인서와 탈무장확인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행기가 크로아티아 공군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총 41대의 인민군 미그 21기의 경우 개별적인 번호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 통일 이전에 인민군이 유고슬라비아에 그런 기종의 전투기를 양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03인민군 차량의 매각처리
1995년 10월 12일

담당자 / 기관 그라프 폰 아인지델, 레더러, 티파흐, 츠베렌츠, 기지, 이상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

인민군 보유 비행기 중에 몇 대가 외국에 양도 또는 판매되었으며 그 비행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해 연방정부가 어떻게 통제하였는가에 대한 민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차관의 답변:

총 89대가 외국에 양도 또는 판매되었다.

정부 대 정부의 협약에 의해 제공된 비행기의 경우 제3국에 제공하게 될 경우 독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조항이 협약에 포함되었다.

VEBEG 회사에서 판매한 비행기의 경우 이미 탈무장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판매하였다.

비행기를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 탈무장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지만 만일 다른 목적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국 간의 협정에 의해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04

인민군 소속원의 근무기간 계산과 연금
1995년 12월 6일

담당자 / 기관_ 말로이다, 연방의회의원(민사당); 클라우스,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내용_

인민군의 소속원이었던 사람 중에서 연방군에 인수된 사람들의 연금과 관련해서 그들이 동독 지배체제에 가까웠다는 이유로 연금에 불이익을 받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금법을 개정할 의도가 없는가 하는 민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인민군의 근무기간은 모두 연금산출 기간에 반영된다. 그것은 인민군 소속원이 연방군에 인수되었는가 아닌가에 관계없는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05

연방 재산관리청에 의한 인민군 주택 임대
1995년 1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루치가,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카바츠키, 연방재무부 차관

내용_

연방재산관리청이 임대한 인민군 소속 주택들이 구채무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사민당원의 질문에 대한 답:

인민군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동독의 채무가 있었지만 그것을 개별 주택으로 분리해서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연방이 인민군 주택과 관련된 구채무를 승계받기로 하였다. 그것이 연방재산관리청이 주택 임대료를 계산할 때나 주택 개량을 위해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06

인민군에서 연방군으로 인수된 직업군인의 노후연금에서의
공백기 발생 문제

1995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탈하임,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비헤르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연방군으로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 군인들이 정년퇴직을 할 때 노후보장의 문제가 발생한
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함 답:
연방군으로 인수된 인민군 소속 군인들의 연금관련문제는 통일조약에서 다루어졌다. 통일
조약의 합의에 따르면 동독 인민군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일반연금의 가입기간으로 계산되
고 1990년 10월 3일부터 공무원연금체계에 포함되게 된다.

일반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65세이다. 그러나 군인들의 경우 이미 52세, 53
세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인민군 소속이었던 군인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에 공백
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국방부
는 일회적인 과도기규정으로 인민군 소속 군인으로 연방군에 인수된 사람의 경우 근무기
간을 일 년에서 이 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 정년퇴직하는 사
람의 경우 2년, 그리고 1998년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의 경우 1년이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07

군시설로 인한 오염지역의 조사와 평가 처리와 관련된 국제 경험
1996년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청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http://www.umweltbundesamt.de/boden-und- altlasten/altlast/web1/berichte/ mooredeut/miliab_t.htm

문서
번호 208

TU-134 기의 매각처리
1996년 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그라프 폰 아인지델, 레더러, 티파흐, 츠베렌츠, 기지, 이상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연방의 물자 처리를 담당하는 VEBEG 회사는 세 대의 TU-134 수송선을 FTG 항공서비스 운송회사에 양도하였다. 수송선의 양도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09

인민군 무기의 수출
1996년 12월 4일

담당자 / 기관_ 루프트, 쿠츠무트, 기지, 이상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인도네시아에 양도한 인민군 함정 39척에 대한 협약이 1992년 11월 24일에 체결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10

군부대 시설을 구 인민군 장교에게 매각
1996년 12월 12일

담당자 / 기관_ 하커,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카바츠키, 연방재무부 차관

내용_

1990년 3월 7일에 시행된 소위 말하는 모드로우법, 즉 인민소유 건물의 매각에 관한 법과 1990년 3월 29일에 동독 국방부가 지시한 명령 44/90호에 따라 인민군이 보유한 약 800여 채의 단독주택과 2세대 가구가 대지를 포함해서 전부 당시 동독의 이용자들에게 매각되었다. 그러나 이 계약들은 동독의 물자관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탁청의 2차 실행규정도 어겼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계약일 뿐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11

인민군 물자 매각에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회사”의 역할
1997년 5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나흐트바이,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빌츠,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 군수물자의 매각에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국방부차관의 답변: 이 회사는 인민군 군수물자의 처리를 담당하는 VEBEG 회사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인민군 물자처리를 위탁받은 것이 없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12

포츠담의 귀터펠더 들판 인민군 군사훈련장의 이용
1997년 1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쿠츠무츠, 연방의회의원(민사당); 로제,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무슨 이유로 포츠담의 귀터펠더 들판이 또 다시 군사안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국방부차관의 답변:

귀터펠트 들판에 “군사안전지역” 표시를 한 것은 이 지역의 탄환제거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13

동독 국가 시설물과 인민군 시설물의 수리와 이용
1997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티파흐, 그래프 폰 아인지델, 이상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내용_

1990년 10월 3일에서 1997년 9월 30일까지 연방재산관리청은 신연방주에서 약 14,800개의 시설, 총 354,000헥타르의 면적을 인수하였다. 거기에는 구 인민군의 부대와, 소련군 서부 사단의 부대 그리고 21EV에 따라 연방재산으로 분류되는 행정재산과 전 제국재산이 포함된다. 그 중에 약 60%는 이제 매각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방군은 1990년 10월 3일에 총 2,100개소의 인민군 부대를 인수하였다. 그 중에 383개의 부대는 연방군이 직접 이용하고 있고 132개소는 지역단체에 양도되었다. 나머지는 연방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었거나 신탁청에 양도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14

연방군의 의무반 직업장교로 인수된 인민군 소속인의 검증
1998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_ 지버트,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비헤르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인민군에 소속되었던 의무반 직업장교의 경우 연방군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비밀경찰 협조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15

연방군에 의해 인수된 인민군 소속원인 노후연금 공백기간 문제
1998년 4월 8일

담당자 / 기관_ 루치가,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비헤르트,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1998년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혁을 통해 인민군 소속이었던 군인들의 연금이 인민군 복무기간에 대해 약 1% 인상된다. 나아가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군인들에게 지불하는 일회성 보조금 또한 마지막 급여의 다섯배였던 것이 (최대 8,000 마르크) 개혁법을 통해 정년 연령이 61세로 그리고 일회성 보조금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18

터키의 쿠르드지방에 인민군 차량 투입
1999년 4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엡케,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외무부

내용_

민사당 질의: 연방정부는 독일이 터키에 제공한 인민군 물자 중에 기동성이 높은 인민군의 탱크가 포함되었고 그것이 1992년부터 쿠르드지역의 민간인들을 감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19

터키의 쿠르드지방에 인민군 차량 투입
1999년 5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엡케,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외무부

내용_

연방정부의 답변: 1991/1992년 당시 연방정부는 걸프전쟁에 참가한 나토군을 위한 물적 지원의 일환으로 터키에 BTR-60형 탱크 300대를 제공하였다. 당시 연방정부의 요청으로 터키 정부는 이 탱크를 민간시민을 상대로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양도계약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수 차례 약속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20

구 인민군 시설 중에 연방소유 주택의 매각
2000년 3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오스트로브스키,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내용_

민사당 질의: 원래 총 65,000호가 존재하였던 인민군 주택 중에서 몇 채가 현재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매각되었나?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21

구 인민군 시설 중에 연방소유 주택의 매각
2000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_ 오스트로브스키, 연방의회의원(민사당);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내용_

연방정부 답변: 신연방주에서 인민군과 소련군 서부사단으로부터 인수받은 총 118,000호의 주택 중에서 현재 약 43,000호는 (소련군 서부사단이 신연방주들과 체결한 양도협약의 틀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되거나, 배상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다른 47,000호는 매각되었고 현재 28,000호가 연방소유로 남아 있다. 연방재산 처리와 관련된 통계에는 처리된 주택이 인민군의 주택이었던지에 대해 특별히 분류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22

동독의 생화학 무기
2001년 11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리츠, 라이텔, 브로이어, 아담, 야노브스키, 카바츠키, 코센데이, 라머스, 라우버, 레프닉, 로스마니트, 쉘퍼, 지버트, 지만, 치어러,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내용_

기민당/기사당 질의: 연방군은 인민군으로부터 생화학무기를 인수받았는가? 소련군이 철수한 지역에 남은 물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는가?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23

동독의 생화학 무기
2002년 1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리츠, 라이텔, 브로이어, 아담, 야노브스키, 카바츠키, 코센데이, 라머스, 라우버, 레프닉, 로스마니트, 쉘퍼, 지버트, 지만, 치어러,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내용_

기민당/기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그런 사실이 없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24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직업군인의 연금 공백기 문제; 전역한 인민군
군인이 이전의 계급에 연방군 전역군인이 사용하는 a.D. 표시를
사용하는 문제, 인민군에서 획득한 교육증명서 인정

2002년 2월 27일

담당자 / 기관 놀팅, 브라운, 반 에센, 니벨, 알보비츠, 브뤼덜레, 부룩바허, 플라흐, 풍케, 굿마
허, 하웁트, 하우스만, 하인리히, 히르헤, 훔부르거, 호이어, 콜브, 콕, 코펠린, 오토, 파르, 피
퍼, 렉스르트, 슈미트-요르치, 쉬슬러, 제엔, 솔름스, 탈레, 튀르크, 이상 연방의회의원(자민
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

자민당 의원들의 질의:

- 인민군에서 연방군으로 인수된 군인들의 노후보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 신연방주에 주둔하는 연방군의 담당업무 중에 몇 %가 저렴한 “동쪽 급여”를 받는 직
원에 의해 처리되는가?
- 언제 차별적인 “동쪽 급여”를 폐지할 계획인가?
- 언제 연방군은 인민군에서 전역한 사람이 a.D.표식을 계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
용할 것인가?
- 인민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이방 군대에 복무한 기간”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인민군에서 취득한 교육증명서를 다른 외국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25

연방군에서 독일통일을 구현
2002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게르케, 연방의회의원(민사당)

내용_

연방의회는 민사당의 제안 “연방군에서의 독일통일 실현”에 대해 토론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통일이 완성되었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민군에서 복무하였던 군인들이 자신의 계급에 a.D.라는 표시 즉 연방군 전역장교들이 당연히 사용하는 전역군인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내적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26

인도네시아에 인민군 함정 판매
2003년 6월 4일

담당자 / 기관_ 뢰취, 연방의회의원(무소속); 바그너,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게지네 뢰취 민사당원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인민군의 군수물자로 인도네시아에 양도된 39척의 함정 중에 일부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아체지역의 주민들을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는다. 단지 인도네시아 아체지역에 약 20대의 함정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인민군 물자에서 제공된 함정도 포함되었다. 이 함정들은 대부분 인력을 수송하는데 투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27

인도네시아에 제공된 인민군 함정 이용상의 계약위반
2003년 8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라이브레히트, 연방의회의원(자민당); 샤리오트, 연방외무부 차관

내용_

하랄드 라이프레히트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양도된 구 인민군 함정이 계약과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민군 물자로 독일이 인도네시아에 양도한 함정을 아체지역 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계약위반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 작전에 투입된 함정의 작업 목적이 “해안경비”이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해적과 밀수 그리고 테러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28

“인민군의 무기와 장비 -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마르틴 쿤처 인민군 예비역 중령은 1990년 후 구 인민군의 각종 무기체계와 군사장비의 폐기 및 재처리 또는 인수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불명(2004년)

담당자 / 기관_ 마르틴 쿤처, 인민군 중령(예비역)

내용_

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사(17쪽)는 통일이 이루어지고 15년 후에 작성되었다. 이 기사는 무기 및 군사장비의 폐기문제를 포함하는 인민군의 해체과정에 대해서 매우 폭넓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의 입각(1990년 4월 12일) 이전의 인민군의 군축과정과 지휘부의 교체를 비롯한 인민군의 변화과정을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추적하고 있다.

출처_ http://www.mi-8salon.de/neues/wb/media/downloads/Wo_geblieben.pdf

문서
번호 229

전역한 전 인민군 군인이 자신 계급을 이름에 포함하여 쓰는 것을 허용
2004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 놀팅, 다웁, 반 에센, 브롱크호스트, 부룩바허, 풍케, 골드만, 권터, 굿마허, 하
팍-카산, 하인리히, 호이어, 코펠린, 라이브레히트, 뢰닝, 오토, 피퍼, 슈티너, 튀르크 비싱, 게
르하르트, 이상 연방의회의원(자민당);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내용

연방의회에 요청: 인민군에서 전역한 군인들이 계급에 a.D.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
히 법적인 조건을 마련하기를 연방정부에 요구하도록 요청.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30

인도네시아에 제공된 인민군 함정 이용상의 계약위반
2004년 6월 30일

담당자 / 기관 라이브레히트,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뮐러, 연방외무부 차관

내용

하랄드 라이프레히트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외무부의 답변:
연방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일로부터 양도받은 인민군의 함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그런 목적을 위해 2003년에는 외무부의 정치국장이 자카르타
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논의하였다. 자카르타의 만남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양
도받은 함정을 계약에 부합하게 투입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33

연방예산 2006: 구 인민군-주택, 인민군 소속원의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

2006년 3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내용_

2006년 연방예산안에는 인민군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이 있다:

- 인민군과 구소련 서부사단의 주택과 관련된 의무 (금액 없음)
- 인민군 소속원들의 연금(2006, 지출: 12,400,000 유로), 인민경찰, 소방대 그리고 교도관(5,480,000 유로), 동독 세관원(240,000 유로), 비밀경찰요원(1,100,000 유로)
- 구 인민군 소속원들의 일반국민연금을 위해 사회보장기관이 지출하는 금액 보상, 인민군(500,700,000 유로), 인민경찰, 소방대 그리고 교도관(755,600,000 유로), 동독 세관원(40,000,000 유로), 비밀경찰요원(215,000,000 유로).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34

인민군의 미그 29기 수리 점검

2006년 3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웨퍼, 쿠네르트, 뢰처,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경제과학기술부

내용_

좌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

무기수출 허가와 관련된 좌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은 러시아에 인민군에서 인수한 전투기 미그 29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설명은 미그기를 생산한 러시아에서 이 전투기의 부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35

가입지역(신연방주)에서의 근무상해에 대한 보상법과
사회보상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초안

2006년 4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내용_

연방정부의 법 초안에 대한 노동사회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

가입지역(신연방주)에서의 근무상해에 대한 보상법과 사회보상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안
의 수용을 추천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36

연방예산 2006: 구 인민군 소속원의 공무원연금과 일반연금

2006년 6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예산상임위원회

내용_

예산심의위원회는 인민군 소속원들의 공무원연금과 일반국민연금에 관련된 2006년도 예
산안 항목을 수용하기를 추천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37

급여, 연금 그리고 인민군 전역 군인의 a.D.표식 사용
2006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홍부르거,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내용_

자민당 홍부르거 의원의 발언: 연방군 서부와 동부에 속한 군인의 급여에 차등을 두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인민군 출신 연방군 군인은 연방군에만 근무하였던 군인들보다 더 적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인민군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들은 나치의 제3제국의 군대에 소속되었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a.D. 표식을 사용할 수도 없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38

인민군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
2006년 6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슈나이더, 에른스트, 빈더, 비스키, 봉에, 키펡, 크노헤, 쿠네르트, 파우, 라인케, 쉘퍼, 자이퍼트, 탁만,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좌파의 질의:

- 1956년에서 1990년 사이에 인민군에서 총 몇 명이 그리고 1958년에서 1985년까지 연방군에서 총 몇 명이 레이더장치에서 근무하였는가?
- 지금까지 국방부와 연방 상해보험에 몇 명의 레이더 피해자가 상이군인, 직업병 또는 유족연금을 신청하였는가? 연방정부는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을 계획하고 있는가?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39

인민군 레이더 방사전 피해자

2006년 7월 28일

담당자 / 기관 슈나이더, 에른스트, 빈더, 비스키, 봉에, 키피, 크노헤, 쿠네르트, 파우, 라인케, 쉘퍼, 자이퍼트, 탁만,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

좌파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

- 1958년과 1985년 사이에 연방군에서 그리고 1956년에서 1990년 사이 인민군에서 레이더 장치를 담당한 군인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인민군 직업군인의 596명이 현재 연방군에 근무상해의 승인신청을 하였다(그 중 105명은 유족).
- 인민군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 중 623명이 현재 상해보험에 직업병의 승인을 신청하였다(98명은 유족).
- 연방정부는 레이더 피해자보상을 위한 법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러한 보상은 현재 존재하는 공무원연금과 다른 보험규정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0

연방예산 2007: 구 인민군 주택, 구 인민군 소속원 공무원연금과 일반연금

2006년 8월 11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내용

2007년 연방예산안에는 인민군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 인민군과 구소련 서부사단의 주택과 관련된 의무(금액 없음)
- 인민군 소속원들의 연금(2006, 지출: 12,000,000 유로), 인민경찰, 소방대 그리고 교도관(5,20,000 유로), 동독 세관원(215,000 유로), 비밀경찰요원(1,700,000 유로)
- 구 인민군 소속원들의 일반국민연금을 위해 사회보장기관이 지출하는 금액 보상, 인민군(498,000,000 유로), 인민경찰, 소방대 그리고 교도관(743,100,000 유로), 동독 세관원(40,450,000 유로), 비밀경찰요원(213,000,000 유로).F134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1

인민군 소속원의 사고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문제

2006년 9월 11일

담당자 / 기관 자이퍼트, 에른스트, 빈더, 골츠, 회거, 노일링, 키핑, 슈나이더, 슈피트, 기지, 라 폰텐,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노동사회부

내용

좌파 질의: 연방정부는 동독 인민군에서 복무하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지불되던 연금을 통합과정에서 사고연금으로 분류한 결과 이 액수가 실업연금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써 구 인민군 소속 상이군인이 연방군 소속 상이군인과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연방정부는 이러한 차별대우를 수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2

인민군 소속원의 사고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문제

2006년 9월 28일

담당자 / 기관 자이퍼트, 에른스트, 빈더, 골츠, 회거, 노일링, 키핑, 슈나이더, 슈피트, 기지, 라 폰텐,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노동사회부

내용

좌파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연방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 동부와 서부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고연금과 상이군인연금의 법적 근거를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3

인민군 소속 군인의 연금과 근무 중 입은 상해보상 문제
2007년 2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예프케,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퇴네스,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내용_

연방과 주에서 인민군, 인민경찰, 소방대, 교도관, 세관원 그리고 비밀경찰의 특별연금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시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4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소속 군인의 노후보장문제
2007년 5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봉에, 뢰취, 키펡, 쿠네르트, 자이퍼트, 슈피트, 분더리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좌과질의: 구 인민군 소속으로 연방군에 인수된 군인과 기술자의 노후보장문제는 어떠한가? 인원이 몇 명인가? 민간 군속을 포함하여 1990년에 연방군에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원 중에 몇 명이 연금생활자가 되었는가? 동독에서 근무했던 시기는 노후보장체제에서 어떻게 계산되었나?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5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소속 군인의 노후보장문제
2007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봉예, 최취, 키팅, 쿠네르트, 자이퍼트, 슈피트, 분더리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
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좌파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

인민군의 연금체계에서 획득한 연금점수는 일반 국민연금 체계로 이전되었다.

1,039명의 직업군인 외에 인민군 소속이었던 142명의 공무원이(2007년 현재) 정년퇴직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6

구 인민군 병사의 연금 공백기
2007년 8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국민청원위원회

내용_

청원서를 통해 인민군에서 연방군으로 인수된 군인들의 연금 공백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 청원위원회는 연방내무부와 국방부에 이 청원서를 보내고 앞으로의 법 제정에서 이 점
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아가 상임위원회는 각 원내 정당에게 이 청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추천하였다.
이 청원은 의회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해결책을 찾도록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7

인민군 소속 레이더 피해자 보상법

2008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 기지, 퇴취, 나우만, 파우, 슈나이더,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국
방상임위원회

내용

연방의회 결정:

연방의회는 연방정부가 인민군과 연방군의 레이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보상법안을 제출하기를 요구한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8

연방군에 있는 인민군 장교의 수, 신 연방지역의 연방군 소속원이 병역의무 수행 중 상해보상을 입었을 경우에 받을 연금

2008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 클라우스,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볼프,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

좌파 클라우스위원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차관의 답변:

현재 연방군에 근무하고 있는 264명의 소위, 627명의 중대장, 1219명의 영관급 장교 그리고 한 명의 의무대 장군이 인민군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다. 1993년 3월 24일에 제정된 군인연금-과도기규정 1조 2항에 의거 신 연방지역에 근무하는 연방군의 군인 중에 근무 관계가 동독에서 시작된 경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군인연금규정의 상해연금규정에 따라 신 연방지역의 사회보상법의 기준에 맞는 보상을 받는다. 현재 이 기준은 88.14%이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49

구 인민군 소속 군인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문제, 구 동독 비밀경찰의 급여와 연금체계에 관한 정보의 제출,
연방군 내에서 구 인민군 출신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제

2008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국민청원위원회

내용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인민군 군인의 상해는 전쟁상해로 분류되지 않고 병역근무 상해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구 인민군에서 상해를 당한 경우는 사고보험에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청원위원회는 이 규정이 헌법적으로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개의 청원은 특히 이들이 수령하는 사고연금이 노령연금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보고서가 작성되는 해에는 인민군에서 근무했던 시간을 연금점수 산정에서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청원상임위원회에는 나아가 비밀경찰의 연금과 급여체계에 대한 정보와 연방군에 인수된 전 인민군 소속 군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에 대한 요구가 제출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50

연방군에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 군인의 노후보장문제, 전역한 전 인민군
군인이 계급에 연방군 전역군인이 사용하는 a.D 표시를 사용하는 문제

2008년 7월 11일

담당자 / 기관_ 홀부르거, 호프, 슈티너, 아딕스, 브뤼델레, 브룅크호스트, 부룩바허, 되링, 다이
크만스, 플라흐, 프리케, 프리드호프, 프리드리히, 가이젠, 그루스, 귄터, 하파흐-카잔, 하우
스타인, 호이어, 카우흐, 퀴닉스하우스, 콜프, 쿵, 코펠린, 란퍼만, 라우리쉴, 라이브레히트,
렌케, 링크, 뢰닝, 마이어호퍼, 마인하르트, 뮌케, 뮐러-쉴센, 니벨, 오토, 파르, 피퍼, 로데, 쉘
퍼, 쉴리, 슈스터, 탈레, 톤카, 바이츠, 빈터슈타인, 비싱, 볼프, 차일, 베스터벨레, 이상 연방의
회의원(자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군이 인민군으로부터 인수한 직업군의 연금 공백기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언제 연방정부가 구 인민군 소속으로 전역한 군인들이 자신의 계급에 a.D.라
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인민군에서 근무한 기간을 이제 “외국 군대
에서” 근무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연방정부가 보기에 인
민군에서 취득한 교육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51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8 연례보고서: 신 연방지역 군사시설에서의
자연보호

2008년 9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신 연방지역에서 군의 훈련장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 이제는 자연친화적인 상
태로 복원될 수 있었다. 2008년 5월 13일 총괄계약에 의해 독일연방환경재단이 넘겨받은
지역은 대부분 이전에 군부대로 사용되던 지역이었다. 그 지역은 광대한 규모 때문에 자연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52

전 인민군 소속원의 연금

2008년 1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바이겔, 헤스, 빅클라인, 이상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내용_

인민군 출신 연방군인의 공무원연금은 연방군에서 근무한 기간만 계산해서 산출된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연금의 액수가 순수연방군 출신보다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한도도 낮다. 추가소득의 한계를 인상한다고 세금이 더 지출되는 것도 아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53

전 인민군 소속원의 연금 외 제한 추가소득의 한도

2008년 1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호흐바움,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라이헬,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내용_

근무규정법을 개정하여 인민군 출신 연방군 군인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허용된 추가소득의 한도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차별대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추가소득이 월 325 유로를 넘어서는 안되며 아니면 공무원연금의 인상분이 줄어든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54

연방군에 인수된 구 인민군 소속 군인의 추가 소득 허용 한계
2008년 1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무상임위원회

내용_

국방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인민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방군 정년퇴직자의 추가소득 한도가 순수연방군 출신의 연금생활자가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한도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차별대우는 “통일된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55

방사선 피해자의 보상
2009년 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헤르만,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크라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훔부르거,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뢰취,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나흐트바이,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내용_

연방의회는 민사당의 제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에 대해 동과 서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상해 주기 위한 레이더피해자보상법 도입
2001년 이후 국방부는 연방군과 인민군 군인들이 부대의 레이더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레이더위원회에서 추천한 연방군과 인민군의 레이더 방사능 피해자들과 유족을 위한 보상은 동과 서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58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09년 연례보고서: 신연방주 군사시설에서의 자연보호

2009년 6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신 연방지역에서 군의 훈련장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 이제는 자연친화적인 상태로 복원될 수 있었다. 2008년 5월 13일 총괄계약에 의해 독일연방환경재단이 넘겨받은 지역은 대부분 이전에 군부대로 사용되던 지역이었다. 그 지역은 광대한 규모 때문에 자연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59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09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봉에, 에른스트, 바취, 블룸, 클라우스, 골체, 키팅, 쿠네르트, 로이테르트, 뢰취, 나우만, 라멜로우, 라인케, 슈나이더, 자이퍼트, 슈피트, 탁만, 분더리히, 이상 연방의회의 원(좌파연합);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내용_

연방의회가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이 연방연금법이 보장하는 기본연금의 액수 내에서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므로써 동부와 서부 독일의 상이군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규칙을 신속히 도입하도록 연방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0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09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 봉에, 에른스트, 바취, 블룸, 클라우스, 골체, 키팅, 쿠네르트, 로이테르트, 뢰취, 나우만, 라멜로우, 라인케, 슈나이더, 자이퍼트, 슈피트, 탁만, 분더리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내용

연방의회 노동사회상임위원회는 좌파 의원들의 제안에 (연방의회 인쇄물 16/13182) 대해 표결하였다. 이 제안은 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1

방사선 피해자의 보상
2009년 7월 2일

담당자 / 기관 브뤼닝,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베그너,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훔부르거,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뢰취,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나흐트바이,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내용

연방의회는 좌파의 제안에 대한 국방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에 대해 토론하였다: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에 대해 동과 서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상해 주기 위한 레이더피해자보상법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거부되었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2

전 인민군 소속원의 상이군인연금 2009년 7월 2일

담당자 / 기관 미할크,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크뤼거-라이스너, 연방의회의원(사민당);
하우스타인,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내용

연방의회는 좌파의 제안에 대한 노동사회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 및 보고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독 인민군 소속원이 받는 상이군인연금도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 연방군 소속 상이군인연금의 수혜자가 수령하는 상이군인 연금은 구직자 기본보장비 산출을 위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군의 상이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연금액까지는 특혜받는 소득으로 인정된다. 그 결과 이 연금은 실업연금에 함께 계산되지 않고 전액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인민군의 상이군인이 받는 연금은 산재연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군의 상이군인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산재연금은 실업연금에 포함된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차별대우를 없애야 한다.

이 제안은 거부되었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3

비밀경찰의 연금체계에 대한 정보 제출;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군인의 노후보장문제 해결; 비밀경찰 요원의 연금법적 제한규정의 폐지 2010년 4월 21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국민청원위원회

내용

청원을 통해 비밀경찰의 급여와 연금체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다른 청원에서는 연방군으로 인수된 인민군의 노후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비밀경찰 요원들에 대한 연금법적인 제한규정을 제거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4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장교
2010년 6월 8일

담당자 / 기관_ 슈타인바흐,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코센데이,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1990년 10월 3일에 연방군에 인수된 총 50,000명의 기간제 병사와 직업군인 중에 우선 24,000명의 장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6,000명의 장교는 기간제 군인으로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계약을 받은 경우는 2,350명의 장교가 직업군인으로 그리고 700명의 장교가 연장근무를 하는 기간제 군인으로 인수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5

동독 인민군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
2010년 6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봉에, 뢰취, 바취, 비르크발트, 블룸, 보크한, 클라우스, 쿠네르트, 레이, 로이터트, 자이퍼트, 쟈어-쉐퍼, 슈타인케, 슈튀버, 탁만, 포글러, 바인베르크, 분더리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내용_

연방의회가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이 연방연금법이 보장하는 기본연금의 액수 내에서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므로써 동부와 서부 독일의 상이군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규칙을 2010년 9월 30일까지 도입하도록 연방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6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2010년 연례보고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던 지역의 환경보호, 군대 통합 20년
2010년 9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신 연방지역에서 군에 의해 이용되었던 지역이 자연친화적인 상태로 복구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광대한 규모로 인해 자연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민군이 1990년 10월 3일 해체되면서 55세 이상의 직업군인들은 대부분 해고되었다. 비밀경찰의 인력은 인수되지 않았다. 연방군에 인수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계급강등을 감수해야 했다. 연방군인 인민군의 물자와 장비 그리고 수많은 부대와 시설을 인수하였다. 1997년의 오테강 대홍수 그리고 2002년의 엘베강 대홍수는 신 연방지역의 주민들이 연방군을 수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아가 연방군은 신 연방지역의 중요한 고용주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7

구연방주와 신연방주에서의 방사선 피해자 피해보상과 연금
2010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_ 회거, 쉐퍼, 포글러, 부흐홀츠, 봉에, 그로트, 훈코, 코흐, 리비히, 노르트, 자이퍼트, 쟁어-쉐퍼, 울리히, 바인베르크,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연방정부에 대한 질의:

상해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몇 사람이 신청을 취소하였으며 현재 심사 중이 경우는 몇 개인가? 그리고 몇 명의 인민군 소속인원이 신청하였는가?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8

인민군 소속 레이더 방사선 피해 군인의 신청서
2010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회거,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코센데이, 연방국방부 차관

내용_

좌파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 차관의 답변: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의 2003년 9월 24일 결정에 따라 레이더 위원회가 2003년 7월 2일에 제출한 보고서의 건의사항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연금법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병에 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69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노령연금과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10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봉에, 뢰취, 바취, 비르크발트, 블룸, 보크한, 클라우스, 쿠네르트, 레이, 로이터트, 자이퍼트, 쟁어-췌퍼, 슈타인게, 슈튀버, 탁만, 포글러, 바인베르크, 분더리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내용_

제목참조. 이 제안은 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이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0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노령연금과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10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 하인리히, 레리더,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슈미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콜브,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슈트랭만-쿤,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내용

좌파의원의 제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토론:

인민군 복무 중에 당한 부상자의 상해연금은 통일 후 법적으로 사고보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것은 인민군에서의 사고가 일반적인 산업재해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방군의 경우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부상자연금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인민군 소속원의 경우 부상자연금이 구직자의 기본보장비와 노령연금을 산출하는데 그대로 포함된다.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였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1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노령연금과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10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 하인리히, 레리더,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슈미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콜브,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슈트랭만-쿤,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내용

좌파 의원들의 제안에 관한 토론과, 기민당/기사당 레리더 의원의 연설:

기민당/기사당은 좌파가 제안한 문제, 인민군 소속 상이군인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조금과 노령연금의 산출을 위한 계산에서 제외하자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좌파는 두 개의 독일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대체복무가 가능했지만, 동독에서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2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노령연금과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10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 하인리히, 레리더,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슈미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콜브,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슈트랭만- 쿤,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내용

좌파 의원들의 제안에 대한 사민당 슈미트위원의 발언:

사민당은 좌파의원들이 제안한 인민군 소속 상이군인의 상해연금을 구직자 기본보조금과 노령연금의 산출을 위한 계산에서 제외하자는 것을 지지한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동부와 서부의 연금생활자들 간에 불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3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노령연금과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10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 하인리히, 레리더,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슈미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콜브,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슈트랭만- 쿤,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내용

좌파의 제안에 대한 자민당 콜베위원의 연방의회 총회의 발표:

인민군 소속원들은 사고보험에서 상해연금을 지급받으며 상해연금 외의 모든 사고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연방군 소속 상이군인들에게는 근무상해보장비 외에 제공되는 혜택이 없다. 사고연금을 실업보험 II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모든 상해연금 수령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방노동법원이 2009년 3월 17일의 판결을 통해 확인하였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4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노령연금과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10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 하인리히, 레리더,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슈미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콜브,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슈트렝만- 쿤,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내용

좌파 제안에 대한 봉에 의원의 부연설명: 연방의회의 노동사회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야당이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민당과 기사당의 의원들조차도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5

인민군 소속원의 상해연금을 노령연금과 구직자 기본보장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

2010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 하인리히, 레리더, 이상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슈미트,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콜브, 연방의회의원(자민당); 봉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슈트렝만- 쿤, 연방의회의원(녹색당)

내용

좌파의 제안에 대한 녹색당 슈트렝만-쿤 의원의 발언:

직업군인과 병역의무이행자 간의 차별적인 대우를 법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당은 그런 의미에서 인민군 소속원으로 상해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좌파의 제안에 동의한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6

연례보고서 2010(52. 보고서): 인민군의 레이더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연금

2011년 1월 25일

담당자 / 기관_ 퀴닉스하우스, 연방의회 군특임관

내용_

인민군 소속 인원 중에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의 적절한 보상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도 청원과 정치적 이니셔티브의 대상이었다. 국방상임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보험상황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에 대한 연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7

연방군에 인수된 인민군 소속원의 노령연금

2011년 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노동사회정책상임위원회

내용_

인민군 소속원으로 연방군에 인수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과정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 원인은 인민군에서 연금가입비를 지불한 기간과 1990년 10월 3일 이후 공무원연금을 받게되는 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동독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특별연금의 연금권리를 승인해 주는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8

인민군의 특별연금 체계와 연금의 공정성
2011년 2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레베르크,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내용_

기민당/기사당 의원 레베르크의 연방의회 총회의 발언:

동독에는 인민군 인민경찰 세관원과 비밀경찰을 위한 특별연금체계가 있었다.

1971년에서야 일반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적인 추가보험이 도입되었다. 이런 추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만성질환자는 발병하고 난 후 7주째가 되어서야 300 동독마르크의 질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연방과 연방주는 이런 특별보험과 추가보험을 지불하기 위해 약 340억 유로를 투자하였다. 그것은 매년 약 40억 유로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독 고용인들을 위한 연금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 근거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79

10차 활동보고서 2011 - 비밀경찰, 인민군 그리고 국경수비대의 문서
2011년 3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비르틀리, 구 동독슈타지문서 연방특임관

내용_

이번 보고기간에는 비밀경찰 문서고의 19에서 32번 영역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HA I(인민군과 국경수비대의 방어작업)이 포함되었다. 부처별로 진행된 비밀경찰의 문서에 대한 작업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으므로 이제는 주제별로 저장된 문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80 인민군 해체 이후 증가한 군사장비 수출
2011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 불만, 연방의회의원(사민당)

내용

사민당 불만위원의 연방의회 총회의 발언:
인민군이 해체된 이후에 무기수출이 증가하였다. 연방군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그에 따르면 장비 또한 개편되는 과정이 또다시 무기수출의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81 특히 인민군 병역의무 수행자의 근무 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된 동독
사회보장기구의 법적인 후속기관
2011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 회거,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푸흐텔,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내용

통일조약에 따르면 연방노동사회부가 1990년 10월 3일 자로 동독 사회보험의 법적 후속기관이 된 것이 아니다. 통일 이후 신 연방지역 주민들의 사회보험은 그들이 동독에서 획득한 연금점수를 연방독일의 사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전하기로 규정되었다. 인민군에서 상해를 당한 사람의 경우 사고연금을 받을 권리는 동독의 사회보험에 대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연방독일의 사고보험체제로 편입되었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82

인민군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피해보상 2011년 3월 23일

담당자 / 기관 회거, 쉐퍼, 포글러, 반 아켄, 부흐홀츠, 붕에, 닥델렌, 데옴, 게르케, 그로트, 핸
젤, 훈코, 엘프케, 호흐, 리비히, 모바삿, 노르트, 울리히, 베르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
합);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내용

많은 인민군 군인들이 1980년대까지 아무 것도 모르는 채 방사선과 접촉하였다. 그 중에
서 몇 명은 그로 인해 증병을 얻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증명해 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
문에 16대 연방의회의 모든 정당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찾아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재단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83

인민군 레이더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피해보상 2011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 말착, 코일, 퀴닉스, 누푸어, 벡, 벡, 폰 크라몬-타우바델, 회프켄, 호페, 케케리
츠, 코치, 뮐러, 로트, 사라친, 슈미트, 슈트뢰벨레, 이상 연방의회의원(녹색당); 연방의회 국
방상임위원회

내용

연방의회는 인민군 피해자의 보상문제와 승인절차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신속히 처리하기
를 연방정부에 요구하도록 요청받았다. 연방군과 인민군의 레이더 피해자는 동일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그리고 레이더 장비의 생산자가 피해보상비의 일부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해야만 한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84

용병이 된 구 인민군 소속 군인
2011년 4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슈타인바흐, 연방의회의원(기민/기사연합); 피퍼, 연방외무부 차관

내용_

연방정부는 구 인민군 소속 군인 또는 다른 동독의 무장기관 소속 인원이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85

방사선과장으로서의 인민군과 연방군의 강력한 전파
2011년 5월 5일

담당자 / 기관_ 회거, 코흐, 쉘퍼, 훈코, 부흐홀츠, 모바샷, 포글러,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송신탑은 방사선규정에 따라 방사선방해과장기로 구분된다. 연방정부는 이 경우 방사선 피해로 인해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그들이 방사선과장에 노출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86

인민군 레이더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피해보상
2011년 7월 8일

담당자 / 기관 회거, 쉐퍼, 포글러, 반 아켄, 부흐홀츠, 붕에, 닥델렌, 데옌, 게르케, 그로트, 헨젤, 훈코, 옐프케, 코흐 리비히, 모바삿, 노르트, 울리히, 베르너,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의회 국방상임위원회

내용

1990년대 말부터 인민군의 레이더 장치를 작동하던 부대원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 그 원인은 이 기계를 직접 작동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좌파는 연방정부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를 요구하였다. 이 제안은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자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87

실업연금 II를 수령하는 경우 인민군 사고연금을 전부 계산에
포함하는 문제
2011년 7월 22일

담당자 / 기관 붕에,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호오페,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내용

실업연금 II와 사회보장비 규정의 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이 도입되었다: (인민군 소속 상이군인이 받는) 상해연금은 그것이 인민군에서 병역을 수행하면서 얻은 상해일 경우 일부분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90

연례보고서 2011(53. 보고): 인민군 레이더 피해자 연금
2012년 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코닉스하우스, 연방의회 군특임관

내용_

레이더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립될 재단에 연방정부가 2012년의 연방예산에서 칠백만 유로의 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재단은 연방군의 군인보조기구 산하에 설립될 것이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91

인민군과 비밀경찰 소속원과 그 가족이 받는 연금
2012년 3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2011년의 예산에는 연방예산규정 37조 4항에 따라 인민군과 그 유족을 위해 사회보험기관이 지출하는 연금금액을 보상하기 위한 과외지출로 1,444만 유로, 그리고 해체된 비밀경찰의 요원과 그 유족을 위해 사회보험기관이 지출하는 연금금액의 보상을 위해 356만 유로를 책정하였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92

인민군과 연방군의 레이더장치로 인한 방사선 피해자의 동등한 대우
2012년 4월 5일

담당자 / 기관_ 쉘퍼, 게르케, 반 아켄, 부흐홀츠, 훈코, 코흐, 리비히, 포글러, 바인베르크, 이상
연방의회의원(좌파연합);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_

레이더 피해자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30년 전 인민군 소속 군인들의 작업조건과는 전혀 상
관이 없는 연방군에서 최근에 실시한 측정결과를 주로 고려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인민군
소속 방사선 피해자가 승인절차에서 연방군 소속 군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연방정부는 생각하는가?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93

연방군 개혁과 동반하여: 연금법적으로 평가되는 인민군 교육기간
2012년 4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전역한 전 인민군 소속 연방군 군인은 일반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될 때까지 군인연
금법 26조에 따라 공무원이 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추가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그로써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기간과 일반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 사이의 격차가 없
어지게 되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94

지뢰 위험에 대한 경고
2012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신문 괴팅어 타게스블라트/ 아이스펠더 타게스블라트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http://www.goettinger-tageblatt.de/Nachrichten/Duderstadt/Uebersicht/Stiftung-warnt-vor-Minengefahr>

문서
번호 295

두더슈타트의 그린벨트지역 일부에 지뢰 위험 존재
2012년 4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북독일방송(NDR)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http://www.ndr.de/regional/niedersachsen/harz/minen101.html>

문서
번호 296

연방군의 군인 중에 인민군에서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연금계산에서의) 불평등한 대우

2012년 5월 9일

담당자 / 기관 아놀드, 바르텔스, 브링크만, 엘러, 에른스트베르거, 에버스-마이어, 글라이케, 그로쉴, 카스트너, 클링바일, 쿠퍼퍼, 쿼프, 메스머, 오퍼만, 슈타인마이어, 이상 연방의회의원(사민당); 연방정부, 연방국방부

내용

어떤 근거로 인민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방군의 군인과 동독의 공공기관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이 조기정년퇴직을 할 경우 재정적으로 서부의 연방군 소속원보다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연방정부는 통일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 이런 재정적인 불평등을 제거할 의사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언제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97

추가-/예외지출/ 2011년 4분기의 승인: 인민군과 비밀경찰 소속원과
유족의 연금을 지불하는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비용 보전

2012년 5월 9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내용

2011년에는 인민군 소속원과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사회보험기관에 연방이 보전해 주는 비용을 인상할 것이다. 그것은 특히 독일 연금보험연합이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계산에 오류를 범하여 발생한 추가비용과 그로 인해 올해의 연금수령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외적인 지출비용에 관해서는 연방재무부가 2011년 12월 19일의 문서를 통해 연방의회와 연방회의에 통보하였다.

출처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문서
번호 298

연방정부 레이더 방사선 피해자를 위한 기금 설치
2012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신문 차이트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http://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2-05/unterstuetzung-soldaten-haer-tefall-fonds>

문서
번호 299

독일연방공화국 국방예산
일자 미상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제목 참조)

출처_ 독일연방정부



문서
번호 300

연방군의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2002년 4월 25일

담당자 / 기관_ 하이다 리프만, 모니카 발트, 페트라 블래스 외, 이상 연방의회의원(민사당)

내용_

2002년 4월 연방의회에서 민사당 의원들이 제안발표를 하였다.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군 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연방군에 인수된 전 인민군 소속원들은 아직도 '이등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된 연방군의 직업군인과 기간제 군인은 구 연방군에서 95%를 그리고 전 인민군 출신 5%로 구성되었다. 이런 구성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급여 또한 불평등하다. 그들의 인민군 경력은 '외국군대 복무'로서 인정될 뿐이다. 고위직으로 승진하거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 구 인민군에서 취득한 교육수료증이나 근속연수는 부분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이는 승진이나 기타 연금문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출처_ 연방의회 문서기록보관소 - DIP(의회문서일련번호), 인쇄물 14/8920